

'92

북한개요

통일연
02년

책을 내면서

분단 반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날 우리 민족은 엄청난 내외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토록 어렵고 머나 먼 일로만 여겨지던 통일문제가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밖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하고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가져왔던 동서냉전구조도 사라졌으며, 안으로 남북간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쌍방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과 여러 갈래의 회담이 진행되는 등 화해와 협력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과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힘입어 구소련 및 동구권에 이어 금년에는 마침내 중국과도 수교하는 등 통일환경은 긍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역사의 흐름을 외면한 채 김일성부 자체체 유지에만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개방사회의 물결이 그들 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쇄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주민사상교육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므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른바 『우리식사회주의』를 고수·발전시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대남적화전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혼란과 전복을 기도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서방 접근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받아들였고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설정, 외국인 투자법 제정 등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 북한이 20년만에 헌법을 개정하여 현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외정책을 보다 유연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변화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북한의 실상을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원 정보분석실에서는 그간의 북한변화실태를 재평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북한개요』(北韓概要) 수정·보완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끝으로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각종 자료와 정보가 충분히 망라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개정판에서 한글만을 사용함에 따른 남북한의 표기법 차이문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맞춤법에 따랐음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오늘의 북한실상을 바로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2년 12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목 차

I. 지 리

1. 자연환경	19
가. 위치 및 면적	19
나. 지형 및 기후	20
다. 지하자원	22
2. 사회환경	24
가. 인 구	24
나. 행정구역	27

II. 정 치

1. 정치이념	35
가. 주체사상	35
나. 혁명관	45
2. 정치체제	51
가. 체제의 성격	51
나. 조선로동당	53
다. 정권기관	72

3. 정치권력	96
가. 김일성체제 강화	96
나. 지도층의 변화	101

Ⅲ. 경제 및 과학·기술

1. 경제정책의 기초	111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111
나. 중공업 우선정책	113
다. 군사·경제의 병진	114
2. 경제체제	115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115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18
3. 경제관리	123
가. 관리원칙	123
나. 관리방법	126
4. 분야별 관리체제	134
가. 농업관리	134
나. 공업관리	138
다. 유통관리	141
라. 가격관리	143
마. 분배관리	145
5. 경제계획 및 실적	147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반구축	147
나. 사회주의적 경제계획 추진	154

6. 분야별 현황	164
가. 국민소득	164
나. 재정 및 금융	169
다. 산업부문별 실태	189
라.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221
7. 과학기술 정책	232
가. 정책기조	232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233
8.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제	242
가. 과학기술 행정체제	242
나.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제	248
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250
9. 대외협력	258
가. 과학기술 협정	258
나. 중·러와의 협력 실태	259

IV. 사 회

1. 사회정책 및 구조	265
가. 사회정책의 기초	265
나. 사회계층 구조	266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269
가. 조직생활 통제	269
나. 경제·사회적 통제	271
다. 사회문제	272

라. 사회적 부조리	274
마. 특별독재대상구역	275
3. 주민생활	277
가. 의식주생활	277
나. 직장생활	285
다. 가정생활	289
라. 여가생활	291
4. 노동문제	293
가. 노동정책	293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294
5. 사회복지	297
가. 사회보장제도	297
나. 사회복지시설	298
다. 사회보험	300
6. 보건·의료	302
가. 보건·의료정책	302
나. 의료시설	304
다. 보건·의료요원 양성	305
라. 동의학	307
7. 도덕·풍속	308
가. 도 덕	308
나. 관혼상제	310
다. 명 절	313
라. 민속놀이	316

8. 관 광	318
가. 관광정책	318
나. 관광사업 추진실태	319
다. 주요 관광자원 개발현황	320
라. 관광 편의시설	320

V. 문 화

1. 교 육	327
가. 교육정책	327
나. 교육체계	328
다. 교육내용	331
라. 교원양성	334
마. 특수교육	335
2. 문학·예술	336
가. 문예정책 및 이론	336
나. 문예단체	340
다. 분야별 현황	342
3. 언론·출판	356
가. 언론정책	356
나. 언론현황	357
다. 출 판	367
4. 체 육	369
가. 체육정책	369
나. 지도·양성기관	370
다. 주요 체육대회	372

라. 체육시설	373
5. 종교	377
6. 역사	381
7. 언어	383
8. 문화시설	386

VI. 외교

1. 외교정책	393
가. 정책기조	393
나. 정책변천과정	397
2. 외교활동	402
가.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402
나. 주요 외교활동	405
다. 외교현황	408

VII. 군사

1. 정책기조	449
가. 군사정책	449
나. 군사전략	452
2. 군의 형성과 특징	456
가. 군의 형성과정	456
나. 군의 성격과 특징	458

3. 군사제도	460
가. 군사기구	460
나. 군사편제	465
다. 군사교육	467
라. 군대복무	468
4. 군사현황	472
가. 병 력	472
나. 예비병력	474
다. 군사비	479
라. 병기생산	480
마. 군사동맹	483

Ⅵ 통 일

1. 통일정책의 기초	487
가.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노선	487
나. 혁명주의적 통일노선의 변화문제	490
2.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492
가. 1960년대 『남북연방제 방안』	492
나.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495
다.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99
라. 199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07
3. 『연방제』 통일론의 향방	513

자 료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517
-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542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567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571

I. 지 리

1. 자연환경

가. 위치 및 면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에 위치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은 황해와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접하고 있다.

북한 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그 이전은 북위 38도선) 이북의 지역으로 그 동서남북단은 다음 표와 같으며,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1,336\text{km}^2$ 의 55%인 $122,762\text{km}^2$ 이다.¹⁾

한반도 남북의 총 길이는 약 1,100km이고 동서의 길이는 좁은 곳이 200km, 넓은 곳이 320km이다. 해안선 길이는 총 8,593km인데²⁾

-
- 1)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간행 『조선개관』(1988)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면적을 $222,209\text{km}^2$ 로 서술하고 있다.
 - 2) 북한 금성청년출판사 간행 『우리나라 지리와 풍속』(1991)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길이를 약 8,103km로 서술하고 있다.

이중 북한지역의 해안선은 2,495km이다. 국경선은 총 1,376.5km인데 이중 중국과는 1,360km, 러시아와는 16.5km를 각각 접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위치

방 향	경 위 도	해 당 지 명
동 단	동경 130도 41분 32초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분단전 : 경흥군 노서면)
서 단	동경 124도 10분 47초	평안북도 용천군 비단섬노동자구 (분단전 : 용천군 마안도)
남 단	북위 37도 41분 0초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분단전 : 황해도 용진군 봉강리)
북 단	북위 43도 00분 36초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분단전 : 현재와 같음)

* 출처 : 『조선중앙년감』(1988)

『조선관광안내』(1991)

나. 지형 및 기후

우리나라는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해안과 남해안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그 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m 이상의 산은 북한지역에만 약 60여 개가 있다.

북한 지역의 주요 산·평야·하천

구분	이름			높이·넓이·길이
산	백두산	2,750m		
	관모산	2,540m		
	북수백산	2,521m		
	차일봉	2,505m		
평야	평양원	약 500km ²		
	안주평야	약 300km ²		
	함흥평야	약 300km ²		
	연백평야	약 400km ²		
	재령평야	약 500km ²		
하천	압록강	790.4km		
	두만강	525.2km		
	대동강	431.1km		
	청천강	212.8km		
	예성강	174.3km		

북한 지역은 기후대상으로 북온대의 남쪽에 있으므로 비교적 온화하며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1년 평균기온이 8°C~12°C로서 사람의 활동에 비교적 적합한 편이다.

북한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000mm 정도이다. 그중 50~60%는 6~8월의 3개월 사이에 내린다. 최근에는 한냉전선의 영향으로 여름철 장마현상이 없어지고 가뭄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 지역 연평균 기온과 강우량

(1990년)

지 역		평균기온(°C)	강우량(mm)
평	양	10.8	1,512
신	의 주	10.0	1,090
해	주	11.5	2,022
사	리 원	11.2	1,891
원	산	11.5	1,651
함	흥	10.6	1,277
청	진	8.0	660
강	계	7.9	714
혜	산	4.7	748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중앙기상대 응용기상국 기후자료과

다. 지하자원

북한 지역에는 360여종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유용광물은 200여종에 이른다. 그중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는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흑연, 중정석, 운모, 형석, 은, 철, 연, 아연, 알루미늄, 석탄 등으로 좁은 면적에 비해 다종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주요 광물 매장 및 분포 현황

구 분	매 장 량	분 포 지
철(Fe)	20~40억톤	함북 무산, 함남 이원·허천, 황남 은율·재령, 평남 개천·강서
중석(W_3)	20~30만톤	황북 신평, 함남 대흥, 평남 양덕, 평북 창성
몰리브덴	1~3천톤	황북 수안, 함북 종성·어랑, 강원 금강
망간(Mn)	10~30만톤	함북 부평, 강원 금강
니켈(Ni)	2~3만톤	함남 광천, 함북 부운
석 탄	80억톤 (무연탄 55억톤 유연탄 25억톤)	평남 남북부, 함북 안주
납(Pb)	400~600만톤	함남 광천, 평남 성천·개천, 자강 용림·송원·위원
아연(Zn)	1,000~2,000 만톤	"
금(Au)	1~2천톤	평북 동창·운산, 황북 수안·연산, 함남 허천, 강원 금강
은(Ag)	3~5천톤	"
마그네사이트 (Mgo)	30~40억톤	함남 광천, 양강 백암·운흥

2. 사회환경

가. 인 구

북한은 그동안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989년에야 비로소 유엔인구기금(UNPF)에 1946~'87년 기간의 각종 인구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1987년 현재의 북한인구는 1,934만6천명이다. 1988년 이후부터는 발표된 자료가 없으나 통일원의 추정에 따르면 1991년말의 북한 인구는 대략 2,202.8만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할 경우 서해안연안의 평야지대에 총인구의 54%가 살고 있으며, 북부지방의 자강도·양강도에는 겨우 8.6%만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인구의 45%가 도시지역에, 그리고 55%가 농촌 또는 여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 발표 인구

(단위 : 천명, %)

연 도	총인구	남		여		성 비
			증가율		증가율	
1946	9,257	4,629	-	4,628	-	100.0
1949	9,622	4,782	1.08	4,840	1.49	98.8
1953	8,491	3,982	-4.58	4,509	-1.77	88.3
1956	9,359	4,474	3.88	4,885	2.67	91.6

연 도	총인구	남	증가율	여	증가율	성 비
1960	10,789	5,222	3.86	5,567	3.27	93.8
1965	12,408	6,067	3.00	6,341	2.60	95.7
1970	14,619	7,127	3.22	7,492	3.34	95.1
1975	15,986	7,433	0.84	8,553	2.65	86.9
1980	17,298	8,009	1.49	9,289	1.65	86.2
1982	17,774	8,194	1.14	9,580	1.54	85.5
1985	18,792	8,607	1.64	10,185	2.04	84.5
1986	19,060	8,710	1.19	10,350	1.61	84.2
1987	19,346	8,841	1.49	10,505	1.49	84.2

* 주 :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수임. 1970년 이후의 총인구수는 인민군을 제외한 것임.

* 자료 :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임.

북한인구 추계

(단위 : 천명)

연 도	총 인 구	남 녀		성 비 성 비(%)
		남	여	
1965	12,252	5,990	6,262	95.6
1970	14,002	6,883	7,119	96.7
1975	16,172	7,996	8,176	97.8
1980	18,170	9,023	9,147	98.6
1985	19,995	9,963	10,033	99.3
1986	20,340	10,140	10,200	99.4
1987	20,685	10,318	10,367	99.5
1988	21,030	10,496	10,534	99.6
1989	21,375	10,673	10,702	99.7
1990	21,720	10,851	10,869	99.8
1991	22,028	11,009	11,019	99.9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의 지역별 인구추계

(단위 : 명)

지역	연도		지역	연도	
	1990	1991		1990	1991
평양	3,288,042	3,334,702	함경북도	2,055,035	2,084,178
남포	790,399	801,614	황해남도	2,023,407	2,052,120
개성	379,392	384,774	황해북도	1,612,406	1,635,282
평안남도	2,813,803	2,853,737	강원도	1,549,174	1,571,149
평안북도	2,497,641	2,533,088	자강도	1,201,413	1,218,461
함경남도	2,845,423	2,885,801	양강도	663,943	673,367
			계	21,720,078	22,028,273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북한의 주요 도시별 인구추계

(단위 : 명)

지역	연도		지역	연도	
	1990	1991		1990	1991
청진시	663,925	673,340	김책시	189,697	292,389
신의주시	316,155	320,644	함흥시	790,394	801,611
구성시	189,696	192,386	신포시	158,079	160,322
평성시	252,927	256,518	원산시	284,542	288,580
순천시	474,236	480,967	사리원시	284,541	288,580
희천시	189,697	192,389	송림시	94,848	96,193
강계시	252,927	256,517	해주시	221,310	224,454
혜산시	221,316	224,457	단천시	347,775	352,711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나.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1952년 12월 행정체계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4단계 행정구역체계인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 리(동)의 행정단위중 면을 폐지하여 도(특별시, 직할시), 시·군(구역),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구역체제로 개편하고 군지역을 재분할하여 그 수를 증가시켰다.

행정구역 현황

(1992년)

구 분	시(구역)	군(읍)	동·리	노동자구
평양 특별시	(18)	4(4)	385	5
남포 직할시	(5)	1(1)	98	-
개성 직할시	1	3(3)	87	1
평안남도	5	14(14)	414	36
평안북도	2(3)	23(23)	566	36
자강도	3	15(15)	304	22
양강도	1	11(11)	188	37
황해남도	1	19(19)	436	7
황해북도	2	14(14)	320	7
함경남도	3(6)	15(15)	598	38
함경북도	4(8)	13(13)	387	33
강원도	2	15(15)	432	11
합 계	24(40)	147(147)	4,215	233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특히 북한은 광산, 임산사업소, 공장·기업소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일종의 취락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곳에 『로동자구』를 설치하였다.

북한은 1946년 평양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킨 이래 29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1992년 현재 9도, 1특별시, 2직할시, 24시, 147군, 40구역, 233노동자구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① 중앙집권제의 강화, ② 김일성부자 및 가계우성화를 위한 지명 개칭, ③ 행정구역수에 있어서 남북한을 같은 수준으로 두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행정구역 개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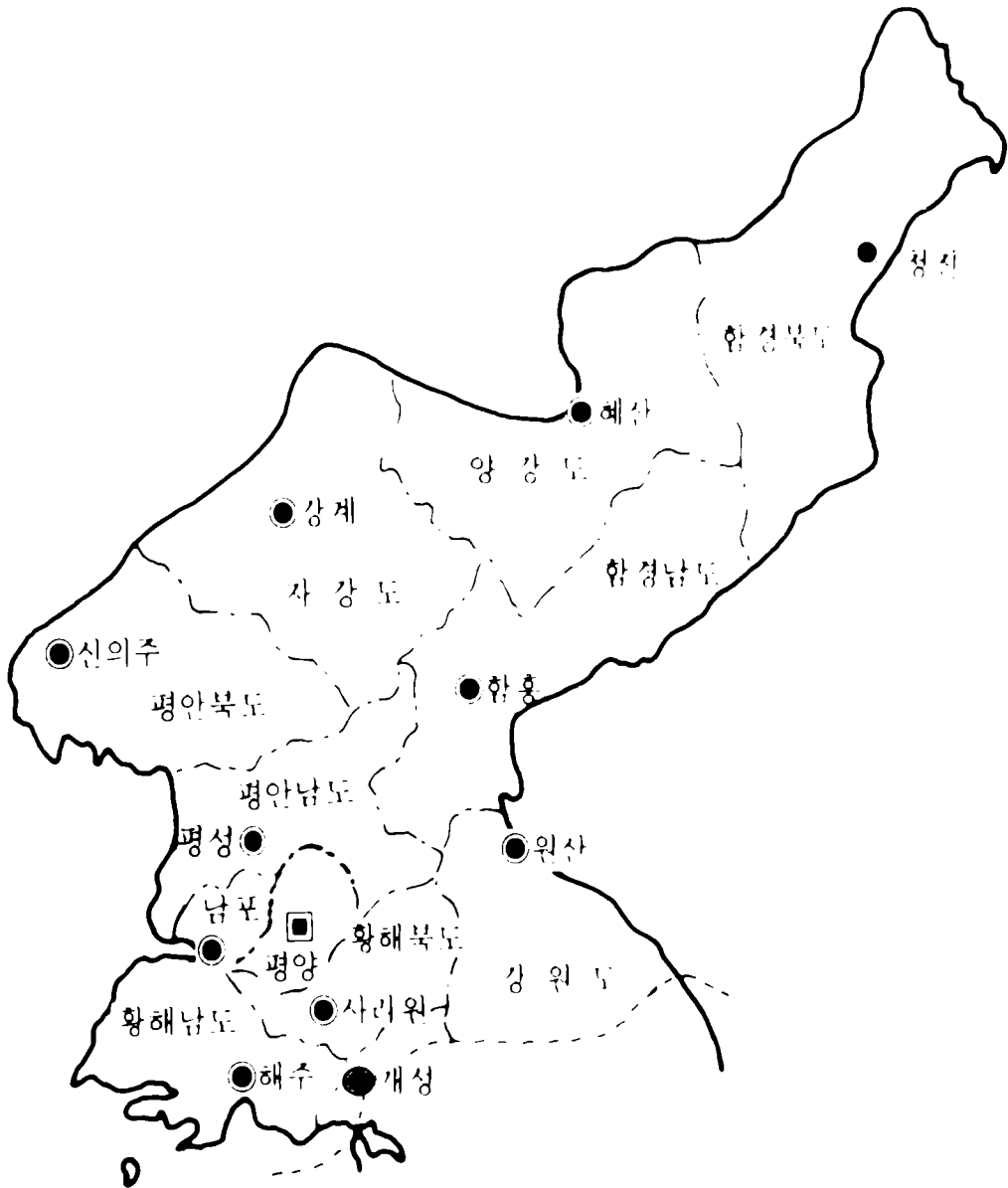
시 기	개 편 내 용
1946.	○평양시를 특별시로 승격 ○경기도에 있던 연천군과 함북의 원산시, 문천군, 안변군을 분리, 강원도에 통합하여 강원도 신설
1949. 1.31	○평북의 강계군, 자역군, 후창군, 위원군, 초산군, 희천군과 함남의 장진군 일부를 병합하여 자강도 신설
1951.	○개성시와 개풍군을 병합하여 개성지구 신설, 중앙직속으로 운영
1952.12.22	○면을 폐지 ○면을 정리병합하여 군을 증설(98개군→168개군), 리를 10,120개에서 3,658개로 병합 개편 ○군의 중심지를 읍으로 호칭 ○노동자구 설치 *4단계 행정체제를 3단계로 개정

시 기	개 편 내 용
1954.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강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산악지대의 혜산시와 10개군을 병합 ○황해도를 남·북도로 분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북도는 사리원, 송림시와 16개군으로 신설 • 황해남도는 해주시와 16개군으로 신설
1955.	○개성시와 개풍·관문군을 통합, 개성직할시로 승격
1955. 2.22	○도시내의 리를 동으로 개칭
196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흥, 청진시를 도급인 직할시로 승격하였다가 1967. 10 일반시로 격하 ○평양을 11구역→18구역으로 확장
1965.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성구 신설 ○양강도의 부전군을 함남에 편입
1972.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남 순안군을 평양시에 편입 ○평남 평성구를 시로 승격 ○함흥시, 덕산, 퇴조구역을 군으로 변경 ○강원도 문천군을 원산시에 편입
1974.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남 일부군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흥, 신창, 홍상, 신상, 수동, 덕산군 폐쇄
1974. 5.31	○평남 은산군, 평북 청성군, 함남 광천군, 함북 유선군 폐지
1976. 6.10	○원산시 일부를 분리, 문천군 신설
1977.	○함남 영흥군을 금야군으로 함북 경흥군을 은덕군으로 개칭
1977.11	○청진시에 무산군과 경성군을 편입, 직할시로 승격
1980. 3. 1	○남포시에 대안시와 용강군을 편입, 직할시로 승격
1981. 8.17	○양강도 신파군을 김정숙군으로 개칭

시 기	개 편 내 용
1981.10.22	○ 함북 용기군을 선봉군으로 명륜군을 화성군으로 개칭
1981.11.16	○ 함남 오로군을 영광군으로 개칭
1982. 9.30	○ 함남 단천군을 시로 승격 ○ 함남 퇴조군을 낙원군으로 개칭
1983. 4.30	○ 평남 강동군을 평양시에 편입 ○ 남포직할시에 대안시와 남포구역을 폐지하고 5개구역 신설
1983.11. 6	○ 평남 순천군을 시로 승격
1985. 8. 2	○ 청진직할시를 폐지 청진시, 경성군, 무산군으로 분리, 각각 함북도에 편입
1987. 8	○ 평남 안주군, 덕천군을 시로 승격
1988. 7	○ 평북에 신도군 신설
1988. 8.25	○ 자강도 후창군을 김형직군으로 개칭
1989.12	○ 신의주시에 3개 구역(강안, 남, 광명) 신설
1990. 8	○ 양강도 풍산군을 김형권군으로 개칭
1991. 7	○ 함북 회령군, 평남 개천군, 강원도 문천군을 시로 승격
1992	○ 청진시에 송암 구역 신설

* 출처 : 북한의 신문·방송보도내용 종합

북한의 행정구역도



행정구역체계의 비교	
광복전	1992년 현재
4단계	3단계
도(특별시)	도(특별시·직할시)
군(시·구)	군(시·구역)
읍·면	리(읍·동·노동자구)
리·동	9도1특별시2직할시
6도9시89군	24시147군

—

Ⅱ. 정치

1. 정치이념

가.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기능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창시하였다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¹⁾고 되어 있으며, 사회주의헌법 제3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1)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 대회의 규약전문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으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²⁾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으로 표방되고 있으나, 이는 대내적으로 김일성 신정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무기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면에서는 자주노선의 추구라는 명분하에 폐쇄체제를 합리화하는 준거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대남면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유지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북한에서 주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는 195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른바 주체사상으로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이다.

주체사상은 처음 소련으로부터 수입된 공산주의의 북한내 이식과 정착,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각종 사상교양사업의 전개와 함께 형성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1948년 9월 인민공화국 수립시까지의 『건국사상 총동원운동』, 1950년대의 『공산주의 교양』, 1960년대의 『혁명전통교양』 등으로 전개, 추진되어 왔다.

1960년대에 진행된 혁명전통교양은 김일성과 그의 가계 우상화가 중심 내용이었다.³⁾ 1967년부터는 김일성 우상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2) 1992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제3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동구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함에 따라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이라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3) 제4차 당대회(1961. 9)에서 김일성은 보고를 통해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결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 사상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이념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이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전개 발전 과정도 김일성의 1인 독재권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일성이 주체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이다.⁴⁾

당시 김일성이 당 사업에서 주체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전후 복구건설 시기에 당내의 반대파들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해 나아가는 데서 심각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김일성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우익적 기회주의 또는 좌익적 모험주의라는 종파분자로 낙인 찍고 주체가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는 권력투쟁을 이념투쟁으로 분식한 것이다.

당시 주체확립 문제는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당면 사상사업 방향을 제시하는데 국한되었다. 이처럼 처음 사상에서의 주체 확립 문제만 거론하다가 김일성이 당내의 여러 파벌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면서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사위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하였다.

제반 대내정책에만 적용되던 주체확립은 중·소간의 이념 분쟁

4) 『김일성 저작집』 9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467.

의 격화로 국제공산주의운동 대열에서 현대 수정주의에 관한 시비가 벌어지자 대외정치명분으로까지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사상·정치·경제·국방·외교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주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내 용	제 기 시 기	배 경
사 상 에 서 의 주 체	당 선전선동원대회 (1955.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의 사망 • 당내 국내파 숙청
경 제 에 서 의 자 립	당 중앙위원회 3기 12월전원 회의(1956.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 감소(5개년 경제 계획 수립 차질) • 당내 반김일성운동 고조
정 치 (내 정) 에 서 의 자 주	당 중앙위원회 3기 12월전원 회의(1957.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 당내 중공파, 소련파 타도
군 사 에 서 의 자 위	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 회의(1962.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분쟁의 심화와 미·소 공존 모색 • 한국의 군사혁명
정 치 (외 교) 에 서 의 자 주	제2차 당 대표자회 (1966.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분쟁의 확대 • 비동맹 운동의 발전
종 합 체 계 화	당 중앙위원회 4기 16차 전 원회의(1967. 6. 28) 및 제5 차 당대회(1970.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
김 일 성 주 의 화	제6차 당대회 (1980.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 세습체제 공고화 • 동구의 변화와 우리식 사 회주의 고수

체사상의 내용체계로 종합화·이론화한 것은 1970년의 제5차 당대회에서이며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였다.

최근에는 주체사상을 “현시대 로동계급의 영생불멸의 지도리념”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우월한 사상으로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더욱 강화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원리·방법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⁵⁾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혁명의 총적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주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1970년대에 와서 주체사상이란 표현이 나왔음에도, 김일성이 1930년에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1930년 6월 말, 중국 만주의 장춘현 『카툼』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처음 밝혔다고 강조한다.⁶⁾

김일성이 1930년대에는 중국공산당의 무장부대인 동북항일련군

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년 3월 31일 김일성 70회 생일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발표. 북한은 김정일이 이미 1974년 2월 19일 당사상사업 일군 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한다.

6) 북한은 김일성 전기와 김정일 논문 등을 통해 1930년에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공식화시키고 있으나, 때로는 그 시기를 1926년으로 소급하기도 한다. 즉 김일성이 1926년 10월에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다는 것이다.(『조선중앙년감』, 1982, p.190). 그러나 70년대 초반에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결성된 것으로 선전했다.(『정치사전』, 1973, p.1145.)

의 한 대원으로, 1940년대 초반에는 소련군의 정찰부대인 88특별여단의 대원으로서 주체적 입장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현재, 그가 1930년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날조에 불과한 것이다.

(3) 주체사상의 내용

주체사상은 그 형성과 전개과정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발전을 보인 것과 같이 그 내용도 새로운 면들을 보충하면서 변화를 거듭하며 체계를 세워 왔다.

1970년대 주체사상이란 말을 처음 사용할 때, 그 내용에 대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라 했다. 이 경우에 사람이란 인민대중을 뜻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교시했다고 한다.⁷⁾

북한의 선전물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 즉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지도적 지침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구현하는 것이라 한다. 다음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지도적 지침은 인민대중에 의지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가 지도 원칙이 된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

7)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055.

히 수령의 역할과 지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말까지 북한 선전물들은 주체사상의 내용에 대해 이상과 같은 논리와 해설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까지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다른 것이 아니며, 다만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에 들어서 주체사상에 대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신대화, 구체화한 혁명적 수령관과 수령론이 핵심이 된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론을 그 내용에 추가하였다.

이때부터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주의를 능가하는 사상인 것처럼 주장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던 시대를 반영한 사상이라면,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이후에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계관이란 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⁸⁾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모두 인간개조와 계급적 사상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 자주, 창조, 의식 등의 실현에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따라 붙는다. 그것은 혁명적 수령관이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아무런 조건없이 단순히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 한다. 사회적 주체인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 확립에서 핵심이 된다고 한다.

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참고.

김정일은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고 하여 『수령론』에서 더 나아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⁹⁾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의 핵심도 혁명적 수령관이다.

혁명의 주체는 다름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은 곧 바로 『혈연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주는 『아버이 수령』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는데에 근거하고 있다.

김정일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개인과 집단의 자주성이 다 같이 실현되는 완전한 집단주의적 사회관계”로 북한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한다.¹⁰⁾ 북한은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혈연론으로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론체계와 내용이 어떠하든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 저작집, 교시 등은 모두 주체사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주체의 결정자는 김일성부자 뿐이다. 다른 모든 개인은 비주체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주체사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학습시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이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김일성 개인 우상화와 독

9) 김정일이 1986년 7월 16일 당 중앙위 책임일군에게 한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참고.

10) 김정일이 1992년 1월 3일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에게 한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참고.

재체제 유지를 위해 다듬어진 전략전술의 지도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주체사상과 우리식사회주의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연방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체제 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다는 사회주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정식화해 나아가고 있다. 이 시기부터 김일성의 신년사, 김정일의 담화, 당·정 고위인물들의 논설 및 신문·방송, 군중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외치면서 변화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라고 호도하고 있다.¹¹⁾ 아울러 그 좌절의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없었고 김일성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¹²⁾ 라고 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고

11) 김일성의 1990~'92년도 신년사 등.

12) 김정일의 1991년 5월 5일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참조.

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자”¹³⁾고 주민들을 학습시키고 있다.

북한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동구의 민주화 개혁·개방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침투해 들어온 반동적 책동의 결과”¹⁴⁾라고 입장을 정리한 다음,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해 사상 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¹⁵⁾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체제의 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와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원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 경쟁이 지배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¹⁶⁾

요컨대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란 영원불멸의 탁월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인류의 참된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이상사회를 구현한 정치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주민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역설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과 어떠한 시련이 닥쳐 오더라도 한걸음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13) 위의 담화.

14) 위의 담화.

15) 위의 담화.

16) 김정일의 1992년 1월 3일 담화.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아갈 것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나. 혁명관

(1) 혁명목표와 단계

북한의 혁명목표는 ① 북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② 남한 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③ 세계 공산화 혁명이라는 3가지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 3가지의 혁명과업 간의 연관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설명한다.¹⁷⁾

북한 내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은 『남조선혁명』을 위한 기지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은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때까지의 혁명단계 구분, 각 혁명단계 마다의 목표와 전략적 과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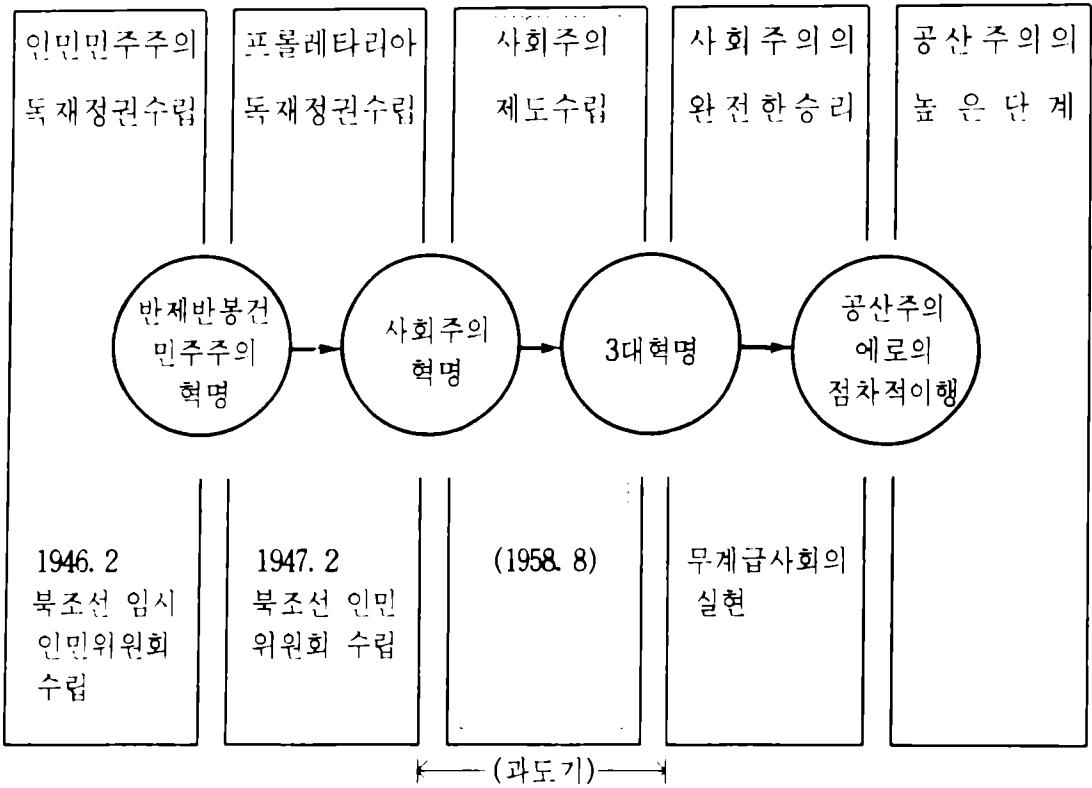
사회주의 혁명론의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이후부터 무계급 사회가 실현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까지를 과도기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¹⁸⁾

17) 주체사상연구소,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205~206.

18) 철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44~58.

김정일은 이와 관련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은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과도기 성격이 극복되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¹⁹⁾

혁명의 단계구분



(2) 대내혁명 : 3대혁명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서의 혁명 목표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두가지 고지 점령을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요새의 점령이란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사상적 요새의 점

19)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근로자』 (평양 : 근로자사, 1983. 5호), p8.

령이란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에서의 2가지 혁명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의 수행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사상을 내놓았다”고 한다.²⁰⁾ 김정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고 강조했다.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과 그에 따르는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 노동과 물질생활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²¹⁾

북한에서는 3대혁명 중에서 무엇보다 사상혁명을 중요시하며, 이를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상혁명은 사회 전체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인간개조사업으로, 동시에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과도기 단계에서의 사상혁명은 인간개조사업에 집중된다면서, 노동계급의 혁명화, 농민과 인텔리의 노동계급화가 강조되고 있다.²²⁾

사상혁명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도

20) 김정일의 1992년 1월 3일 담화.

21)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근로자』 (평양 : 근로자사, 1983. 5호), p.9.

22)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20~25.

록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도록 하고 있다.²³⁾ 사상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당 조직은 물론 정권기관, 근로단체, 교육·문화·보건기관 등 모든 조직이 동원·활용되며, 조직을 통한 각종 학습과 문학, 예술을 통한 군중교양 개조사업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사상혁명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분야의 활동에서는 정치사업의 선행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이는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벌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²⁴⁾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계속되는 경제계획에 따른 “긴장된 로력 사정”을 푸는데 있다.

김일성은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바로 기술혁명을 가로막는 장애로 간주하고, 이를 타파하는 것이 기술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선차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김정일도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데에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자본주의 나라의 발전된 기술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해로운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²⁵⁾

문화혁명은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혁명과정의 하나로, 사상혁명과 함께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주

23) 김정일의 1992년 1월 3일 담화 참고.

24) 북한헌법 제27조 및 노동법 제7조.

25) 김정일의 1992년 1월 3일 담화.

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²⁶⁾ 문화혁명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있다고 한다.

문화기술 혹은 생산문화란 근로자들이 노동시 필요한 기술적 지식, 예컨대 화학비료의 시비, 트랙터 이용과 관리방법 등을 말한다. 생활문화는 일상생활에 있어 환경위생정화와 질서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촉진을 위해 김정일의 관장하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당·전인민적 차원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90년대 속도 창조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3) 대남혁명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⁷⁾ 1992년의 개정헌법에서 『전국적범위』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어느 경우든 여전히 『남조선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당면 목표는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계열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이름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1단계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력량 강화의 전략적 구상』은 우선 한국내에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건

26) 위의 담화.

27)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김일성동지 사상』(동경: 구월서방, 1974), p.278.

설하며,²⁸⁾ 그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보조력량』을²⁹⁾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전선형성은 하층통일을 위주로 하면서 상층통일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³⁰⁾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내의 하층 군중들과 하층통일전선을 우선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정당·사회단체 내의 지배층과 상층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상과 하를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하나씩 통일전선체에 흡수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방침하에,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 등 여러 형태와 방법의 투쟁을 결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투쟁은 주권을 쟁취하는 결정적 투쟁의 준비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서는 남한내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방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폭력적 방도에 의거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오늘날까지 남북대화과 협상에 임하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남혁명의 전략목표와 혁명투쟁의 기치를 버리지 않고 있다.³²⁾

28)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을 말한다,” 『로동신문』, 1979. 8. 25.

29) 보조역량에는 국군병사 및 중하층 장교를 포함한다.

30) 『김일성 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62.

31) 김일성의 제5차 당대회 보고, 『로동신문』, 1970. 11. 4.

32)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1990. 5. 24) 시정연설에서도 『전민족적 통일전선형성』을 촉구하였다.

(4) 세계혁명

북한은 세계혁명을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을 그 기본 동력으로 하고 있는 세계혁명은 대남혁명의 대외적 환경으로서 국제혁명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된다.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서 반미투쟁을 세계 모든 혁명역량의 선차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반제·반미 역량의 통일전선 형성,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단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그러나 북한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퇴조, 비동맹운동의 변화로 인해 세계혁명의 추진은 이론으로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는 자체의 대내혁명기지의 보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 있다.

2. 정치체제

가. 체제의 성격

(1) 1당독재체제 · 수령지배체제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1당독재체제, 수령지배체제

33)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91~99.

라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관이나 각종 정치조직에 대한 『수령과 당의 령도』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권기관이나 모든 정치조직은 당의 지도와 영도 밑에 사업해야만 하는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영도가 보장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반드시 수령에 의해 유일적으로 영도되는 체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령, 당, 계급, 대중이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당은 최고 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인 영도역량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 밖에 근로단체 등과 같은 각종 정치조직들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라고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다.

둘째, 혁명과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령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해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사활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보는 등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며, 1인지배를 제도화하고 있다.³⁴⁾

수령은 프롤레타리아 당과 국가를 창건, 지도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지도사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의 최고 영도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 뇌수이며 당과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라고 한다.³⁵⁾ 수령의 영도적 역

34)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324.

35)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196.

1992년의 개정헌법(제12조)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수정하였다.

할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당의 영도를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는 반혁명적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식적 인민정권

북한에서는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사명을 강조하면서 『인민공화국』은 노농동맹에 기초한 혁명적 인민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의 지위는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 규정되고 있다. 정권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기구로서, 그리고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이와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정권기관의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³⁶⁾

- ① 반혁명적 요소 등에 대한 독재를 수행하는 진압의 기능
- ② 사회에 대한 법적 제재를 수행하는 통제적 기능
- ③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하는 문화교양적 기능
- ④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경제조직적 기능
- ⑤ 혁명의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외적 기능

이러한 정권기관의 권리행사는 법적 형식을 취하여 이루어진다.

나. 조선로동당

(1)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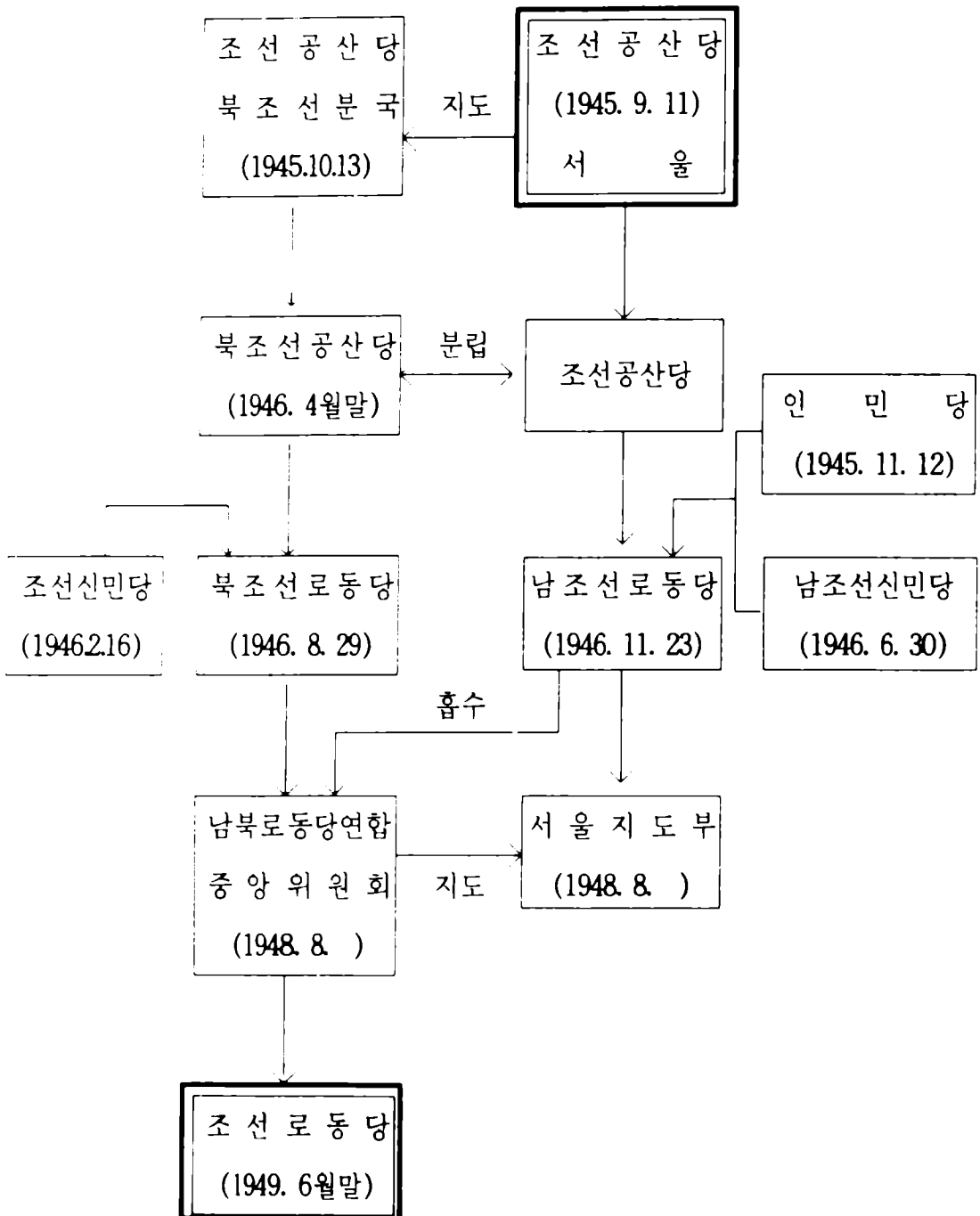
오늘날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창당일을 1945년 10월 10일로 공

36)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273~283.

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의 마지막

조선로동당 형성과정



날인 10월 13일에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노동당의 모체가 되었다.³⁷⁾ 이 분국이 북조선공산당, 북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으로 탈바꿈하였다.

분국의 창설 초기만 하여도 서울의 조선공산당은 『당 중앙』으로서 인정되고 있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 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대상 정당, 사회단체의 자격문제에 관한 제5호 성명을 발표(1946년 4월 18일)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 북조선로동당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³⁸⁾

북조선로동당은 1948년 8월 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로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고,³⁹⁾ 이어 인민공화국 출범 이후인 1949년 6월 30일에 남북로동당은 1국 1당 원칙에 따라 조선로동당으로 통합된 것이다.

(2) 성격변화

(가) 이념과 목표

조선로동당은 창당 이래 성격상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의 성격변화는 그 이념과 목표 및 전통에 대한 정의, 조직의 운영과 당원 구성의 변화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37) 『조선중앙년감』 1945~'46(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8), p.715.

38)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196.

39)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228.

이념 및 목표의 변화과정

당 대 회	지 도 이 념	당 면 목 표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1946. 8)	마르크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북조선로동당 2차 대회(1948. 3)	마르크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남북로동당 합당대회(1949. 6)	마르크스·레닌주의	• 통일정부의 수립
조선로동당 3차 대회(1956. 4)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제도의 수립 (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 명(전한반도)
조선로동당 4차 대회(1961. 9)	마르크스·레닌주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 전통	•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 (대내)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 명(전한반도)
조선로동당 5차 대회(1970. 11)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제도의 승리 (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 명 수행(전한반도)
조선로동당 6차 대회(1980. 10)	김일성 주체사상	•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대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전한반도)

* 출처 : 박창옥, “북조선로동당 규약해설,” 『근로자』(평양 : 근로자사, 1949, 3호), pp.43~46;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평양 : 북조선 로동당출판사, 1946); 각 당대회 규약 참조.

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 수정을 거듭해 왔다. 1, 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은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 목표를 다만 통일정부의 수립에 두었다.

그러다가 1956년 4월, 3차 당대회 규약에서는 당의 이념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혁명전통을 접목시켰고, 당의 최종 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두었다.

1961년 9월, 4차 당대회 규약에서는 당이 이른바 “항일투쟁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였다. 1970년 11월, 5차 당대회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하였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이 유일한 당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최종 목표를 전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건설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내걸었다.

조선로동당은 당대회때 마다 당의 최종목표 뿐만 아니라 당면 목표에서도 대내외 환경 여건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나) 조직·운영

조선로동당 발족 초기에는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권한이 중요시 되어 당대회는 매년 1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3개월에 1회씩 열리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현재는 당대회를 5년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하도록 변경하였다.

1956년 3차 당대회부터 중앙위원회 보다는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의 당대표자회에서 비서국제가 신설됨에 따라 당의 운영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비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의 조직·운영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를 통한 당원의 합의보다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소수집단의 하향식 지시에 따르는 운

영체계로 바뀌어 왔다.

조직·운영체계의 변천과정

당대회	지도기관	당책임자	회의 개최기간
12차 대 회	당대회→당중앙위 원회→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장	•당대회 : 1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3개 월에 1회
합 당 대 회	당대회→당중앙위 원회→정치위원회 →조직위원회	전당위원장	•당대회 : 1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3개 월에 1회이상
3 차 대 회	당대회→당중앙위 원회→상임위원회 와 조직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대회 : 4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4개 월에 1회이상
4 차 대 회	당대회→당중앙위 원회→정치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대회 : 4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6개 월에 1회이상
5 차 대 회	당대회→당중앙위 원회→정치위원회 →총비서	중앙위원회 총비서	•당대회 : 4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6개 월에 1회
6 차 대 회	당대회→당중앙위 원회→정치국→상 무위원회→총비서	중앙위원회 총비서	•당대회 : 5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6개 월에 1회이상

*주 : 당 대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는 유보규정을 두고 있다.

(다) 당세와 당원 구성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창설초기에 4,530명의 당원을 가진 전위조직으로 출발하였다. 당원의 급속한 증가는 1946년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후 1952년 12월의 당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때에는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약 5만개의 세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⁴⁰⁾

이 같이 당원수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6·25동란중이었다. 이 기간중에는 출당과 전사등으로 당원의 많은 감소가 있었음에도,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당원숫자는 오히려 45만명이나 증가하였다. 이 당시에 당원의 약 40%가 신입당원일 정도로 대대적 당원의 증가 결과, 자연히 당원의 질적 저하 현상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신입당원의 반 이상이 문맹자로서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의 강화가 가장 큰 당면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원 구성의 변화

구분 시기	구 성 비 (%)						
	노동자	빈농	중농	부농	사무원	학생	상인,기업가, 자유업자,기타
1945. 10	30	34			36		
1946. 8	20	50.5	29.5				
1948. 3	20.2	52.8	27				
1950. 7	21.2	54.7	7.5	0.3	11.4	1.0	3.9
1952. 12	22.2	57.4	3.9	0.1	12.5	1.4	2.5
1956. 1	22.6	56.8	3.7		13		3.9
1961. 9	30	70					

* 출처 : 각 당대회시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 김일성 연설; 『조선중앙년감』

40) 『김일성 저작선집』 1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372.

당원 구성에 관해서는 1956년 1월 발표한 이래 이제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그것은 당원구성의 변화가 『로·농당』적 성격을 지향해 왔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1958년 사회주의 개조를 끝내고 북한이 주민 계층을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로 분류한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는 1961년 9월 1일, 당원수를 1,311,568명, 당세포수를 65,000개로 공식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당세에 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 참가한 당대표가 3,220명(결의권 대표 : 3,062명, 발의권 대표 : 158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당원수는 약 300만 정도로 추계된다. 이를 기준으로 1개 세포당 당원을 15명으로 잡는다면(당 규약상 5~30명) 약 20만개 정도의 당세포가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당원 증가 추세는 김정일의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한 『3대혁명소조원』 중심의 전후세대의 대거 입당,⁴¹⁾ 그리고 산업구조 및 업무의 복잡화로 당원의 비율 확대를 통해 각급 기관과 공장·기업소에 대한 당의 지도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연유된다 하겠다.

당원의 의무에 관해서는 4차 당대회부터 당원의 당생활, 당회의 참가, 토의 등 당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5차 당대회부터는 여기에 당학습까지 의무조항으로 추가하였다.

41) 『평양방송』(1990. 2. 13)은 소조원 17만여명중 2만여명이 당원이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원 증가 추세

시 기	당원수(명)	당세포수(명)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3차확대 집행위원회(1945. 12)	4,530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1946. 8)	366,000	12,000
북조선로동당 2차대회(1948. 3)	725,762	28,000
북조선로동당 중앙위 2기 5차전원 회의(1956. 4)	1,000,000	48,933
조선로동당 3차대회(1956. 4)	1,164,945	58,259
조선로동당 4차대회(1961. 9)	1,311,563	65,000
조선로동당 창건20주년(1965. 10) ¹⁾	1,600,000	
조선로동당 창건25주년(1970. 10) ²⁾	1,600,000	
1972. 8 ³⁾	2,000,000	
1978. 1 ⁴⁾	2,000,000	약 200,000
조선로동당 6차대회(1980. 10) ⁵⁾	약 3,000,000	약 200,000

* 출처 : 각 당대회 중앙위 사업보고서의 김일성 연설 ; 『조선중앙년감』

* 주 : 1) 『로동신문』, 1965. 10. 10.

2) 『로동신문』, 1970. 10. 10.

3) 『로동신문』, 1972. 8. 29.

4) 『로동신문』, 1978. 1. 29.

5) 당 제5기 19차 전원회의(1979. 12. 18) 당대표자 선출비용

(당원 1,000명당 결의권자 1명)을 근거로 작성한 추계치.

(3) 조직 및 운영체계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하에 모든 지역별, 부문별로 계층적 조직을 가진다. 그 조직원리는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을 선거하며, 상급당 조직은 하급당 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한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전당의 경우는 당대회이며, 도(직할시)·시(구역)·군당의 경우는 해당 당대표회이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의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대내에는 각급 단위 부대에 당조직을 가지며, 군대내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인민군당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조직된다. 군대내의 당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주둔 지역에 있는 각급 당위원회에 정치 및 군사 간부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요 정치, 경제, 군사기관에 직속으로 정치국을 두고 있다. 정치국(정치부)은 해당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전투단위로 정의되는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 5~30명 단위에 조직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세포의 상급조직으로는 초급당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 조직된다.

당원이 31명 이상이 되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는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중간에 부문(마을)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의 중간

형태로 분초급당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원 3명 미만의 단위에는 시·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여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당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가로 회의가 성립되며, 회의의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당정책의 결정은 형식상 이렇게 각급 당위원회의 회의 형식을 거쳐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교시 또는 명령에 의해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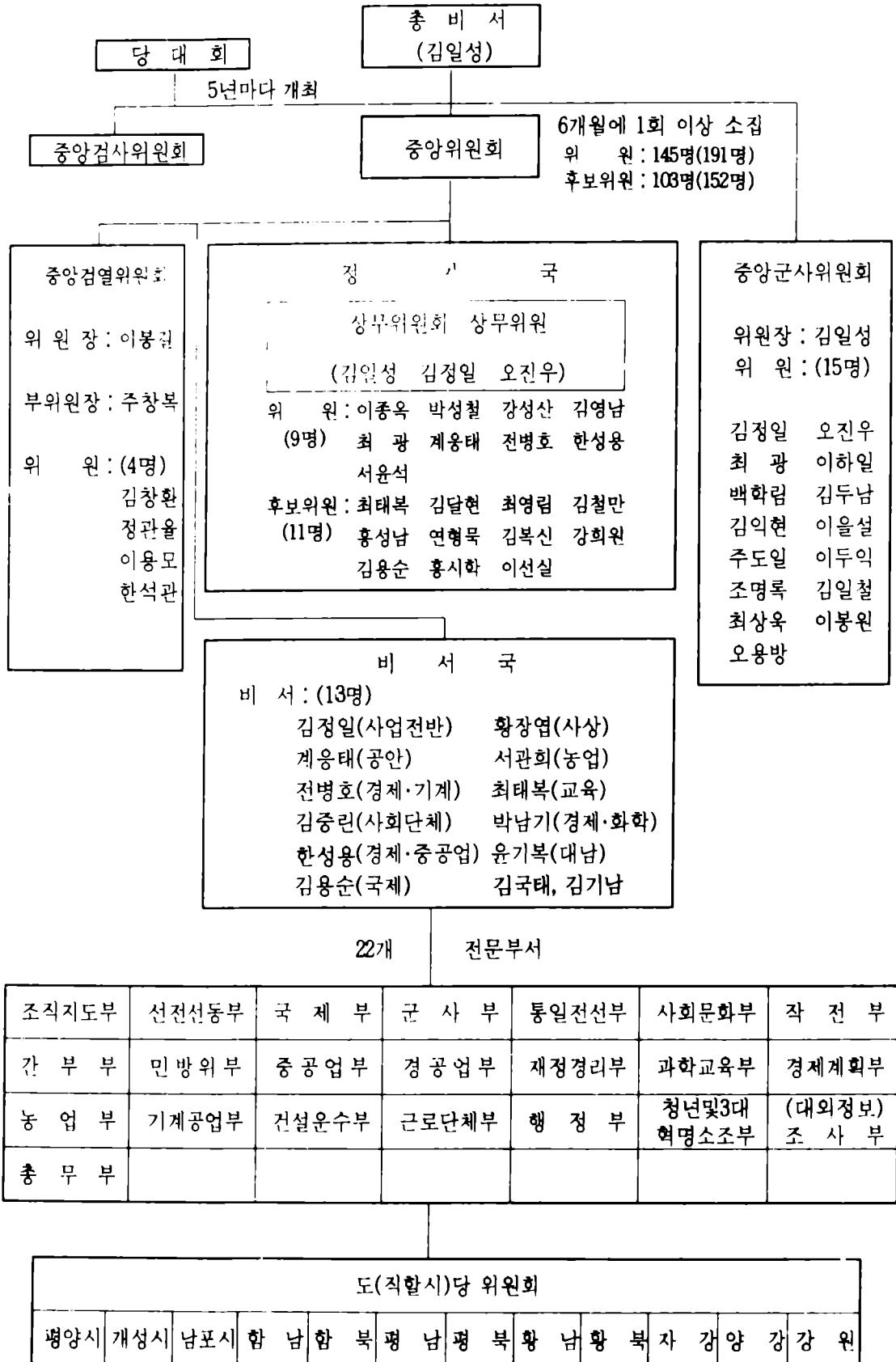
당회의에서 채택된 제반 정책은 비서국(지방은 비서처)에서 집행되고 있다. 중앙위원회의 비서국에는 10명 내외의 비서를 두고, 지방당위원회의 비서처에는 책임비서와 수명의 비서가 있다.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에는 비서와 부비서가 있다.

당간부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각급 당위원회는 간부 양성 및 재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당의 교육기관으로는 시(구역)·군당의 부장급 이상을 입교 대상으로 하는 김일성 고급당학교가 중앙에 있으며, 각 도에는 공산대학, 각군에는 군당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김일성 고급당학교에는 1개월~5년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다. 모든 당간부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각급 재교육기관에서 적어도 한달씩 교육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⁴²⁾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보도·출판 매체로 『로동신문사』와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있다. 이들은 당원들과 일반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당의 정책관철을 위해 주민들을 조직, 동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42) 『김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136~152.

조선로동당 기구표



(4) 중앙기관

(가) 당대회

당대회는 형식상으로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 규약에는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대회는 지금까지 6차례 개최되었으나 당 규약에 규정된 기간에 열린 일이 한번도 없었다.

당대회는 ① 당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 활동의 총화, ②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완, ③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결정, ④ 당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의 선거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당중앙위원회나 또는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당대회의 대표자 선거 절차와 선출 비율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대표는 차하급의 당조직인 도(직할시) 당대표회에서 선출한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6차 당대회 대표자선출 비율은 당원 1,000명에 결의권 대표자 1명, 후보당원 1,000명에 발언권 대표자 1명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또는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는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당대표자회가 소집된 예는 3차 당대회와 4차 당대회 사이인 1958년 3월과 4차 당대회와 5차 당대회 사이인 1966년 10월 등 두차례 있었다.

(나) 중앙위원회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관장

하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대회 개최현황

대회별	개최 일자	당원수	인구 대비	대의 원수	비 고
1차 당대회	1946. 8. 28~30	366,000 명	4%	881명	•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 당 합당문제 • 북조선로동당강령 및 규약
2차 당대회	1948. 3. 27~30	758,000 명	84%	999명	• 북조선로동당규약 개정
3차 당대회	1956. 4. 23~29	1,164,945 명	10%	916명	• 평화통일선언 채택
4차 당대회	1961. 9. 11~18	1,311,563 명	17.5%	1,657명	• 경제발전 7개년계획 채택 • 평화통일 선언 채택
5차 당대회	1970. 11. 2~13	1,600,000 명	11.4%	1,734명 ¹⁾	• 경제발전 6개년계획 채택
6차 당대회	1980. 10.10~14	3,000,000 명	12.2%	3,220명 ²⁾	• 김정일의 공식 등장 •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 망 목표 제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안

* 출처 : 당대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 주 : 1) 발언권만 갖는 대표 137명 포함

2) 발언권만 갖는 대표 158명 포함

중앙위원회는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은 결의권 없이 발언권만 가지며, 준후보위원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 당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과 지방의 당·정기관 및 경제기관 등의 책임자들이 참가하는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역대 당중앙위 전원회의 토의안건

(1992.12 현재)

기	개최회수	토의된안건						
		당내문제	대내정치문제	대남관계, 통일문제	대외관계	경제문제	군사문제	사회문제
1기('46. 8~'48. 3)	12	10	3	1		2		
2기('48. 3~'56. 4)	17	10	4	2	3	7	1	
3기('56. 4~'61. 9)	15	7	1		4	20		1
4기('61. 9~'70.11)	20	8	3	1	1	20	2	5
5기('70.11~'80. 9)	19	7	4	2	1	17		3
6기('80.10~)	20	12	4	1		19		2

* 출처 :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 주: 제6기 18차 전원회의(1990.5.23)에서는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국가 및 정부구성안 토의, 제6기 19차 전원회의(1991.12.24)에서는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안건 토의.

그간 전원회의에서 취급, 토의된 안건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5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5~7개년 계획 등의 중장기경제계획의 실시와 관련이 있다.

(다) 정치국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사실상의 최고 핵심부서이다.

정치국은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직후 개최된 제1기 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로 처음 조직되었다. 그후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로 일시 개칭되었다가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다시 정치위원회로 불려지면서 정치위원회 내에 상무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5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는 폐지되었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개칭하고, 정치국 내에 상무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였다.

(라) 비서국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인사문제, 당내문제, 기타 당면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의 집행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서국은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당의 중추기관으로서 정치체계 전반에 걸쳐 당의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비서국은 1966년 10월 당 제4기 14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설치되었다.

(마)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조직 선체를 지도·지휘하는 군사부문의 최고 당 정책 결정기구다. 이 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을 토의 결정하며, 군수산업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에 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62년 12월 제4기 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후부터이며 1984년부터는 중앙군사위원회로 불리고 있다.

(바) 중앙검열위원회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하거나 당의 노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당의 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창당대회 규약에는 검열위원회를 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차 당대회부터는 중앙위원회 지도하에 사업하고, 그 구성원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검열위원회를 중앙위원회에 설치한 이유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사) 중앙검사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거하여 구성되며, 당의 재정 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5) 지방조직

도(직할시)당과 시(구역)·군당 등 각급 지방당 조직체계는 당 중앙지도기관의 조직 원칙에 준하여 구성된다.

지방당 대표회는 해당 지방당 조직의 최고지도기관으로 3년에 1회 소집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당 대표회에서는 해당 지방 당위원회와 검사위원회 및 상급 당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선거하고 당해 지방당 위원회와 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도록 되어 있다.

각급 지방당 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책임비서와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와 군사위원회 및 검열위원회를 조직한다.

각급 지방당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하며 해당 당 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위원회 명의로 당내 사업을 결정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지방당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 규약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의 조직·지도
- ②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 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노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주위에 결속
- ③ 근로대중들이 자기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④ 노동적위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의 강화를 통한 전투태세의 완비와 군사동원사업 보장

도(직할시)당위원회는 하급당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의 향상을 위해 그들을 지도한다.

(6) 당의 외곽단체

북한 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바 조선로동당의 우당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⁴³⁾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천도교청우당이 있다. 이들은 실제적인 정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 비난 성명 발표시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제의시 나타나는 이름 뿐인 정당이다.

북한이 발표하는 각종 성명에는 이러한 명의만 있는 정당외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

그 중에는 근로단체로 불리는 대규모 조직을 가진 단체들도 있다. 이런 근로대중의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3) 조선민주당은 1981년 1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당명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하였다.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과 같은 위장 평화통일 단체를 비롯하여 조국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가 있다. 종교단체로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그나마 이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있다.

근로 대중단체의 현황

단 체	창 립 일	맹 원 수
직 업 총 동 맹	1945.11.30	약 160만
농 업 근 로 자 동 맹	1965. 3.27	약 130만
사 회 주 의 로 동 청 년 동 맹	1946. 1.17	약 380만
민 주 녀 성 동 맹	1945.11.18	약 20만

* 출처 :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88), pp.106~107.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통일노선(혁명노선) 선전과 반한·반미 선동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들이다.

다. 정권기관

(1) 정권의 성립

오늘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1948년 9월 9일을 정권수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방직후부터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다.

그 첫 작업은 1945년 8월 27일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의 조직을 비롯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의 조직이었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의 주재로 평양에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소집되고, 이어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정식 발족되었다.⁴⁴⁾

이듬해인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인민위원회대표 확대협의회』에서는 북한 주둔 소련군의 양해 밑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지역의 중앙행정기관이었으나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자성이 없었다.

1946년 11월 3일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3,459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북한은 당시 총유권자 4,516,120명의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47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도·시·군 인민위원회 및 각 정당·단체 대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

44) 이 회의는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대장(제25군사령관)의 참석하에 진행되었다. 『조선의 해방』(모스크바: 소련 과학아카데미, 1976) 참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선출된 대의원 237명으로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북조선 인민회의는 2월 21~22일 이틀간 제1차 회의를 열고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 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2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정당별 구성은 북조선로동당이 16명, 조선민주당이 2명, 천도교청우당이 2명, 무소속이 2명이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탄생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⁵⁾ 이 인민위원회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 총회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하자 인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게 되었다.

1947년 11월 18~19일에는 북조선 인민회의 3차 회의가 개최되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어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확정하였다.

이듬해 1948년 2월 6일부터 개최된 북조선 인민회의 4차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인민토의에 회부하고, 또한 이를 심의하기 위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를 다시 소집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28일에는 인민회의 특별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이른바 2개월간에 걸친 인민토의의 결과로 나온 헌법 수정 초안을 축조심의회하여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이어 7월 9~10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5차회의가 소집되어 인민공화국헌법의 실시를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실시

45)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201.

문제를 북조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1948년 8월 25일 북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북한은 등록된 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여 이중 98.49%의 찬성율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소위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는 조작발표도 하였다.

곧 이어 9월 2일~10일까지 9일간 평양에서는 5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개최하였다.⁴⁶⁾ 여기에서 인민공화국헌법을 심의 채택한데 이어,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출범시켰다.⁴⁷⁾

(2) 사회주의헌법 채택

북한은 1948년 인민공화국헌법(11장, 104조)을 채택한 이래 다섯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해 오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인민민주주의헌법을 폐기하고 전문 11장 149조로 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46)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중요문헌집』(평양, 1948), pp.283~287.

이 회의에는 남한의 유권자 99.97%가 참가한 서명투표로 구성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한 360명(이름을 밝히지 않은 66명 포함)도 참석하였다고 조작 발표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49), pp.14~17.

47) 북한은 1946년 11월 북한 전역에서 인민위원선거를 실시한 후, 이듬해인 1947년 2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 이후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것처럼 대내외 선전을 하고 있다.

이 사회주의헌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기관 체계를 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사회주의헌법과 구헌법간의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는 국가기관 체계이다. 이 헌법에서는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내각을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바꾸었다.

지방정권기관으로 각급 행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주권의 지도기관과 행정적 집행기관의 이원적 체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1년 9월 도(직할시) 경제지도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각급 행정위원회는 폐지되었으나, 1985년 5월 다시 도(직할시), 시(구역)·군 행정 및 경제위원회로 개편하였고 최근에는 행정경제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는 등 내외정세가 크게 변화하자 1992년 4월 9일 제9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71조의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개정헌법은 이념과 지도노선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각하는 한편, 사회주의 혁명적 정권의 기본노선을 계속 견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 군의 사명을 사회주의제도의 보위에 두고, 4대 군사노선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위한 군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였으며,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당 우위노선을 재확인하였다.

권력구조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

부터 분리하고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 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사정책 수행의 일원화와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축소한 반면에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요 기관의 임기도 5년으로 단일화 연장하였는데 종전에 4년 이던 주석,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의 임기를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국방위원회, 정무원,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 등은 5년 임기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도 2년에서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같이 4년으로 연장하였다.

새 헌법은 통일과 대남분야에서 그동안 대남적화전락 조항이라고 문제시되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계급노선을 관철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는”, “조선인민 전체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사회주의국가” 등을 표방, 기존 노선을 견지한 가운데 “당의 국가 영도”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대남전략에 본질적 변화는 없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보장 관련 조항과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장려 조항 등을 신설하여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외관계면에서도 종전에는 기본원칙을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의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에 두었던 것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로 변경하고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추진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다.

이번 개정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등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이원체제를 제

도화함으로써 현존 김부자체제 유지와 김정일 권력승계 기반을 공고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외관계 정책을 보다 유연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제분야의 제한된 개방정책 추진과 과학기술 육성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신헌법은 주체사상의 지도지침화, 사회주의노선 견지, 인민민주주의 독재, 북한정권의 유일합법성 및 혁명성 강조 등 기존노선을 계속 견지한 채 김정일 권력승계의 안정기반 강화, 생존차원의 제한된 개방정책추진 토대 마련, 시대적 상황변화를 감안한 법적 정비 등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3) 정권기관의 조직·기능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는 모든 정권기관의 조직 및 운영은 이른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입각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사실상 이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선거절차와 상명하복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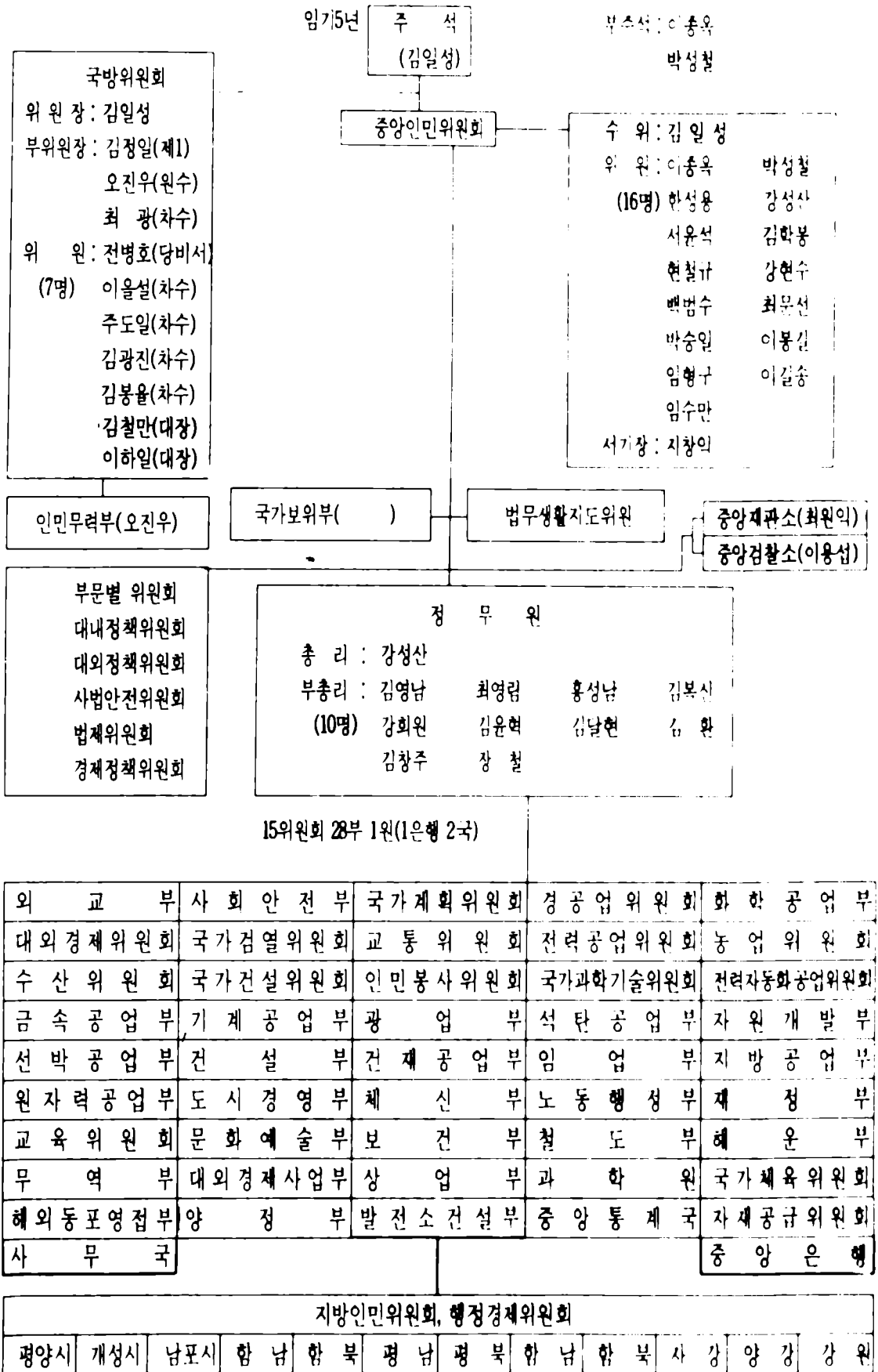
정권기관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주권기관과 행정적 집행기관, 그리고 그 활동의 지역적 관할 범위에 따라 중앙정권기관과 지방정권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가) 주 석

주석은 5년 임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연임금지 조항은 없다.

헌법상 주석의 지위는 ①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주권을 대표, ②

행정기구표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 등으로서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절대 권력자의 지위에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주석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
- ② 정무원회의의 소집·지도
- ③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및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의 중요 정령·결정의 공포와 주석 명령의 발표
- ④ 특사권의 행사
- ⑤ 조약 비준·폐기의 공포
- ⑥ 외국 사신의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
- ⑦ 최고인민회의에 부주석, 정무원 총리의 선거 및 소환 제의
- ⑧ 최고인민회의에 의안 제출
- ⑨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의 사업감독

북한 헌법에는 주석의 사업을 돕는 부주석을 두도록 되어 있다. 부주석은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현재는 2명이 있다.

신헌법에서는 주석의 권한 가운데 일체의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삭제하고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공포권으로 대체하였다.

(나)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을 갖는 형식적인 추인기관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

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회기는 통상 2~3일이며 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신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

- ① 헌법 및 법령의 채택·수정
- ② 휴회중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률의 승인
- ③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④ 주석의 선거 및 소환
- ⑤ 주석의 제의에 의거하여 부주석, 정무원 총리의 선거 및 소환
- ⑥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⑦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⑧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의 선거 및 소환
- ⑩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해임
- ⑪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 ⑫ 국가예산의 승인
- ⑬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의 결정
- ⑭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의 법령과 결정은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나, 헌법의 채택, 수정에는 전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책과 법안의 작성·심의 및 집행대책 수립을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 5개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휴회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설기관으로 의장,

역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기별	선거일	대의원 수	투표율/ 찬성률	재임 기간	제1차회의 토의사항 등
1	1948. & 25	572	99.97/ 98.49	9년	○흑백함 투표 실시(제1기-2기) ○인민공화국 헌법 승인 ○인구 5만명당 1인 선출 ○13차 회의 개최
2	1957. & 27	215	99.99/ 99.92	5년 1개월	○제1차 5개년 경제계획 시행(1957.6) ○11차 회의 개최
3	1962. 10. 8	383	100/100	5년 2개월	○단일함투표 실시(제3기-9기) ○인구3만명당 1인 선출(제3기-9기) ○7차회의 개최
4	1967. 11. 25	457	100/100	5년	○8개항 통일방안 제안 ○6차회의 개최
5	1972. 12. 12	541	100/100	5년	○사회주의 헌법개정(주석선출) ○7차회의 개최
6	1977. 11. 11	579	100/100	4년 4개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시정연설) ○5차회의 개최
7	1982. 2. 28	615	100/100	4년 9개월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결정” 채택(3차회의) ○5차회의 개최
8	1986. 11. 2	655	100/100	3년 5개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시정연설) ○5차회의 개최
9	1990. 4. 22	687	99.78/ 100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시정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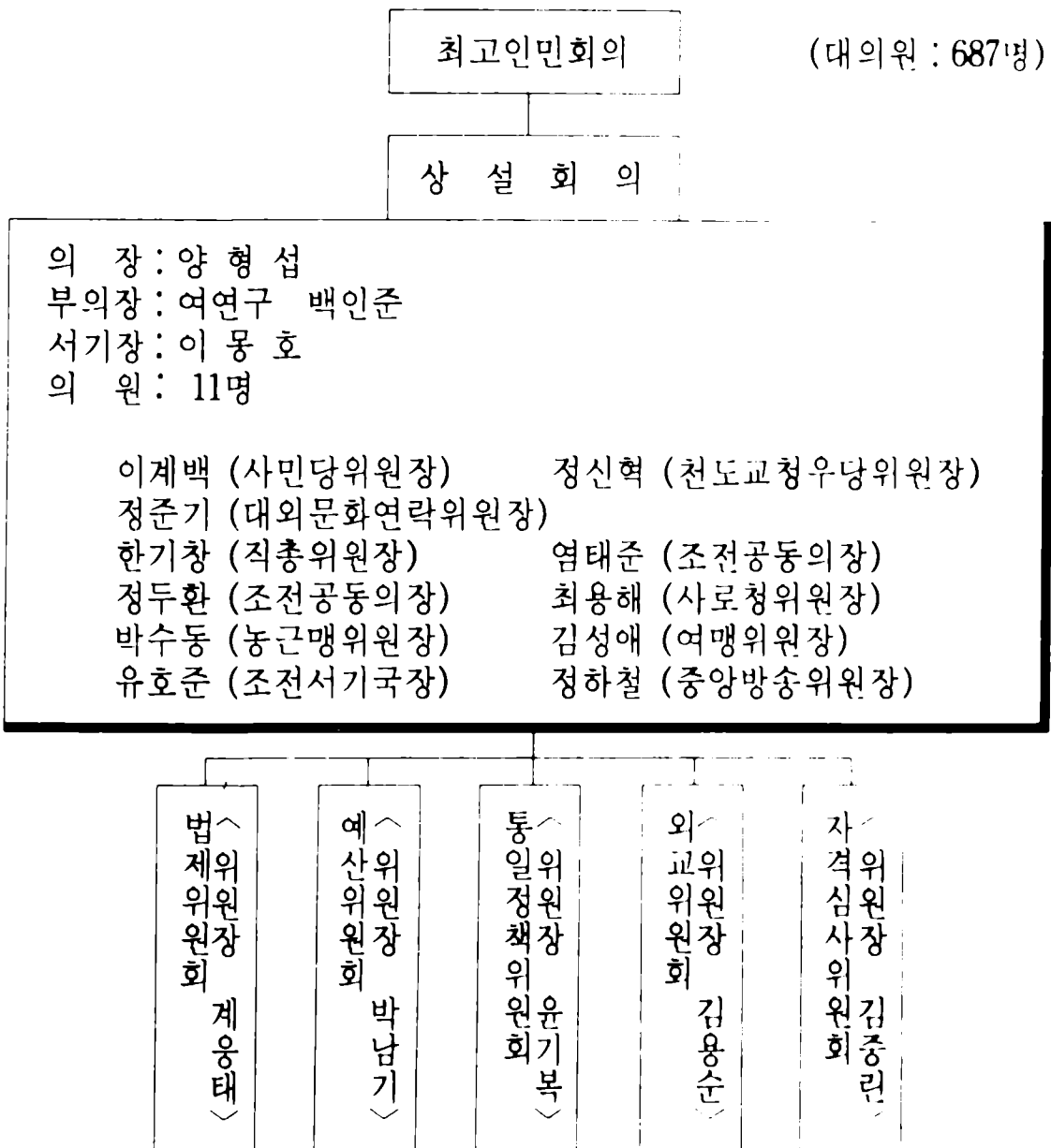
* 주1) : 재임기간은 최고인민회의의 각기별 제1차회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2) : 북한의 최초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으나 1972년의 헌법에서는 4년으로, 신헌법에서는 5년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부의장(2명), 의원(11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제9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는 종래와 달리 사회민주당 위원장과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을 상설회의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하는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 기구표



- ①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의 심의·결정
- ②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현행법령의 수정·해석
- ③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소환
- ④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 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 실시
- ⑥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 실시
- ⑦ 다른 나라 국회, 국제기구들과의 사업

역대 최고인민회의의 개최현황

(1992. 12 현재)

기 별	재임기간	회의소집회수	회의개최일수
1기	9년	13	55
2기	5년 1개월	11	32
3기	5년 2개월	7	22
4기	5년	6	18
5기	5년	7	30
6기	4년 4개월	5	15
7기	4년 9개월	5	12
8기	3년 5개월	5	11
9기		4	9

* 출처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다)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위원장, 제1부 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①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 ②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 ③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 ④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이 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기구였으나 1990년의 제9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시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의 개정헌법에서 독립기구로 명시되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종전 헌법상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일체의 군사 관련 기능과 권한을 이양받았다.

(라) 중앙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형식상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수위』인 주석의 직접 지휘, 감독, 통제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분야별 위원회로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의 대부분이 당의 정치국위원이나 비서, 정무원의 총리나 부총리같은 당·정의 고위 간부를 겸하고 있어서 당·정 협의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9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성된 중앙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당 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 전원이 중앙인민위원으로 선임된 점이 특징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의 입법 기능 외에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 ①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 ② 정무원, 지방인민회의 및 지방인민위원회 사업의 지도

- ③ 사법·검찰기관의 지도
- ④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지도
- ⑤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주석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의 집행상황 감독 및 그에 위반된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폐기
- ⑥ 정무원의 위원회, 부 설치 및 폐지
- ⑦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및 기타 정무원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⑧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⑨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⑩ 외교대표의 임명 및 소환 결정
- ⑪ 훈장·명예칭호·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의 제정, 훈장·명예 칭호 수여
- ⑫ 대사실시
- ⑬ 행정구역의 개편

(마) 정무원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하는 부총리, 부장(위원장)들과 그밖의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정무원은 사업 집행을 위해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으며,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①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의 지도

- ② 정무원 직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
- ③ 국가의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집행대책 수립
- ④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⑤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조직지도
- ⑥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 ⑦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의 수행
- ⑧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수립
- ⑨ 정무원의 결정·지시에 위배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과 지시의 폐기

역대 정무원(내각)의 구성

기 별	총 리 (수상)	부총리 (부수상)	부장(상) 및 원장	위원장	사무장
1기(1948. 9)	1	3	17	1	
2기(1957. 9)	1	6	24	2	
3기(1962.10)	1	8	22	5	
4기(1967.12)	1	8	30	6	
5기(1972.12)	1	6	15	7	
6기(1977.12)	1	6	21	7	1
7기(1982. 4)	1	13	17	14	
8기(1986.12)	1	10	11	15	
9기(1990. 5)	1	10 ¹⁾	26 ²⁾	15	1

* 출처 :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주 : 5기(1972.12) 이전은 수상, 부수상, 상의 숫자

1) 1992년 12월 현재 부총리 수는 10명

2) 25부 1원

1982년 4월 5일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는 인민 무력부와 사회안전부 등 정권보위기관을 정무원에서 분리, 개편하였다. 그러나 1986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는 사회안전부를 정무원의 기구로 다시 환원시키는 한편, 중앙자재총연합상사와 체육지도위원회, 중앙은행, 중앙통계국 등을 정무원 기구로 편입시켰다. 그 후에도 주로 경제관계 부서들을 통폐합, 분리, 신설하는 등 정무원의 부(위원회)의 개편을 되풀이하여 왔다.

1990년 5월 24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정무원은 14위원회, 25부, 1원, 2국, 1은행으로 조직되었다. 그 특징은 종래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가검열위원회를 정무원 기구로 편입시키고, 해운부를 부활시킨 대신 합영공업부를 합영총국으로 축소하여 대외경제사업부에 통합시킨 점이며, 최근에는 중앙자재총연합상사를 자재공급위원회로 개칭하고 양정부, 발전소건설부, 해외동포영점부 등을 신설, 15위원회, 28부, 1원, 2국, 1은행이 되었다.

(바) 지방정권기관

지방정권기관으로는 각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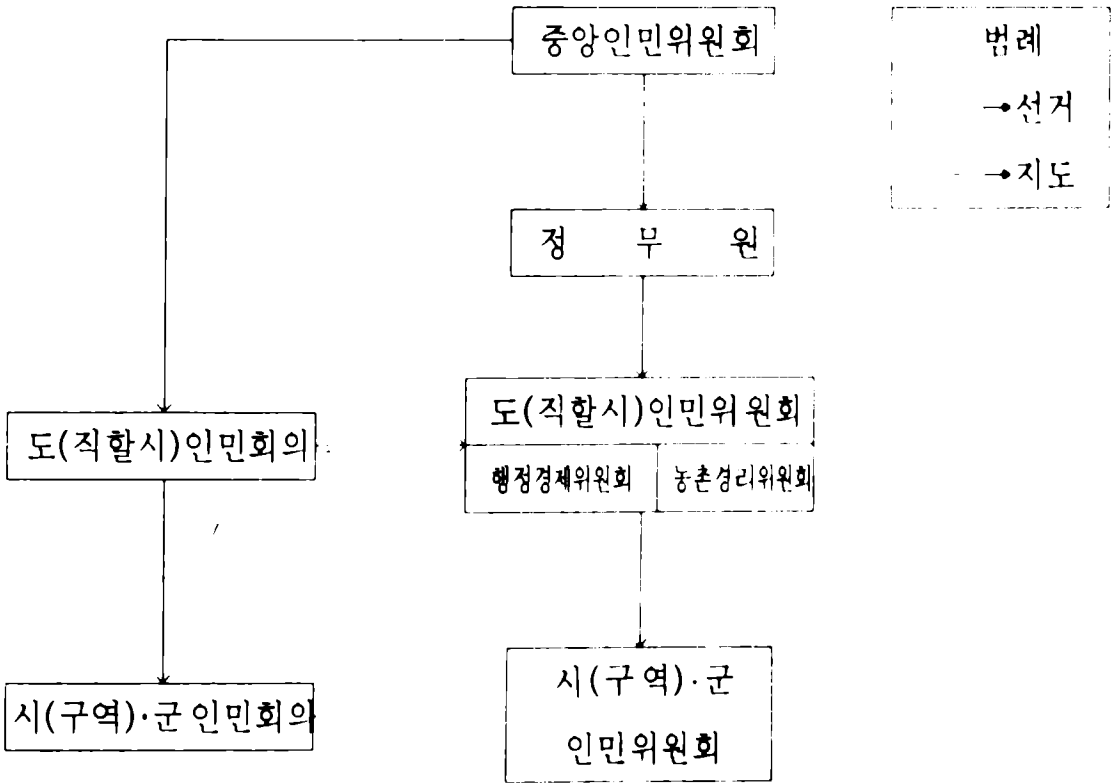
1954년 10월 30일에 채택된 지방주권기관 구성법에 따라 각급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그리고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으로 기능을 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행정적 집행기관인 각급 지방행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졌다.

그러다 1981년 9월 도(직할시) 경제위원회의 신설과 더불어 지

방행정위원회를 폐지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기능외에도 집행기관적 성격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그후, 1985년 5월에 도(직할시) 경제지도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다시 개편하여, 인민위원회의 행정집행 기능은 신설된 행정경제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겸하게 되었다.

각급 인민회의는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외에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행정경제위원장, 재판소 판사, 인민 참심원을 선거·소환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정권기관 조직체계



* 주 : 시(구역)·군에도 행정경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역대 지방인민회의 선거

선 거 일	대 의 원 수			
	도·직할시	시·구역·군	리·읍·노동자구 ¹⁾	면 ²⁾
1949. 3.30	689	5,164		
1949.11.24~25				13,354
1949.12. 3			56,112	
1956.11.20 ³⁾			54,279	
1956.11.27	1,009	9,346		
1959. 2.28		9,759	53,882	
1963.12. 3	2,517	14,303	70,250	
1967.11.30	3,305	18,673	84,541	
1972.12.12	3,185	24,784		
1975. 2.27		23,833		
1977. 3. 4	3,244	24,268		
1979. 3.11		24,247		
1981. 3. 5	3,705	24,191		
1983. 3		24,562		
1985. 2.24		28,973 ⁴⁾		
1987.11.15		26,539		
1989.11.19		29,535 ⁴⁾		
1991.11.24		26,074		

* 출처 :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주 : 1)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선거 폐지.

2) 1952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면을 폐지.

3) 1954년 10월 30일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채택 이후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로 개칭.

4) 1985년과 1989년의 대의원수에는 도(직할시)대의원수 포함.

지방인민회의는 위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1~2회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각급 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여기에서 채택된 제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인민회의 소집과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실시, 하급 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당해 지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의 사업을 감독·통제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각급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시행한다.

(사) 사법 및 검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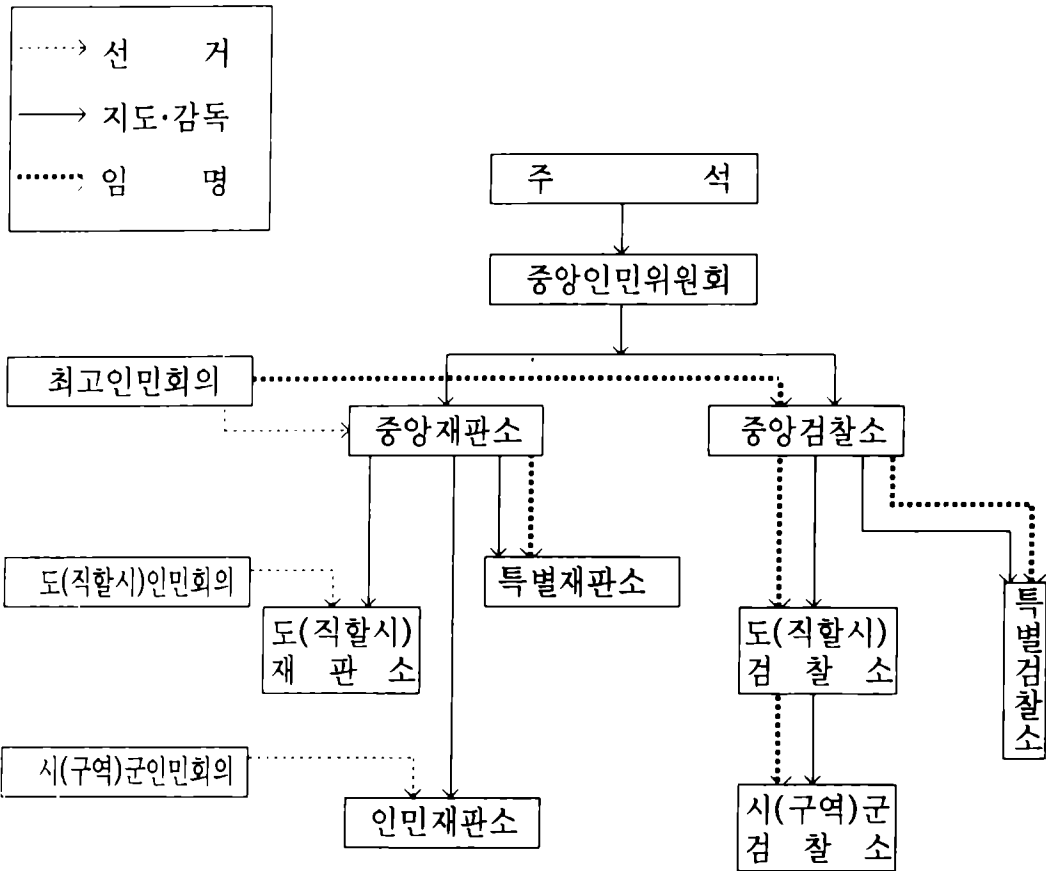
사법기관 체계는 중앙에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에는 도재판소, 시(구역)·군에는 2~3개 시·군을 단위로 인민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군사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다.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5년이다. 각급 재판소는 해당 지방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되는 판사 및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소만은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는 판사와 해당 군무자회의 등에서 선출되는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재판은 3급 2심제를 원칙으로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나 통상 단심으로 끝난다. 모든 재판업무는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중앙재판소의 감독하에 수행되므로 재판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검찰기관도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로 이루어져서 사법기관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검찰

사법·검찰조직 체계



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검사의 경우는 판사와는 달리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을 한다. 검찰업무 또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 하에 이루어지며,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복종해야 하는 중앙집권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법 및 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정의되며 사회주의헌법에는 그 임무로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투쟁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는 사법·검찰기관 외에 1970년대초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사회에 대한 법적통제와 준법 교양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설

치되었다.⁴⁸⁾

각급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각급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사회안전부장, 인민위원회 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해당 지역의 지도간부급 5~6명으로 구성되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지닌 협의체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 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책벌방침 결정
- ② 김일성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규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4) 특수기능 조직

북한에는 당규약이나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다. 이러한 특수조직들은 1970년대 초반 김일성 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체계의 확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오늘날 주요한 주민통제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국가보위부

국가보위부는 1973년 당시 정무원 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중 정치보위부문만을 독립시켜 신설한 기구다. 이 기구는 1982년 4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 인민무력부 및

48)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 김일성 연설(1977.12)

사회안전부와 함께 정무원에서 분리되면서 그 명칭도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

이 기관은 사회안전부와 더불어 김일성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감시기관으로서 정치사찰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조직체계는 중앙으로부터 도(직할시), 시(구역)·군은 물론 인민군과 같은 특수기관에까지 일원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매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기관의 구성을 발표하는데, 국가보위부만을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 구성의 변동은 일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1982년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 1차회의시에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체계에서 떨어져 나가 김일성의 직접 관장하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나) 3대혁명소조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3대혁명을 규정한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1973년 3월 당정치위원회 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3대혁명소조를 발기하여 각급 생산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⁴⁹⁾

소조는 당원, 국가·경제기관종사원, 대학생, 대학교원, 공장기업소의 기술자, 과학자 등의 미혼 남녀로 구성되며 단위 소조는 지도 대상에 따라 20~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소조원의 총수는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⁰⁾

이들은 김정일의 직접 지도 밑에 경제기관뿐 아니라 행정기관,

49) 김창성, 『3대혁명 소조운동과 그 생활력』(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83.

50) 1983년 현재 소조원 총수는 4만6천명에 달하며, 이 소조원 출신을 모두 11만이라고 3대혁명소조원대회(1983.9)의 보고에 나타나고 있다.

문화기관, 각급 학교 등에 까지 파견되어 기존의 당조직과 더불어 3대혁명을 지도하고 있다. 사상혁명소조는 주체사상의 보급과 이행을, 기술혁명소조는 기술적 낙후성 분석과 새기술 혁신의 지도를, 그리고 문화혁명소조는 문화생활면의 낙후성 개선을 그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조운동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하는 혁명적 지도방법”으로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나가는 형식의 혁명적 지도방법”이라 한다.

소조운동은 표면적으로 『당중앙』의 친위대·근위대로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오래된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 등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⁵¹⁾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일성부자 세습체제 구축과 관련한 체제 개편 작업에 목적이 있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소조원 중심의 전후세대가 대거 입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1) 손병천, “3대혁명 소조원들은 당의 로선관철에 끊임없이 충성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근로자』(평양: 근로자사, 1977.11호), p.20.

3. 정치권력

가. 김일성체제 강화

(1) 권력투쟁

북한 정치사는 한마디로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숙청사였다.

북한의 지도층은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운동 또는 항일투쟁 경력, 지역적 출신 등을 달리하는 파벌들간의 연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던 파벌로는 김일성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지하공산당 운동을 했던 국내파,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귀국한 중국파, 소련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북한에 보내진 소련파가 있었다.

김일성(본명 김성주)은 사실상 국내에 전혀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북한 주둔 소련군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였다.⁵²⁾ 그는 당시에 소련 점령군이 북한을 소비에트화하는데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반대파 또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을 벌려 왔다. 그 첫 회

52)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1차 확대회의(1945. 10. 13)에서는 김용범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으며, 같은해 12월 17일에 개최된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 회의에서 비로소 김일성이 책임비서로 되었다.

생자는 국내파 인물들로서, 김일성은 이들을 처음부터 좌경적 오류, 종파주의자, 영웅주의자로 비판하였다.⁵³⁾

권력투쟁은 6·25 동란 휴전 직후에 벌어진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에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중국파, 소련파에 대한 숙청과 1960년 후반의 갑산파와 군부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초반에도 부자 세습체제에 장애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남로당에 대한 숙청은 실패로 끝난 6·25 남침 전쟁의 수습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써, 김일성은 남침의 실패로 인해 조성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남로당 계열을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김일성은 195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2기 5차 전원회의를 시발로 1955년 12월까지 남로당계의 지도급 인물들인 박헌영, 이승엽, 배철, 김남천, 임화 등을 미제의 고용간첩이라는 죄목을 붙여 일대 숙청을 단행한 것이다.⁵⁴⁾ 이후 계속된 남로당계 잔당에 대한 숙청을 벌리며 김일성은 또다시 중국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공산권내에서 개인 숭배 반대와 스탈린 격하운동의 여파로 북한에서도 반김일성 운동이 고조됨과 동시에 군수공업을 위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김일성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

53) 김일성,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pp.105~212.

54)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평양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1956), pp.150~160.

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파와 소련파에 의해 절정에 달했던 반김일성운동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소대립이라는 대외환경을 최대한 이용했던 김일성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때에 김일성은 김두봉, 최창익, 박창옥, 장시우 등 중국파와 소련파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김일성은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하여 반대파 거물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일단락 짓는 한편, 전국적으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대파의 기반을 일소하는 등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자파내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숙청에 착수하였다. 1967년 3월, 당 중앙위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박금철과 이효순 등 자파내의 갑산계 당료들을 반당·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한데 이어, 1969년 1월에는 인민군당 제4기 4차회의를 개최하여 민족보위상 김창봉,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을 유일사상 체계 문란 등의 이유로 숙청한 것이다.⁵⁵⁾

1970년 11월에 개최된 5차 당대회 이후부터 북한의 지도층은 완전히 김일성 일파로 일색화되었다. 그러나 1973년 9월 김정일의 등장을 계기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를 비롯하여 김동규, 이용무, 류장식 등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당료와 군부에 대한 숙청을 또다시 전개했다.

이러한 숙청은 김정일의 권력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하겠다.

55) 『로동신문』 사설(1969.5.17)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적 사업 기풍을 세우자” 참조.

(2) 김일성 숭배운동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운동의 실태는 개인에 대한 영웅화의 단계를 넘어서 신격화에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그에 반대하는 주요 세력들을 제거하고 1인독재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1958년 이후다.

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은 과장된 찬양과 상징조작, 날조된 과거행적의 선전, 사상교육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그에 대한 이상화 초기에는 그의 이름앞에 붙는 경칭과 찬양의 수사가 무려 180여자에 달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을 호칭할 때에는 그 이름앞에 최상의 수식어, 최상의 경어가 붙는다. 그의 이름에 새로운 수식어나 경어를 붙여가며 인간의 위치에서 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다. 예컨대, 『아버이 수령』에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까지 그를 호칭하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 항일독립운동사는 완전히 김일성의 날조된 혁명투쟁사로, 그 일가의 족벌사로 개작되었다. 북한의 신문, 잡지와 각급 학교 교과서, 학술서적 등 모든 출판물들은 반드시 김일성 교시로부터 시작하여 내용이 서술되며, 출판물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날조된 행적들을 수록한 개인 숭배를 위한 선전책자에 불과하다. 북한의 헌법, 노동법, 토지법, 교육 『테제』 등 모든 법령 등은 김일성의 저작품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그를 항일혁명투사, 조선의 해방자로서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는 조작된 전투 기록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학습의 기본교재로

써 성전처럼 되어 있다.⁵⁶⁾

이 회상기에는 김일성이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며 가랑잎으로 큰 강을 건너갔다.”거나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전설적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책자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는 김일성의 부대가 15년간 10만여회의 전투를 통해 한번도 패배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김일성이 하루 평균 20여회의 전투를 한 셈이된다.

그러함에도 북한의 선전물들은 어느 어부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책을 읽었더니 삼시간에 파도가 조용해졌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천재적 이론가로 칭송된다.

모든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일하는 것이 모두 『수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토록 강요하고 있다. 각 가정의 안방에는 반드시 그의 사진을 걸고 신주모시듯이 해야하고 전국 각지에는 3만 5천개가 넘는 그의 동상을 세워놓고 전 주민이 참배토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은 그의 가계와 혈통에 대한 우상화로 확대되어 직계 선조, 외가친척, 전처의 행적을 과장 날조하여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활동하였다는 장소는 혁명유적지, 사적지로, 그리고 혁명열사릉이란 무덤까지 꾸며놓은 실

56)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박성철, 김동규, 최현, 임춘추 등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하였다는 94명이 각각 집필한 것을 한 데 모았다는 책자로서 총 12권(3222면)으로 되어 있으며 1959년 5월 조선로동당 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하였다.

정이다.

북한은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에게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상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나. 지도층의 변화

(1) 지도층의 인물교체

북한의 지도층은 1인독재권력을 떠받치는 특권집단이란 특성을 갖고 있어 경직된 소수집단을 이루고 있다.

북한 정치지도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정치국위원(후보위원 포함)과 비서를 역임한 인물은 1946년 1차 당대회부터 1992년 8월까지 46년간 82명,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던 인물은 355명이다. 정권기관의 경우도 이 기간에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총리(수상), 부총리(부수상)를 역임한 인물은 54명, 부장(상)·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20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북한 지도층들이 거의 모두 당과 정권기관의 요직을 겸직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한을 통치해 온 정치지도층의 변화는 실제로 300명 내외의 소수 내에서의 교체에 불과한 것이다.

역대 당정치위원회(국) 위원 및 비서 변화

당 대 회	위원및비서		연임	후보 에서 승진	신임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1 차	정	5									
2 차	정	8	5		3	5					
3 차	정	11	3		8		3				
	후보	4			4						
4 차	정	11	10	1		9		1			
	후보	4			4						
2 차 대표자회	정	15	9	1	5	1	7		1		
	후보	12	3		9	1	2				
	비서	11									
5 차	정	11	5	3	3	2		2		1	
	후보	4	1		3		1				
	비서	10	4		6	4					
6 차	정	19	8	1 ¹⁾	10	3	3 ²⁾		1		1
	후보	15	1		14	1 ³⁾		1			
	비서	10	2		8	1	1				

* 출처 : 각 당대회시 발표 명단을 근거로 작성.

* 주 : 재선, 연임 등의 구분은 당대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선출된 것은 고려하지 않았음.

- 1) 2차 당대표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임.
- 2) 4차대회와 2차 대표자회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 포함.
- 3) 2차 대표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임.

역대 당중앙위원회 위원변화

당대회	중앙위원회		연임	후보에 서승진	신임	2선	3선	4선	5선	6선
1차	위원	43								
	후보 위원	-								
2차	위원	67	29		38	29				
	후보 위원	20			20					
3차	위원	71	29	5	35	19 ¹⁾	12			
	후보 위원	45	3		42	3				
4차	위원	85	27	11	47	15	7	5		
	후보 위원	50	1		49		1			
5차	위원	117	29	15	72	19	8 ²⁾	1	2	
	후보 위원	55	6		49	6				
6차	위원	145	73	11	61	54 ³⁾	12	5 ⁴⁾		2
	후보 위원	103	16	6 ⁵⁾	81	16 ⁶⁾				

* 출처 : 각 당대회시 발표명단 기준. 6차대회 연임에는 4차대회 등에서 선출되었다 5차대회에서 탈락한 인물도 포함(정위원 3명, 후보위원 1명).

- * 주 : 1) 1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2차 대회에서는 탈락되었던 2명 포함.
 2) 2차, 3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4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 포함.
 3) 3차, 4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2명 포함.
 4) 1차, 2차, 3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4차,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 포함.
 5) 4차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3명과 5차대회에서 중앙위원이었던 2명 포함.
 6) 3차대회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 포함.

그러나 이와 같은 소수의 경직된 집단내에서의 상호 교체의 빈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중앙위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포함)은 27%, 비서는 58%가 교체되었으며, 정권기관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1990. 5)시에 비해 구성원의 30%가 교체되었다.

(2) 정치권력의 승계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대를 이은 혁명』과 『혁명위업의 계승』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연히 김일성 후계체제의 준비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북한에서 후계문제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11월의 당 5차대회 이후로 이는 혁명 1세대의 연로화에 따른 필연적인 전후세대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해방후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혁명계승론의 입장을 밝혔다.⁵⁷⁾

당의 기관지인 근로자 1971년 7월호에는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은 아들이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요지의 논설을 게재하여 후계세습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후계세습 필연성 주장은 김일성없는 『김일성주의』의 유지, 김일성 사후에 김일성 격하운동의 미연방지, 김일성 생전과 같이 사후에도 동질적인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김일성 개인의 정치적 욕구

57) 『조선중앙년감』, 1972, p285.

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한 시점은 1973년 9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로 선출되면서부터라고 알려졌다. 곧이어 1974년 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 정치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후계자 지위가 굳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의에서 당시까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당 비서에서 물러나고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부주석 김동규 등이 잠적하였다.⁵⁸⁾ 대신 김정일을 옹호하는 임춘추, 오진우 등의 지위가 상승하는 등 권력핵심부에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격적 전개를 통해 당의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급 간부들도 김정일 계열로 교체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각종 문헌 자료 가운데 부자세습을 비판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제외되었다. 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정치사전』은 1973년도 판에는 종전에 수록하였던 세습이란 항목을 삭제하였다.⁵⁹⁾

1975년 10월부터는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이름을 직접 거명치 않고 다만 『당중앙』이란 호칭을 사용하여 그를 후계자로 공식 등장시키기 위한 자질론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해외로 나가는 선전책자, 특히 조총련의 교육자료에서는 김정일의 이름을 직

58) 당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당조직 담당비서인 김영주가 부총리로 전보되고 김정일의 주도로 『속도전운동』이 전개되었다.

59) 1970년 발간된 『정치용어사전』은 세습제도에 관해 “착취사회에서 특권 계급의 신분에 기초하여 그 직위 또는 재산을 대대로 물려받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킨 반동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접 언급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예찬하기 시작하였다.⁶⁰⁾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일성 후계자의 자질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수해야 한다는 『혁명계승론』
- 수령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여야 한다는 『혈연계승론』
- 수령의 사상과 이론을 곁에서 몸으로 익혀서 이를 완전히 체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일성 화신론』 등을 후계자의 자질이라 하였다.⁶¹⁾

김정일은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공개적으로 등장하였다.

그후 그는 주요 산업과 건설현장에 나타나 실무시찰, 실무지도를 해오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일성과 동격으로 현지지도를 하고 있다.

1983년 6월 중국공산당 호요방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986년부터는 중·소 등의 수뇌급과 신년 연하장을 교환하는 등 대외적으로 정상급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5월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된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 되었고, 1991년

60) “...우리 당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수령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총련 간부 학습제강』 (1975.10)

61) 1980년 10월 김정일의 공식등장 이전에는 대남흑색방송인 통일혁명당 방송을 통해 이와 같은 후계자 자질에 관한 방송을 계속해 왔다.

12월 24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1992년 4월 24일에는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김정일은 당·정·군에서 김일성에 버금가는 지위만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상화도 김일성과 같은 형태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종전까지 『당중앙』으로 통하던 것이 『향도의 별』이니 『미래의 태양』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정일 학습연구실과 사적관이 세워지고 그의 일화집과 노래, 꽃 등이 보급되었다.

1982년부터 김정일에 관해 “옛날에는 수령님이 축지법을 쓰셨는데 오늘날에는 별님이 땅을 넓히는 천지확장술과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쓴다”는 희한한 우화를 퍼뜨리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 “백두산 밀영에서 백두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느니 주체사상을 발전시킨 사상의 천재, 문예를 지도 발전시킨 예술의 천재로 칭송하더니 1991년 말에는 문예출판사에서 김정일 전설집까지 발행했다. 김정일은 1980년대에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해 오다가 1992년부터는 김정일 선집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이미 1986년 5월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⁶²⁾ 각종 선전매체들은 북한에서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50회 생일인 1992년 2월 16일에 당중앙위원회, 당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공동축하문을 통해 그에 대한

62)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김일성이 행했다는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교훈”이란 강의록(허담 대독) 참조.

충성을 다짐했으며, 이어 김일성 80회 생일 기념 『주체사상토론회』에서도 그에 대한 맹세문을 채택하면서 그를 “당·국가·군대의 수위”로 호칭하였다. 중국측에서도 김정일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영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⁶³⁾

북한의 정치권력세습은 당의 총비서, 국가 주석과 같은 제도적 지위만을 김정일이 그 아버지로부터 인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수령의 권위와 『주체혁명로선』까지 인계 받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

63) 김일성이 “김정일이 국정전반을 장악하고 있다”(1992.4.12, 워싱턴타임즈 회견), “전체인민이 김정일과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 나아가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1992.4.24 김일성 80회 생일 축하연 연설)는 등으로 발언한 점과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대대적인 승진인사 등 군 인사권을 행사(1992.4.20)한 점 등을 보아도 권력승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경제 및 과학·기술

1. 경제정책의 기초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이후 지금까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이때 북한경제에서의 “자립”이란 자기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자립경제건설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는 자력갱생에 대하여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입장과 정신”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김정일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명의로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²⁾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정신으로 하여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

1) 『백과전서』 4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160.

2) 『경제사전』 2권(평양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p.20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47.

성해야 한다³⁾는 종래의 주장에 부자세습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김정일을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력갱생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대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⁴⁾ 이는 북한의 국제경제에 대한 폐쇄성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란 정책기조는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기술과 해외자본의 도입을 비롯한 국제협력의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내자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1984년 9월의 『합영법』 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외자 유치에 주력하여 오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어 1991년 12월에는 『선봉-나진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⁵⁾ 이와 같은 일련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존의 자력갱생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의 폐쇄적 입장을 다소나마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3)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2.

4) 『우리당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2.

5)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지역(621km²)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 등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나. 중공업 우선정책

북한은 중공업을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공업부문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전재공업 등의 기간공업부문들과 임업이 포함된다.⁶⁾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초기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김일성은 “중공업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없다”⁷⁾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업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최근 북한경제는 산업부문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경공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에 와서는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1989년에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1989~1991)을 발표한 것이나 19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한⁸⁾ 것은 산업구조

6) 『백과전서』 4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695.

7) 『김일성 저작집』 19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294.

8) 1989년도 김일성 신년사.

불균형 완화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1992년도는 『대농의 해』로 정하고 있다.

다. 군사·경제의 병진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로선』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김일성이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창하고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지금까지 군사력 강화와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정책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되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⁹⁾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경제 운용의 기본방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년까지는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67~71년 동안은 30% 이상으로 군사비가 대폭 증액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동서화해와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북한은 군사비를 종전의 절반정도(예산총액의 17% 이하)로 축소시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비 지출규모를 실제로 감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대외적으로 평화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¹⁰⁾

9) 『로동신문』, 1966. 10. 8.

10) 이 책의 생산부문별 현황중 재정부문을 보면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되어 있어서 민수산업과 엄격히 구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군사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력은 오히려 매년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¹⁾

북한이 한정된 자원으로 군사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민의 소비부분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은 극도의 내핍을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제체제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¹²⁾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자연부원의 전부, 공장기업소의 절대다수, 운수, 은행 및 체신기관의

11) 『김일성저작집』 19권, p.294; 『백과전서』 4권, pp.695~696.

12) 『백과전서』 3권, p.530.

전부, 상업수매기관의 기본부분, 도시와 노동자구의 기본적인 주택폰드나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기업소 생산물의 전부 등”¹³⁾이 속한다.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로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며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밑에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¹⁴⁾을 통합하여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또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사회화 수준에서 차이를 가질 뿐 사적 소유의 폐절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회적 소유로서 동일한 유형의 소유에 속한다”¹⁵⁾고 보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분야는 농업으로 협동농장이 그 전형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매우 부분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협동농장원들의 『부업경리』 생산물과 그 생산을 위한 약간의 소농기구들도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소

13) 『경제사전』 2권(평양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 p.118.

14) 위의 책, p.740.

15) 『백과전서』 3권, p.740.

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 권도 인정하고 있다.¹⁶⁾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1946년에 착수하여 12년만인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동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¹⁷⁾에 따라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동년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의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 부문을 계속 확대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오늘날 북한은 어느 공산권 국가보다도 사유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축적』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북한주민은 소비생활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선 축적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축적을 소비보다 빨리

16) 『경제사전』 2권(1970), p.118.

17) 『조선로동당력사교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16.

18) 구체적인 생산수단의 집단화 과정은 이 책 『경제계획 및 실적』 중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기’에서 참조.

늘릴 것”¹⁹⁾을 강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산과 절약투쟁”²⁰⁾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소유제도는 북한 주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국·공유 및 사유화 비율

구분 \ 연도		1949	1953	1956	1957	1958.6	1958.10
		공	국·공유	90.7	96.1	98.3	98.7
업	사 유	9.3	3.9	1.7	1.3	-	
농	국·공유	32	32.0	80.9	95.6	98.6	리단위 로 통합
	사 유	96.8	68.0	19.1	4.4	1.4	
상	국·공유	56.5	67.5	84.6	87.9	100	
	사 유	43.5	32.5	15.4	12.1		

* 출처 : 통일조선신문사, 『통일조선년감』, 1967~'68, p.830.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

19) 『백과전서』 3권, p.154.

20) 1990년도 김일성 신년사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

직이는 경제²¹⁾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는 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함으로써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켰다. 정무원의 각부 및 위원회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경제를 계획화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관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²²⁾고 보았다.

계획의 세부화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취해지는 계획의 원칙적 체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요한 것만을 계획화하는 것이 아니

21) 『경제사전』 1권 (1970), p.369.

22) 『김일성저작선집』 4권, p.173; 『경제사전』 1권(1970), p.370.

라 크고 작은 모든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함으로써 사소한 자연발생성의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계획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²³⁾

이러한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계획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²⁴⁾

제1단계는 『예비숫자』 작성단계로서 하부 생산단위에서부터 상향으로 작성·제출된 계획 숫자를 지구계획위원회 및 정무원의 각 위원회와 부에서 이를 통합,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보고된 예비숫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별도로 제시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기초로하여 『통제숫자』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통제숫자는 계획시기의 경제발전방향과 규모 및 균형을 규정한 정부의 지령이며 계획작성의 기준으로서 예비숫자와는 달리 당의 지령으로서 거의 법적 의무성을 띤다. 이 단계에서 공업총생산액과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규모, 농업생산 규모, 수송 규모, 상품유통액, 각종 소비재 생산관련지표, 기본건설 투자 규모 등이 통제숫자를 통해 명시된다. 통제숫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하부로부터 올라 온 예비숫자를 참고로 하여 당의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초안을 작성하여 당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3단계에서는 비준된 통제숫자가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다시 하부 단위기관으로 시달되는데, 이 통제숫자를 근거로 하여 해당

23) 『백과전서』 1권, pp.793~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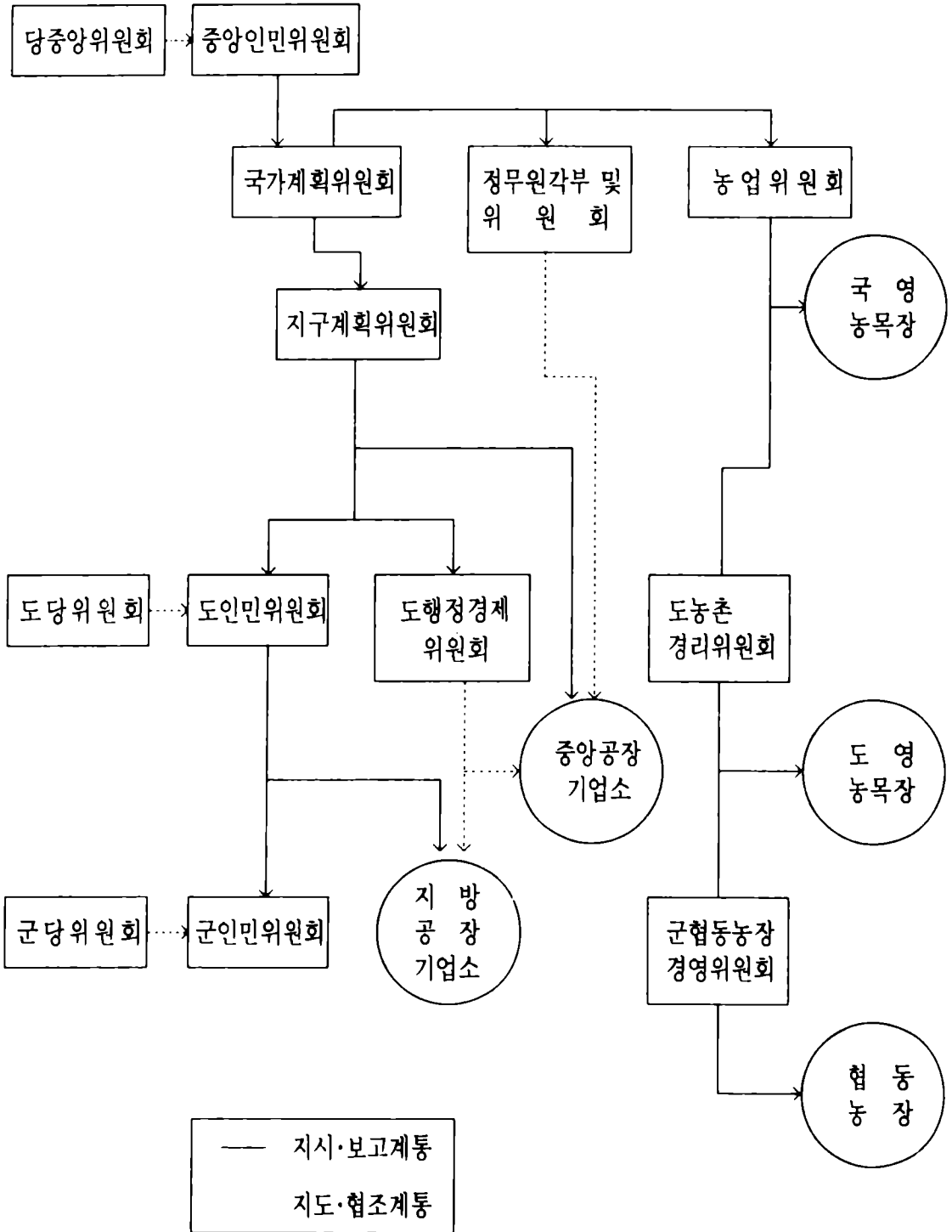
24)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582~608.

계획부서에서 계획초안을 만들어 상향 보고하고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계획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하부단위기관들은 하달된 통제숫자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대책만을 세우도록 한정되어 있다. 통제숫자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획초안에 근거를 밝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통제숫자가 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4단계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초안을 정무원 전원회의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여기에서 『전망계획』에 대해서는 형식상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되게 되어 있다. 확정된 계획의 수행은 법적 의무로 된다.

이상과 같은 계획수립의 과정을 북한측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그림과 같다.

경제계획 작성체계



3. 경제관리

가. 관리원칙

북한은 경제관리 원칙을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⁵⁾

경제관리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생산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에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지도·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북한은 경제조직사업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과 결합될 경우에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당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은 물질적 자극(Material Incentive)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Moral Incentive)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각종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당정치사업의 우선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25)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709.

26) 위의 책, pp.710~712.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이다.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해당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가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또한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경제관리운영과 생산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입각하고 있다. 유일적 지휘란 당위원회에서 그 방향과 방도가 토의·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휘관이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지휘관은 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잘 배합시키기 위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생산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요컨대,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생산에 대한 유일적 지휘를 강화시키고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결정된 계획과 지령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은 계획경제체제의 취약점인 경제부문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만이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이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경제관리의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에 의한 방만한 계획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오늘날에는 북한경제가 단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의해 모든 부문, 모든 생산단위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네째,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급 관리기관으로부터 강요된 계획과 주어진 생산요소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공장·기업소가 경영활동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종래 구소련이나 동구제국에서 실시하여 왔던 독립채산제보다 자율성의 폭은 훨씬 좁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장·기업소가 지시된 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자금·회계의 측면에서 통제하는데 있다. 북한은 이를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 강화, 군중로선 관철 등을 통해 생산자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고취시킴으로써 물질적 자극(Material Incentive)의 결여로 야기되는 생산성 저하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서의 경제관리원칙은 중앙계획당국이 결정한 경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 관리방법

(1)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은 북한의 경제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도를 실시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북한은 이를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한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며 공산주의적 대중지도사상이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²⁷⁾

북한 경제관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청산리 방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② 항상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③ 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

27) 『백과전서』 5권, p.48.

자 각각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부시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낸다는 것도 청산리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

(2) 대안의 사업체계

북한은 공업관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채택하여 지배인이 관리·운용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여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일관리제는 관료주의와 기관 본위주의와 같은 개인의 독단과 주관이 개입될 뿐만 아니라 기업 관리에 하부 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지적되기에 이르렀다.²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에서 제시한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²⁹⁾

1962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앞에서 서술한 경제관리 원칙을 적용한 관리방법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⁰⁾

①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 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하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

28) 『경제사전』 2권(1970), p821.

29) 『경제사전』 1권(1970), p533.

30) 『경제사전』 1권(1970), pp.533~536.

자, 근로자(생산핵심당원) 등이 참여한다.

②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하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 사업은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사업,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③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부 관리국 → 공장·기업소 → 직장 → 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지도하며, 상급기관이 자재를 책임 공급한다.³¹⁾

④ 총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지금까지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는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어 부식물 공급 조차 매우 부진하게 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로동자구 경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후방공급 부지배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근로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결국 대안의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³²⁾라는 집단주의적 구호 아래 근로대중을 동원, 정치활동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북한의 공업부문 관리형태라고 볼 수 있다.

(3) 독립채산제

북한은 모든 국영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채산제를

31) 『직장』이란 북한에서의 생산단위조직의 하나이며, 규모가 큰 공장·기업소의 경우 공장·기업소 아래에는 몇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직장은 다시 몇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진다.

32) 『김일성저작선집』 3권, p422.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실시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로 구분되고 있다.

완전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모든 국영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독립채산제의 본래적 형태이다.

김일성은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이며 기업소의 경영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³³⁾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관리방법이다.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데는 먼저 노동당의 정책과 국가계획의 무조건적 실행, 기업운영에서 생산대중의 참여와 정치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중앙집권적인 계획·관리, 기업소의 운용상의 융통성, 상품과 화폐 관계에 있어서의 적절한 배합 등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이 옹계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독립채산제의 기업적 측면을 보면, 『원에 의한 통제』³⁴⁾를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각 국영기업은 은행신용의 이용과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를 보유하며, 물자 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화폐지표를 활용하게 되며 이익금에 있어서는 『국가 몫』(이것을 ‘국가계정 이익금’이라고 함)을 먼저 공제하고 남을 경우, 그것은 기업소의 운영상태 개선과 종업원들의 물질생활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채산제의 실제운동은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33) 『김일성 저작선집』 28권, p.125.

34) 북한은 이를 「재정통제」라고도 한다.

는 것이 이 제도의 통제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독립채산제의 통제적 측면을 보면, 기업소의 노임 자금·상금·기업소 기금의 적립 규모 등 모든 경제관리를 정확히 규정화하고 고정재산의 관리·이용을 제도화하며, 재정 의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월별·분기별·지표별로 국가계획의 엄격한 수행을 감독·통제하는 한편, 기업소의 운영실적이나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서도 모든 항목과 지표별로 매달·매분기 마다 물질적·정치적 평가를 실시한다.

북한은 이와 같이 양면성을 지닌 독립채산제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천리마 작업반 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북한경제운용에 있어서 일부 하부 경제단위에 다소나마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독립채산제 자체가 “공업관리에서 중앙집권적 지도를 약화시키면서 지방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대치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하에서의 독립채산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³⁵⁾

그런데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 뿐만 아니라 지방공장을 포함한 공업부문, 농업부문, 그리고 비생산적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 6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이 소규모의 지방산업 공장에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³⁶⁾ 1984년 6월에는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문의 기관이

35) 『로동신문』 사설, 1981.10.14.

36) 『조선중앙년감』(1974), pp.152~153; 『조선중앙년감』(1981), p.25.

나 기업소에서도 완전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김일성은 반독립채산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지시하였다.³⁷⁾

반독립채산제는 “비생산 부문의 기관·기업소들 가운데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 적용”³⁸⁾하는 독립채산제의 한 형태이다. 반독립채산제는 대상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부분적 독립채산제이다. 이것은 대상기관 및 기업소들의 수입을 제고시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중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나 총국, 관리국 등의 산하에 있는 단위기업소들이 단위기업 자체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상위생산조직인 연합기업소나 총국, 관리국 등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게 되므로 단위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중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를 이중독립채산제라고 한다.³⁹⁾

(4) 사회주의 노력경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한다. 이 노력경쟁은 개인별, 작업분조

37) 『조선중앙년감』(1985), p.120.

38)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1990.9.13~14)에서의 연형묵 보고내용 참조.

39) 위 대회에서의 연형묵 보고 내용.

별, 작업반별, 직장별, 공장·기업소 또는 협동농장별로 진행되는 데, 노력경쟁의 주된 기준은 부과된 생산과제를 얼마만큼 초과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북한경제 운용에 있어서 각종 경제선동집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과 정치·경제체제의 규범적 속성에 기인한다.

북한은 1946년 12월부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는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경제건설과 사상 개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었는데, 특히 국가재산 애호, 노동규율 강화, 원가절하, 기술습득 등이 강조되었다. 이 운동은 그후 『증산돌격대 운동』으로 구체화되었으며 『3·1절 증산경쟁』, 『5·1절 증산경쟁』, 『상시증산돌격대』 등의 운동으로 증폭되었다.⁴⁰⁾

전후에는 1954년초부터 3개년 복구계획과 함께 『복구돌격대운동』, 『민청순회우승기 쟁취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력경쟁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부터이다.⁴¹⁾

북한은 노동 강화를 통한 생산증대의 도모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천리마운동을 내세웠다.

북한 노동당의 총노선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1959년 3월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61년 8월까지 200만

40) 『조선중앙년감』(1949), p.97.

41) 『김일성저작선집』 3권, p.101; 같은 책 4권, p.115.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운동에 동원되었다고 한다.⁴²⁾

1975년 말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경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오래전부터 김일성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던 검덕광산과 청산리협동농장에서 1975년 12월 1~2일에 각기 꺾기대회를 가짐으로써 발단되었다.⁴³⁾

이 운동이 발단된 것은 이른바 혁명과 건설에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제문제들을 해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3대혁명을 촉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운동은 종래의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같이 작업반을 기본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보다 넓은 단위와 영역에서 전개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1982년 7월 9일 김책제철소의 꺾기모임을 시발로 하여 소위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김정일의 주도하에 적극 추진되었다.⁴⁴⁾ 이 운동은 종래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을 가미하여 작업 성과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북한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와 관련하여 1988~'89년 기간중 2차에 걸쳐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특별 상금을 지급하는 등 북한에서의 노동경쟁은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2) 『김일성저작선집』 5권, p.426;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에서 발단된 것이며 『민주조선』(1965.7.17)에 의하면 1965년 6월말 현재 87만 3천명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학생을 망라한 23,000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43) 『로동신문』, 1975.12.2; 『근로자』(평양: 근로자사, 1976.1호), pp.12~17.

44) 『경제사전』 2권(1985), p.552.

4. 분야별 관리체계

가. 농업관리

북한의 농업관리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위 주체농법을 실현시킨다는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군농업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관리하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이를 중심으로 하여 농업생산의 계획화 및 기술적 지도는 물론, 농업생산의 『다각화·전문화·지역화』를 도모하고 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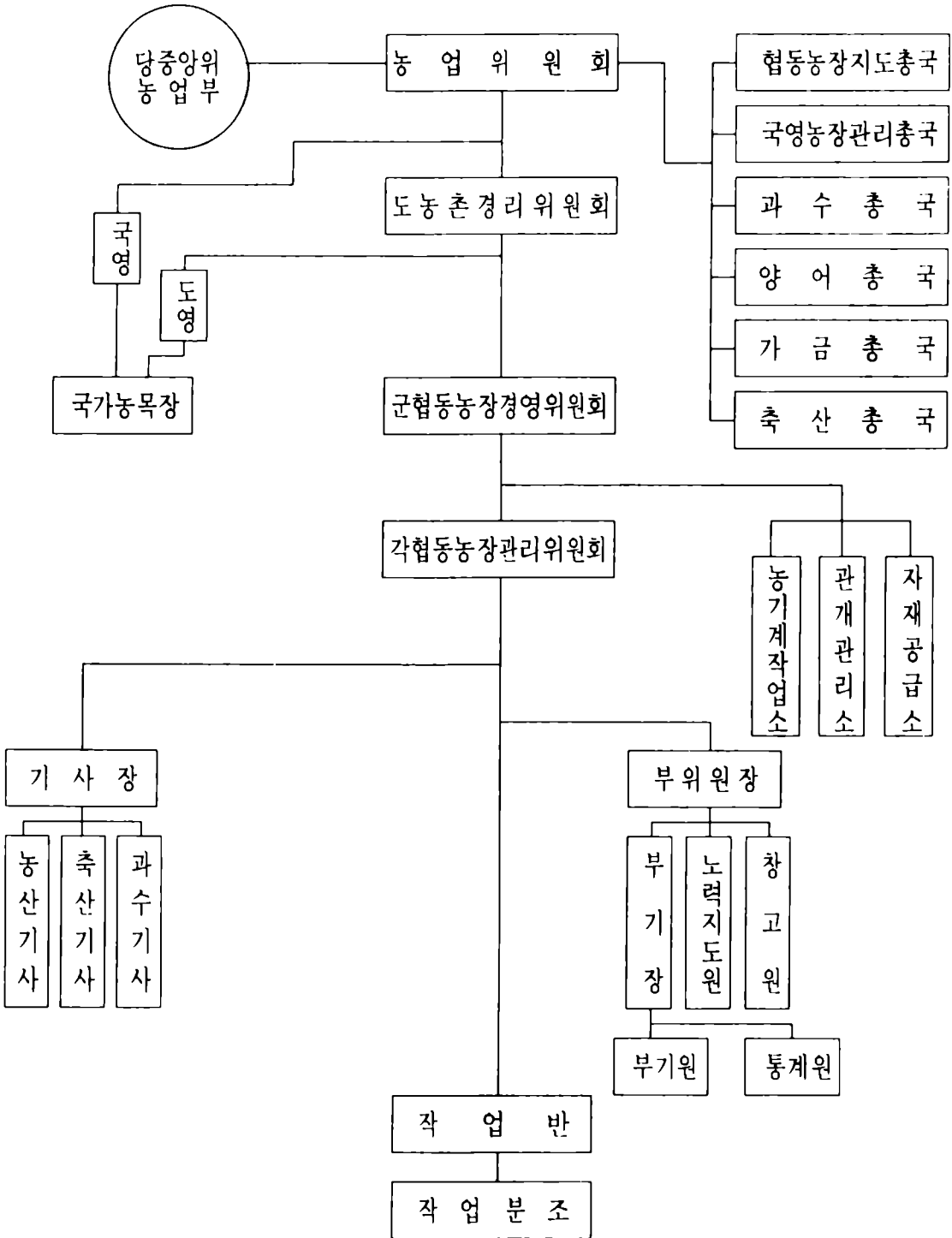
북한의 농업관리 조직은 사회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에 따라 대별된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이며, 협동적 소유로는 협동농장을 들 수 있다.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은 농업 전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 관리조직의 구성면에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⁶⁾

관리체계를 보면, 처음에는 군인민위원회 농촌경리부에서 군내의 농업전반을 장악하여 행정방식으로 지도·관리하였다. 그 결과

45) 『경제사전』 1권(1985), pp.400~403.

46) 『정치경제학』 하권(동경 : 학우서방, 1967), pp.366~367.

농업관리조직 체계



*주 : 북한의 농업은 1949년 3월의 토지개혁에 의한 <경작지제>를 기초로 한 개인농시대이후 1954~1958년간에 실시된 농업집단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협동농장을 주축으로 소위 사회주의적 정형의 농업경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관료주의·독단주의 등이 팽배하였으며 군인민위원회 위원 자체의 지도역량 부족과 지도 간부의 저수준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계획 수립, 기술·자재공급, 노동행정, 재정활동 등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⁴⁷⁾ 이에 따라 1961년 12월 김일성의 평남 속천군 현지지도에 의해 종래의 군인민위원회에서 농촌경리부를 분리시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다.⁴⁸⁾

1962년 말부터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농촌경리의 말단 단위로 하여 이를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중앙의 정무원 농업위원회와 일원적으로 연결시켰다. 전문적 농업지도기관이자 농업기업소의 성격을 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군내 협동농장 및 농업부분의 국가기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개편된 농촌관리체계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농업관리의 기본방향을 보면, ①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 지도, ② 군단위로 공업적·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촌관리, ③ 중앙집권적 일원화 체계의 원칙 반영 등이다.

또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 나타난 『농촌경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군을 단위로 한 기업적·종합적인 관리 : 군내 협동농장들의 생산활동과 관련 기업소의 재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총괄적·집체적으로 지도한다.

②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협조 강화 : 군내의 농기계 작업소·농기계수리공장·수의방역소 등 국가단위의 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이용함으로써 군협동경리 전반에서 생산의 조직성

47) 『김일성저작선집』 4권, pp.31~75.

48)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144~165.

을 제고시키고 군을 단위로 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준비를 갖출다.

협동농장에서의 생산조직의 기본형태는 작업반이 된다. 이 작업반은 일정한 경지, 노동력 및 작업도구를 가지고 부과된 연간 생산과제를 수행한다. 작업반은 몇개의 분조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으며 분조단위로 작업을 한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생산규모와 자연부락, 지역적 조건에 따라 농산작업반, 축산작업반 및 농기구수리반 등으로 조직된다. 기타 생산부문은 소규모의 경우는 작업반 내의 분조로 소속시키고 규모가 큰 경우는 전문작업반을 조직하기도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분조관리제와 함께 작업반 우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우대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반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⁴⁹⁾

나. 공업관리

북한의 공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이 모두 사회화되어 있는 관계로, 관리의 초점은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치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북한은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⁵⁰⁾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

49) 『경제사전』 2권(1985), p265.

50) 『경제사전』 1권(1985), p707; 『김일성저작선집』 17권, p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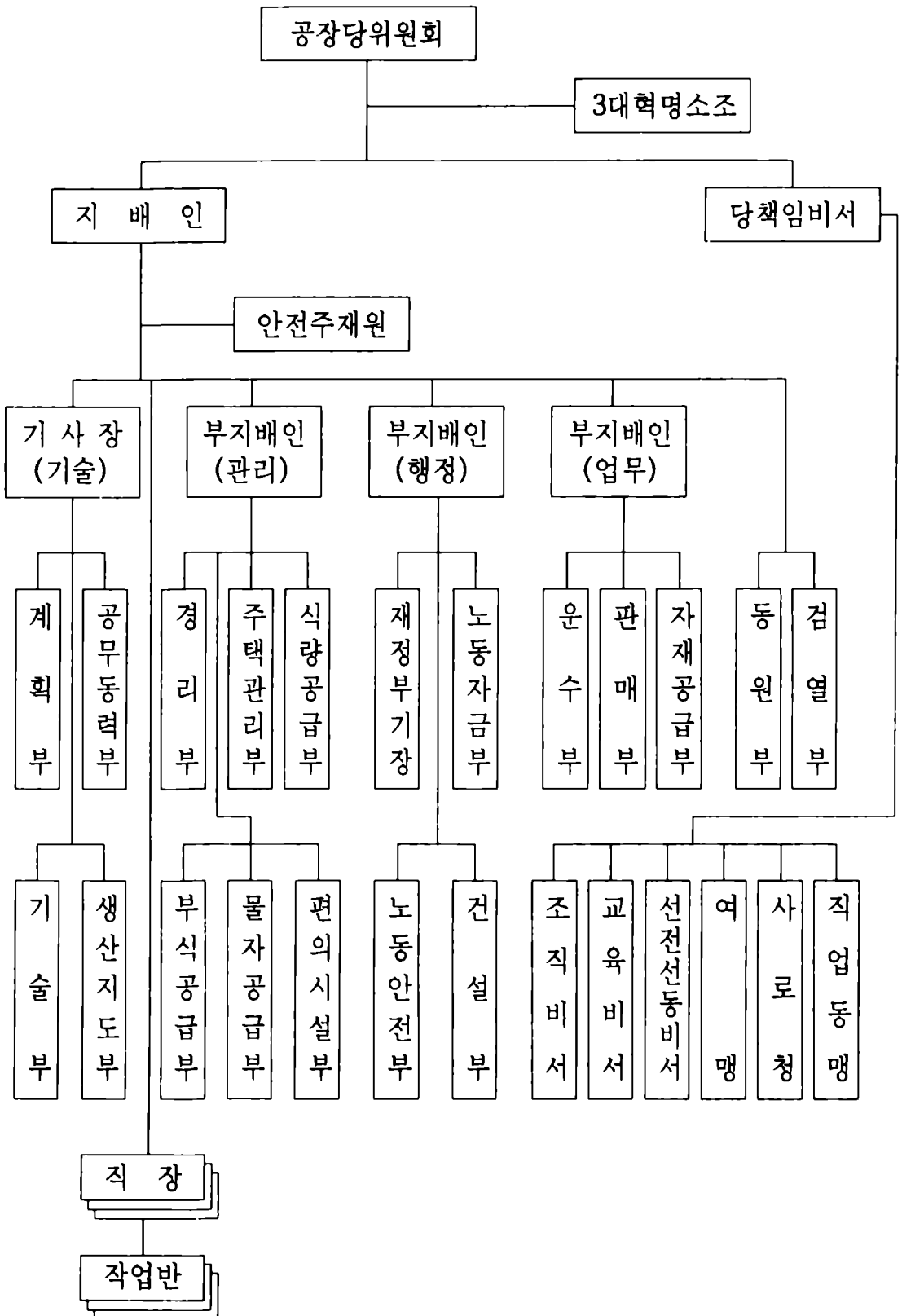
에서 각종의 대규모 경제선동집회가 자주 개최되는 사실도 『사람과의 사업』의 일환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이 제시하는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은 ① 행정경제사업과 당 정치사업의 결합, ② 집체적 지도와 통일적 지휘의 결합, ③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실시, ④ 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사회주의적 소유 및 관리 제도로 인한 생산의욕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의 사업』인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책임성 제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공업관리는 그 내용에 따라 계획작성,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생산지도, 재정관리, 후방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공업관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공장·기업소뿐만 아니라 농업·건설 등의 생산조직 체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유형태별로 보면, 국영공장·기업소와 협동단체 공장·기업소로, 관할에 따라서는 중앙공장·기업소와 지방공장·기업소로 나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단일기업소,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로 구분된다.

공장·기업소의 생산조직 및 관리는 생산·기술적 특성과 생산의 전문화, 그리고 협동화 수준에 따라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공정별, 생산품목별로 직장이 조직되며, 각 직장은 여러개의 작업반으로, 작업반은 다시 분조들로 나뉘어진다. 특히 3급 이상의 중요한 공장·기업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중앙당 및 정무원의 경제 관련부서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각 도·시·군 당위원회와 각 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은 공장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무적 차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을 따로 두고 있어, 실제로 공장·기업소

공장·기업소 생산조직



의 관리 및 운영은' 당책임비서와 지배인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리구조는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비롯되었다. 김일성은 당시 공장 운영·관리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장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하였다.⁵¹⁾

“공장관리운영체계를 순위대로 말한다면 공장당위원회가 첫자리에 있고 공장당위원회 밑에 공장당집행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그 밑에 지배인과 공장당위원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배인 밑에는 기사장과 부지배인들이 있고 그 밑에 공장의 여러 부서들이 있어야 하며 공장당위원장 밑에는 공장당위원회의 여러 부서들과 직맹, 민청, 녀맹과 같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있어야 한다.”

다. 유통관리

북한경제에서 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속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상업과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의 상업은 자본주의경제와 같이 시장구조가 존재하는 상업이 아니라 국가유일체제하에서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 내지 관리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업이다.

북한에서의 상업체계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 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며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지도나 관리를 분리하는 원칙하에서 상업관리체계를 조직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51) 『김일성저작선집』 15권, pp.510~511.

인민봉사위원회 상업부를 비롯하여 도·시·군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업행정부서를 설치하고 있다.⁵²⁾

북한은 관리상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는 상품유통의 전 과정을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지휘함과 동시에 특히 소매상업의 지방관리를 통해 지방관리들로 하여금 상품공급에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⁵³⁾

북한의 상업망은 대부분 상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점망이라고도 하는데, 상업망에는 도매상업망,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매상업망으로서 이를 규모에 따라 상점·매점·매대로, 취급품종에 따라 전문상점과 비전문상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기업소의 운영은 상업부가금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상업부가금은 상업기업소의 유통비와 이익금을 고려하여 상품에 반영하는 부가금을 말한다. 이를테면 생산기업소에서 상품을 넘겨 받을 때 적용되는 도매가격에 상업부가금이 첨가되어 소매가격을 이룬다.

상업부가금은 국가에서 상품가격을 정할 때 그 상품의 유통비와 상업기업소의 이윤 규모를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한다. 그러나 상품이 생산지에서 최종소비지에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북한은 상업부가금은 1회만 적용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⁵⁴⁾

52) 『경제사전』 2권, p.59.

53) 위의 책, 같은 페이지.

54) 『경제사전』 2권, p.56.

상업부가금에는 도매상업부가금과 소매상업부가금이 있다. 소매상업부가금은 소매상업기업소에 상품이 직접 공급될 때에 적용되며 이것은 소매상업기업소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또한 도매망을 거칠 경우에는 도매소와 소매기업소 사이에 그 수입이 일정율씩 분배된다. 이와 같은 상업부가금은 정무원 상업부에서 통일적으로 시달한다.

상업부가금의 수입은 상업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맞추고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으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상업부가금의 증대는 국가기업이익금을 늘이고 북한의 재정수입을 확대시키는 기본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라. 가격관리

북한에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된다.⁵⁵⁾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이 상품가격 결정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가격제정의 중요한 원칙중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리시키는 것이다.⁵⁶⁾ 예를 들어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는 관계없이 높게 정한다. 이와 같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까닭에 북한의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55) 『김일성저작선집』 23권, p. 462.

56) 『경제사전』 1권, p.42.

가격제정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 때에 요구되는 것이 가격제정사업을 중앙집권원칙에서 유일적으로 정한다는 가격의 일원화이다.

가격의 일원화는 국가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동경리에서 생산되는 일부 채소와 과일, 수산물의 가격은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해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⁵⁷⁾

일원화 체계에서의 가격제정 과정을 보면, 우선 공장·기업소에서 『가격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격제정기관들에 제출하게 된다. 각 가격제정기관들은 이 가격제정신청서를 심의하고 비준함으로써 가격을 제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앙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중요 제품의 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에서 유일적으로 제정되며 지방공업기업소와 중앙공업기업소의 생활필수품, 직장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들은 지방가격제정기관에서 제정된다.

북한의 가격은 기관, 기업소들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된다. 북한은 이러한 가격통제를 “가격제정 및 적용과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⁵⁸⁾ 가격통제는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가격제정위원회 등 여러 경제기관들에 의하여 실시된다. 가격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의 전문가가격제정기관에 의한 통제이다. 전문가가격제정기관은 모든 경제부문에 당의 가격정책 집행정형을 시달하고 가격에 대한 감독과 검열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

57) 『경제사전』 1권, p.44, “가격의 일원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1.3.26, 김일성 담화)

58) 『경제사전』 1권(1985), p.42.

면 각종의 경제적 및 법적 제제조치를 취한다. 국가의 전문가격제정기관들은 가격제정의 원칙과 절차, 가격제정 범위와 가격제정 및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가격이 제정되고 적용되도록 통제한다. 이를 위해 가격제정기관들은 가격표와 그 적용 규정을 공포하고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검열을 실시한다. 가격통제는 가격제정기관외에 계획 및 통계기관, 재정은행기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계획기관과 통계기관은 경제계획의 작성과 모든 계획지표들의 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적용된 가격의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재정은행기관들의 가격통제를 보면, 재정기관들은 기관·기업소들의 재정계획, 이윤과 자재수입품 계획 작성과정에서 계산수단으로 이용된 가격들을 통제하며, 은행기관들은 국가자금 공급 및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가격통제는 기자재 공급 및 소비품 유통기관에 의한 통제, 생산기업소 및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마. 분배관리

북한의 소득은 “사회의 공동적인 소비(국가관리, 과학, 교육, 보건, 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된다.⁵⁹⁾ 생산수단은 기자재 공급계획에 의거하여,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관리된다. 특히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지불할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 노동계획 기본항목의

59) 위의 책, p.650.

하나인데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 노동보수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계획, 장려금계획, 상금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총생활비계획이 있고, 계획시기에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생활비계획이 있다. 장려금계획은 『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보수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려금계산노력수와 기준평균생활비,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제고율, 장려금을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금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이게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더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목적의 보수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사무원들의 생활비를 기초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는 노력일을 기준으로 분배되고 있다. 연말(보통 10월~12월)에 가서 각 협동농장을 단위로 결산분배를 진행,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결산분배사업은 ① 결산분배의 준비, ② 결산서의 작성과 비준, ③ 결산분배총화회의 진행, ④ 현물 및 현금 분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⁶⁰⁾결산분배를 위한 준비사업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확정, 노력일의 확정과 재평가, 채권·채무의 청산, 재산실사 등이 진행된다. 결산서에는 생산계획 수행과 관련한 지표들과 수입분배 관련 지표들, 그리고 생산 및 재정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산서는 농장원총회(대표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해당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이때 상급기관은

60) 위의 책, p.79.

제출된 결산서를 심의하고 매개 단위의 생산 및 재정활동을 평가하며 경리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준다. 상급기관의 결산서 비준 절차가 끝나면, 협동농장 결산분배총화회의를 통해 총화보고에 이어 결산분배서를 통과시키고 검사위원장이 결산기간중 검사위원회가 진행한 검열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금 및 현물 분배가 실시된다.⁶¹⁾

그런데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분배 몫인 『노력보수펀드』의 규모는 소비활동이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다. 이는 북한경제가 재생산을 위한 『축적펀드』와 함께 『사회문화펀드』, 『사회보장펀드』, 『국가관리펀드』, 『국방펀드』 등의 『사회적 펀드』를 중요시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 가운데 노력보수에 대한 분배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5. 경제계획 및 실적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반구축

북한은 남북분단 직후부터 토지개혁, 주요산업 국유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 1958년 8월에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였다.

61) 위의 책, 같은 페이지.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과정

시 기	개 혁 내 용
1946. 3. 5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공포
1946. 8.10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 공포
1946.12.22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법령 공포
1954. 4	협동조합화에 착수
1958. 8	농업, 수공업·중소상공업의 협동화 완료
1958.10~12	협동조합을 리단위로 확대, 개편(협동농장으로 개칭)

북한에서의 국가적 소유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⁶²⁾ 협동단체 소유를 제외한 토지·지하자원·산림자원·기타 자연자원·중요공장과 기업소·은행·항만시설, 그리고 그밖의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협동적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구, 동물, 어선, 건물 등과 중소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된다.⁶³⁾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무상분배⁶⁴⁾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62) 북한 헌법 제21조.

63) 북한 헌법 제22조.

64)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16.

농경지 약 200만 정보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이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⁶⁵⁾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그후 『토지관개 관리령』(1946.9), 국영 농·목장의 규모 확장(1949.12) 농기계 임경소 설치(1950.2) 등을 거쳐 휴전 후인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6차전원회의에서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⁶⁶⁾

노동당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는데,⁶⁷⁾ 제1형태는 고정적인 『노력협조반』이고, 제2형태는 출자한 노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반사회주의적 형태』이며, 제3형태는 토지·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이 세 가지 형태중 농민들의 실정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53년말부터 1954년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56년 4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1차5개년계획 기간중 농업집단화를 완성시킬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집단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북한은 농업집단화를 착수한 지 불과 5년만인 1958년 8월에 이미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남

65) 『조선중앙년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9), p.71.

66) 『김일성선집』 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21.

67) 『정치경제학』 하권(동경 : 학우서방, 1967), pp.66~67.

시의 농업협동조합의 수는 13,309개였는데, 1개 협동조합은 평균 80호의 농가로 조직되었고 경지 면적은 1개 조합당 130정보였다. 그러다가 1958년 10월 협동조합을 리단위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3,843개 조합으로 그 수가 줄어든 반면, 1개의 협동조합은 300호, 500정보로 그 규모가 커졌다.

농업의 집단화

연도	농업협동 조합총수 (개소)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호수		협동조합에 편입된 경지면적	
		호 수	총농가호수에 대한비율(%)	경지면적 (1,000정보)	총경지면적에 대한비율(%)
1953	806	11,879	12	11	0.6
1954	10,098	332,662	31.8	576	30.9
1955	12,132	511,323	49.0	885	48.6
1956	15,825	864,837	80.9	1,397	77.9
1957	16,032	1,025,106	95.6	1,684	93.7
1958	3,843	1,055,015	100.0	1,791	100.0
1963	3,732	1,066,896	100.0	1,837	100.0

*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1946~'63)』(동경 : 일본 조선연구소, 1965)

그후 1961년 11월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내에 있는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 공장, 관개 관리소, 자재 공급소, 수의 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2년부터 오늘의 협동농장 경영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2) 산업의 국·공유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주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여 주요 공장·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채산,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⁶⁸⁾ 그 결과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⁶⁹⁾

한편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6·25전은 물론 휴전 후까지도 부족한 생활 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장려·이용·제한』이란 정책 과정을 거쳐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6·25사변 이후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의 집단화와 같이 다음 세 가지 형태가 활용되었다. 즉 제1형태는 도시의 수공업자들에 대한 생산 협동반화이며, 제2형태는 중소상공업자들의 협동반화이며, 제3형태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이었다.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1958년 8월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상·공업 부문은 농업부문과는 달리 완전 국유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68)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17.

69) 『조선중앙년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9), p.73.

소매상품 유통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단위 : %)

구 분	1946	1949	1953	1956	1957	1959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	35	56.5	67.5	87.3	87.9	100
개인상업	96.5	43.5	32.5	12.7	12.1	0

* 출처 : 『조선중앙년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9), p.355.

공업 총생산액의 경제형태별 구성

(단위 : %)

구 분	1946	1949	1956	1959	1960	1963
사회주의경제형태	72.4	90.7	98.0	100.0	100.0	100.0
(국 영)	(72.4)	(85.5)	(89.9)	(89.5)	(89.7)	(91.2)
(협동경영)	(—)	(5.2)	(8.1)	(10.5)	(10.3)	(8.8)
소상품 경제형태	4.4	1.5	0.7	—	—	—
자본주의 경제형태	23.2	7.8	1.3	—	—	—

* 출처 : 『조선중앙년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4), p.171.

(3) 단기 경제계획의 실시

북한의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실시되었다. 당시는 단기계획으로서 1947년과 1948년 2회에 걸쳐 각각 1개년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1949년에는 2개년계획을 착수하였다.

2개년계획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각 부문의 생산을 급속히 늘릴 목표를 세웠으나, 2개년계획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전후 북한은 전쟁 이전수준으로의 경제복구에 목적을 둔 전후

복구 3개년계획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구축에 목적을 둔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195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7차회의에서 채택된 전후복구 3개년계획은 생산수준을 전쟁 이전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계획은 중·소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⁷⁰⁾ 실제로는 석탄, 시멘트, 곡물 등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었던 것이다.

1957년부터 착수한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동 계획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경제계획의 목표

계 획	과 업	계 획 목 표
1차1개년계획 ¹⁾ (1947)	○기업소 복구조업 ○국영상공업 확대 ○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생활개선	○공업총생산 : 1946년 비 약 2배 ○곡물수확고 : 1946년 비 30만톤 증산
2차1개년계획 ²⁾ (1948)	○공업의 편파성 극복 ○생산품의 질 제고 및 원가절하	○공업총생산 : 1947년 비 41% 증가 ○곡물수확고 : 1947년 비 135% 증가

70) 북한 노동당 제3차 대회 보고(1956.4.23)

계 획	과 업	계 획 목 표
2개년계획 ³⁾ (1949~'50)	○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 조선 전역의 경제 복구토대 조성	○ 국영산업총생산 : 1948년 비 194% ○ 곡물총생산 : 1946년 비 158%(쌀잡곡)
전후복구 3개년계획 ⁴⁾ (1954~'56)	○ 전전수준 도달	○ 국민소득 : 1953년 비 75% 증가 ○ 공업총생산 : 2.6배 ○ 곡물수확고 : 1949년 대비 119%
5개년계획 ⁵⁾ (1957~'60)	○ 공업화의 기초구축 ○ 식의주문제 기본적 해결	○ 국민소득 : 약 2.2배 ○ 공업총생산 : 2.6배 ○ 곡물수확고 : 376만톤

- * 출처 : 1) 북한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보고(1947.2.19)
 2) 북한 인민위원회 4차회의(1948.2.6)
 3) 1948년 계획실행 총화 및 1949~'50년 2개년계획 법령 발표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54.4.23)
 5) 북한 노동당 제3차대회 보고(1956.4.23)

나. 사회주의적 경제계획 추진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의 『틀』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계획이 시작된 것은 1961년 제1차7개년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6개년계획, 제2차7개년계획을 실시한 이래, 현재 제3차7개년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각 계획 기간별 당면과업과 계획목표 및 실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 분	기 본 과 업	주 요 목 표	실 적
제1차 7개년계획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공업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방·경제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27배 공업총생산 : 32배 양곡수확고 : 600~70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미발표 공업총생산 : 33배 기계금속공업성장율 : 184% 노동생산성성장율 : 1475% 양곡수확고 : 미발표 계획기간 3년연장
6개년계획 ²⁾ (197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견고화 산업설비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8배 공업총생산 : 22배 양곡수확고 : 700~75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7~1.8배 공업총생산 : 25배 기계금속공업성장율 : 19.1% 노동생산성성장율 : 155% 양곡수확고 : 800만톤 (1976년)
제2차 7개년계획 ³⁾ (197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 향상 독립채산제 강화 대외무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9배 공업총생산 : 22배 양곡수확고 : 1,000만톤 '80년대 10대전망목표와 4대자연개조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미발표 공업총생산 : 22배 전력생산성장율 : 178% 철강생산성장율 : 185% 공작기계생산성장율 : 167% 양곡수확고 : 1,000만톤 (1984년) 시멘트·합성수지·직물 생산 목표달성 철도 60% 전철화
제3차7개년 계획 ⁴⁾ (198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7배 공업총생산 : 1.9배 농업총생산 : 1.4배 	추진 중

- *출처 : 1) 북한 노동당 제4차 대회 보고(1961.9.11)
 2) 북한 노동당 제5차 대회 결정서(1970.11.12)
 3)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1977.12.15)
 4)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1987.4.12)

(1) 제1차 7개년계획(1961~'70)

북한은 1961년부터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을 더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한 7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내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한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2년 10월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소의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가 격감됨에 따라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목표는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끝을 맺었다.

(2) 6개년계획(1971~'76)

북한은 1970년 11월 12일 노동당 5차대회를 통해 3대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개년계획기간 중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구로부터의 자본, 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제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

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당초 계획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975년 8월 갑자기 동 계획을 1년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하고 그후 부려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제2차 7개년계획의 초기부터 북한경제는 공업생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3) 제2차 7개년계획(1978~'84)

1978년부터 착수된 제2차 7개년계획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표방하고, 197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목표년도인 1984년이 지나도록 동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해 일체의 발표가 없다가 1985년 2월 16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이 1984년 말을 기해 동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동 계획기간의 주요 성장지수는 기준년도에 비해 공업생산액 2.2배를 비롯하여 전력 178%, 석탄 150%, 강철 185%, 공작기계 167%, 트랙터 150%, 자동차 120%, 채탄기 4.2배, 화학비료 156%, 화학섬유 180%, 시멘트 180%, 천 145% 등으로 생산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4대 자연개조

사업』⁷¹⁾ 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기간중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 확대·발전방침 채택,⁷²⁾ 합영법 제정·공포 등과 같은 경제적 대외개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80년대 10대 전망목표

구 분	단 위	1989년 목표치	비 고	
전 력	억 Kwh	1,000	성분합량 기준시 164	
석 탄	만톤	12,000		
강 철	"	1,500		
유 색 금 속	"	150		
화 학 비 료	"	700		
시 멘 트	"	2,000		
직 물	억 m	15		
알 곡	만톤	1,500		조곡기준
수 산 물	"	500		
간 척 지	만정보	30		

* 출처 :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보고(1980.10.10)

제2차 7개년계획 역시 당초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동 계획이 종료된 이후 제3차 7개년계획에 착수하기까지 2년간의 조정

71) 4대자연개조사업이란 20만정보 새땅찾기, 30만정보 간척지 개간, 태천 발전소 건설, 서해 갑문건설 등을 말한다(당 제6기 4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81.10).

7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1984.1)

기를 거쳐야 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제2차 7개년계획 후반기부터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충족 문제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 제3차 7개년계획(1987~'93)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두고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 성장목표와 이미 발표되었던 10대전망목표를 일부 수정하여 주요 생산 및 건설목표를 설정하였다.⁷³⁾

이처럼 제3차 7개년계획은 그 추진방침이 제2차 7개년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 특히 계획목표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경제계획에 비해 하향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져,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동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① 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기술혁신을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⁷⁴⁾ 또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회의(1987.4.21)

74) 김일성 신년사(1986.1.1)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 계획 수치

구 분	3차7개년계획		2차 7개년계획	
	목 표	목 표	실 적	
• 전력(억kwh)	1,000	560~600	-	
• 석탄(만)	12,000	7,000~8,000	7,000	
• 철강(만)	1,000	740~800	-	
• 비철금속(만)	170	100	-	
기 계(배)	25	(500만t)	23	
• 화학비료(만t)	720	500(1.6배)	500	
화학섬유(만t)	225	(1.8배)	(1.8배)	
합성수지·가소제(만t)	50	(합성수지 2배)	(합성수지24배)	
탄산소다(배)	45	3.4	-	
가성소다(배)	21	1.8	-	
유 산(배)	3	1.9	-	
• 시멘트(만t)	2,200	1,200~1,300 (생산능력1,200)		
• 직 물(억m)	15	8	8	
지방공업(배)	25	24	-	
• 곡 물(만t)	1,500	1,000	1,000	
쌀 (만t)	700	-	-	
• 간척지조성(만ha)	30	10	-	
경지10ha당트랙타대수(대)	10~20	10	-	
1ha당 화학비료소비량(t)	25	2	-	
육류생산(만t)	170	80~90	-	
계란생산(억개)	70	-	-	
산림조성(만ha)	150	-	-	
과일생산(만t)	200	150	-	
• 수산물생산(만t)	1,100	350	350	
어류(만t)	300	-	-	
해조·패류양식(만t)	800	-	-	
주택건설(만세대)	매년15~20	매년20~30	기간중 수10	
기술자·전문가수(만인)	200	-	125	
예방치료집단수(배)	12	13	(290여곳 신설)	
병원침대수(배)	13	12	-	
인구1만명당 의사수(인)	43	-	-	

*주 : 1) • 은 『10대전망목표』대상
 2) ()안은 직접비교가 아닌 참고 수치
 3) 2차 7개년계획의 -표시는 미발표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중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한국이 6차 5개년계획(1987~91)에서 과학 기술투자를 3%까지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의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이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로 북한의 대외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제3차 7개년계획의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1991년에는 UNDP의 두만강 하구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북한은 『선봉-나진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을 발표⁷⁵⁾하였음은 물론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 부문별 목표

부 문 별	건 설 계 획
기본건설전반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1.6배의 기본건설투자 실시, 기본건설투자의 80% 이상 생산적 건설에 투자
국민소득	국민소득 1.7배 증대, 노동자 실질소득 1.6배, 농민 실질소득 1.7배 증대
과학기술개발	과학연구사업에 국민소득 3~4% 투자, 광섬유 케이블화, 인공위성 통신망 확장, 해외유학생·연구생 파견으로 공동연구 강화 과학자·기술자 1인1기술 개발 의무화

75) 이 계획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공식발표되었다.

부 문 별	건 설 내 용
전 력 공 업	태천발전소·금강산발전소·희천발전소·남강발전소·금야강발전소·어량천발전소·다목적갑문발전소·지방중소수력발전소 등 신규수력발전시설 400kw 이상 건설, 안주화력발전소·사리원화력발전소·해주화력발전소 건설, 동평양화력발전소·12월화력발전소·김책화력발전소 건설,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석 탄 공 업	안주지구 탄광 개조·확장, 순천지구·덕천지구·북창지구·강동지구·북부지구 등 각 지구 탄광 확장
기 타 광 업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확장, 무산-성진간 정광수송파이프 증설, 덕현광산·서부지구 철광산 확장, 신규 내화물생산기지 건설
금 속 공 업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제2단계건설공사 완료, 대형용광로·대형산소전로·소결로 등 증설로 동연합기업소 연산 500만톤 이상으로, 황해제철연합기업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의 개조·확장, 검덕지구·단천지구·양강도지구 등의 비철금속광산 개조·확장, 11월 8일 광산·3월 5일 청년광산 등의 비철금속광산개조 확장, 알루미늄·알루미나 생산기지건설, 티탄·마그네슘 생산기지 건설
기 계 공 업	수치제어(NC)공작기계생산기지·자동차엔진·디젤엔진 프레스기 생산기지·전기기계 생산기지 증설 전자·자동화 요소생산기지, 전자일용품 공장 건설 평양지구 등에 로봇 생산기지 건설
화 학 공 업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연산 10만톤) 건설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 순천탄산소다공장 건설

부 문 별	건 설 내 용
	<p>함흥지구 합성고무생산기지 건설</p> <p>남흥지구 석탄가스화에 의한 합성수지생산기지 건설</p> <p>상원시멘트공장 완성, 사리원지구, 개천지구에 시멘트 생산기지 건설</p>
경 공 업	<p>방직설비의 현대화와 증설</p> <p>지방공업부문 생산공장의 생산공정과 설비 현대화</p>
농 업	<p>30만ha의 간석지간척(처음 3~4년간 15만ha)</p> <p>축산기지 확대</p> <p>150만ha의 산림에 낙엽송 등 수림</p>
수 산 업	<p>14,000톤급 대형가공모선·3,750톤급선미 트롤선·1,000톤급·480톤급 각종 어선 건조연안양식면적을 10만ha 확대</p> <p>현대적 수산물가공기지, 저장시설 증설</p>
교 통 운 수	<p>북부철도 완성, 서부지구에 새로운 환상선철도 형성</p> <p>평양-청진간 복선철도완공, 평양-사리원간 주요간선 철도 복선화</p> <p>주요간선도로 고속도로화</p>
도 시 건 설	<p>매년 15~20만세대 주택건설, 평양 광복거리·낙랑거리 등에 주택가 조성</p> <p>대동강·보통강·능라도·양각도에 근로자 문화휴식장 건설. 지방도시와 농촌에 실리카트 벽돌 주택건설. 백두산·금강산·묘향산 종합개발. 명사십리·몽금포 등에 해수욕장 조성</p>
주택생활향상	<p>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혁명</p> <p>소비상품 유통액 2.1배 증대. 특히 농촌에 상품공급 치중</p>

6. 분야별 현황

가. 국민소득

북한에서는 현재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서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 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⁷⁶⁾ 즉 사회총생산물은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과학·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

한편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충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소득(NI : 협의의 국민소득) 개념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이미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민소득에는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외

76) 『경제사전』 1권(평양 : 사회과학원 주체과학연구소, 1985).

는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정부가 농업생산이나 생필품 생산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가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⁷⁷⁾

이와 같이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소득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되는 국민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거래수입금이나 보조금의 규모, 비생산적 부문의 생산액 등)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그들 개념에 의한 국민소득 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발표되는 1인당 국민소득도 통계적 신뢰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통일원이 추계한 북한의 GNP

구 분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GNP (억불)	93.5	135.0	151.4	173.5	193.7	206.0	211.0	231.0	229.0
1인당 GNP(불)	579	758	757	853	936	980	987	1,064	1,038

* 출처 : ①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연도판.

② 1991년은 한국은행 추계자료.

* 주 : 1990년도 이후의 GNP 및 1인당 GNP 추계방법은 이전 연도와 다름.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 또는 군사분야 전문 연구기관은 여러가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GNP와 1인당 GNP를 추계하고 있다.

77) 거래수입금, 보조금 등에 관해서는 이 책 재정 및 금융의 『예산제도』를 참조.

지금까지 매년 통일원이 추계·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연도별 GNP 및 1인당 GNP는 앞의 표와 같다.

북한의 GNP를 추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의 군사정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USCIA :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Y : SIPRY Yearbook),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 The Military Balanc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중 미 CIA와 SIPRY는 1984년까지 북한의 GNP 추계자료를 대외에 발표하였으나, 1985년부터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ISS만이 현재까지도 북한의 GDP와 1인당 GNP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의 각 기관이 발표하는 북한의 GNP 평가치는 발표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원화 표시 생산액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국민소득 개념상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조정계수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연도	1인당 국민소득	근 거
1946	64.44원	“1967년도 국민소득 580원은 1946년비 9배” ¹⁾ 에서 산출
1949	131.82원	“1967년도 국민소득 580원은 1946년비 4.4배” ¹⁾ 에서 산출
1962	416.67원	“1966년도 국민소득 500원은 1962년비 12배” ²⁾ 에서 산출

연도	1인당 국민소득	문	거
1966	500원 ²⁾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 보고	(1967.12.16)
1967	580원	북한 중앙방송 보도(1970.9.17)	
1970	605.73원	“1970년 소득은 1946년비 9.4배” ³⁾ 에서	산출
1974	1,029.75원	“1974년 소득은 1970년비 1.7배” ⁴⁾ 에서	산출
1979	1,920미불	김일성 신년사(1980.1.1)	
1982	2,200미불	1983.9.12, 김우종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	원장, 일본기자와의 회견(『매일신문』, 1983.9.13)
1986	2,400미불	방완주, 『조선개관』(평양:백과사전출판사, 1988)	
1987	2,400미불	사회과학원 교수 이명소, 서방기자단과의	회견(1988.9)
1988	2,530미불	뉴욕타임즈(1989.7 평양발기사)	
1991	2,460미불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일본기자	와의 회견(연합통신, 1992.2.24)

* 출처 : 1) 『조선중앙년감』(1970), p276.

2) 『조선중앙년감』(1968), p2.

3) 『조선중앙년감』(1974), p242.

4) 『조선중앙년감』(1976), p371.

참고로 IISS가 발표한 최근년도 북한의 GDP와 인구 및 적용환율, 그리고 이를 기초로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DP)를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IISS의 북한 GDP 추정결과

연도	GDP	1인당국민소득	비 고	
			인 구	적 용 환 율
1989	481.9억불 (478억원)	2,146불	22,792천명	\$1=0.977원
1990	479.4억불 (477억원)	2,060불	23,275.6천명	\$1=0.995원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0~1991* 및 *1991~1992*(런던:1990 및 1991)

GNP 또는 1인당 GNP 자체도 추정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후생수준이나 분배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물며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이론상 개념도 상이한 북한의 국민소득을 지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의 GNP 개념에 맞게 추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만큼 오차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에서 명시된 북한의 GNP 또는 1인당 GNP를 가지고 북한의 후생수준을 평가하거나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재정 및 금융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가) 재정의 개념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⁷⁸⁾ 즉 북한에서는 재정을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주의)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적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국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재정의 기능

북한에서의 재정은 사회주의적 재정 개념상의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재정의 기능을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⁷⁹⁾

재정의 분배적 기능이란 “사회 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업소와 기업소간, 인민경제부문간, 생산부문간 비생산부문

78) 『경제사전』 제2권(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p.465.

79) 위의 책 제1권, pp.209~210.

간, 그리고 축적과 소비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의 통제적 기능이란 “사회 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재정은 경제 전체와의 관련하에서 자원의 배분, 경제성장의 촉진,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계획경제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 재정계획

재정의 분배적, 통제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정의 주체들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이란 “전 국가적으로, 또한 기관·기업소별로 계획기간에 벌어들이게 될 돈과 쓸 돈을 수입·지출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타산하여 세우는 계획”⁸⁰⁾으로서, 크게 기본 재정계획과 인민경제 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으로 구분된다.

기본 재정계획은 사실상 『국가예산』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재정부문별 각종 자금수요와 재정부문에 집중된 화폐자금의 규모를 나타낸다.

한편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은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된 기업 및 경제조직의 개별적 재정계획으로서, 연차별 경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적 계획인 바, 해당 기업이나 경제조직의 자금원천과 자금지출의 방향, 기타 경영활동의 재무적 측면이 반영된다.

80) 위의 책 제2권, p.466.

(라) 재정의 통제·감독

재정활동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통제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를 비롯하여 정무원 및 지방 행정경제위원회가 재정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예산안과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심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정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정무원 재정부는 재정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집행, 결산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정리를 지도하고 통제·감독한다.

재정에 관한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주권과 행정적 집행기관들에 의한 통제, 재정은행기관들에 의한 통제, 부문 재정관리기관에 의한 통제, 기관·기업소 내부통제 및 사회적 통제로 구분되며, 통제시점에 따라 사전통제, 경상통제, 사후통제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정을 통제·감독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재정총화』제도와 『원에 의한 통제』제도가 있다.

재정총화제도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에서부터 정무원의 위원회,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기업소가 일정기간 동안(월별, 분기별, 연간)에 수행한 재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며, 원에 의한 통제란 주로 재정은행기관이 기관·기업소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 재정계획과의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를 말한다.

북한은 최근들어 재정은행기관들과 견열, 통제기관의 재정견열 활동 강화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는 바,⁸¹⁾ 그 내용을 보면, 2급 이

81) 위의 보고.

상 공장·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 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한두 개 이상 대상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2) 예산제도

(가) 예산권한과 예산의 형식

북한에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와 정무원에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북한헌법에 의하면 『국가예산』은 정무원이 편성, 제출한 예산초안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심의한 후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정무원이 제출하는 국가예산초안을 심의 승인한다. 그 핵심 내용은 일체의 재정·지출형태 및 규모와 중앙예산, 지방예산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다. 지방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으로 승인한 지방예산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자체 지방예산을 심의,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연간 결산(북한은 이를 『예산총화』라고 부름)의 승인권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무원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부문별 집행기관의 하나인 재정부를 통하여 국가예산 초안을 편성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분기별 집행계획과 집행대책을 세우며, 지방행정위원회의 예산집행을 지도한다.

정무원은 또한 재정부를 통하여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분기별

결산과 연간 결산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연간 결산내용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나) 회계년도와 예산구조

북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년도(북한은 이를 『예산년도』라고 부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의 예산편성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수입부분과 예산지출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수입·지출 항목은 각각 행정기관 조직별,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되고⁸²⁾ 다시 관, 항, 목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면 국가예산수입 중에서 거래수입금(관)은 경공업위원회(항)로, 그것은 다시 방직공업총국(목)으로 구분된다.

이들 예산 항목별 내용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의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북한의 예산체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합쳐진 전체예산을 국가예산이라고 부른다.

중앙예산이라 함은 “국가 중앙기관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예산의 기본을 이룬다. 이에 반하여 지방예산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지역 단위의 범위에서 지방살림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지방행정

82) 북한에서는 행정기관 조직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관할별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하며, 성질별로 편성하는 것을 『경제적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한다.

기관 자체로 편성, 집행된다.⁸³⁾

국가예산체계를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 재정원칙상 공통적인 현상이다.⁸⁴⁾ 북한은 지방예산제를 1972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1973년 당 중앙위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고⁸⁵⁾ “지방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5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78년 12월에는 지방재정체계에 관한 특별법규가 채택되었는데, 이 법규는 지방공업기업소에 대한 지방 정권기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의 주요 내용은 소비재 증산, 지방공업기업소 채산성 향상, 지방행정기관의 감축, 은행의 재정감독 기능 강화, 화폐상여기금의 조성·승인·사용방법, 지방예산·결산제도의 강화 등이다.⁸⁶⁾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와 같이 지방예산제도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경제건설 자원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행정 지역 단위별 경쟁의식 고취로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3)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앞의 책 제1권, p216.

84) *Russia Encyclopaedia*(런던 : 1982)

85) 『김일성 저작선집』 7권, pp240~241.

86) 소련과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모스크바 : 1985)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서울 : 국토통일원, 1988)

북한이 구분하고 있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관할 대상기관 및 각각의 수입원천, 지출대상 사업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구분

구 분	대상기관	주요수입원천	주요지출대상
중앙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적 국영기업소와 기관 •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 기업소와 사회문화기관 • 사업상 특성을 가지는 사회안전, 사법, 검찰, 재판기관, 철도운수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중적 순소득(거래수입금) • 국영기업소의 국가기업 이익금 • 지방예산으로부터의 이전금, 가격 편차 수입, 국가재산판매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기본건설, 유동자금 등) •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교육, 의료, 연금 등) • 군사비 • 중앙기관 관리비
지방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규모의 기관기업소 •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기업소와 사회문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산 대상기관·기업소의 거래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편의봉사료 • 중앙예산의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산업 및 농촌경리와 지방산업 건설 • 지방의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 부문 • 지방기관 관리비

(라) 예산의 편성절차

북한에서의 예산편성 권한은 정무원 재정부에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우위의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예산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헌법 제35조) 재정부도 당과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 크게 구속받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가격은 자원배분 및 물자의 수급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 정부는 예산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국가가격제정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게 된다.

북한의 예산편성 절차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예산편성 과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연차별 예산편성이 재정계획 작성과 동시에 또는 이들 재정계획 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재 정부는 국가계획위원회 및 국가가격제정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예산안 작성을 위한 지도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3/4분기 초에 각 해당기관별 세부지침서를 수립, 시달한다. 물론 이 지도서나 세부지침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되고 중앙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연차별 경제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산편성 세부지침서가 중앙의 각 기관(정무원의 각 위원회, 부, 기타 직속기관)과 각 지방 행정경제위원회(도 및 직할시) 해당 부서에 시달되면, 중앙의 각 기관이나 각 지방 행정경제위원회는 산하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등의 예산을 포함하는 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정부에 제출한다.

재 정부는 이들 재정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재정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곧 새해의 국가예산 초안이 되는 것이다. 이 예산 초안의 작성시기는 대체로 전년도 12월이나 당해년도 1월중인

바, 이는 전년도 경제계획 실적을 반영하여 11월경에 가서야 작성 완료되는 새해 경제계획에 따라 새해 예산안도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해년도 1월~2월 경에 그해의 예산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정무원 심의와 중앙인민위원회 비준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1개월 정도의 심의를 마친 후 통상적으로 4월 중에 최초로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에 정식 의제로 제출된다.

북한의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당해년도 예산이 형식절차상 그해 4월에 가서야 최종 확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현재까지 정무원에서 작성, 제출한 예산초안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예가 전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고인민회의의 심의 승인 이전이라도 정무원이 최초로 작성한 새해 초안을 기준하여 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국가예산수입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예산수입의 원천으로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기타 수입 등이 있다.

거래수입금은 원칙적으로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그 제품의 도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소비자에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으로써,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북한은 거래수입금을 사회순소득 가운데서 기업소 순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중앙집중적 순소득이라고 설명하나, 성질상 소비재 거래단계에서 부과되

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거래수입금은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⁸⁷⁾

한편 국가기업이익금이란 생산부문은 물론 유통부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국영기업소가 그 기업경영 활동에서 얻어지는 기업소 순소득 중에서 국가의 결정에 따라 기업소에 남겨 놓고 쓰기로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기업 이익금은 기업이윤에 부과되는 일종의 법인소득세라고 볼 수 있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 이익금은 사회순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예산으로 동원하는 하나의 형태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납부의무자, 부과 대상 및 성질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협동단체 이익금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이 국가로부터 각종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하에 경영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입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적 성격의 납부금으로서 생산협동조합과 편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 결산이윤에, 수산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된다. 협동단체 이익금은 지방예산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87)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생활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생산물을 자기를 위한 생산물부분과 사회를 위한 생산물부분으로 나누고, 후자를 사회순소득이라고 부른다. 사회 순소득은 다시 국가의 중앙집권(중)적 순소득과 기업소 순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집권(중)적 순소득은 거래수입금의 형태로, 기업소 순소득은 국가기업이익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동원된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차이점

구 분	거 래 수 입 금	국 가 기 업 이 익 금
납부의무자	소비재를 판매하는 국영기업소나 협동단체 기업소	소비재, 생산재, 유통부분을 포함하는 모든 국영기업소
부과율 또는 부과금액	소비재 도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영기업소 순소득중에서 국가가 사전적으로 정하는 기업 유보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전액
부과대상	원칙적으로 소비재 단, 최종소비재적 성격의 중간재 일부에도 부과	국영기업소 순소득(이윤)
조세적 성질	소비재 거래시 부과되는 간접세	기업이윤에 부과되는 직접세

봉사료 수입금은 편의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봉사료 수입에서 자체 경비와 이윤을 공제하고 남는,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금으로서 업종별 봉사요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부과대상 업종에 따라 편의봉사료 수입금, 사회급양 봉사료 수입금, 수송운임 봉사료 수입금, 체신업무 봉사료 수입금, 극장·영화관 관람료 수입금 등이 있다.

국가예산의 기타 수입으로는 기업소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국가재산 판매수입, 가격편차 수입 등이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에서 특이한 것은 조세라는 명목의 세입원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의 완전 폐지원칙을 발표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래

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으로 명칭만이 바뀌었을 뿐,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각종 조세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국가예산지출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사회문화시책비), 『국방』에 대한 지출(군사비),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인민경제비는 생산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건설자금,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 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기타 식량이나 생필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 독립채산제 공업·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 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다.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며, 군사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투자, 장비 현대화, 병력 유지 및 전인민 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함한다. 관리비는 국가관리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사) 연도별 국가예산 현황

북한은 매년 4월 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재정보고』의 형식을 빌어 정무원 재정부장이 전년도 국가예산의 결산 내용과 당해년도 국가예산을 최초로 공개한다. 그러나 공개하는 내용은 국가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의 총 규모 및 성질별 내역의 총괄적인 사항뿐이다. 북한이 매년 재정보고시 발표하는 자료와 조선중앙년감을 토대로 파악한 연도별 국가예산 현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한의 연도별 국가예산 현황

단위 : 만원(결산기준, 북한화)

구분	세입	세출	성질별지출내역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관리비
1965	357,384	347,613	236,376	68,422	27,809	15,006
1967	410,663	394,823	197,017	69,094	120,026	8,686
1970	623,220	600,269	282,126	119,394	187,884	10,805
1972	743,030	738,861	409,932	187,807	125,606	15,516
1975	1,158,630	1,136,748	650,688	275,762	186,427	23,872
1980	1,913,923	1,883,691	1,139,777	417,434	275,019	51,461
1981	2,068,400	2,033,300	1,245,776	446,654	300,928	39,942
1982	2,268,000	2,220,360	1,389,040	463,181	324,173	43,966
1983	2,438,360	2,401,860	1,515,443	485,413	353,073	47,931
1984	2,630,510	2,615,800	1,683,657	521,819	381,907	28,417
1985	2,743,887	2,732,883	1,762,789	535,387	393,535	41,172
1986	2,853,850	2,839,610	1,861,505	546,094	391,866	40,145
1987	3,033,720	3,008,510	1,997,395	568,897	397,123	45,095
1988	3,190,580	3,166,090	2,127,226	600,185	386,263	52,416
1989	3,360,810	3,338,294	2,250,605	631,395	400,595	55,699
1990	3,569,041	3,551,348	2,399,145	669,279	426,162	56,762
1991	3,719,484	3,690,924	2,504,707	692,704	446,602	46,911
1992	3,950,092	3,950,092	2,667,513	773,058	458,211	51,310

* 출처 : 북한의 각 연도별 예산결산 발표 내용

* 주 : 1992년도는 예산 기준이며 성질별 지출내역은 북한이 발표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초로 재산출·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재정규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재정부담율)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성상 우리나라의 재정부담율보다 월등히 높다. 1990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을 기준할 때 북한의 재정부담율은 71.9%에 달하고 있다.⁸⁸⁾

북한이 발표하는 세출예산중 군사비 규모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군비 증강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미 김일성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4대군사노선을 천명한⁸⁹⁾ 이래 1978년 북한정권 수립 기념행사에서 이의 완성을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다음 표 참조) 1960년부터 30%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 20% 이하로 급격히 하락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체 예산액의 12%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군사비 규모는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비로 분류되는 지출대상의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으며,⁹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의 증감추세는 인민경제비의 구성비 증감추세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인민경제비에 은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8)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서울 : 국토통일원, 1990.9)

89) 북한 노동당 제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11.2)

90) 보유군사력(장비, 병력 포함)을 기준으로 적정 군사비 소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OB(Order of Battle) 방식이 있다. 북한에서 군사비의 범주에 포함되는 비목은 『국가예산지출』 항목을 참조.

북한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

(단위 : %)

연 도	세출규모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관리비
1965	100.0	68.0	19.7	8.0	4.3
1967	100.0	49.9	17.5	30.4	2.2
1970	100.0	47.0	19.9	31.3	1.8
1972	100.0	55.5	25.4	17.0	2.1
1975	100.0	57.2	24.3	16.4	2.1
1980	100.0	60.5	22.2	14.6	2.7
1981	100.0	61.3	22.0	14.8	1.9
1982	100.0	62.5	20.9	14.6	2.0
1983	100.0	63.1	20.2	14.7	2.0
1984	100.0	64.4	19.9	14.6	1.1
1985	100.0	64.5	19.6	14.4	1.5
1986	100.0	65.6	19.2	13.8	1.4
1987	100.0	66.3	18.9	13.2	1.5
1988	100.0	67.2	19.0	12.2	1.7
1989	100.0	67.4	18.9	12.0	1.7
1990	100.0	67.6	18.8	12.0	1.6
1991	100.0	67.9	18.8	12.1	1.3
1992	100.0	67.5	19.6	11.6	1.3

* 출처 : 북한의 각 연도별 예산 결산 발표내용.

(3) 화폐·금융**(가) 금융의 기능 및 특징**

북한에서의 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

여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유통”을 말하며,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한다.

국내금융은 다시 화폐자금이 이동하는 성격과 형식에 따라 신용, 자금공급, 화폐유통으로 구분하는데, 신용이란 서로 다른 소유 형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대부, 저금, 국가보험 등)을 말하며, 자금공급이란 같은 국가적 소유 안에서의 일방적(불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기본건설 자금이나 유동자금의 공급, 경비예산의 지급 등)을 말한다. 화폐유통이란 신용과 자금공급 관계에 기초하여 화폐자금이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서,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나뉘어진다.⁹¹⁾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⁹²⁾ 즉 사회주의 금융은 생산과 유통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건설을 도와주는 자원 배분적 기능,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 통제적 기능, 외화거래의 합리적 조직기능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북한에는 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단기자본시장, 증권시장, 기타 유사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정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주의국가에서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된다.⁹³⁾

91) 현금유통이란 주로 기관·기업소와 주민간 또는 주민들 상호간에, 특별한 경우는 기관·기업소 상호간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하며, 무현금유통이란 주로 국가기관·기업소들 사이에서 현금의 직접 이동없이 문서에 기초하여 상호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92) 『경제사전』 1권, p.264.

93) 북한은 은행에 의한 재정통제를 “원에 의한 통제”라고 부른다; 『재정의 통제와 감독』 부문 참조.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인 북한에서는 재정계획과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자원배분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이자율과 수익율을 매개로 자원 배분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하의 금융기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금융의 주임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화폐자금의 수입과 공급과정에서 기관·기업소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바,⁹⁴⁾ 금융은 오히려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재정통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상품부족으로 주민들이 잉여화폐를 보유함에 따라 야기되는 인플레이 압력을 없애기 위하여 강제저축, 낮은 임금수준 유지, 엄격한 배급제 등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⁹⁵⁾

(나) 금융기관과 저금제도

북한의 은행체계는 조선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 전문분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은행 등 몇 개의 특수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6년 1월에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타 은행을 지도·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기업소들에게 기본건설자금, 유동자금 등 일체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국가수입금을 수납하며 고정자산의 형성, 보수, 이용사업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은행

94)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146.

95) M. Triguvenko, “조선의 경제위기와 전망에 대한 예측”,(서울: 의회정치연구소 국제회의 논문, 1990.11), p.7.

은 중앙의 본점,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총지점(도), 지점(군) 등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저금, 보험사업, 귀금속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⁹⁶⁾

특수은행으로는 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조선합영은행,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 등이 있다. 무역은행은 대외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 외국환업무, 무역기관들을 위한 지불보증, 환율의 결정·공표, 그리고 『외화와 바꾼 돈표』 발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강은행과 대성은행은 1970년대 후반에 대외무역 증대 방안의 하나로 설립된 무역결제업무 전담 은행이며, 조선합영은행, 조선낙원금융 합영회사는 합영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보 및 자금의 제공과 이들 기업의 수출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북한에서의 저축은 자본주의국가에서와는 달리 재산 증식을 위한 자발적 저축이라기보다는 주로 재정계획상의 자금동원 목표달성을 위한 강제저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축의 종류로는 보통저금(연리 3%), 준비저금(3.6%), 정액저금(4%) 및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저금 등 4종류가 있다.⁹⁷⁾

일반주민들은 저금 또는 저금인출시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점이나 지점 이외에 우편, 전화업무를 취급하는 체신소를 이용한다.

(다) 화폐의 기능 및 종류

북한은 화폐를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교환을 증개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가치척도와 유통수단, 축재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6) 『백과전서』 제4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722~723.

97) 위의 책 제4권, p.246.

북한화폐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일반화폐	지 폐 (5 종)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1992년 7월 제4차 화폐 교환 실시 ○조선중앙은행 발행
	주 화 (5 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50전 주화는 1979년 4 월, 1원 주화는 1987년 10월부터 유통
특수화폐	외화와 바꾼 돈표(9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종전에는 조선중앙은행 권으로 발행, 1988년 9월 부터는 무역은행권으로 발행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의 가격은 국가가 경제부문별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나 축재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화폐개혁 또는 화폐교환을 실시하였다. 특히 '92년 7월에 실시된 화폐교환은 사장통화환수를 통해 부족한 재정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화폐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5종과 주화 5종 등 10종이 있고, 방북외국인이 외화를 북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화와 교환 가능한 무역은행 발행의 특수화폐 9종이 있다.

(라) 환율 및 외화관리

사회주의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간의 협정에 의거 환율을 규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의 결정방법은 이론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국의 화폐가 대표하는 금의 양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의 상품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쌍방 화폐간에 적용할 환율의 결정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일정 상품 등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것을 두 나라의 화폐로 각각 가격과 총금액을 산출하여 대비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⁹⁸⁾

북한의 환율은 공정한율(북한은 이를 『공식환산비율』이라고도 함), 무역환율, 비무역환율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공정한율은 북한당국이 국민소득 등 총량지표를 외국화폐로 발표하거나 수출입상품의 대내가격으로의 환산시 적용하며 이 환율은 북한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무역환율은 표본으로 선정한 몇가지 상품에 대해 거래국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외국상품가격에 대한 국내상품가격의 비율로서 결정한다. 이 환율은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적용하며 북한 무역은행은 수시로 이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무역환율은 무역환율과는 달리 거래국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대비하여 결정하며 여행자에 대한 환전이나 외국과의 비상품교역 또는 자본거래시 적용한다.

무역환율은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입기준율, 현찰매입율, 매도기준율, 현찰매도율 등이 있다.

북한은 그들의 환율을 1978년까지는 『조선중앙년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는 이에 관한 내용을 직접 발표

98) 『경제사전』 2권, p.615, 환자시세 참조.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교역 상대방 또는 북한 방문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연도별 달러환율(연평균)은 다음과 같다.

북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추이

(북한 원/미 달러)

구 분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공정환율	—	0.87	1.07	1.02	—	—	1.07	1.01	1.00
무역환율	2.05	1.79	2.43	2.23	2.14	2.15	2.23	2.14	2.15

*출처 : 통일원 자료 종합

북한은 외화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일적인 외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모든 외화는 무역은행에 집중시키고 『국가의 수령』만 외화를 쓰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북한 주민이나 기관·기업소들의 외화 유통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⁹⁹⁾

다. 산업부문별 실태

북한의 산업부문별 실태, 특히 남북한간의 산업부문별 현황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딪치는 문제중의 하나는 산업부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산업부문별 분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의 분류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들의 산업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다. 다만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99)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1990.9.13)에서 연형목 보고.

산업발전 정책의 기초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산업을 크게 중공업, 경공업,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⁰⁾

원저. 중공업이란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서 여기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전자공업 등 기간공업부문과 임업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들 개별공업부문중 석탄공업, 광업, 임업을 채취공업으로 총칭하며, 그 이외의 나머지 공업부문을 가공공업이라고 부른다.¹⁰¹⁾

한편 경공업은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으로서,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제지공업 등이 포함되며,¹⁰²⁾ 생산되는 재화가 주로 소비재라는 점에서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중공업과 구분된다.

농업은 토지를 기본 생산수단으로 하는 산업분야로서 농산업,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이 포함된다.¹⁰³⁾

북한은 수산업을 “어업, 천해양식업, 물고기 기르기, 수산물가공업” 등으로 세분하고 어업은 채취공업 범주에, 수산물가공업은 경공업 범주에, 그리고 천해양식업과 물고기 기르기는 농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⁰⁴⁾

본서에서는 북한의 산업부문을 분류함에 있어 편의상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등 3부분으로 나누고, 북한 개념에 의한 산업부문별 실태를 우리 개념에 맞도록 재분류하여 설명하고자

100) 『경제사전』 1권, p.90.

101) 위의 책 제2권, p.424.

102) 위의 책 제1권, p.80.

103) 위의 책 제1권, p.393.

104) 위의 책 제2권, p.99.

한다. 따라서 북한 분류기준으로 공업에 속하는 임업과 어업은 농림수산업에서, 전력공업은 사회간접자본에서 설명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체신)부문을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농림수산업

(가) 농 업

북한은 1946년부터 시작된 토지개혁과정을 거쳐 1958년에 농업의 협동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196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는 소위 농업강령을 발표하였다.¹⁰⁵⁾

이 강령은 사회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농민문제와 농업문제의 본질적 내용을 농업의 낙후성과 도시·농촌간의 격차로 규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3대기본원칙으로 농촌에서의 기술·문화·사상 혁명 수행,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과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강화, 협동적 소유형태의 『전인민적 소유화』(국유화)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¹⁰⁶⁾

북한은 이 강령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진하였으며, 197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 제5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자연개조 5대방침』을 결정하고¹⁰⁷⁾ 곡물

105) 『조선중앙년감』(1975), p.12.

106) 『김일성저작집』 18권, p.198.

107) 『자연개조 5대방침』이란 ① 밭 관개의 완성, ② 토지정리·토지개량, ③ 다락밭 건설, ④ 치산치수, ⑤ 간석지 개간 등을 말한다.

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자연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1981년 10월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4차회의에서는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 20만정보의 새 땅 찾기, 남포갑문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사업 등 『4대 자연개조사업』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농업정책 방향은 생산 및 경영방법의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농경지 확대, 관개시설망 확충 등 소위 『대자연개조』에 의한 식량 증산을 추구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92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 '92년을 『대농의 해』로 정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은 중공업 우선정책, 투자재원의 부족, 생산·분배 등 경영체계의 불합리성, 기후적·지형적으로 불리한 영농조건 등의 이유로 생산의 체감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⁸⁾

북한 농업의 부문별 현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재배면적은 1991년 현재 159.3만 정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논은 총 재배면적의 36.6%인 58.3만 정보이다.¹⁰⁹⁾

198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지확장사업도 미진하여 30만정보 간석지 개간사업은 1990년 말 현재 6만여 정보를 간척하는데 그쳤으며, 20만정보의 새 땅 찾기 운동의 성과는 특별히 알려진 바 없으나, 무리한 산지개간으로 하천관리, 홍수통제 등에 상당한 문

108) 1992년도 김일성 신년사는 “모든 사람이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염원실현이 당면 중요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

109) 농촌진흥청 추계자료(1992.11)

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식량통계지표로 조곡 개념의 “알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류생산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북한은 1984년에 알곡을 1,000만톤 생산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생산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87~'93)의 곡물생산 목표를 1,500만톤으로 설정하였으나¹¹⁰⁾ 경제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가 가까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실적에 대한 발표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농업전문기관에서 평가한 1991년도 북한의 곡물생산 실적은 442.7만톤(정곡기준)이며 그 중 쌀생산량은 164.1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1991년도 곡물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만정보)	정보당 수량(톤)	생산량(만톤)
계	1593	2,778	442.7
쌀	58.3	2,815	164.1
옥수수	61.8	3,430	212.0
두 류	20.0	1,035	20.7
서 류	10.0	3,730	37.3
맥 류	4.2	1,140	4.8
기 타	5.0	767	3.8

* 출처 : 농촌진흥청 추계자료(1992.11)

110) 『조선중앙통신』, 1991.2.13.

농촌의 수리화실태를 보면, 북한 전역에 1,700여개의 저수지와 25,800여개의 양수장이 건설되었으며, 14,000여km의 강·하천 제방과 4만여km의 관개수로가 갖추어져 있다.¹¹¹⁾ 북한의 관개능력은 총 경지면적의 65% 수준에 해당하는 139만정보로 평가되고 있다.

3차 7개년계획 기간에는 1986년 6월 서해감문(남포감문)이 완공됨에 따라 대동강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함은 물론 서해안 일대의 주요 강과 하천을 연결하는 관개수로망의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1990년 말까지 총 800km에 달하는 크고 작은 관개수로가 완공되었다.

한편 기계화·화학화의 성과에 대하여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트랙터는 평지에서 7대 수준, 모내는 기계는 6.1대이고 화학비료 시비량은 2톤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²⁾

그러나 북한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의 농업생산에 있어서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공급부족문제가 현실적인 애로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화는 1969년에 완성되어 거의 모든 농촌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과 송·배전 체계의 불량으로 실제 농촌의 전기사용은 『한집 한등』 켜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축산업은 국영과 협동농장 축산을 위주로 개인부업 축산을 배합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낙농기술이 뒤떨어져 있고 사료 확보가 어려워 초지면적의 확대와 자연생 사료의 취득에 역점을 두면서 소, 돼지 등 큰 가축보다는 토끼, 오리, 닭, 산양 등의 사육에 더 치중해 왔다. 축산물 생산량은 1986년도 현재 55만

111) 『조선중앙통신』, 1990.10.8.

112) 『조선중앙통신』, 1990.10.8.

톤으로 발표되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상 목표는 육류 생산 연간 170만톤, 계란 생산 70억개이다.¹¹³⁾

북한의 과수정책은 1961년 4월 함경남도 북청군 문화협동농장에서 개최된 이른바 당 중앙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이 지시한 30만정보의 과수원 조성 과 수종의 다양화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1986년 현재 총 30만정보의 과일 생산기지가 조성되었으며, 과일생산은 약 150만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⁴⁾ 과일의 종류는 주로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자두, 버찌, 포도, 감, 대추 등이다.

(나) 임업

북한의 임야면적은 총 940만정보로 북한지역 전체면적의 약 80%에 달한다. 특히 주요 원목생산지인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과 백두산 지역에는 침엽수 및 활엽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북한은 이같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요 원목 생산지에는 임산사업소를 설치하고, 기타 지역에는 임산협동조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또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 150만정보의 조림사업 목표를 세워놓고 경제림 위주의 산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수종은 낙엽송, 포플러, 은행나무, 분홍꽃 아카시아 나무 등이며 관상수로 진달래, 한약재로 월굴나무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만정보 새 땅 찾기 운동, 전국토 다락밭 만들기 운동, 각종 건설자재용 목재, 심지어 땃감 획득을 위한 남벌

113)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88)

114) 위의 책.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산림이 지극히 황폐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부족한 임산자원 확보를 위해 소련의 시베리아 지역에 원목 벌채를 위한 노동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원목을 들여오고 있다.

(다) 수산업

북한의 연근해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수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있어 세계적인 어장으로 꼽힐 만큼 어족이 풍부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용 수산자원은 약 300여종이나 되며, 이중 120여종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수산자원은 어류로서 명태, 조기, 멸치, 꽂치, 이면수, 갈치, 민어, 청어, 오징어, 가자미, 대구 등 연근해 어족과 잉어, 붕어, 초어, 송어, 은어, 빙어, 열목어, 산천어, 누치, 전장어 등 담수어가 있다. 기타 수산자원으로는 김,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조개, 소라 등 패류, 게 등 갑각류가 있다.

북한의 최근 수산정책은 양식어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제3차 7개년계획의 수산물 생산목표는 제2차 7개년계획 목표(350만톤)의 3배가 넘는 1,100만톤¹¹⁵⁾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 간척사업의 추진에 따른 양식장 및 어장의 감소 추세와 명태, 오징어, 정어리 등 주요 어족자원의 감소로 말미암아 수산부문의 생산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실적의 부진으로 인한 어선 부족, 어로장비 및 기술의 낙후, 선박용

115) 어류 300만톤, 천해양식 800만톤

유류 부족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이며, 1991년도의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 12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 만톤)

연 도	북한 발표치	평가치
1985	360	242
1986	—	237
1987	—	212
1988	—	215
1989	—	219
1990	—	146
1991	—	120

* 출처 : 북한발표치는 『조선개관』, 평가치는 통일원의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연도판, 1991년은 한국은행 추계 자료.

북한은 양식업 및 수산물가공업 발전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합영기업 유치 또는 해외진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평양양어합영회사(1989.1), 동성수산물생산판매회사(1989.5), 연간 4,000여톤의 수산물 가공회사인 대덕산합영회사(1990.10) 등의 합영회사들이 북한내에 설립(조총련과의 합영)되고, 성계 합영공장, 해조류가공합영공장, 섭조개양식합작회사 등을 구소련지역내에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광 공 업

(가) 채취공업

채취공업은 “자연부원을 노동대상으로 하여 시초원료와 연료를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서, 석탄공업, 광업, 원유 및 가스 채굴업, 임업, 어업 등이 이에 속하며 그 중심은 물론 석탄공업과 광업이다.

채취공업은 가공공업보다 시간적으로나 순차상으로 먼저 발전하여야 가공공업에 원료와 연료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하에서 북한은 채취공업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즉 새로운 탄광과 광산개발을 위한 지질탐사의 강화, 갱도 굴착 및 채취공정에서의 기술혁명, 채굴설비 및 탐사에 관한 과학연구사업추진 등이 그것이다.¹¹⁶⁾

북한의 부존자원 현황을 개관하면, 북한지역에는 지금까지 총 360여종의 광물부존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용광물만도 200여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매장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위 이내에 드는 광물도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이나 된다. 이처럼 북한 지역에는 금속광물과 에너지광물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북한은 공업원료 및 연료의 70%를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이나 에너지산업의 기초자원인 석유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석탄에 있어서도 무연탄과 갈탄의 매장량은 풍부하나 제철·제강공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청탄(코크스의 원료)은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아 이들 자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16) 『경제사전』 2권, p511.

현재 북한의 광업에서 비중이 큰 부문은 석탄, 철광석, 연·아연 등 비철금속광,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생산부문이다.

철광석은 무산광산을 비롯하여 은률, 재령, 하성, 천동, 이원, 덕성, 용원, 풍산 등 20여개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중에서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약 10억톤, 연간 생산능력이 800여만톤에 이르는 북한의 최대 철광산이자 세계적인 노천광산으로 1993년까지 생산능력을 1,500만톤으로 확장키로 되어 있다.

북한의 철광석 및 석탄 생산능력

(단위 : 만톤)

연 도	철 광 석 (정광)	석 탄
1975	735	2,700
1980	835	3,027
1985	980	3,750
1986	980	3,750
1987	980	3,900
1988	1,030	4,070
1989	1,030	4,330 ^{주)}
1990	1,030	4,330
1991	1,030	4,330

* 출처 :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연도판.

* 주 : 북한은 당창건 45돌 기념보고에서 석탄생산량을 8,500만톤으로 발표하였다.(조선중앙통신, 1990.10.8)

철광석 생산량은 철광산의 지속적인 확장 및 개발로 70년대 이후 매년 2% 정도씩 증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철광석 매장량을 탐사,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광산의 설비 노후화로 철광석 생산량은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1991년도 철광석 생산능력은 정광기준 1,03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

다. (앞의 표 참조)

무연탄은 평남 증산·덕천·강동·개천군 등과 평북 구장, 함남 고원, 강원 천내, 자강도 전천, 평양 등지에 대량 매장되어 있고, 갈탄은 함북 은덕군·아오지 일대를 비롯한 새별·회령·종성, 평남 안주, 함남 영흥지역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 건설대상이면서 무연탄 총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평안남도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각지의 탄광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 총매장량은 147억톤에 달하며 그중 채굴이 가능한 가채량은 약 79억톤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은 1989년도의 석탄생산량을 8,500만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1년도 석탄 생산능력은 총 4,330만톤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나마 실제 생산량은 3,10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⁷⁾ 이와 같은 석탄생산의 부진은 최근 외화부족으로 인한 원유도입량 감소와 함께 에너지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북한은 저열탄과 초무연탄을 취사와 난방용 및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의 에너지원으로 개발·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비철금속광산으로서 연·아연은 검덕광산, 계생광산, 성천광산, 화풍광산 등이 있으며 검덕광산은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광산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광산은 1983년에 이미 연간 1천만톤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선광장(제3선광장)이 건설되어 가동 중이다.

117) 한국은행, 『1991년 북한 GNP 추정 결과』, 1992.8.

그 외에도 중석은 만연광산, 경수광산, 전창광산에서 금·은·동은 운산광산, 대유동광산, 홀동광산, 상농광산, 성흥광산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현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나) 금속공업

북한은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의 발전이 나라의 공업화 수준과 경제력, 군수생산의 잠재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한 금속공업의 발전, 흑색금속 생산과 유색금속 생산의 균형발전 및 금속생산공정의 완비, 금속공업의 기술적 토대 강화 등을 금속공업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북한에서는 금속공업을 흑색금속공업과 유색금속공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¹¹⁸⁾ 전자는 철광석을 주원료로 하여 선철, 입철,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제강공업부문을 말하며, 후자는 금·은·구리·연·아연·알루미늄 등을 생산하고 그 가공품을 제조하는 비철금속부문을 의미한다.

먼저 흑색금속공업 실태를 보면 주요 제철·제강공장으로 김책제철연합기업소(함북 청진),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남 송림), 청진제강소(함북 청진), 4.13제철소(서부지역에 위치), 성진제강연합기업소(함북 김책), 8호제강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동강제철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이 자체 건설한 것은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 뿐으로 나머지는 일제때 건설된 시설들을 개건·확장한 것 들이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로서 1989년 9월 소련 지원하에 제2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연간 강철 생산능력이 240만톤(압연능력 : 140만톤)에 달한다.

118) 『경제사전』 1권, p260.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제철 113.4만톤, 제강 144.5만톤이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연간 강철 76만톤(이중 특수강 3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강철 생산능력

(단위 : 만톤)

연 도	북 한 발 표 치	평 가 액
1975	—	240
1977	4 0 0	383
1980	—	398
1985	—	430
1986	—	430
1987	—	481
1988	—	504
1989	7 0 0	594
1990	—	594
1991	—	598

* 출처 : ① 북한 발표치중 1977년도는 『조선중앙년감』(1971), p.239.

② 1989년은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③ 1975~'91년 평가치는 통일원, 『남북경제현황비교』 및 『북한 경제종합평가』 각연도판.

특히 천리마제강(련)은 1989년 10월에 5.18대형 단조공장을 추가 준공함으로써 대형 압연롤(ROLL)을 비롯하여 선박부품(프로펠라축, 크랭크), 발전기부품(발전기축, 터빈모터), 각종 병기부품(포신, 전차, 장갑차용 강판) 등의 생산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1988년 1월부터 제3차 7개년계획의 강철생산 목표달

성에 필요한 연간 2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게 될 『10월 9일 강철종합공장』¹¹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철강생산 능력은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도말 현재 선철 537만톤, 강철 598만톤, 압연강재 404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철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각 공장의 시설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의 공장이 일제하에서 건설된 소규모시설을 기본으로 하여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부분적인 시설의 개건·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일관공정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등 기술수준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주요 공장에 대해 산업텔레비전화, 원격조종화를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아직 현대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유색금속(비철금속)공업 부분의 발전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비철금속 공장은 남포제련소, 문평제련소, 홍남제련소, 해주제련소, 북창알루미늄공장, 단천제련소, 평양유색금속공장, 청화제련소 등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연, 아연, 동을 비롯하여 금, 은, 니켈, 몰리브덴 등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1983년 북창알루미늄공장 건설을 계기로 알루미늄과 텅스텐, 니오비움, 세리움 등 희소금속 생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 및 서방 등지로부터 설비를 들여와 건설된 북창알루미늄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이 2만톤 규모인데, 원료인 알루미늄은 순천에 있는 부산리알루미나공장(연간 4만톤 규모)으로부터 공급

119) 이 공장은 1992년 4월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받고 있다.

1990년 2월에는 스테인레스강, 내열강 등 합금특수강 생산의 주요 원료인 니켈광산이 함남 정평군에서 새로 조업되었는데 동광산은 연간 약 20만톤의 원광(Ni 0.5%)을 처리하여 니켈정광(Ni 3%) 약 3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991년 4월에는 북한에서 채굴되는 희유원소 광물의 정련 및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북한 룡악산 무역총회사와 조총련 국제트레이딩상사간에 설립된 함흥화학합영회사가 조업(이트륨 등년 1천톤 생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비철금속공업은 제철, 제강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제련기술 및 생산설비가 국제 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이들 시설의 근대화가 당면한 과제로 되어 있다.

(다) 기계공업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기계공업은 “경제에 요구되는 생산도구와 일부 일용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의 핵심부문으로 기계공업의 발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 운수, 기본건설 등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과업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¹²⁰⁾ 따라서 북한은 일찍부터 기계공업부문을 가장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그 수준도 타산업부문에 비해 가장 앞서 있다.

주요 공장으로는 각종 공장건설에 필요한 대형설비를 제작하는 용성기계총국,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 금성트랙타종합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남포

120) 위의 책, 제1권, p268.

조선소, 함북조선연합기업소 등이 있으며,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자동화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이 있다. 이와 함께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는 로봇, 집적회로 등 전자, 자동화에 필요한 부품생산부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부문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기계공업은, 일부 대형기계 및 공장설비의 생산은 질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미달되나 현재 건설중인 공정설비를 자체생산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통신기계공업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1989년 8월에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생산능력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북한-소련간에 이루어진 희천-고리끼 합영회사가 완공됨에 따라 후라이스반(FRAISE반) 5천대의 생산능력이 추가되었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확장된 승리자동차공장은 기관종합분공장, 주물직장, 제관 및 총 조립직장을 비롯해서 연건평 10만여㎡에 30여개 생산건물이 건설되어 『자주-82형』의 자동차를 계열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정이 갖추어졌다고 한다. 북한의 주요 기계공업부문 생산능력은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한의 주요 기계공업부문 생산능력

(1991년말 현재)

자 동 차	공 작 기 계	텔 레 비 전	조 선
33만대	35만대	26만대	21.4만G/T

* 출처 : 한국은행, 『1991년 북한 GNP 추정결과』(19928)

(라) 화학공업

북한은 최근 에너지 및 수송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다.

화학공업은 『식·의·주』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관련된 공업부문으로 북한은 식량 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 및 농약공장 건설과 화학섬유 증산을 위한 비날론공장 건설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학공업은 대부분 석탄화학계열공업으로 발전해 온 것이 특징이며 제품의 질이나 공해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¹²¹⁾

북한의 주요 화학비료공장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화학비료 생산 목표는 720만톤으로 되어 있으며 1989년 현재 생산량은 560만톤, 정보당 시비량은 2톤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1년도의 실제 생산 능력은 질소비료, 인비료를 합하여 351.4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체계는 단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소별 생산능력의 불균형이 심하며, 특히 카리비료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연산 51만톤 규모의 사리원 카리비료공장, 연산 5만톤 규모의 단천 인민복합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건설중) 내에 연산 90만톤 규모의 질소비료생산공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1년 12월에는 기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설비 대형화·현대화 공사가 완료되었다.

121) 『한·소간 북한경제문제워크숍』 결과보고서(서울: 국토통일원, 1990. 6), p5.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

(단위 : 천톤)

연 도	북 한 발 표 치	평 가 치
1975	3,000	-
1978	3,690	2,680
1980	-	3,100
1985	-	3,510
1986	-	3,510
1987	-	3,510
1988	-	3,514
1989	5,600	3,514
1990	-	3,514
1991	-	3,514

*출처 : ① 북한 발표치중 1975년은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보고” (1977. 12).

② 1978년은 『평양방송』 1979. 2. 22.

③ 1989년은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④ 1978~'91년 평가치는 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및 『북한 경제종합평가』각연도판.

다음으로 화학섬유는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와 1981년 건설된 함흥모빌론공장 등에서 연간 약 17.7만톤의 화학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화학공업부문 중점사업으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공장의 최종 생산목표는 비날론 10만톤과 함께 카바이트 100만톤, 메탄올 25만톤, 질소비료 90만톤, 염화비닐 25만톤, 가성소다 25만톤, 탄산소다 40만톤, 단백질사료 30만톤 등이다.

이 연합기업소는 지난 1989년 10월 제1단계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제2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부분적으로 완공된 시설내역은 비날론공장(10만톤중 5만톤), 카바이트공장(16기중 8기), 메탄올공장(75만톤중 7만톤), 석회로(12기중 6기), 발전소(20만kw) 등이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공업을 보면 정유공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봉화화학공장(피현군)과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승리화학공장(선봉군)이 있는데, 각각 150만톤, 200만톤의 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솔린, 나프사, 등유, 경유, 제트연료, 중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1988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1년도의 원유도입량은 경화결제로 인한 소련산 원유도입의 격감 등으로 전년도 보다 약 25% 감소된 189만톤으로 추정된다(정유시설능력은 연간 약 350만톤). 더욱이 1991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도 경화결제로의 전환요구로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으로는 서구로부터 설비를 도입해서 건설된 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남 안주)가 있는데, 이 공장은 승리화학과 봉화화학으로부터 나프사를 공급받아 요소비료, 폴리에틸렌, 에틸

최근 국별 원유도입 실적

(단위 : 만톤)

구 분	1989	1990	1991
구 소 련	50	44	4
중 국	114	110	110
이 란	92	98	75
리 비 아	4	—	—
합 계	260	252	189

렌그리콜, 아니론섬유(폴리에스텔 섬유), 펄프·종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 석탄액화에 의한 인조석유공장인 아오지화학공장에서는 연간 유연탄 100만톤을 처리하여 약 10만톤의 인조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마) 건재공업

북한에서의 건재공업이라 함은 “기본건설에 이용되는 시멘트, 철재, 목재, 벽돌을 비롯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물질적 생산부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멘트공업, 목재가공업, 금속건재공업, 요업건재공업, 화학건재공업, 유리건재공업, 돌건재공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철근, 형강, 판강 등의 압연건재는 금속공업에 속하며, 통나무는 임업부문이므로, 건재공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자재는 시멘트, 유리, 기타 내화물 등이다.¹²²⁾

북한의 시멘트공업은 일제 때 건설된 승호리, 2.8마동, 해주, 천내리, 8.2부래산, 고무산시멘트공장과 1970년대 후반에 완공된 순천시멘트공장, 1989년 4월에 완공된 상원시멘트공장 등 9개의 주요공장과 80여개의 중소규모 시멘트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는 그 산하에 연산 1,000만톤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주요 공장별 생산능력을 보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3백만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200만톤, 2.8시멘트연합기업소 160만톤, 해주시멘트공장 100만톤, 천내리시멘트연합기업소 80만톤, 승호리시멘트공장 95만톤, 8.2시멘트공장 60만톤, 고무산시멘트공장

122) 『경제사전』 1권, p.75.

42만톤, 부래산시멘트공장 30만톤 등이다. 이중에서 순천시멘트 공장의 생산품은 다른 공장제품과 구별해서 『금강』이란 상표로 동남아, 중근동지방에 수출되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북한의 시멘트 생산목표는 2,200만톤이다.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

(단위 : 천톤)

연 도	북 한 발 표 치	평 가 치
1978	10,560	7,700
1980	—	8,070
1985	—	9,040
1986	—	9,040
1987	—	9,040
1988	—	9,775
1989	13,500	11,775
1990	—	12,020
1991	—	12,020

* 출처 : ① 북한 발표치중 1978년은 『평양방송』, 1979. 2. 22.

② 1989년은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③ 평가치는 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각연도판.

북한에서 가장 큰 유리 생산공장으로 알려진 남포유리연합회사(구 남포판유리공장)는 판유리뿐 아니라, 광학유리, 방탄유리, 현미경과 쌍안경까지 만든다고 하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된 수준이며, 판유리의 국내 수요 충족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¹²³⁾

123) 이우홍, 『어둠의 공화국』(서울 : 통일일보사, 1990), pp212~221.

북한의 내화물공업은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단천 마그네샤크링카공장은 연산 200만톤 규모의 북한 최대 공장이다.

북한은 최근 도자기제품을 해외수출 전략 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자기공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주요 생산공장으로는 경성도자기연합회사, 문덕도자기공장, 안변요업공장 등이 있으며, 1990년 9월에는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산하에 7.6도자기공장을 새로 완공하였다.

벽돌 및 기와공장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평양벽돌, 순천벽돌, 강남벽돌공장 등 25개 공장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 최근 북한은 표면이 고르고 단단해 별도의 외장공사가 필요없고, 여러가지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실리카트벽돌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1989년도 현재의 연간 생산능력은 10억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¹²⁴⁾

(바) 경공업

북한의 산업정책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향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이 분야에만 국가예산을 집중투자함으로써, 경공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현상은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은 경공업의 발전이 주민들의 소비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

124)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다는 점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표면상으로는 경공업 발전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 김정일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8.3인민소비품증산 운동』, 1989년의 『경공업의 해』 설정과 당중앙위 전원회의의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제기, 『전국 경공업대회』 개최(1990. 6),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한 경공업 제품의 공급증대 모색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공업 발전에 관한 각종 운동 전개나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생활품 증산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투자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 예로 북한은 1989년도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1990년 국가예산결산이나 1991년도 국가예산상에서도 경공업부문에 재원을 증액 책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북한에서의 경공업제품 생산체계는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의 지방공업, 그리고 제품생산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부자재, 폐자재 활용으로 소위 『8.3인민소비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기업소의 생필품직장이나 작업반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주민생활품 생산은 지방행정기관 책임하에 중·소규모의 지방 경공업공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조달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경공업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 투자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군마다 평균 25개 이상의 지방 경공업공장이 가동중에 있다고 하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설비가 낙후하여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¹²⁵⁾

125) 위의 통신, 같은 날.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소비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최대 역점사업으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건설중에 있는 바(화학공업부문 참조), 현재 진행중인 제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의류를 비롯한 생필품 공급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과는 경공업상품 생산에 대한 중·장기 『조·소 경공업 협정』을 체결, 소련이 공급하는 원료로 각종 의류·신발 등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소련에 납품하고, 일부 제품은 노동력 제공대가로 북한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련의 체제붕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및 북한의 경공업 기술수준 낙후, 납기지연 속출 등으로 양국간 경공업분야 협조는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경공업분야중 섬유공업 실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섬유공업은 화학사(인견사와 화학섬유)와 모사, 면사를 혼방한 혼방직계열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공업이 발달하였다.

주요 화학섬유공장으로는 2.8비날론공장을 비롯하여 스프사계열의 청진화학섬유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그리고 연산 5만톤 규모의 순천비날론공장(건설 완료시 비날론 연산 10만톤 능력) 등이 있다.

주요 방직공장으로는 북한 최대의 종합방직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강계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개성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등이 있다. 1991년 중에는 평양종합방직공장과 개성방직공장에서 각각 방적직장, 정방직장의 능력확장 공사를 시작한 바 있으며, 황주직물공장은 1992년 2월 현대화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모방직계열은 함흥모방직, 신의주모방직공장 등이 있고, 견직계열로는 평양비단합영회사(평양공장, 박천공장), 영변견직, 함

홍건직공장 등이 있으며, 혜산아마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청천강합영회사(희천제사공장) 등도 중요한 섬유공장이다.

제3차 7개년계획에서의 섬유 및 직물 생산 목표는 화학섬유 22.5만톤, 직물 15억m이다.

북한의 직물 생산능력

(단위 : 백만m)

연 도	북 한 발 표 치	평 가 치
1976	580	580
1980	—	590
1985	—	600
1986	—	620
1987	—	640
1988	—	660
1989	—	680
1990	—	670
1991	—	670

* 출처 : ① 북한 발표치는 제6기 최고인민회의 보고(1977. 12)

② 1976~'91년 평가치는 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및 『북한경제종합평가』 각연도판.

(3) 사회간접자본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을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가를 돕고 인민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전력공업, 수송, 통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전 력

북한은 일제 때 건설된 수풍,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회령, 금강산발전소 등을 기초로 하여 1960년대까지는 수력의존적인 발전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는 강수량 차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심하고 송배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북한은 1970년대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도시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폐열이나 여열을 도시지역 주택의 난방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하고 있다.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은 시설용량 70만KVA의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운봉, 서두수, 허천강, 장진강, 강제청년, 부전강, 대동강, 태평만, 위원, 예성강 5호발전소, 태천발전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풍, 운봉, 태평만, 위원 등 4개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이용하고 있다. 태천수력은 북한이 수로를 역류시키는 『독특한 공법』에 의거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완공시 북한 최대 수력발전소(시설계획용량 : 80만KVA)가 될 것이며, 현재 부분 완공되어 조업(40만KVA)중에 있다.

1991년도 현재 북한이 신규로 건설중에 있는 수력발전소는 영원수력, 남강수력 등이 있으며, 능력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발전소로 위원수력(15만KVA→39KVA)¹²⁶⁾ 태천수력(40만KVA→80만KVA)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당중앙위 제5기 19차전원회의(1979. 12) 결정 이후 각 도별로 70~150여개의 건설목표를 정해 놓고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도 주력하고 있는 바, 1990년 1월 현재 총 693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이 완공, 전기를 생산중에

126) 위원발전소 확장공사는 1990년 11월 15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있다고 한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 160만KVA의 북창화력을 비롯하여 평양화력, 웅기화력, 청천강화력, 청진화력, 순천화력 등이 있으며, 1991년 현재 새로 건설중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12월화력, 평성화력, 동평양화력, 남포화력, 김책화력, 함흥화력 등이 있다. 평양·웅기·북창·청진화력은 소련 지원하에 건설된 것이며, 현재 공사중인 동평양화력 역시 소련 지원하에 착공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12월에 소련과 체결한 『원자력 건설에 관한 협정』에 의거 소련 지원하에 원자력발전소 (44만kw급 × 4기)를 1990년초부터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복합적인 이유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1991년말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714만kw로서 이중 수력이 429만kw, 화력이 285만kw로 추정된다.

북한의 발전 설비능력 및 발전 실적

연 도	발전설비능력(만kw)			발전량(억KWH)		
	계	수력	화력	계	수력	화력
1985	596.0			253.0		
1986	610.7			253.0		
1987	637.7	367.7	270.0	260.8	128.6	132.2
1988	690.2	405.2	285.0	278.9	140.7	138.2
1989	690.2	405.2	285.0	292.0	150.0	142.0
1990	714	429.0	285.0	277.4		
1991	714	429.0	285.0	263.0	150.3	112.7

* 출처 : ①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연도판.

② 1991년은 통일원, 『1991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새로 건설 또는 능력 확장중에 있는 수력, 화력발전소의 총시 설계획용량은 400~500만kw로 추정되나, 북한의 발전소 공기가 통상 5~10년이며, 북한의 현재 경제건설 능력이나 발전실적 등을 감안할 때,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의 전력 생산목표 1,000억kwh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력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먼저 수력발전소의 경우 산림 황폐화에 따른 수자원의 감소, 기존 수력발전소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가동율이 낮고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며,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주된 연료인 석탄 생산과 수송이 한계에 도달하여 발전소의 가동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송배전체계의 불합리로 누전율이 높고 전압이 고르지 못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 사정은 발전·송배전체계상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전력 사정이 호전될 가능성은 상당기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 2월 북한 최대의 전선생산 공장인 3.16공장 산하에 『수지고압케이블』 직장을 건설 완공함으로써, 7,000V 이상의 고압배전케이블을 전문생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수 송

북한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철도 및 도로망이 비교적 '지대가 낮은 서해안지대에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대에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다.

북한 수송체계의 특징은 철도수송이 주축을 이루고 도로수송, 하천 및 해상수송은 철도수송과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수송이 전체 물동량의 86% 수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객수송의 경우도 철도수송이

전체 교통인구의 6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철도망은 평양-신의주, 평양-혜산, 평양-남포, 평양-해주, 평양-만포, 평양-사리원-평산, 평양-지하리-원산, 평양-원산, 평양-나진·무산, 평양-만포-혜산을 주요 간선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철도수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차 7개년계획 이후 기존철도의 전기화, 광궤화와 함께 새로운 철도를 부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지역내에서 수송수단이 가장 취약한 북부지구의 자강도 만포에서 양강도 혜산을 연결하는 북부순환선(북부철길)을 완공(1988. 8)하여 운행중에 있다. 또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8축전기기관차와 100톤 화차 생산을 통한 철도의 중량화와 주요 간선철도망의 복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1년 중에는 해주-용진, 신강령-부포간 철도 확장공사와 온천-남동간 철도(80km)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동림-동천간 철도가 개통되었다.

1991년말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059km(그중 98%가 단선철도)로서 전철화 구간은 3,280km이며, 연도중 백암-유곡, 함흥-부전, 혜산-만포, 개천-순천, 평산-개천 등의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었다.¹²⁷⁾

도로망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사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포장으로서, 도로수송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도로 총연장은 1991년말 현재 23,000km이며, 이중 포장도로는 1,861km로서 약 8.1% 수준이다. 고속도로는 1992년 4월에 완공·개통된 평양-개성(170km)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평양-

127) 백암-유곡간 구간은 1991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남포(53km), 평양-원산(172km), 평양-순안(15km) 및 원산-금강산(114km) 등 총 524km에 달한다.

항만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년 20,000톤급 선박의 통과가 가능한 서해갑문(남포갑문)이 완공됨으로써 서해안의 해상수송능력은 물론 대동강, 재령강을 이용한 하천수송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항만하역능력은 1970년대까지는 기존시설의 복구 및 정비 등 현상유지에 그쳐 매우 빈약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외무역 증대 방침에 따라 주요 무역항인 청진, 남포, 해주, 송림항 등의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한 바 있어 해운무역수송량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1991년 말 현재 항만능력은 약 3,490만톤/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수송능력을 보면 북한 공군예하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민용항공국 통제하에 주기종 29대와 보조기종 35대 등 총 64대의 민항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선으로 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베를린, 평양-하바로프스크, 평양-모스크바-소피아구간 등 4개 정기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순수민간여행객이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여객을 위하여 평양-함흥-청진노선이 거의 매일 왕복 1회 운행되고 있으며, 기타 비정기 국내항공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의 비행장시설은 국제공항으로 순안비행장이 있으며, 국내선 운행을 위하여 순안, 원산, 선덕, 청진, 혜산, 삼지연, 순천, 과일 등 10여곳에 민용항공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항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92년에 들어와 일본과는 직항로개설에, 그리고 태국과는 정기항로 개설에 각각 합의하였다.

(다) 통 신

북한에서의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¹²⁸⁾ 따라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분류하는 통신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으로 부르고 있으며, “인민들의 통신 및 방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가지 체신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¹²⁹⁾

체신사업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 3대부문으로 분류되며, 정무원의 체신부를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북한의 통신부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능이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전파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송부문과 함께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리로 종적으로 연결된 중앙집중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도시간의 현대적 통신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바, UNDP의 지원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하에 1990~'91년 기간중 평양-함흥간 광섬유 통신망 설치 추진 등이 그 예이다.

국제통신망은 공산권과는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유선망이 형성되어 있고, 서방권과는 평양-싱가폴·홍콩간의 단파

128) 『백과전서』 제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29) 『경제사전』 2권, pp.514~515.

무선과 중국의 북경지구국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1986년 3월 평양 근교에 일본·프랑스 기술진의 참여로 위성통신지국이 건설되어 위성통신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텔렉스시설은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서독으로부터 텔레타이프를 도입해 지방의 관공서와 주요 기업소, 무역상사 등 무역관계기관에 설치하는 등 텔렉스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8월 정지위성과 궤도위성으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기상수문국 기상위성 수신소를 준공함으로써 보다 신속 정확한 중장기 기상예보가 가능케 되었다.¹³⁰⁾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감소 및 해상, 항공운수의 안전운항은 물론 해양의 기류분석으로 어족자원의 분포실태 파악 등 농수산업 분야에서 기상예보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라.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1) 대외무역

(가) 대외무역정책

북한은 대외무역정책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원칙하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의 통일적인 통제 밑에 해당기관이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국가 단일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국내경제의 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변천과정을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130) 『평양방송』, 1990. 8. 27.

있다. 1950년대에는 대외무역이 다만 자립적 민족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소로부터의 원조 삭감과 군사·경제 병진정책 추진에 따라 종래의 폐쇄적 내지는 소극적 대외무역정책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들어와서 대내적으로는 6개년계획이 착수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가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이전에 받았던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화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성은행』과 『금강은행』 등을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¹³¹⁾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노동당 6차대회(1980. 10),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1984. 1) 등에서 자본주의국가 또는 제3세계국가와의 교역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침들을 제시하면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여 오고 있다.¹³²⁾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변화는 제3차 7개년계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계획기간중 무역을 계획전에 비해 3.2배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3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모스크바: 소련과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1985)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204~208.

132) 제6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7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나) 무역업무 담당기구

북한은 그들의 대외무역정책에 따라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를 정무원내에 두고 있으며, 이들 중앙기관의 통일적인 감독과 지도하에 실제로 무역업무를 집행하는 각종 산하기관을 중앙이나 지방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먼저 정무원내의 기구로서, 각 생산부문별 계획과의 연계하에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정책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업무를 전담하는 무역부가 있으며, 외국의 투자유치, 기술도입, 시장개척 등을 담당하는 대외경제사업부, 경제분야 외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외경제위원회 등이 있다.

실제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며 필요한 정보나 금융, 기타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업무 집행기관으로는 통신·품질검사·보험·운송 등을 담당하는 세관검사국, 수출입검사국, 국제보험회사, 대외운수회사 등이 있으며, 100여개의 무역상사와 독자적인 무역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각종 공장·기업소, 국제금융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은행·금강은행·대성은행·조선락원금융합영회사·조선합영은행 등이 있다.

(다) 거래형태와 결제방법

북한의 무역거래 형태는 교역상대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즉 구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제국과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쌍방간의 장기무역협정을 통해 매년 수출입 품목, 규모 등을 결정하는 한편, 1년간의 교역결과에 대해서는 쌍방의 결제은행간에 청산결제를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동구 사회주의 제국은 물론, 구 소련·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견지해 왔던 주요 교역상대국마저 경

제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나라와의 무역거래 형태 및 결제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북한·구 소련간에 1990년 11월 『조·소 무역결제산체계 변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에 1991년부터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중국간에도 1992년부터 이와같은 결제방식을 적용기로 합의하였다.¹³³⁾

한편, 서방권 국가와의 무역은 교역절차나 대금결제방식에서 자본주의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본주의국가에서와는 달리 북한 원화와 결제통화간의 환율이 수출거래 성립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원칙에 따라 수출품의 가격이 당해 제품의 생산비나 수익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외화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 대외무역 현황

북한은 다른 경제통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대외무역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까지의 북한 무역통계는 무역상대국이 발표하는 무역통계자료, 기타 국내외의 북한경제 전문 연구기관이나 정보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무역상대국은 1991년 현재 60여개국이며, 무역 총규모는 27.2억불로서 국민총생산(GNP)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133) 1992년 1월 26일, 평양에서 『1992년도 조·중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연도별 무역추세를 보면, 1950~60년대에는 무역규모가 꾸준하고도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980년도의 수출·수입액은 1970년도 수출·수입액에 비해 각각 4.8배, 3.9배 증가하였다.

북한의 연도별 무역추이

(단위 : 미화 억불)

구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수출	13.1	15.1	16.5	20.3	19.1	19.6	10.1
수입	17.9	20.6	25.0	32.1	28.9	28.1	17.1
계	31.0	35.7	41.5	52.4	48.0	47.7	27.2
증감율	-	15.2%	16.2%	26.3%	△8.4%	△0.6%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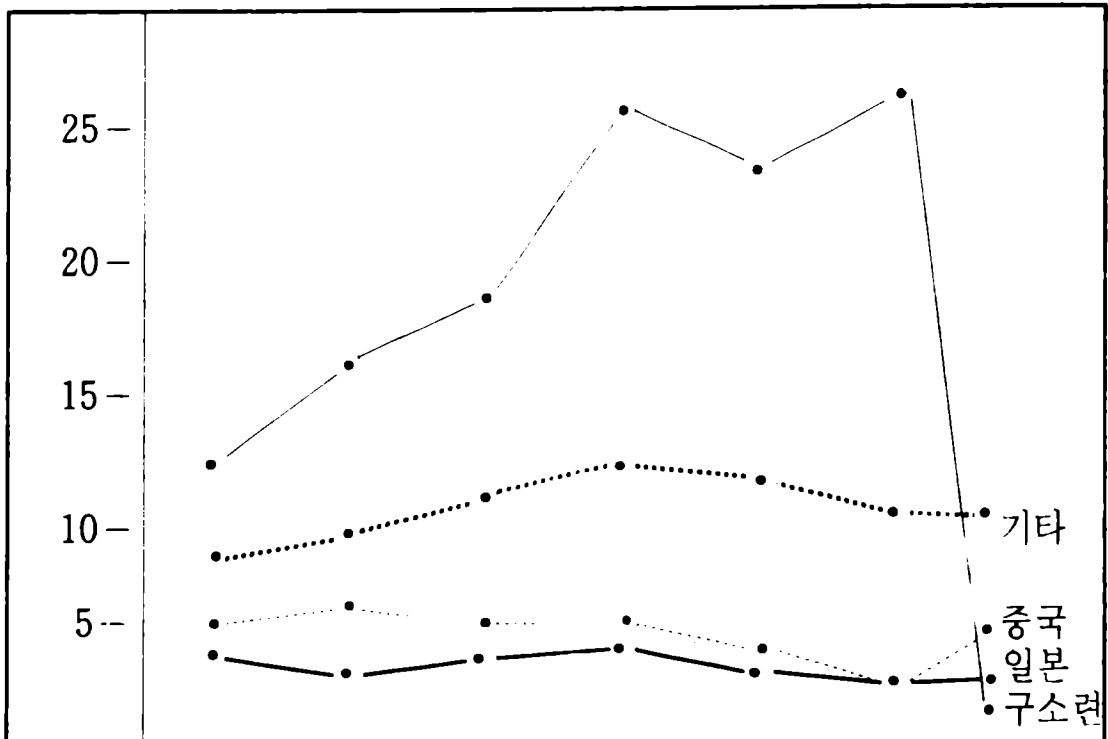
그러나 1980년대 전반기중에는 대서방권 외채상환문제와 북한의 주종 수출품인 광산물의 가격 폭락, 외화부족 등으로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인 결과 1985년도의 수출액은 1980년도 대비 무려 26.6%나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1% 감소하였다. 이 기간중에 북한의 수출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대서방권 수출의 격감(45.3%)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6~'88년' 기간중의 무역규모는 매년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1988년을 고비로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7월의 『7·7 특별선언』 및 동년 10월의 남북한 물자 교역지침 시행 이후 1992년 3월말까지 총 590건, 1억 6,810만 불이었다.

주요 대상국가별 교역량 변화추이

(단위 : 미화 억불)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구소련	13.1	16.9	19.5	26.4	23.9	25.7	4.7
(수출)	(5.0)	(6.3)	(6.8)	(8.9)	(8.9)	(10.5)	(1.9)
(수입)	(8.1)	(10.6)	(12.7)	(17.5)	(15.0)	(15.2)	(2.8)
중 국	5.1	5.5	5.2	5.8	5.6	4.8	6.2
(수출)	(2.7)	(2.9)	(2.4)	(2.3)	(1.8)	(1.2)	(0.9)
(수입)	(2.4)	(2.6)	(2.8)	(3.5)	(3.8)	(3.6)	(5.3)
일 본	4.3	3.5	4.5	5.6	5.0	4.8	5.0
(수출)	(1.8)	(1.7)	(2.4)	(3.2)	(3.0)	(3.0)	(2.8)
(수입)	(2.5)	(1.8)	(2.1)	(2.4)	(2.0)	(1.8)	(2.2)
기 타	8.5	9.8	12.3	14.6	13.5	12.4	11.3
(수출)	(3.6)	(4.2)	(4.9)	(5.9)	(5.4)	(4.9)	(4.5)
(수입)	(4.9)	(5.6)	(7.4)	(8.7)	(8.1)	(7.5)	(6.8)

남북간 연도별 반출입 통관현황 (1988. 10~'92. 3)

구분	연 도		건수	상사수	품목수	금액(천 \$)	
반 입	'89		66	55	55	18,655	
	'90		78	60	60	12,278	
	'91	1/4	48	35	30	13,583	
		2/4	69	46	41	26,602	
		3/4	84	48	41	38,339	
		4/4	99	55	41	27,198	
		소계	300	184	153	105,722	
	'92	1	53	21	20	10,564	
		2	20	16	12	4,112	
		3	31	18	19	6,582	
		소계	104	55	51	21,258	
	합 계		548	354	319	157,913	
	반 출	'89		1	1	1	69
		'90		4	3	6	1,187
'91		2/4	2	2	2	1,448	
		3/4	1	1	1	1,607	
		4/4	20	13	18	2,492	
		소계	23	16	21	5,547	
'92		1	3	3	1	890	
		2	2	2	2	308	
		3	9	4	3	2,186	
		소계	14	9	6	3,384	
합 계		42	29	34	10,187		
총 계		590	383	353	168,100		

이중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총 548건에 1억 5,791만불이며, 반출은 29건에 1,102만불로서 대북한 교역은 반입 위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간의 교역은 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제 3국을 중개지로 하는 간접무역방식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남북한간 반출입 실적은 이들 중개국과의 수출입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한 반입(반출)실적은 북한의 무역통계상 중개국에 대한 수출(수입)실적에 포함되는데, 1991년도 북한 교역 총액 중에서 남한과의 간접교역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약 4.1% 정도이며, 1991년도 이후 남북한간의 교역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합영기업

합영기업이란 “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¹³⁴⁾ 이와 같이 합영기업은 국제간 경제합작의 한 형태이나 기업의 경영과 손실에 대하여 출자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기업이윤을 공동분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의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 기업소가 북한 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34) 『경제사전』 2권, p. 570.

북한이 이와같이 합영기업 유치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야기된 외채문제로 서방국가로부터의 외자도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채무상환 부담이 없는 새로운 외자유치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1979년 8월에 중국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 시행한데 자극받은 바 크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에 합영법 시행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외국인 소득세법 시행세칙 등을 제정한 바 있으며, 1986년 8월에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주선, 조정,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불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이후 조총련계 기업을 비롯하여 외국기업과 북한내에 유치하기로 합의한 합영·합작 계약건수는 전자, 기계, 화학, 전자, 방직, 의류, 식품 등 각 분야에 걸쳐 총 140여건¹³⁵⁾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합영·합작 기업의 약 75%가 조총련계 기업으로서 출자규모가 대부분 100만불 내외의 소규모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업중에 있는 기업은 60여개 안팎으로써 모란봉합영회사, 평양피아노합영회사, 국제화학합영회사 등 일부 대표적인 합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합영기업들의 운영이 부진한 상태이다.

북한의 합영기업 유치 또는 해외진출정책은 조총련 및 소련과의 관계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화부족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나마도 1989년도를 고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후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135) 『조선신보』, 1991. 12. 9.

와해되고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북한은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데 이어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투자관련법 즉,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등을 발표하였다.

(3) 대외원조 및 외채

해방 이후 북한은 무상원조 12.8억달러, 유상원조 34.7억달러 등 총 47.5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들여와 전후복구사업, 군사력증강, 경제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이중 20.4억달러 (전체의 43%)는 1960년대 이전에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도입된 유·무상 차관이었으며, 12.4억달러는 1970년대 들어와서 서방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유상차관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1970년대 후반부터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주로 구소련·중국 등에서 약간의 차관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구소련은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약 1억불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종래 군사장비, 원유 등의 거래에 적용해 오던 소위 『우호가격제도』를 폐지키로 한 바 있어 현물성 원조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또는 유엔공업기구(UNIDO)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UNDP와는 1979년 6월 북한이 동기구에 가입한 이래 1단계 사업으로 1980~'86년간 농·수산업, 수송, 통신, 공업분야의 기술 및 연구를 위하여 2,050만불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2단계사업(1987~'91)으로 연간 보건, 공업,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1,514만달러를 제공받기로 합의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대외경제 협조관계와 대외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북한의 외채는 1991년 현재 92.8억불에 달한다.

북한의 수원 및 차관도입 현황

(단위 : 만달러)

기 간	합 계	소 련	중 국	기타공산권	OECD국
1949년 이전	5,300	5,300	-	-	-
1950~'60년	165,336	71,325	50,850	43,161	-
1961~'69년	33,668	19,668	10,500	3,500	-
1970년	9,000	8,700	-	-	300
1971년	26,700	25,000	-	-	1,700
1972년	35,400	15,000	-	-	20,400
1973년	48,400	10,900	-	-	37,500
1974년	52,000	12,000	-	-	40,000
1975년	42,900	18,600	-	-	24,300
1976년	560	400	160	-	-
1978~'84년	55,585	29,625	25,870	-	-
총 계	474,849	216,518	87,380	46,661	124,200

* 출처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7. 과학기술 정책

가. 정책기조

199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27조에는 “국가는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1조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정리하면, ① 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②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계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②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 ③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없앤다는 3대기술혁명 사업의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는 과학연구사업의 결과를 직접 생산기술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제건설과 생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자들과 생산노동자들이 협조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대중적 지혜의 발양과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및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선진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의 연구인력과 독자적인 이론개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며, 연구사업의 중점과업도 국내 원료·연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우선을 두는 것이다.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1) 제1단계(1945~53) : 정비기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그들이 추진해온 경제계획 기간별 목표와 범위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기간중의 북한 과학기술정책은 일제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국내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배치하는데 목표를 두었다.¹³⁶⁾

북한은 1946년 8월 1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및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지령을 통해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 및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서 북한은 당시 전문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기술자는 국적 여하

136)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4권 (서울 : 대륙연구소, 1990), p232.

7. 과학기술 정책

가. 정책기조

199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27조에는 “국가는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1조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정리하면, ① 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②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계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②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 ③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없앤다는 3대기술혁명 사업의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는 과학연구사업의 결과를 직접 생산기술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제건설과 생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자들과 생산노동자들이 협조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대중적 지혜의 발양과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및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선진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의 연구인력과 독자적인 이론개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며, 연구사업의 중점과업도 국내 원료·연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1) 제1단계(1945~53) : 정비기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그들이 추진해온 경제계획 기간별 목표와 범위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기간중의 북한 과학기술정책은 일제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국내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배치하는데 목표를 두었다.¹³⁶⁾

북한은 1946년 8월 1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및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지령을 통해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 및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서 북한은 당시 전문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기술자는 국적 여하

136)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4권 (서울 : 대륙연구소, 1990), p.232.

를 불문하고 기술이 소용되는 기관에서 종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년 8월까지 조사등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국영직장에 배치하였다.

동년 10월 2일에는 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89호로 『공업기술자 사정과 검정규정』을 발표하였다.

공업기술자 사정과 검정규정에서는 당시 공업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크게 기사와 기수 2종으로 분류하고 기사는 다시 고급기사 2등급으로, 기수는 1급·2급·3급으로 기술등급을 구분 관리하였다.¹³⁷⁾

다음해인 1947년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에 착수하여 1947년 2월 7일에는 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181호를 발표, 중앙연구소를 설치하였다.¹³⁸⁾

당시 중앙연구소 구성은 지질학·광업·금속·화학·섬유·기계·전기·서무 등 8개부로 조직하였다.

동년 6월 20일에는 인민위원회 결정 제44호인 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서는 “파행적인 일제 식민지적 경제조직을 숙청하고 자주적인 인민경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기술의 획득과 기술자의 확보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기본 임무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기술교육의 강화, 전문 기술교육자의 이직 금지, 기술전문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실험기구·기계자료·실습장 등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에 착수토록 하였다.¹³⁹⁾

다음해인 1948년 11월 12일에는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137) 위의 책, pp.234~236.

138) 위의 책, p.242.

139) 위의 책, pp.243~244.

의해 설치하였던 국가기술자격 검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내각결정 제71호에 의해 신설하고 기술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¹⁴⁰⁾

전쟁기간중인 1952년 2월 28일에는 내각결정 제38호에 의해 교육성 산하에 있던 각종 기술전문학교들을 관련 성과 내각직속국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산학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전쟁수행과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52년 4월 27일에는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제1회 전국과학자대회를 소집하고 토의 결과에 따라 동년 5월 7일에는 내각결정 제86호로 과학아카데미를 설치하였다.¹⁴¹⁾

과학아카데미의 창설 목적은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교통·운수·체신 등 시설 복구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과학연구사업을 통일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창설된 과학아카데미는 동년 10월 9일 또다시 내각결정 제183호인 과학원 설립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과학원 조직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¹⁴²⁾

(2) 제2단계(1954~'60) : 공업기술 집중도입기

이 기간은 북한이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을 추진한 기간이다.

140) 위의 책, p237.

141) 위의 책, p228, 『과학아카데미』의 실제 창립일은 1952년 8월 15일임.

142) 위의 책, p229.

기간중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지원과 함께 기술협조를 획득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전후복구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동독, 체코, 불가리아, 중국,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과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와 과학기술자의 상호 교환을 통해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전후복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1956년 3월 26일 소련과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59년 9월 7일에는 『조·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자력 연구의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고 60년대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인민경제 전부문에서 기술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둘째,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동년 11월 30일에는 과학원 직제 변경을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3) 제3단계(1961~70) : 기술혁신기(중공업 중심)

이 기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과 그 연장기에 해당하며 중공업 우선정책과 4대군사노선이 강화된 시기이다.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북한은 짧은 기간내에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자원에 입각한 자립적 공업체제 확립에 과학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과학분야의 개척과 원자력을 비롯한 최신 과학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수행, 기초과학부문의 적극적인 발전 추구하고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¹⁴³⁾

과학기술 연구의 세부목표는 첫째, 무연탄에 의한 제철방법 연구, 둘째, 무연탄 가스화에 대한 연구, 셋째, 산소열법에 의한 카바이트 생산방법 및 갈탄의 고온 건류와 같은 과제의 완전 해결, 넷째, 방사선·초음파·고주파 등의 연구 및 이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다섯째,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 연구 강화, 여섯째, 기간중 46만명의 기수 및 중등전문가와 18만명의 기사 및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당대회 개최 직전인 1961년 7월 28일에 북한은 『기술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시킬데 대하여』 내각 결정 제127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는 첫째, 교수·교양사업에 필요한 교과서·교재 및 출판사업을 뒷받침하는 문제, 둘째, 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과 실습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셋째, 대학교원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들을 공장·기업소에 파견하여 실습을 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¹⁴⁴⁾

북한은 『4차 로동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과학기술발전 목표에 따라 1962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조직·지도기관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¹⁴⁵⁾

이 기간중 북한은 과학자·기술자의 대량 양성을 위해 40개의 4년제 공장대학을 북한 각 지역의 대규모 공장·기업소내에 새로이

143)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참조.

144) 대륙연구소, 앞의 책, pp.248~252.

145)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1966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부설하였으며¹⁴⁶⁾ 대학 부속의 연구소들을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고급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1961년에는 박사원을 증설하였고, 1964년부터는 학사(석사)양성기관인 연구원의 연한을 종래의 3년에서 2~4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1963년 12월 1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과학상을 제정하였는데 수상 대상은 “과학적 조작과 인민경제에 도입된 특출한 발명 및 연구성과로서 나라의 자립경제 건설과 기술, 문화혁명의 수행 및 과학발전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 연구부문에서는 1950년대 말에 체결된 『조·소 원자력협정』에 기초하여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원자력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65년 6월에는 동 연구센터에 1,000kw급 실험용 원자로 1기를 설치, 본격적인 원자력 연구에 착수하였다.

(4) 제4단계(1971~77) : 3대기술혁명기

이 기간은 6개년계획과 그 조정기에 해당한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6개년계획 기간중 기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인민경제 전반에 걸쳐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김일성 총화보고는 '60년대중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를 전반적인 9년제 과학기술 의무교육의 실시 및 과학기술 교육기관의 확충으로 기사·기수 및 전문가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각종 경제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언

146) 40개 공장대학중 24개는 1960년대 말에 신설하였다.

급하였다.

한편 1971년부터 시작될 6개년계획기간중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낙후된 각종 산업생산기술의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제시하였다.¹⁴⁷⁾

특히 1972년 12월에는 『자연과학부문 일군대회』를 소집하고 김일성은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사회과학과 사상사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6개년계획기간중 과학연구사업은 금속·화학공업 부문의 자재와 설비의 질을 제고시키며, 특히 석유화학에 기초한 유기합성공업과 알미늄 등 경금속기지 창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원자력, 전자공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분야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목표에 따라 북한은 기간중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혁명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과학기술부문에서도 각종 칭호를 제정하는 등 상훈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1970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한 바 있고, 1972년 2월에는 『공훈기계제작 칭호』를, 1973년 7월과 9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각각 『새 기술혁신 봉화상』과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칭호』를 제정하였다.¹⁴⁸⁾

147)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참조.

148)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1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p448.

기술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기간중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를 6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또한 전후복구가 완료된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제국의 대북 경제지원 감소와 기술협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6개년계획기간중 서방제국으로부터 설비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5) 제5단계(1978~'86) : 3대정책(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추진기

이 기간은 북한이 2차 7개년계획의 추진과 2년간의 조정기에 해당한다.

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과 “기술혁명을 심화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에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의 발전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세부 목표를 보면 첫째,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연료 및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사업의 추진, 둘째, 북한실정에 맞는 능률적이며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창안·제작하기 위한 기계공학의 연구발전, 셋째, 벼·옥수수 등 곡물과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연구, 넷째, 과학연구 여건 강화 등이다.¹⁴⁹⁾

149)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4집 참조.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1978년 2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분야별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 『과학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생산 및 건설 현장에 이들을 파견하고 기술혁신 운동 등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6) 제6단계(1987~현재) : 첨단과학기술 육성기

북한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중의 과학기술정책은 사실상 2차 7개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1980년대 중반까지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주체성이 강조된 결과 기술 낙후가 심화됨으로써 3차 7개년계획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첨단산업부문에 관심을 돌린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이다.

1987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회의는 2차 7개년 계획기간중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가 실현되는 등 생산기술 공정과 생산방법 개선에 제기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3차 7개년계획기간중에는 과학기술의 고도발전을 기본 과업의 하나로 내세워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면적인 기술개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 국민소득의 3~4%를 과학연구사업 강화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기술개조와 함께 극소형 전자계산기, 광섬유통신, 생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8.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계

가. 과학기술 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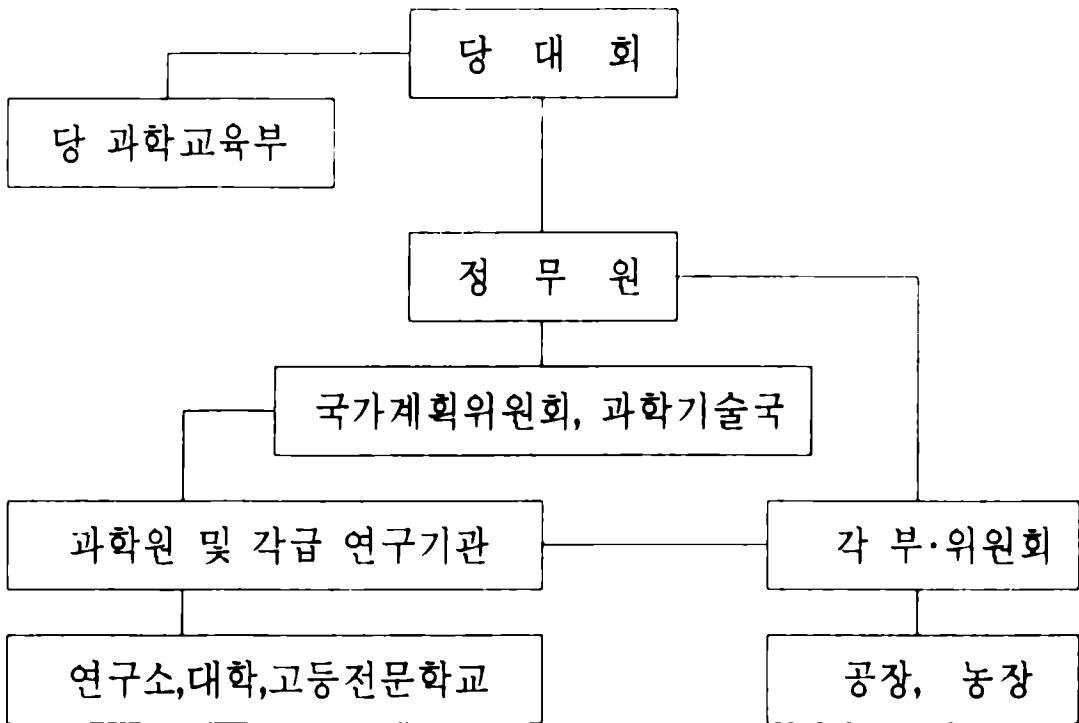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심의 발전된 기본정책이 노동당대회에서 결정 발표되면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계획국에서 경제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되어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 부·위원회에 시달된다.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각 부문 위원회별로 수립하여 연구소,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달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한편 각 부·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하여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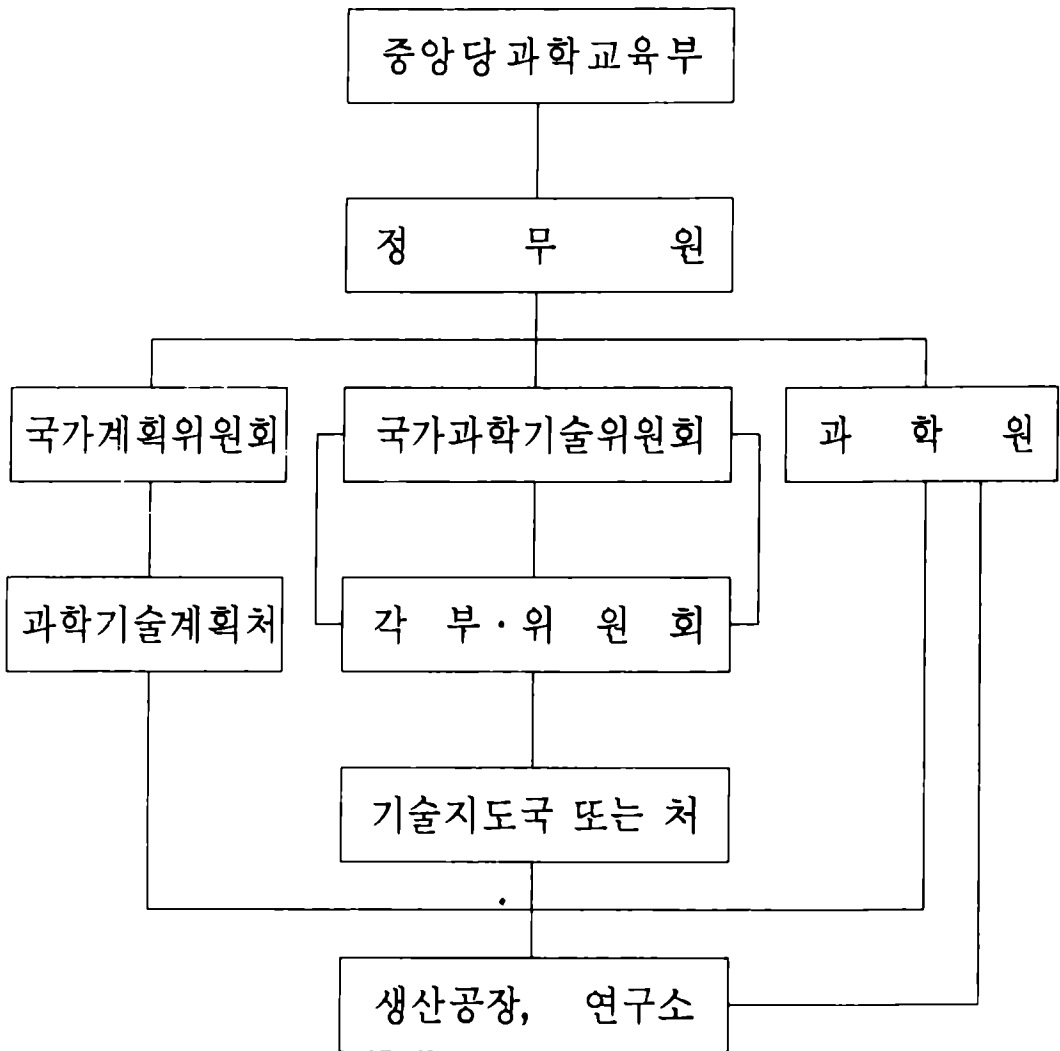
북한의 과학기술 기본체계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수립 체제나 계획, 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으며, 정책내용도 국가 경제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기술개발에 치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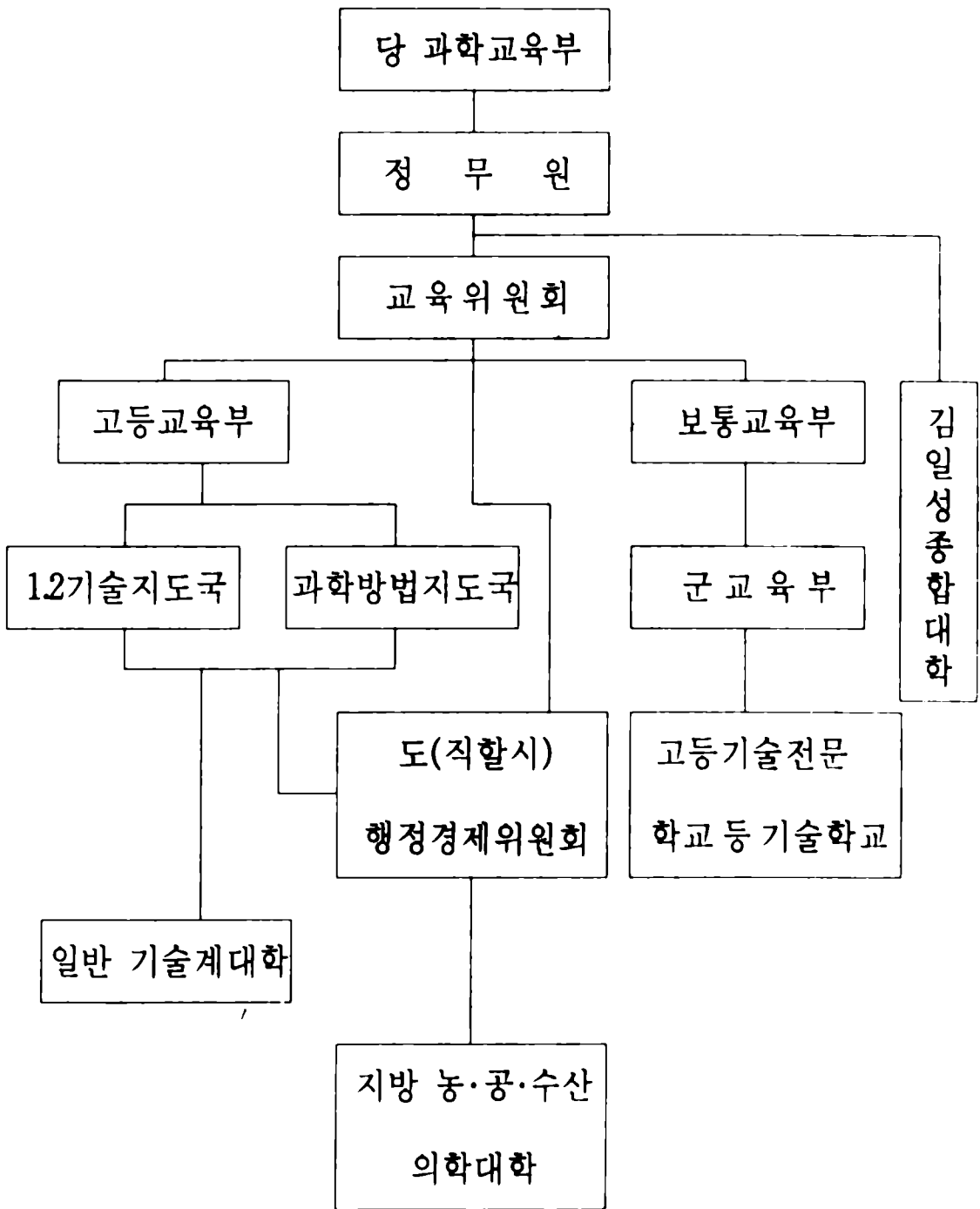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관련 부서는 세분화되어 있고 가변적인 것이 특징이나 각 행정부서내의 기술관련 부처만은 존립시켜 각종 생산 및 운용분야의 기술지도는 물론 품질감독, 신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중앙기술행정체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중앙 기술행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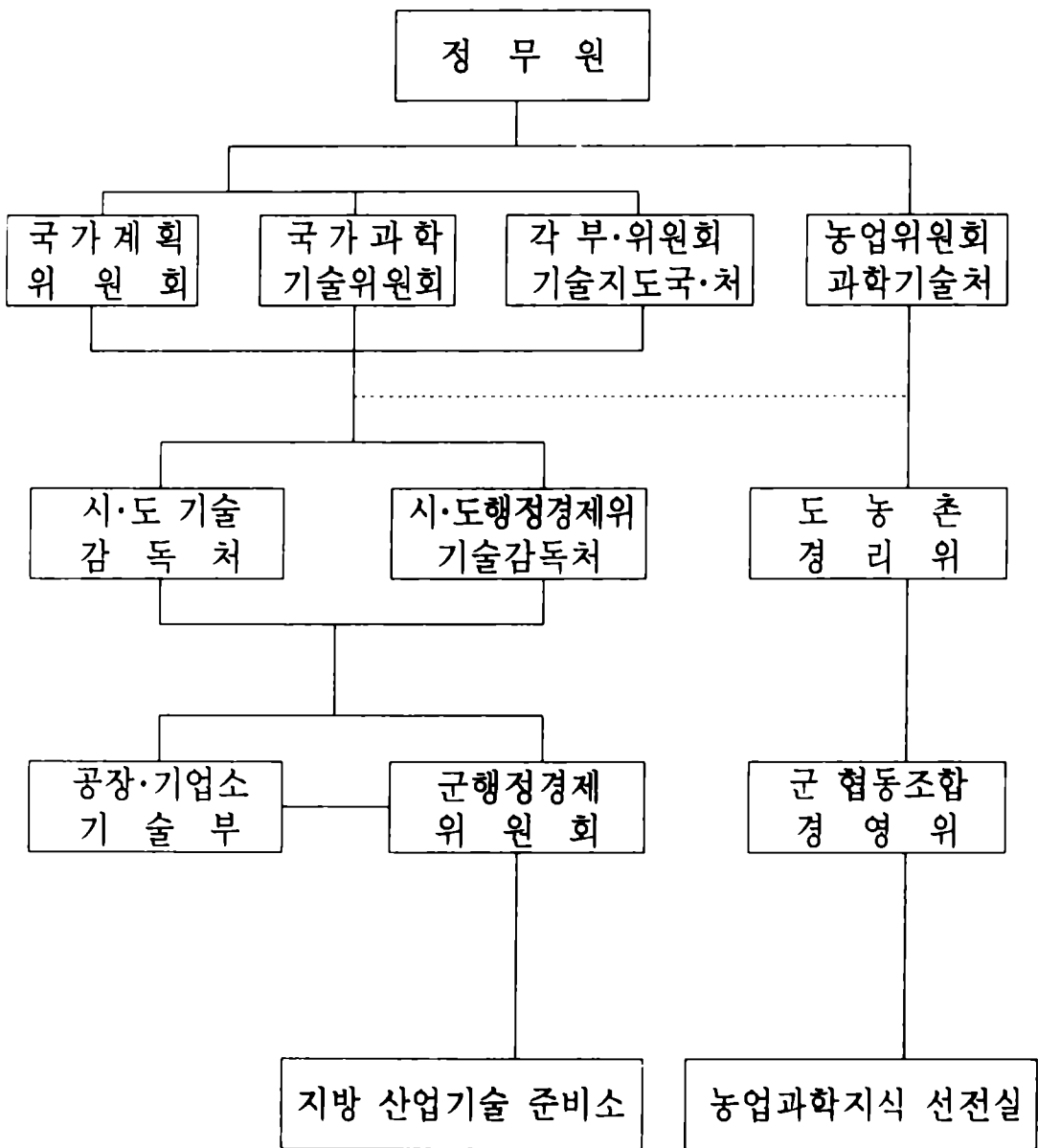
중앙당 과학교육부는 과학기술연구, 기술지도, 기술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며, 여기서 결정된 과학기술정책은 도 및 시의 당 과학교육부로 하달되어 당지도체제를 이루는 한편 정무원내의 계획 및 집행부서로 하달된다.

기술교육 행정체계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기술계획처는 정무원내에서의 과학기술 계획부서로 여기서는 중앙당 과학교육부에서 하달된 내용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각 행정부서의 기술 지도국이나 처로 전달된다.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 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지방 기술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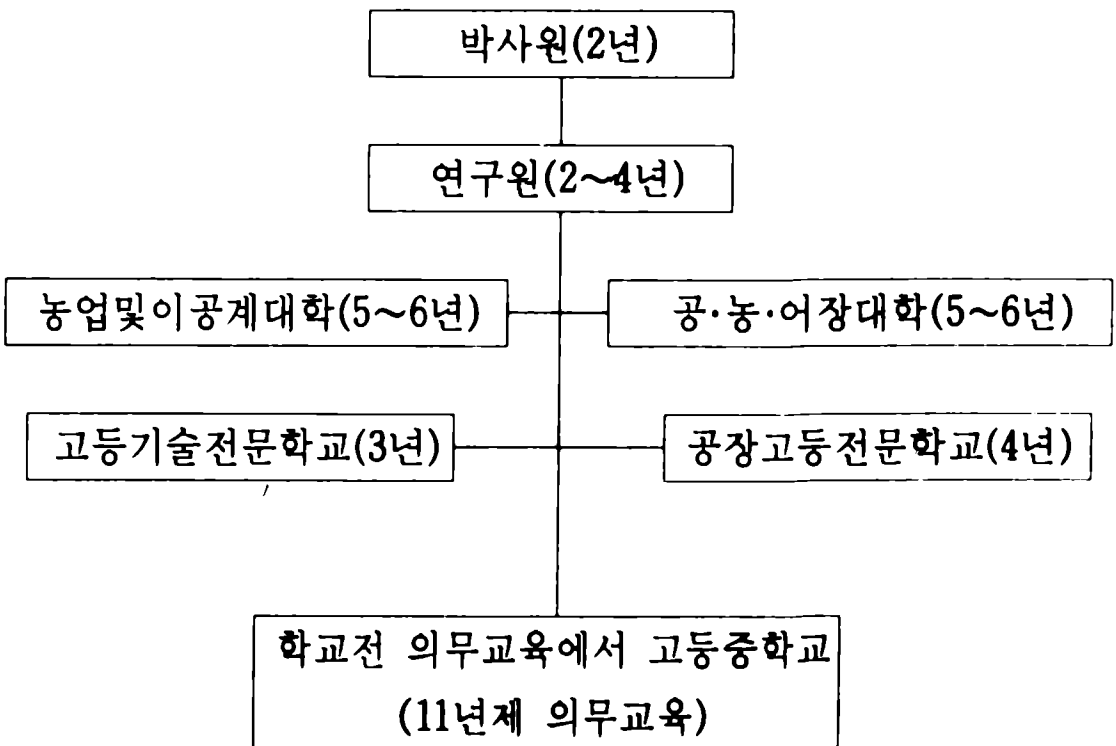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북한 과학기술의 개발정책, 기술도입, 기술통보 및 각 분야의 생산기술에 대한 지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에 기술자문과 문제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학원은 국가의 기술정책에 의거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품질감독위원회나 국가기술감독위원회, 국가기술검정위원회 등은 행정부서에서의 지시사항이나 생산과정, 생산제품에 대한 기술감독 및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검정을 담당한다.

지방기술행정은 주로 도와 시에서부터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과 공업, 농업, 수산업 등의 기술보급체계를 말하며 그 체계는 앞의 그림과 같다.

과학기술 교육체제



중앙기술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정책과 세부지침, 시행요령 등은 각 부, 위원회마다 도·시의 행정경제위원회, 기술감독처에 하달되며 이러한 방침은 직접적으로 지방 공장, 기업소의 기술부에 전달된다.

한편 농업위원회의 과학기술처는 농업과학원의 연구내용과 행정적인 계획을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거쳐 각 협동농장과 농업과학지식 선전실로 지시하여 추진한다.

나.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제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체제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규교육과정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2~3년제 고등전문학교, 3~4년제 단과대학, 4~6년제 대학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입학시켜 인민경제 각 부문의 현장 기술간부·전문가·기술자 등으로 교육시키고 있다.¹⁵⁰⁾

또한 교육 및 과학부문의 중간 핵심간부 후보를 육성하는 기관으로는 연구원(2~4년)과 박사원(2년)이 있다.

비정규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근로자고등중학교나 공장고등전문학교, 또는 공장대학과 각 대학의 통신 및 『정시제교육망』에서 생산과 사무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는 체계이다.

현재 북한에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가 있고, 각 도에도 1개 이상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따라서 1987년 현재 북한의 기술자·전문가 수는 질적 수준

150) 방완주, 『조선개관』 문화편 참조(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88)

은 낮다고 하더라도 총 131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인민경제 각 부문 종업원 총수중에서 기술자와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6년에 19.2%에 달하고 협동농장당 기술자, 전문가의 수도 1982년 현재 57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¹⁵¹⁾

북한의 고급기술자 및 과학자의 양성기관은 김책공업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체신대학 등 16개의 공업대학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업지역에 분산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극히 전문화된 공업학과만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공업대학은 소재지역의 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산·학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박사원과 연구원은 각각 박사과정과 학사과정(한국의 석사과정)을 가지며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원 산하 연구소내에도 설치되어 있다.

연구원은 대학졸업 후 학사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2년, 통과하지 못하면 4년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박사원은 대학교원,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 연구소의 고급연구원 등 고급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61년 3월 『내각 결정 제124호』에 의거 설치되었는데 연구원과는 달리 통신연구생은 없고 전임연구생만 모집하고 있다.

박사원 및 연구원의 입학자격은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어 있고 혁명과업수행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중에서 선발된다. 박사원에는 학사학위 및 학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자이고, 연구원에는 3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151) 위의 책, 문화편 참조.

자로 하고 있다.

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밟으려면 박사원 및 연구원에 입적하여야 하나 교육방법은 강의를 통한 방법은 채택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연구를 수행하고 나면 그 논문이나 학적의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연구과정은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북한의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은 과학원, 경공업과학원,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국방과학원, 원자력연구단지, 각 대학 연구소와 각 부·위원회 산하 연구소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소는 연구실과 실험실 및 중간 실험공장 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수는 약 300여개로 추신되며 확인된 것은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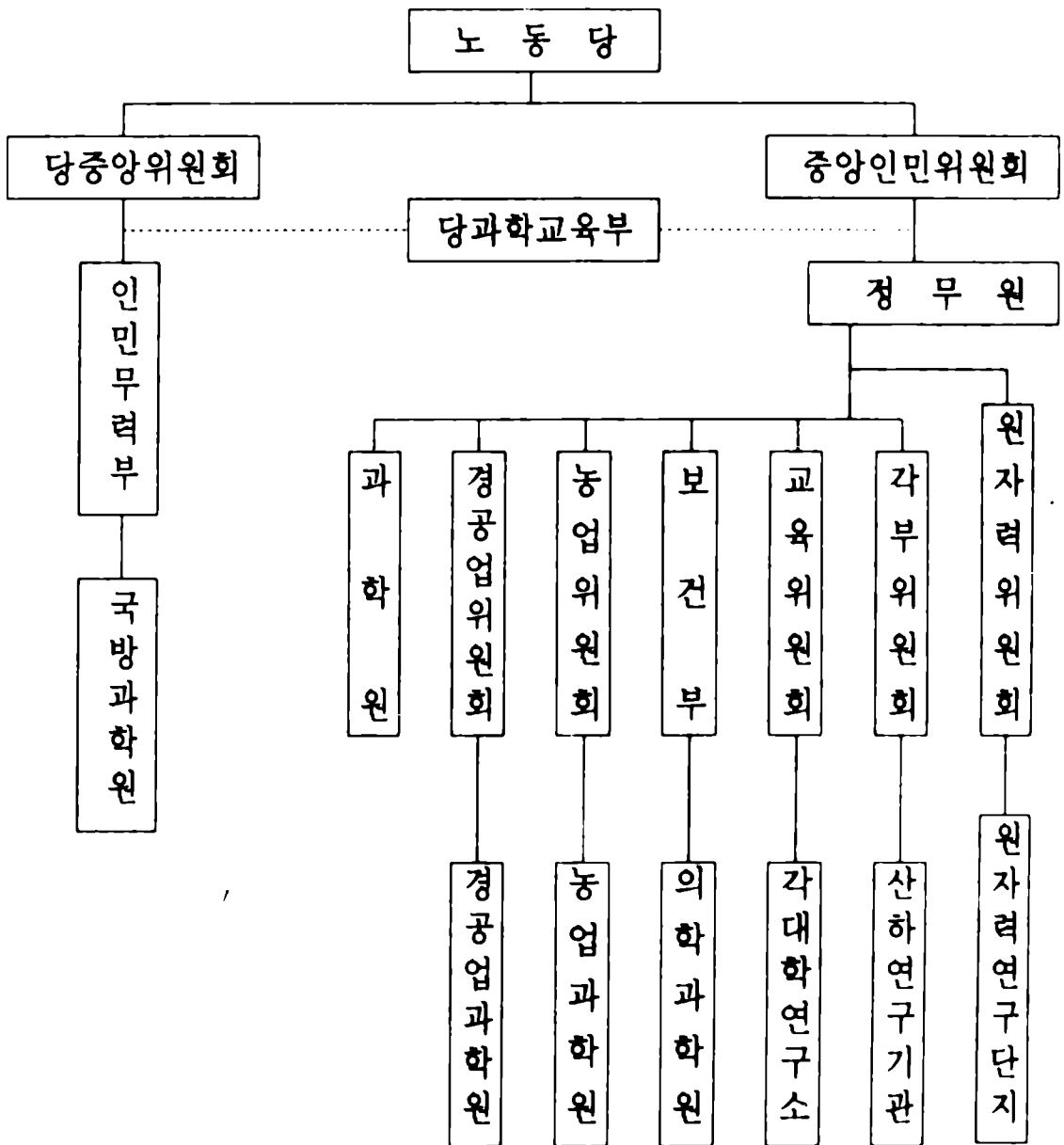
과학원은 북한의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1982년 4월 정무원의 행정부서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학원의 기구로는 과학기술지도국과 8개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41개의 연구소, 11개의 분원 및 그 산하에 29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1952년 3월 농업성 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연구과학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과학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 8월 다시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본원의 기구는 과학지도국 외에 3개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에 36개의 연구소, 14개의 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1개의 종축장과 수의의약품 중

합체조소가 있다. 농업과학원의 기능과 농업에 관계되는 작물재배, 육종 등 농업 전분야에 걸쳐 연구하며 특히 농업기계화연구소는 농업기계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과학원의 체계는 다음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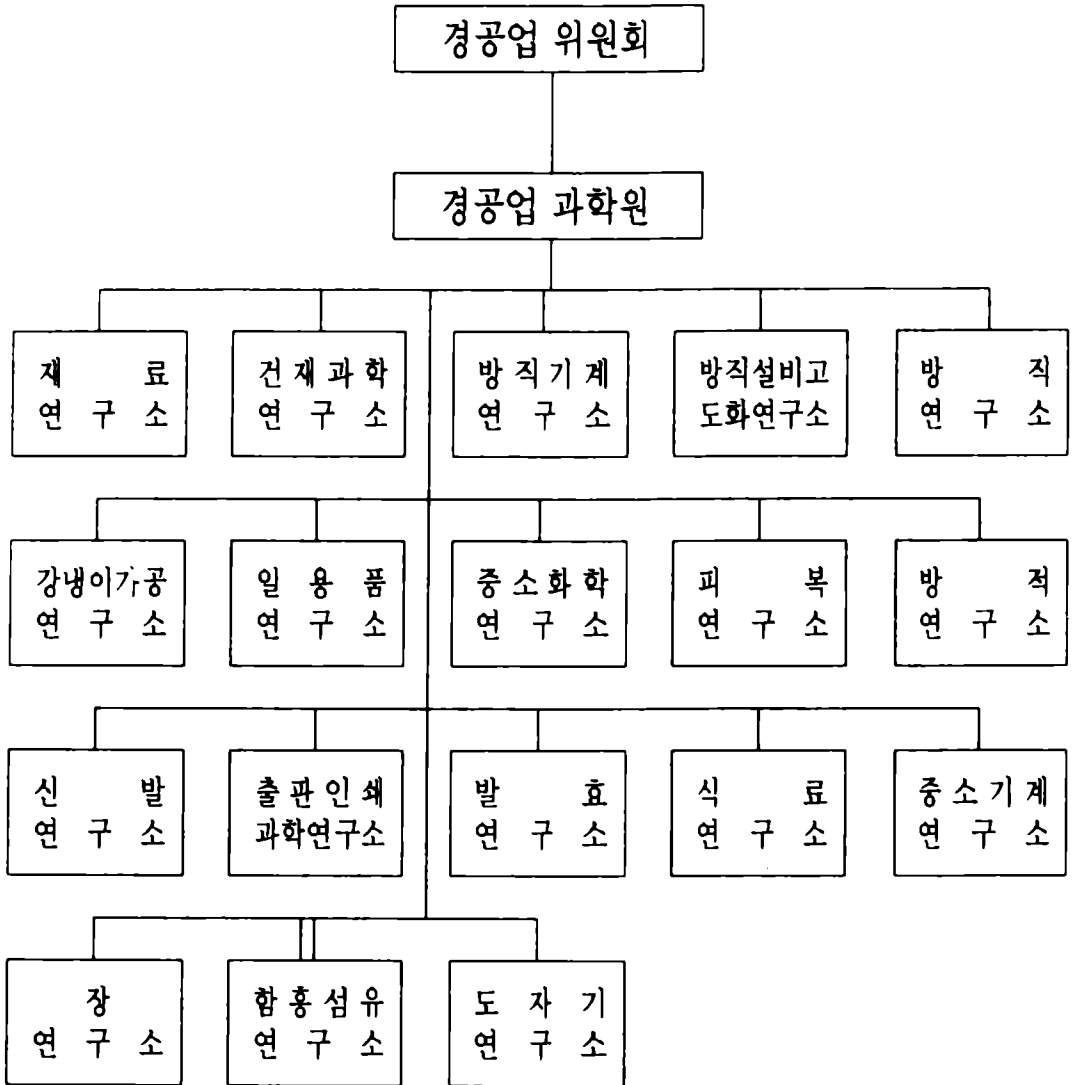
북한 과학원 체계



북한 농업과학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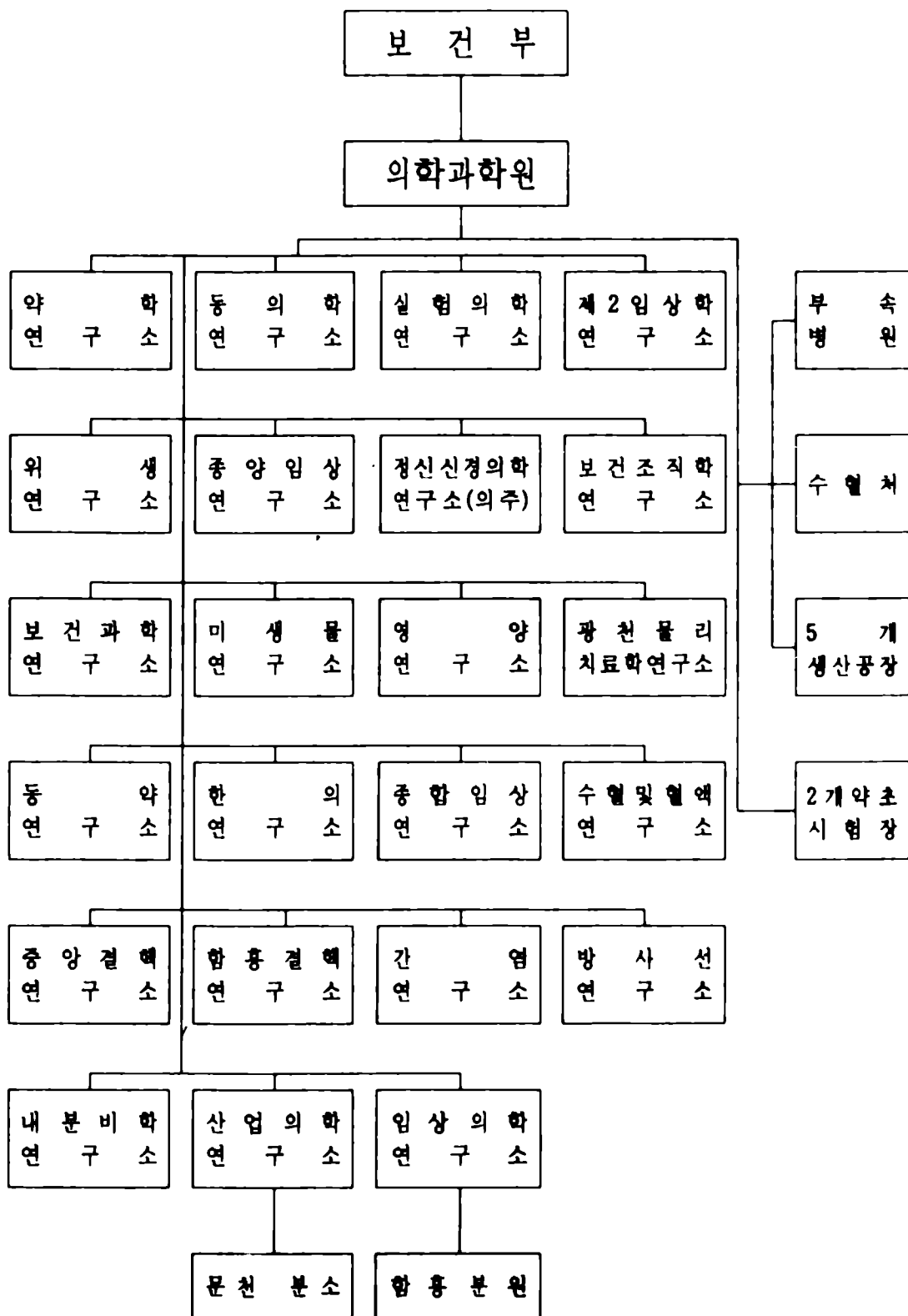
경공업 과학원 체계



경공업과학원은 1954년 9월 경공업성 산하 중앙연구소로 발족되었으며 현재 본원 산하에는 18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경공업과학원의 체계는 위의 표와 같다.

의학과학원은 1958년 6월 과학원 산하의 의료과학연구소 및 약초원과 보건성 산하의 의학분야 연구소를 통합하여 의학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한 후, 1963년 11월 의학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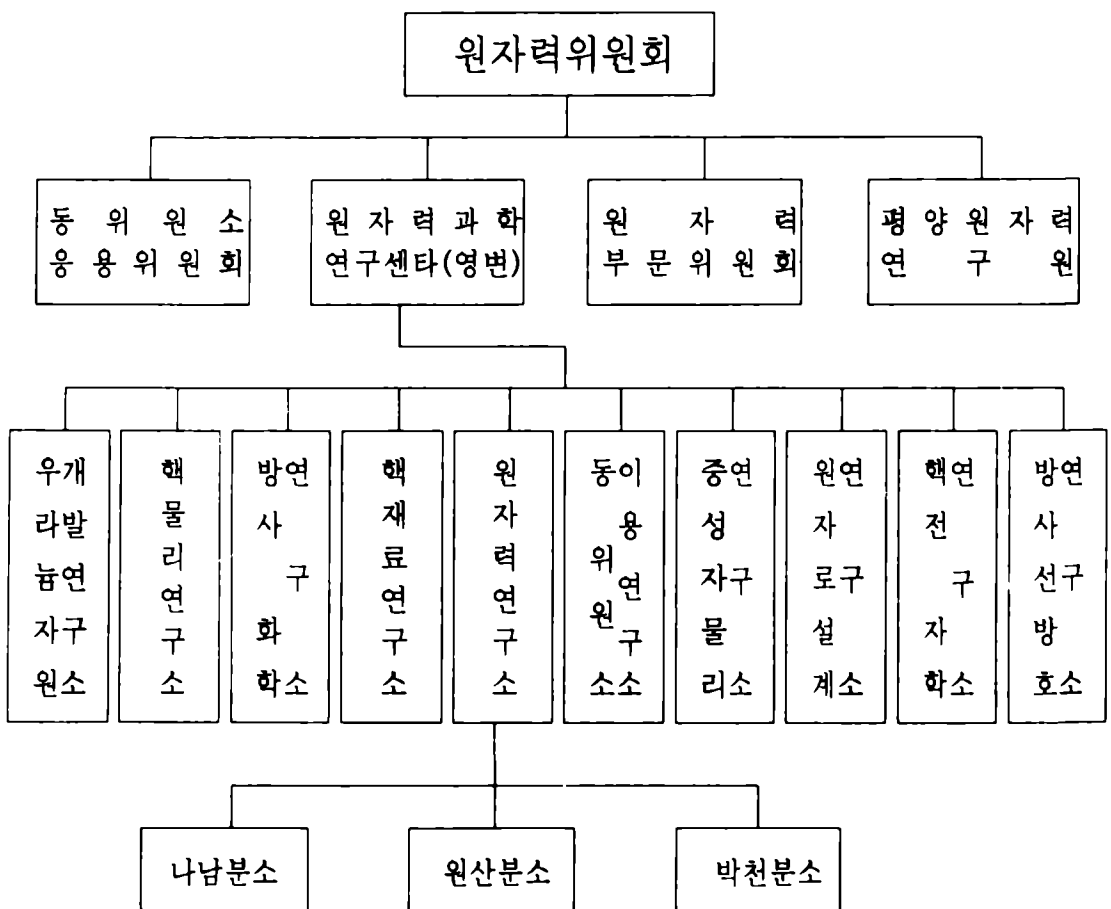
의학과학원 체계



본원은 정무원 보건부 소속이며 산하에 23개의 연구소와 1개의 분원 및 분소, 1개의 부설 병원과 수혈처, 5개의 생산공장, 2개의 약초 실험장이 있다.

국방과학원은 '60년대 초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원은 현재 인민무력부의 통제를 받으며 본원에는 유도무기, 전기 및 전자, 금속 및 화학소재, 기술경제 등 40여개의 부문별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연구소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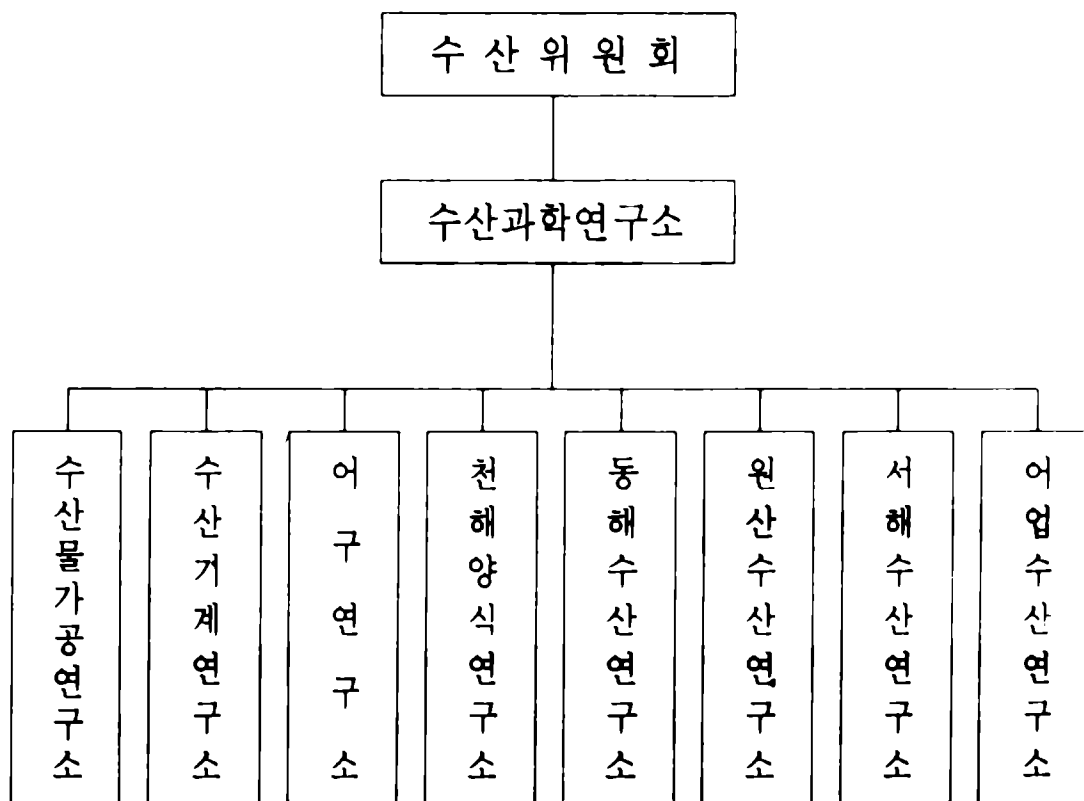
원자력연구소는 1952년 10월 과학원 창설과 함께 부속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초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공업, 농업, 의학분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1964년 4월에 영

변 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1965년 6월에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1기가 도입 설치되었고, 1986년 12월에는 5MW급 시험용 원자력발전소를 완공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전기출력 50MW 원자력발전소('90년대중엽 완공예정) 및 200MW 원자력발전소('90년대말 완공예정)도 건설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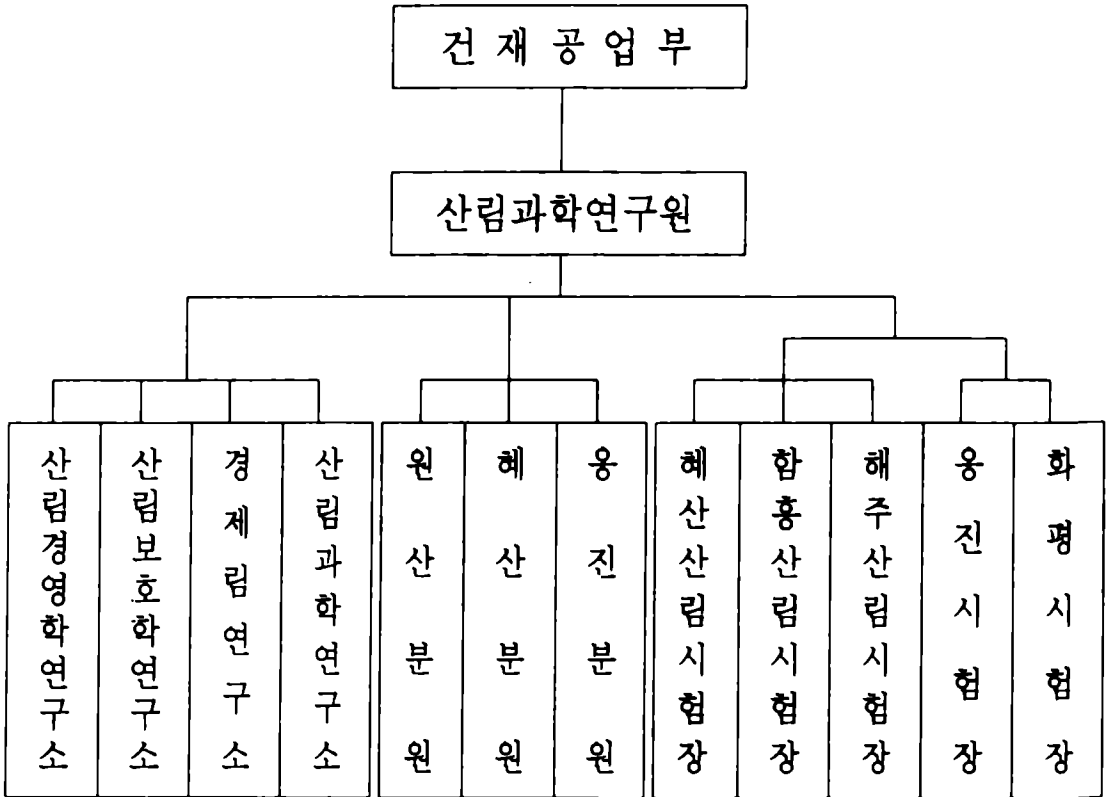
1974년 1월 23일에는 『원자력법』이 제정되었고, 원자력연구소 산하에는 2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원, 1개의 연구단지가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현재 정무원 직속의 국가원자력위원회에 속해 있다.

기타 주요 연구기관은 수산과학연구소, 산림과학연구원, 평성연구단지 등이 있는데 수산과학원은 산하에 8개 연구소가 있고 산림과학연구원은 1964년 5월에 창설되었으며, 산하에 4개 연구소와 5개의 시험장 및 3개의 분원이 있다.

수산과학연구소 체계



산림과학연구원 체계



9. 대외협력

가. 과학기술 협정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은 대부분 소련, 체코, 동독 등 사회주의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초를 형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서방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도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대외협력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국가와 체결하는 『과학기술협조협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 중 전후복구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련, 중국 및 대부분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중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제3세계 국가들과도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과학기술 교류·협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협정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상호간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의 『과학기술협조의정서』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와 기술자의 상호 파견,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기초과학분야의 협력은 주로 북한의 과학원과 상대국의 과학원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여 이 협정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중·러와의 협력 실태

(1) 러시아

북한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최대 협력국은 러시아 즉 구 소련이었다.

1989년 3월 모스크바방송에 의하면 당시 소련은 북한의 전후복구기간중 총 13억루블의 무상원조를 주었으며 기술협조에 있어서는 야금, 화학, 동력공업부문 등의 설계도와 각종 기술자료 총 3,000

건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총 2,000명 이상의 북한기술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련의 숙련기술자 총 6,000명 이상을 북한에 파견하여 공장·기업소의 건설, 설비 조립 및 조정·운영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 학생의 소련 유학 실적은 총 20,000명 이상이며 1989년 4월 현재에도 북한의 핵 물리학자 및 전문가 30여명 이상이 두브나 연합핵연구소 실험실에서 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결과 1989년 현재 북한의 산업 생산에 있어서 전력은 60% 이상, 석탄은 50%(1982년 현재), 정유 50% 이상, 강철 30% 이상, 알루미늄 100%, 철광석 40%, 화학비료 14% 이상, 섬유 20%가 소련의 협력으로 건설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도 176만KW(44만 KW×4기) 규모의 원자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 김책제철 2단계 확장공사, 순천비날론공장 건설, 안주탄광 확장공사 등 총 1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또한 구 소련의 프리모리에 태평양해양학연구소와 북한 과학원의 지질학연구소간에 1986~'90년간 동해 해저자원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되어 해저지도, 동해수역의 유용광물에 대한 자료제공 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다.¹⁵²⁾

(2) 중 국

중국은 전후복구 기간중 평양 복구에 필요한 건축기술자 770명

152) 국토통일원,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1990, p.86.

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한 바 있고 북한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중국에서 훈련시켰다.

1946년 이후 1985년까지 중국은 약 11억 5천만불 상당의 경제 원조와 강선제강, 수풍발전소 등 30여개의 공장·기업소를 복구 및 신설하는데 지원을 하였다.

1987년 5월 김일성의 중국 방문 이후 동년 6월 북경에서 열린 『조·중 과학기술협조위』 제27차회의에서는 첨단과학 기술분야와 자원개발을 위한 지질 해양탐사 분야의 기술협력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이며, 1987년 12월에는 향후 10년간(1987~'97) 『장기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었는데¹⁵³⁾ 북한은 향후 중국이 개방정책을 통해 서방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과학기술을 재이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 소련의 대북 지원 감소에 따라 경제 및 과학기술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3) 위의 책, p.88.

IV. 사회

1. 사회정책 및 구조

가. 사회정책의 기초

북한의 사회정책의 기초는 당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즉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정책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기본은 계급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북한사회의 계급적 성격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라고 했으며, 헌법 제1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즉 계급노선과 균중노

1) 북한헌법 제4조.

선을 기본정책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한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당면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을 소멸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소위 반당 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사회를 공산주의화하고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가는 과정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은 제반 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① 전 주민에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②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 ③ 전 사회적인 동원체제를 통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완비하고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나. 사회계층 구조

북한은 분단 이후 수차에 걸친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로서 성분계층별로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있다.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그 생성 자체가 사회적 보수의 정당한 배분과정 속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한 의도적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평등사회를 표방하는 북한사회에서 보다 더 큰 계층 차별, 평양과 지방간의 격차 등 불평등 현상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집중지도 사업	'58.12~'60.12	○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각벽지 강제 이주
주민재등록사업	'66.4~'67.3	○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 성분 분류(직계3대·처가·외가 6촌 까지 내사)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67~'70.6	○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 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72.2~'74	○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과 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검열사업	'80.1~'80.12	○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4~'80.10	○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81.1~'81.4	○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갱신사업	'83.11~'84.3	○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성분 분류 및 대우

3 계 층	51 개 부 류	대 우
핵심계층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부류	○당·정·군간부 등용 ○타계층과 분리 특혜 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동요계층 (45%)	소·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무소속,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2), 월남자 가족(3),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27%)	8·15이후 전략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등 21개 부류	○유해, 중노동에 종사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 ○제재·감시·포섭 대상으로 분류 - 제재 : 강제이주 격리수용 - 감시 : 지정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 집중적 교양 ○극소수 기본계층으로 재분류(자녀)

북한이 이와 같이 주민성분을 철저히 분류하여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과 당을 반대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데 있을 뿐 아니라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3계층 51개 부류라는 주민성분 분류에 근거해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 선택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실시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계층에 대한 순종과 아울러 주민들로 하여금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위한 김일성 부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노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가. 조직생활 통제

북한사회에서 노동당은 행정·사법·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주요기관의 간부 직위는 노동당 열성 당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들 모든 기관과 단체에는 각기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의 통제체제를 일원화시켜 놓고 있다.

일반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하부조직을 보면 최일선 지도기관으로 시·군당위원회가 있고 최말단 조직으로 당 세포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당적 통제외의 주민통제 방법으로서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농업로동자동맹, 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하부는 무조건 상부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외 각종 사찰기관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동태를 은밀히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적 감시를 통해, 소위 불순분자를 숙청한다. 북한의 사찰기관으로는 1945년 이래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가행위자 색출, 검거와 주민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사회안전부와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된 국가보위부가 있는데 이 국가보위부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속 기관으로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첩보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그외 주민통제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시 신설된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관료주의 제거와 엄격한 법적통제, 전 주민에 대한 사상투쟁 전개 임무를 맡고 있다. 기타 6·25 당시의 인민재판제도와 유사한 상호토론과 군중의 박수로 형벌을 결정하는 동지심판제도가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감시하는 인민반제도가 있다.

인민반은 통상 20~30세대로 조직되고 반장, 선동원(인민반 당분조장 겸임) 등이 감시·감독 역할을 한다. 인민반과 유사한 것으로 5가구를 담당하는 한명의 핵심당원에 의한 통제를 제도화한 5호담당선전원제가 있는데, 이는 담당 세대들의 각 가정생활 전반과 사상을 감시·지도하게 된다.

나. 경제·사회적 통제

주민에 대한 경제통제는 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제에 이용하는 것이고 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사회적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다.

경제적 통제의 일환으로서 북한은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복배급은 기본의복에 한해 실시하고 나머지는 할당표 구매카드에 의해 판매한다.

식량배급은 근로자와 비근로자(부양가족)를 구분, 배급량의 차이를 두어 노동의 기피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주택은 신분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²⁾”고 하나 실제로는 국가에서 직장배정시 개인의 소질, 능력, 희망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며 직장배치를 자의로 거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직장이동은 계획적인 직장의 조정, 불순분자의 벽지 이주, 도시인의 농촌이주와 같은 강제조치가 있을 때만이 실시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 기피, 유희노동력 발생 방지와 주민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적인 목적의 타지 여행을 통제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적 여행시는 직장장이 발행한 여행증과 양권등을 소지하게 되어 있으며, 출발과 귀착시에는 안전주재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북한 노동법 제30조

다. 사회문제

북한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탈행위 이외에 체제적 모순과 경제난에서 오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강·절도, 청소년비행, 성범죄와 함께 계급정책에 대한 반발심리의 범죄 등이 사회문제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각종 은어를 통해 사회제도와 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은어는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의 한 단면을 투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귀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폭력조직은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패싸움 등이 빈번한데 북한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외부 사조의 유입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성범죄중 간음·간통을 특정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미혼인 경우는 사회질서 문란죄를 적용하고 있다. 강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매음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도덕에 위배되는 사회적 탈선행위들이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대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중·소의 개혁·개방조치 이후 평북, 자강도 등 국경지역 주민들이 중국 밀입국과 밀무역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 등 각종 사회문제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에 의해 초래되는 것인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개혁과 개방 압력, 외래 문화 유입으로 인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각종 범죄유형

구분 종류	내 용	비 고
정 치 범	반당·반혁명 행위, 김일성부 자 권위 훼손, 탈출범, 사상 불순	김일성부자 권위 훼손 : 김일 성 투쟁역사 비판, 김일성부자 초상화 파손, 교시 비방 등
경 제 범	공공재산의 횡령, 양곡횡령, 품귀물품의 부정유출, 물품 가격 조작, 정량 미달 출고, 부정계량기 사용 등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행정 기관이나 협동단체 간부층 비행
인신피해범	폭력, 살인, 강간, 간통 등	성범죄는 당 및 협동농장 간부에 의한 경우가 많음
기 타	강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사기, 협잡, 방화 등	농민들의 절도행태 : 벼가마 숨기기, 속주머니 만들어 날 알 따내기, 고구마 덜 캐기, 달걀 훔치기, 강냉이 따고 흔적 없애기 등

라. 사회적 부조리

북한의 사회적 부조리 현상은 김부자의 연설, 담화, 논문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의 척결을 누차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당 및 경제지도간부들의 사업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³⁾ 북한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회적 부조리 사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일성 교시 학습에 대한 기피
- ② 당조직생활의 태만 및 외면
- ③ 당원과 노동자의 소극성 및 열성부족
- ④ 뇌물수수
- ⑤ 노동력과 원자재 낭비
- ⑥ 노동기피, 노동규율의 위반
- ⑦ 국가재산 낭비 및 유용
- ⑧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 유교 사상 등 낡은 사상 잔재
- ⑨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적 사업 작품
- ⑩ 청년 인텔리의 반사회적 행동

북한 스스로가 공식 모임 및 언론매체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부조리 현상들은 지나친 통제와 당권 만능이 빚어내고 있는 결과로 이는 북한주민의 내면적 저항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로동신문』사설, 1991.2.16.

마. 특별독재대상구역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정치사상범 수용소를 설치하여 북한의 권력층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분자라고 판단되는 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1990년 현재 15만 2천여명의 사상범이 12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된 사람은 적대계층 가운데 반김일성·반당·종파분자, 지주, 친일파, 반혁명적인 종교인들과 그 가족들이다. 수용인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류는 실제로 노동당의 간부나 당원으로 있다가 밀려난 자들과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일성부자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희생된 정치범들이 급증하여 수용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3대혁명소조에 의해서 반당·관료주의자로 지탄을 받고 국가보위부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의 관정으로 숙청된 당원들과 그 가족들도 많다.

일본에서 간, 북송교포 가운데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세계를 동경한 자들도 반혁명분자로 몰려 상당수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된 자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일단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입소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 연락도 할 수가 없다.

특별독재대상구역의 위치



특별독재대상구역 현황

(1990년 현재)

위	치	수용인원
함 북	온성군, 회령군, 경성군	62,000명
함 남	요덕군, 정평군, 덕성군	33,000명
평 남	개천군, 북창군	20,000명
평 북	용천군, 영변군	20,000명
자 강	희천시, 동신군	17,000명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자아비판을 위주로 한 사상 개조 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 등 모든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6시부터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량을 부여받고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오전 작업은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 오후 작업은 오후 8시에 끝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 작업과 벌목, 개간 등 중노동이다.

특별독재대상구역은 국가보위부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색출된 정치사상범의 이송 및 경비업무는 사회안전부 산하의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주민생활

가. 의식주생활

(1) 의 생활

주민들의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 및 공급기준에 의해 배정되기 때문에 다양성과 유행성보다는 노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복장은 1960년대까지 『천리마시대의 생활양식』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남자는 인민복(레닌복)과 노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북송교포와 197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시 한국 국민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단조로운 의복패턴으로부터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 등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기이후 각종 옷전시회, 옷품평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성복에 있어서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를 전후하여 넥타이 양복차림에 이어 잠바차림까지 등장, 과거보다 세련되기 시작하였는데, 김일성 자신도 1984년 5월 소련 및 동구권 순방 이후 인민복 대신에 넥타이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의류 공급기준

대 상	회 수	품목 및 수량	비 고
노 동 자	연 1 ~ 2 회	작업복 1착	무상
학 생	연 2 회	교 복 1착	염가
기 사, 교 원	3 ~ 4 년 1 회	양복지 1착	"
4 호 대 상 이 상	2 년 1 회	"	반액

* 주 : 4호대상은 시·구역·군 당비서, 시·구역·군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2급기업소이상 당 부비서·지배인·기사장급 등을 말한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맞아 북한당국은 외국인들에게 북한사회를 밝고 명랑한 사회로 비쳐지게 할 목적으로 여성의 바지착용을 금지했는데, 이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

한여성들에게 몸치장에 신경을 쓰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축전기기간 중 세계각국 청년학생들의 다양하고 패션화된 옷차림은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식생활

식생활은 식량배급제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유상으로 주로 쌀과 옥수수이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신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7에서 5:5 사이이다.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은 식량공급이 당국이 정한 배급량에 의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은 암거래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⁵⁾, 충당해야 하나 이마저도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출장 또는 여행의 경우에는 일명 양표라고도 불리우는 양권⁶⁾을

4) 북한은 해방후 일부계층에만 적용해 오던 식량배급제를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해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부터 협동농장원(연말 결산분배)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5) 쌀의 경우 kg당 국정소매가격은 8전이나 암거래가격은 15~20원, 잡곡의 kg당 국정소매가격은 6전이나 암거래가격은 10~15원이다.

6) 양권제도는 1959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출장용·가정용 2종류와 1kg, 500g, 200g 짜리가 있다.

미리 발부받아 매식시 양권과 식대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양권을 발급받으면 다음 식량배급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잔여량을 배급받게 된다.

도시주민들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발행하는 예비표나 양권을 소지해야 하며, 주민들이 예비표나 양권없이 갈수 있는 식당은 평양의 경우 청류관을 비롯 몇개소의 고급식당인데, 이곳을 이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북한은 쌀 생산량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증산과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1982년 김일성은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농업부문의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는가 하면 1986년부터는 종래의 『의·식·주』라는 용어를 『식·의·주』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⁷⁾

또한 김정일도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⁸⁾라고 강조함으로써 식생활 문제

1인당 1일 식량배급량

(단위 : g)

연 령	0~4 세	5~ 14세	15세 이상		
			일 반 노동자	중노동자 ·군인	병· 노약자
배급기준량	300	500	700	800	400
'73년이후 전쟁비축미 월 4일분 공제	260	433	607	695	347
'87년이후 절약미 10% 공제(식량사정 악화시)	234	390	547	624	324

7) 1986년 12월 3일, 노동당 제6기 12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 연설.

8)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7.

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식량증산을 위해 『1,500만톤 알곡고지점령』, 『30만정보 간척지 조성』, 『20만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조 칭호 쟁취운동』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1992년을 『대농의 해』로 지정하고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⁹⁾

부식의 경우는 된장, 간장, 고추장, 식용유 등을 공급카드에 의해 구입하고, 기타 부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식료품 상점에서 임의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고기류는 명절 특별배급을 통하여 할당되는데 김일성부자생일, 노동당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기준으로 배급대상과 시기, 그리고 수급사정에 따라서 공급품목과 수량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3) 주 생활

북한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집단적 소유로 규정¹⁰⁾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건축까지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한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그 형태나 구조를 달리한다.

9) 김일성의 1992년도 신년사.

10) 북한 헌법 제22조.

주택형은 크게 보아 부부장급 이상 고급간부 등이 거주하는 특호로부터 말단근로자와 집단농장원에게 배정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주택배정을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층별 주택구조

(평 양)

구분	주 택 형	가 옥 구 조	입주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식 다층 또는 2층 주택 • 정원 • 수세식변소 • 냉온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베란다, 냉온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단체 간부 •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 • 부엌 •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 마루방1, 부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학교·고등중학교장 • 일반 노동자 •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부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 연립주택 • 방2, 부엌1, 창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원
	구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두리 농민

북한의 주택부족 사정은 상당히 심각하여 신혼부부가 2~3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경우 방 1, 부엌 1의 2칸주택이 보통이고, 심한 경우 방 2, 부엌 1의 3칸 주택에 2가구가 동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환경 역시 낙후되어 불량화되어 있는데, 농촌의 경우 대부분 가구별로 수도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부족 사정을 타개하고자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84년)기간 중 매년 20~30만 세대,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기간 중에는 매년 15~20만 세대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전 에 없이 주택건설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80년대들어 평양의 문수거리,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에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원산, 함흥, 청진 등지의 지방도시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¹¹⁾

주택건설 목표

기 간	목 표
1957~1960년	도시 1,000만m ² , 농촌 20만세대
1961~1970년	120만세대
1971~1976년	100만세대
1978~1984년	연간 20~30만세대
1987~1993년	연간 15~20만세대

* 출처 :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1)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4.8)시 재정부장 윤기정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금년에도 평양의 3만세대를 비롯하여 지방도시, 농촌 등지에 『살림집』 건설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주요도시의 주택건설

지 역	건 설 사 업 명	기 간	규 모
평 양 시	문수거리 건설	1981~1983	17,000세대
	창광거리 2단계	1984	2,400세대
	버드나무거리	1984	1,000세대
	천리마거리 2단계	1984~1987	4,000세대
	북새거리 건설	1984~1987	
	광복거리 건설	1985~1989	20,000세대
	안상택거리 건설	1985~1989	
	광복거리 2단계	1990~1992	30,000세대
	통일거리	1990~1992	20,000세대
원 산 시	북망산거리	1983~1987	7,000세대
함 홍 시	용남거리, 성천구역, 동홍산구역, 사포구 역 등	1983~1987	4,000세대
청 진 시		1984	6,400세대

* 출처 : 북한방송 및 신문내용 종합.

그러나 북한당국의 이러한 배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부족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주택건설계획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이 주택문제 보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인 상황이고 다른 한편 주택건설자재의 공급부족은 물론 주택건설기술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 기인한다.

나. 직장생활

(1) 직장배치

직업선택은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다. 직장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성분과 당성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표징이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표징인 직무수행능력으로서 여기서는 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연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 학력이 사회적 상승이동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중간계층과 북잡계층의 진학 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는 어렵게 되어 있다.

직장배치 과정을 보면 취업대상자는 시·도 행정경제위원회의 노동부(노동자의 경우) 또는 간부부(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하여 배치장과 소개장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북한의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신임도를 기준으로 직장을 알선하며 이 경우에는 오직 중앙의 수급계획에 의해 직장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인 것이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정권기관의 노동력 흡수계획에 따라 모든 노동능력자를 일정한 직업에 배정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는 외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직장의 선택시 개인의 능력·성향·의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잠재실업율은 그만큼 높은 편이라 하겠다.

(2) 임금·분배

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고, 동일직종에서도 숙련도나 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이 변화한다.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당·정 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녀구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

(단위 : 북한원)

구 분	직 책	보 수
당·정기관	○당·정무원 부장	300~350
	○정무원 부부장급, 도인민위원장급	250~300
	○도인민위 부위원장 및 군인민위원장급	170~200
공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
	○1~2급 기업소 지배인 및 기사장	150~200
노동자·사무원	○광부, 제철, 제련공	90~10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75~80
	○일반노동자	70~80
	○사무원	60~70
편의시설기관 종사자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50~80

*주 : 이 표는 북한이 1992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평균인상을 43.4%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임금을 직책에 따라 국가가 획일적으로 계획·장려함으로써 보수체계가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노동자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생산목표의 차질을 흔히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독립채산제의 확대실시와 물질적 자극수단의 유인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협동농장원들은 도시의 노동자·사무원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에 의해 현물과 현금을 분배받는다. 분배의 기준은 매 농장원이 1년간 농사에 투자한 노동의 양과 질이 되는데, 이는 매일 3~4명으로 구성된 노력평가조에 의해 책정된 노력공수¹²⁾의 총계로 결정된다. 노력공수가 책정되면 협동농장에서 1년간 생산한 총량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가는 농산물과 시설비(탁아소·유치원 등), 사료·종자·비료대, 농기계 임대료, 수리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 40% 정도를 가지고 농장원들의 노력공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투자, 입지조건, 가족수 등에 따라 분배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분배받는 양곡의 양을 보면 1년분의 기본식량으로 1인당 400kg(도정시 250~270kg)으로 이것은 1일 700g 정도가 되어 도시 근로자들의 식량배급 기준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12) 노력공수란 생산 또는 작업에 소요된 노력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협동농장의 경우 1인당 연간 책임량은 350공수이다.

노력공수 평가기준

공 수	공 작 량	평 가 방 법
1.5	밭갈이 2,000평	매일 3~4명으로 구성된 노력평가조에 의해 채점
1.5	모내기 200평	
1.25	퇴비운반 10달구지	
1.25	제초작업 150평	
1.0	과종 400평	
1.0	시비 100평	
0.75	새끼꼬기 5kg	

(3) 휴일·휴가

북한은 유사시를 대비해 휴일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달력상 목요일은 경리일, 금요일은 휴식일, 토요일은 작전개시일, 일요일은 작전요일 또는 전투요일로 정해 놓고 있다.

노동자·사무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노력동원 등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노동자에게는 연간 300일 출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휴가는 사회주의 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의 계획과제 완수 및 노력동원 등으로 대부분 휴가를 반납하거나 관혼상제나 김장철 때 주로 휴

가를 활용한다.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할 경우, 노동한 대가는 3개월 평균임금을 일자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법정휴가외에 사결이라 하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고 쉴 수는 있으나 노임과 배급량은 쉬는 날 만큼 공제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는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가 허용되고 있다.

북한의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 기 휴 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 충 적 휴 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외 7~12일	"
산 전 산 후 휴 가	임산부	150일	"
임 시 휴 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기간	무급휴가

* 출처 : 북한 노동법 규정 내용 정리.

다. 가정생활

북한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엥겔스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남편은 부르주아지이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여성해방의 첫째조

건은 여성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개별가족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¹³⁾라는데 기반을 둬으로써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집단주의체제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가족제도의 변화과정

시 기	변 화 내 용
1945~'53년	○가족중심의 경제활동 유지 ○봉건적 유습 청산 ○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
1954~'60년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
1961~현재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사회주의적 인간 구조 ○가정의 혁명화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조상숭배 관념은 배제되고 그 대신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시켰다.

가족제도의 변형은 호적제도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되었는데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사회의 잔재라고 이를 폐지하고 그대신 공민증제도를 194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로써 친족범위를 6촌까지로 제한함과 동시에 주민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

13) 엥겔스, 『가족·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1891년(개정판).

화하여 주민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40~'50년대의 사회주의적 개혁정책(토지사유제 폐지, 재산상속제의 소멸 등)과 1960년대의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의 시행으로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파괴, 대가족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가정이 인간적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당적 통제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적 과업을 촉진하는 매개집단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북한은 가족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인해 북한의 가정은 온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이룩하기 위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 『최저생산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을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 여가생활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일원적인 국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하루의 일과는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오전작업전 30분간씩 독보회¹⁴⁾로 시작되며, 오후 7~8시경 하루일과가 끝난 뒤에는 작업총화라 하여 지배인 및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어 작업총화가 끝나

14) 독보시간에는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주로 읽는다.

면 직장별로 40분에서 2시간 가량 당 세포비서를 중심으로 학습이 있게 되어 있어 퇴근은 통상 8~10시경에 하게 된다.

또한 휴일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 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설령 여가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관람도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보다는 직장과 인민반을 통한 집단관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보게 된다.

스포츠 역시 “체육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¹⁵⁾이라는 표현과 같이 체육이 여가선용이나 개인의 취미활동보다는 정치적·혁명성과 결부시켜 국가목표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스포츠 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며, 모든 스포츠 활동이 국방력과 노동력의 강화 수단으로, 그리고 특정인의 우상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주민들에게 여가시간을 가급적 주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을 뿐 아니라 여가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려 한다.

또한 취미나 오락시설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가끔 공휴일 같은 날 공원지대를 찾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15) 『백과전서』 5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156.

4. 노동문제

가. 노동정책

북한에서는 노동을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¹⁶⁾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노동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건설된다고 할 만큼 노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¹⁷⁾고 하여 노동을 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1946년 6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제정되었고, 그후 내각결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왔는데,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2차회의에서 기존의 노동자·사무원 외에 농민까지 포함한 『사회주의 로동법』을 새로 제정, 노동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

16) 북한 노동법 제2조.

17) 북한 헌법 제70, 83조.

고 있다.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조직에서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¹⁸⁾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¹⁹⁾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북한은 노동사업을 일별·월별·분기별로 계획화시켜 놓고 과업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속도전, 새로운 9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개정헌법 제14조에서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고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노동운동의 방향을 김정일이 주창한 3대혁명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 제31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15조에는 노동연령을 종전의 14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놓았는데, 이것은 11년제 의무교

18) 북한 노동법 제26조.

19) 위의 법 제33조.

육제 실시와 관련, 16세까지는 의무교육기간이므로 직업적인 노동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일은 노동자 및 사무원의 경우 주 1일이고, 협동농장원의 경우는 10일에 1일로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당·장·군 관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노동, 금요노동, 농촌지원 명목으로 연간 4~14주 무보수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시적 부조금의 지급, 일정한 근속노동 연한을 가진 자에 대한 연로연금(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²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노동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여된 노동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극소수의 노동자와 특권층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고 있다.

증산 및 노력경쟁 운동

명 칭	발 기	동 기	비 고
천리마운동	1956.12	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집단적 혁신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정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개된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1960. 2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협동농장 현지 지도시 강조	노동력의 효율적 통제 및 생산성 향상운동

20) 위의 법 제74, 75조.

명 칭	발 기	동 기	비 고
속도전	1974. 2	당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의 공식 구호로 채택	높은 속도와 질을 동시에 요구
3대혁명 붉은기쟁 취 운동	1975. 12	당이 영도하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수행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대중 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된 형태
숨은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운동	1979.10	식물학연구소 근무 백설희 등 4명의 과학자들과 노력영웅 칭호 수상자들을 본받도록 하는 운동	자발적 노력을 강요하는 대중동원운동
'80년대속도 창조운동	1982. 7	김정일의 제의에 의해 경제개발의 최우선 순위 에 두고 있는 금속부문 (김책제철소)에서 발기	경제성장의 부진 타개를 위한 계기조성 및 김정일의 지도 역량을 경제 성과로 실증시키는 새로운 노력경쟁운동
새로운 '90 년대 속도 창조운동	1990. 1	'80년대 속도창조운동에 이어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새로운 '9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시	당조직과 일꾼들을 비롯 전주민 노력동원분위기 조성 및 청년학생들의 견인차 역할을 강조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성 도모

* 출처 : 북한방송·신문내용 종합.

5. 사회복지

가. 사회보장제도

북한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조항들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²¹⁾고 하여 노동을 공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하였고, 이어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가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²²⁾고 하여 노동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²³⁾고 하는 등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모방해 놓았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대원칙을 총망라시키고

21) 북한 헌법 제70조.

22) 위의 법 제71조.

23) 위의 법 제72조.

있어 명목상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1일 8시간 노동제, 사회보장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사회복지시설

(1) 탁아소·유치원제도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출생과 더불어 취학전까지의 모든 아동(동법 제10조)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정치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2차적인 목적이 노동력 부족을 여성노동으로 보충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탁아소와 유치원에 관한 주요 조치 및 활동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어린이 보육에 관한 주요 조치

1947. 6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
1964. 7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1966. 10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1968.	유치원 교육과정제도 심의회 구성
1972. 5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김일성 교시
1975. 9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976. 4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대회, 어린이 보육교양법 채택
1979. 3	최고인민회의 제6기 3차회의 교육부문 보고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2) 기타 사회복지시설

북한에는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8세 미만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고,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씩 두고 있으며, 양로원은 부양자나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다. 사회보험

(1) 연금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에 제정된 국가 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다. 임금노동자에게 실시하던 연금제도가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11월부터이다.²⁴⁾

(2) 산재보험

북한의 산재보험은 상기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로동법 제 73조, 75조, 77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보험급여는 취업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급은 임금의 75%, 5급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고 당에 충직한 열성당원에게는 보험급여를 규정대로 적용하는 경향이지만 성분불량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해를 노동자의 고의적인 사고로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실업보험

『국가사회보장법』에 의해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24) 『조선중앙년감』 (1987), p.200.

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는 지급하지 않는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구 분	종 별	보 장 내 용
보 조 금 제 도	일시적보조금	월평균 임금액의 50~80%를 3개월한도 지급
	해산보조금	월평균 임금액의 90% 지급
	장례보조금	사망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5원, 10세 이상인 경우 10원 지급
	의료보조금	무상치료 원칙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월급의 1% 공제, 치료약은 인민약국에서 별도 구입
연 출 금 제 도	폐질연출금	직종별, 질병류에 따라 최종 월평균 임금액의 23~90%를 매월 지급
	유가족연출금	가족수에 따라 40~90%를 매월 지급
	양로연출금	남 60세, 여 55세 이상자에게 종신 지급 (지급액 불명)

6. 보건·의료

가. 보건·의료정책

북한헌법 제56조에 의하면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 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의 보건정책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 세 분야로 대별된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사회보험법과 노동자·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에 관한 결정서를 의결, 1947년 1월 27일부터 노동자, 사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듬해인 1948년에 이 규정을 개정, 치료비를 낮추도록 조치했다고 하고 있어 무상치료제가 특정분야에 국한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1948년도 치료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내용에는 산모의 해산료, 3세 미만의 유아, 혁명가 및 그 가족, 고아원, 양로원 수용자, 정신병자, 구급환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은 무상 치료제의 대상에 포함시킨다.²⁵⁾ 고 하고 있어 당시의 실질적인 무상치료 대상범위는 이들이었음을 말해주고

25) 송창호·리복희 편, 『인민보건사업 경험』(평양 : 인민보건사, 1985), p.62.

있다.

그후 무상치료제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203호』를 발표, 이듬해인 1953년 1월 1일부터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²⁶⁾

그러다가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 처럼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 정도를 의료비로 원천징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을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며 농민이 도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예방의학적 방침에 있어서도 1953년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나 1960년 5개년계획이 끝나고 보건시설과 보건요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예방의학적 방침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했고 탄광, 광산에서는 직장, 갯담당 구역제가 실시되었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한 정의를 “전 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시·군(구역) 병원, 공장 병원, 리 인민병원 또는 리 진료소들이 이 사업을 직접 맡아 하고 있으며,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 병원과 공장 병원의 외래 임상과 전체 의사들과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 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

26) 위의 책, p63.

고 검진, 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²⁷⁾고 하고 있다.

나. 의료시설

북한의 의료시설은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일반병원으로서는 중앙에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진료소가 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적십자종합병원, 제1·2인민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등과 정무원 산하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부 제1병원, 운수중앙병원, 해군·공군중앙병원 등이 있고 헝가리의 지원으로 건설된 헝가리병원, 재일 조총련교포가 건설해준 김만유병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 병원으로 평양산원, 평양시립동의병원, 평양중앙결핵병원 등이 있다.

지방에는 각 도(직할시)에 도인민병원과 의학대학부속병원이 있고 시·군(구역)에는 시·군인민병원, 리에는 리인민병원 또는 리진료소가 있다.

특수병원으로서는 도(직할시)·군에 각각 결핵병원, 정신병원, 간장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이 있으며 주요 군급에는 결핵요양소가 있다.

그외 주요 산업지역에는 기업소병원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어선단에는 선의가 배치되어 치료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7) 『조선중앙년감』(1984), pp.289~292.

의료시설 규모

유형	소재지	의사수	전문의	병상	주요장비
도의학 대학병원	도인민위 소재지	약200명	전과	800 ~1200	기본진료 및 치료용전장비
군인민 병원	군인민위 소재지	약 5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 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결 핵과, 간염과, 구강과, 동의과(계 14개과)	100 ~200	엠브란스 X - 선 현미경
리인민 병원	리인민위 소재지	10명이내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동의 과(계 6개과)	5~20	(규모가클때) X - 선 현미경
진료소	산업장 협동농장 부락	1~2명	없음	1~2	청진기 등

다. 보건·의료요원 양성

북한에서는 보건·의료요원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 전체인민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²⁸⁾로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보건요원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

28) 북한 보건법 제38조.

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야 하며 “인민들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선전교양자의 역할”²⁹⁾을 하여야만 한다.

이처럼 북한은 보건의료요원을 단순한 치료자라기 보다는 혁명가로 보고 교육과 양성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요원 양성기관으로는 의학대학, 약학대학, 도 보건간부학교 등이 있다.

의학대학은 예과 1년, 본과 6년의 7년제로, 의학부와 구강학부로 분리되어 있고 의사의 자격은 국가고시제도 없이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중 의사자격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을 과목종료시 합격해야 한다.

본학부 외에 특설학부와 통신학부가 설치된 대학도 있는데, 특설학부에서는 기초학부를 제외한 임상학과가 있어 여기에 준의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추천을 받아 입학, 의사가 되는 과정이다.

통신학부는 본과 6년제로 대학과 근거리에 있는 자는 야간에 2시간씩 수강하고 원거리 거주자는 통신수강으로 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약학대학은 북한 전역에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 하나 뿐이고 각도 의학대학 일부에는 약학부가 있는데 교육기간은 5년이다.

교육내용은 의료기구학부, 약제학부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고 각 학부에는 수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다.

도 보건간부학교는 간호원 및 의료기사의 양성을 위한 2년제 학교로 간호학과, 조산학과, 보철과, 조제과로 나누어 해당 인력을

29) 위의 법 제39, 40조.

배출한다.

이외에 간호원 양성을 위해 별도의 1년제 간호양성소가 있으며 교육기간 3개월인 보육원 양성소가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다.

라. 동 의 학

북한은 선진 의료기술 및 설비의 낙후와 의약품의 절대부족 등으로 인해 한방치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이 동의치료를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휴전 이후로서 1954년 6월 4일 내각결정 제76호 『인민보건을 개선·강화할데 대한』결정이 있는 후 의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의원을 개원하게 함으로써 1954년부터는 국가치료기관에 의사를 두게 했고, 규모가 큰 병원에는 동의과를 설치케 했다.

또한 의학대학에 동의학부를 설치하고 약학대학과 의학대학 약학부에 동의학과를 두어 동의사와 동약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과학원 산하에 동의과학원을 두고 동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그동안 『동의보감』 등 10여종의 동의고전들을 번역 출판하고 동의학사전·동약처방집 등 160여권의 동의서적들을 출간하기도 했다.³⁰⁾

한편, 북한은 약초재배사업과 채취, 보호, 증식사업을 균중운동으로 추진하여 동약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동의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만 건의 민간요법을 수집,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 이중 가치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30) 『중앙방송』, 1991. 2. 4.

9,000여 건의 민간요법을 정무원 보건부에서 책자로 출판,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평양의 동의병원을 각급 동의의료기관과 의학과학연구소, 의학대학 등에서 동의학의 과학화 연구사업을 추진, 동약의 성분, 약리작용, 동의처방의 치료효과, 동약과 침, 뜸, 부항을 비롯한 가치있는 민간요법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외에도 북한은 동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신의학과 동의학을 병행시킴으로써 치료효과가 높아졌고 병원 및 진료소 등의 의료기간들에서는 임상실험실, 렌트겐실험실과 같은 현대적인 진단설비들과 각종 실험실을 갖추고 현대의학적 진단하에 동약, 침, 부항, 한증 등의 동의학 치료를 배합시킴으로써 동의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³¹⁾

7. 도덕·풍속

가. 도 덕

(1) 윤리·도덕

북한은 해방후 공산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대한 그들 나름의 특이한 해석과 의의를 부여하고 소위 『공산주

31) 『조선중앙년감』(1984), pp.289~292.

의적 도덕품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덕관을 형성시켜 놓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는 도덕을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본성에서 추출된 순수한 도덕관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오히려 이를 반동적이며 반사회적인 낡은 도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도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원칙과 규범”이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 도덕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공산주의 도덕의 특징은 풍부한 인간성과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철두철미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도덕”³²⁾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도덕을 전적으로 공산주의 교양에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개념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새로이 형성된 도덕적 가치관으로서의 공산주의적 품성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적 품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³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예의범절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공중도덕이나 질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일반주민의 합의에 의한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측면이 보다

32) 『조선말대사전』 1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272.

33) 위의 책, p273.

강하다. 즉 예의범절이라는 도덕적 행위규범까지 『규찰대』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복장을 비롯한 두발, 위생상태에 이르는 모든 생활영역이 당적 통제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50대 이상층의 구세대에는 아직도 전통적 관습과 예의범절을 중요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풍조와 협동의식, 인보정신에 바탕을 둔 상부상조의식이 남아 있으나, 신세대라 할 수 있는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혁명적 동지의식이 강하고 인보정신에서도 자기중심적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에게는 조상숭배의식 대신 오로지 김일성을 따르고 숭배하는 충성심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의 제한적인 개방화 추세 및 자유사조 침습 등으로 인해 이러한 맹목적인 충성심은 신진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나. 관혼상제

(1) 결 혼

북한의 가족법³⁴⁾ 제9조에 의하면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중에는 결혼이 제한되고, 여자의

34)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가족법』(6장 54조)을 채택한 바 있다.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는데 통상 남자 27~28세, 여자 24~2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선택은 중매와 연애가 6:4 정도의 비율로 병행되고 있는데, 최근들어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연애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배우자 선정시에는 상대자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는데, 특히 당·정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의 경우는 노동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결혼일은 종래와 같이 길흉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생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택하며, 예식장소는 공공회관이나 음식점 또는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복은 남자의 경우 평상복, 여자는 연분홍색 한복을 주로 입는데 가슴에는 붉은 조화를 단다. 주례는 대체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상사, 협동농장 간부 또는 노동당이나 사회단체 간부가 서며, 주례사는 신랑·신부의 새 출발에 대한 격려보다도 김일성·김정일에의 헌신적 충성에 대한 설교로 끝난다.

신혼여행은 거의 가지 않고 식당 또는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지며, 지방에 따라서는 결혼식 3일후에 사돈간의 교환방문이 있기도 하다.

(2) 회갑·생일

회갑연은 195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와 식량절약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금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회갑잔치 돌잔치가 묵인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다시 당의 통제로 『60청춘 90환갑』이라는 구호 아래 회갑연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회갑연은 다시 친척·친지 등이 모여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고, 이 외에도 진갑·칠순·팔순 등의 장수잔치가 있기도 하나 식량사정 악화로 인해 형식적인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일은 가족끼리 가정에서 간단히 지내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장례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지극히 간소화되어 있다. 3일장이 일반적이는데, 상복은 따로 만들지 않고 평상복에 검은 완장을 차며, 건은 하지 않는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는 녹화사업소, 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하며, 운구는 전래의 상여대신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하여 공동묘지까지 간다. 화장은 거의 없고 매장이 일반적이다.

직계존속 사망시 상주에게는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고, 장례보조금 10원과 쌀 1말이 특별 배급된다.

(4) 제사

제사는 6·25전까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후부터는 물자낭비, 분과주의, 종파주의 조장 등의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일부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히 제사를 지내왔다.

그후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 오면서 추석에 성묘하는 것과 직계가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되었는데, 특히 1974년 1월 13일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제사지내는 것은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이후 북한에서의 제사는 어느정도 허용되면서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육 기회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례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조상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는 북한 당국의 시각때문에 제사의 전래적인 의미와 의식은 거의 사라지거나 크게 간소화되었다.

북한의 제례는 지방 대신 사진을 놓고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지낸다.

최근 한식, 추석, 음력설 등 고유명절 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성묘를 가기도 한다.

다. 명 절

북한에서의 명절은 첫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둘째 지난 날에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민속적으로 즐기던 날³⁵⁾ 등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두번째 개념의 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35) 『현대조선말사전』(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936~937.

왔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 이후부터는 추석을 기해 인근 조상묘소에 성묘를 허용하고, 1988년 이후부터는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부터는 구정과 단오절까지 휴식일로 인정, 민족 고유명절을 부활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주민노력동원 등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북한의 명절

구 분	국가명절	민족명절	비 고
설 날	1. 1		2일 연휴
음 력 설 날		1. 1(음)	
김정일생일	2. 16		2일 연휴
한 식		4. 6(7)	
김일성생일	4. 15		2일 연휴
국제노동절	5. 1		
단 오		5. 5(음)	
해방기념일	8. 15		
추 석		8.15(음)	
정권창건일	9. 9		
노동당창건일	10. 10		
헌 법 절	12. 27		
계	8일	4일	총 15일

*출처 : 북한자료 종합.

북한의 기념일

구 분	일 자
기 계 절	2.20
농 업 근 로 자 절	3. 5
국 제 부 녀 절	3. 8
어 부 절	3.22
보 건 절	4. 5
식 수 절	4. 6
체 신 절	4. 8
조 선 인 민 군 절	4.25
철 도 절	5.11
지 질 탐 사 절	5.15
건 설 자 절	5.21
국 제 아 동 절	6. 1
조 선 소 년 단 창 립 절	6. 6
지 방 공 업 절	6. 7
광 부 절	7. 1
탄 부 절	7. 7
임 업 노 동 자 절	8.10
공 군 절	8.20
청 년 절	8.28
해 군 절	8.28
도 시 경 영 절	9. 5
교 육 절	9. 5
상 업 절	9.15
금 속 노·동 자 절	10. 9
방 송 절	10.14
체 육 절	10월 둘째일요일
방 직 공 업 절	10.15
출 판 절	11. 1
육 해 운 절	11.16
화 학 공 업 절	12. 6
총 기 념 일 수	30

* 출처 : 북한자료 종합.

현재 북한의 명절은 소위 8대 국가 명절과 4대 민족 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대 국가명절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등 김부자 우상화 및 체제선전에 맞추어 지정하고 있고, 4대 민족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한식, 단오, 추석 등 우리 전래의 민속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명절의 경우는 휴무일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휴무일을 전후한 일요일을 선정하여 보충노동을 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대휴라고 일컫고 있다.

북한의 명절은 전래명절 부활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부자 우상화를 위해 새로 설정한 소위 사회주의 명절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경축된다.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편지 전달 이어 달리기, 예술공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정일 생일(2. 16)부터 김일성 생일(4. 15)까지의 두달 동안은 각종 축하 및 우상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총 30개에 달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념일은 주로 생산을 독려·권장하거나 특정분야나 계층을 선동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라. 민속놀이

전래의 민속놀이는 없어지거나 군중적 집단놀이 등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주로 국방체육 등의 명목으로 각종 군사놀이나 씨커스를 통해 공연되고 있다.

민속놀이의 변형

시 기	내 용
6·25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민속놀이 존속 - 그네, 씨름(단오) -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구정) - 농악무, 북춤사자놀이, 봉산탈춤 등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놀이 일부가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 농악을 행사에 이용(8·15, 5·1절 등) -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다리기를 장려
196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로 변형 -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 - 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은 미군) - 씨름, 그네를 『민족경기』로 채택

농악은 노동절이나 정권창건일 등 특별한 기념행사 때 극장 또는 야외에서 공연되며, 널뛰기는 곡예의 한 종목으로, 그네뛰기와 활쏘기는 민속체육의 경기종목으로 바뀌어졌다. 이 같은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특정한 명절과 결부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열어 개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8. 관 광

가. 관광정책

북한은 관광산업에 대해 낭비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고 관광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북한에서의 관광사업은 195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것이 최근에 이르러 관광산업은 가장 적은 투자를 하면서도 가장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 관광산업을 통해 북한을 해외에 선전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 외국과의 합영대상 5개 분야 중 관광사업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에는 관광업 또는 관광산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 문헌에는 관광산업 또는 관광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관광사업이란 용어는 쓰지 않더라도 관광 그 자체는 없을 수 없으므로 관광정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80년대에 들어서부터 관광개발 사업에 크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두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악화된 외화사정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비슷한 사정의 중국이 외국관광객 유치로 통해 외화수입을 높이고 있는데 크게 자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수

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북한이 김일성의 출생지라는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등을 필수적인 관광코스로 잡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관광정책은 당국의 정치선전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취미, 여가선용, 휴양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관광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관광사업 추진실태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 이후 외화획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외국관광객 유치사업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6년 5월 정무원 내에 국가관광지도총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조선국제여행사, 관광선전통보사, 조선국제청년관광사 등을 두고 실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이어 1986년 최초로 홍콩·호주로부터 소규모 해외관광단을 유치하였고 1987년 9월에는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하였다.

1987년부터는 각 상업대학에 관광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그해 10월에는 39명으로 구성된 일본인 관광단이 방북하기도 하였으나, 1987년말 북한의 KAL기폭파사건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외국관광객 유치사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후 1988년 11월 북한은 재미교포와 『금강산 국제관광회사』를 합작으로 설립, 그해 하반기부터는 재미교포 및 일본관광단의 북한방문을 재개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에는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북한의 관광사업을 대대적으로 상세히 소개한 바 있고, 1990년 1월 홍콩의 『조인월드 국제여행사』 주선으로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기자,

기업인 등 115명이 특별기 편으로 북한을 관광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앞으로 북한의 관광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다. 주요 관광자원 개발현황

북한의 관광자원은 김일성·김정일 찬양 및 정치선전용 시설물, 문화사적지, 산업시설, 전통음식 및 토산품, 명승지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관광자원은 평양권, 남포권, 금강산권, 원산권, 백두산권, 묘향산권, 개성·관문점권 등으로 구분,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되어 있다.

관광코스는 평양 및 근교 2박3일 코스에서부터 평양-원산-금강산-개성-묘향산-남포에 이르는 15박16일 코스를 포함하여 7가지 일반관광코스과 골프관광, 태권도 교습관광, 등산관광, 감탕(진흙목욕)치료관광 등 5가지의 특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선전하고 있다.

라. 관광 편의시설

북한의 특급수준의 숙박시설로는 평양고려호텔과 향산호텔,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유경호텔 등을 꼽을 수 있다. 객실규모는 평양고려호텔이 500실, 향산호텔이 228실, 유경호텔은 3,000실인데, 유경호텔의 경우는 1987년에 착공하였으나 기술 및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1992년말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

주요 관광권

구 분	명 소
평 양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밀대, 부벽루, 최승대, 대동문, 칠성문, 보통문, 연광정, 대성산성, 남문, 북장대, 안학궁터, 동명왕릉 • 중앙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 • 인민문화궁전, 2·8문화회관, 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국제문화회관,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철, 예술영화촬영소 • 5·1경기장, 김일성경기장, 빙상관 •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외국어대학, 김형직 사범대학 •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창광원,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평양교예극장, 능라도 유원지, 양각도 유원지, 대성산 유원지, 만경대 유희장 • 만경대(김일성 생가), 주체사상탑, 개선문, 만수대(김일성 동상), 혁명열사능, 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축섬 혁명사적지(김구선생과의 회담장소, 통일전선탑, 원두막 등 설치) • 봉수교회, 장충성당
남 포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갑문, 와우도 유원지, 구월산, 수양산, 석담9곡
금강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금강 : 비로봉, 만폭계곡, 명경대바위, 백운대바위, 병풍바위, 무지개다리, 월출봉, 옥녀봉, 천선대, 귀면암, 낙상폭포, 옥영폭포, 은실폭포, 와룡폭포,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 장안사터, 마의태자능

구 분	명 소
금강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금강 : 만물상, 구룡폭포, 구룡연, 삼선암, 상팔담, 수정문, 금강문, 금강굴, 성문굴, 치마바위, 곰바위, 범바위, 삼단폭포, 오단폭포, 백련폭포, 선하폭포, 십이폭포, 흰비단폭포, 용연폭포, 누운폭포, 금강산온천, 유점사터, 신계사터
원 산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금강 : 총석정, 시종호, 삼일포, 해금강문 • 명사십리, 송도원 유원지, 동방식공원, 송도원 국제소년야영소
백두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 백두산 정계비, 이명수폭포, 삼지연, 삼지연 스키장 • 백두산 밀영, 김일성 혁명사적지 (보천보, 무산지구 등)
묘향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폭대, 불영대, 상원암, 금강문, 상원문, 단군굴, 만폭동계곡, 2선남폭포, 천태폭포, 금강폭포, 은선폭포, 비선폭포, 구충폭포, 용연폭포, 은하폭포, 비단폭포, 은실폭포, 만경폭포 • 보현사, 상원사, 묘향산 역사박물관(8만대장경 보관), 국제친선전람관
개 성 · 관문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연폭포, 성군관, 선죽교, 남대문, 만월대, 표충비, 공민왕릉, 관음사, 대홍사, 인삼밭 • 고구려역사박물관, 신천박물관(6·25 전쟁기념), 관문점

관광 편의 시설

구 분	명 소
숙박시설	<p>〈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호텔(500실), 서산호텔(530실), 양강호텔(330실), 청년호텔(520실), 보통강여관(160실), 창광산여관(420실), 평양여관(170실), 해방산여관(83실), 대동강여관(60실) • 유경호텔(건설중, 105층 3,000실), 양각도호텔(건설중, 47층 1,000실) <p>〈지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산호텔(묘향산, 228실), 청천여관(묘향산, 33실), 송도원여관(원산, 164실), 금강산여관(금강산, 240실), 개성 민속여관(개성, 100실), 자남산여관(개성, 43실), 배개봉여관(백두산, 47실), 혜산여관(혜산, 40실), 온수봉여관(백두산, 21실), 항구여관(남포, 109실)
음식점	<p>〈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류관, 옥류관, 연못관, 모란각, 선교각, 평천각, 송산식당, 만경대식당, 남리식당, 소문봉식당, 남문식당 <p>〈지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우도각(남포), 송도각(원산), 박연식당(개성)
백화점	<p>〈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백화점, 제2백화점, 서평양백화점, 낙원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 <p>〈지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백화점, 개성백화점

1급 수준의 숙박시설로는 보통강여관, 양강호텔, 서산호텔, 청년호텔, 금강산여관 등 5개가 있으며, 객실의 수는 모두 1,800개 정도이다.

2급 수준의 숙박시설은 대동강여관, 평양여관 등 9개, 3급 수준은 해방산여관, 해주여관 등 7개를 소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물이 노후하고 시설이 구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광음식점으로는 평양의 청류관, 옥류관, 모란각과 남포의 와우도각 등이 손에 꼽을 정도이며, 관광객 쇼핑을 위해서는 평양 제1백화점, 제2백화점, 낙원백화점 등과 지방에 남포백화점, 개성백화점 등이 있을 뿐이다.

그외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원산-해금강(삼일포)에 여객선, 대동강에 유람선을 취항시킨 바 있고, 백두산 천지에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궤도식 삭도(케이블 카)를 건설·운영중에 있으며, 평양교외 태성호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 문화

1. 교 육

가. 교육정책

북한의 교육은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¹⁾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은 헌법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장기 교육정책을 제시한 교육의 종합지침서는 1977년 9월 5일 제정·공포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²⁾이다. 이 『테제』는 그간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일정한 체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 『테제』에 나타나 있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1)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230.

2) 동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즉 교육이념과 목표는 후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교육을 하는데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서 ①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주체의 수립, ③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교육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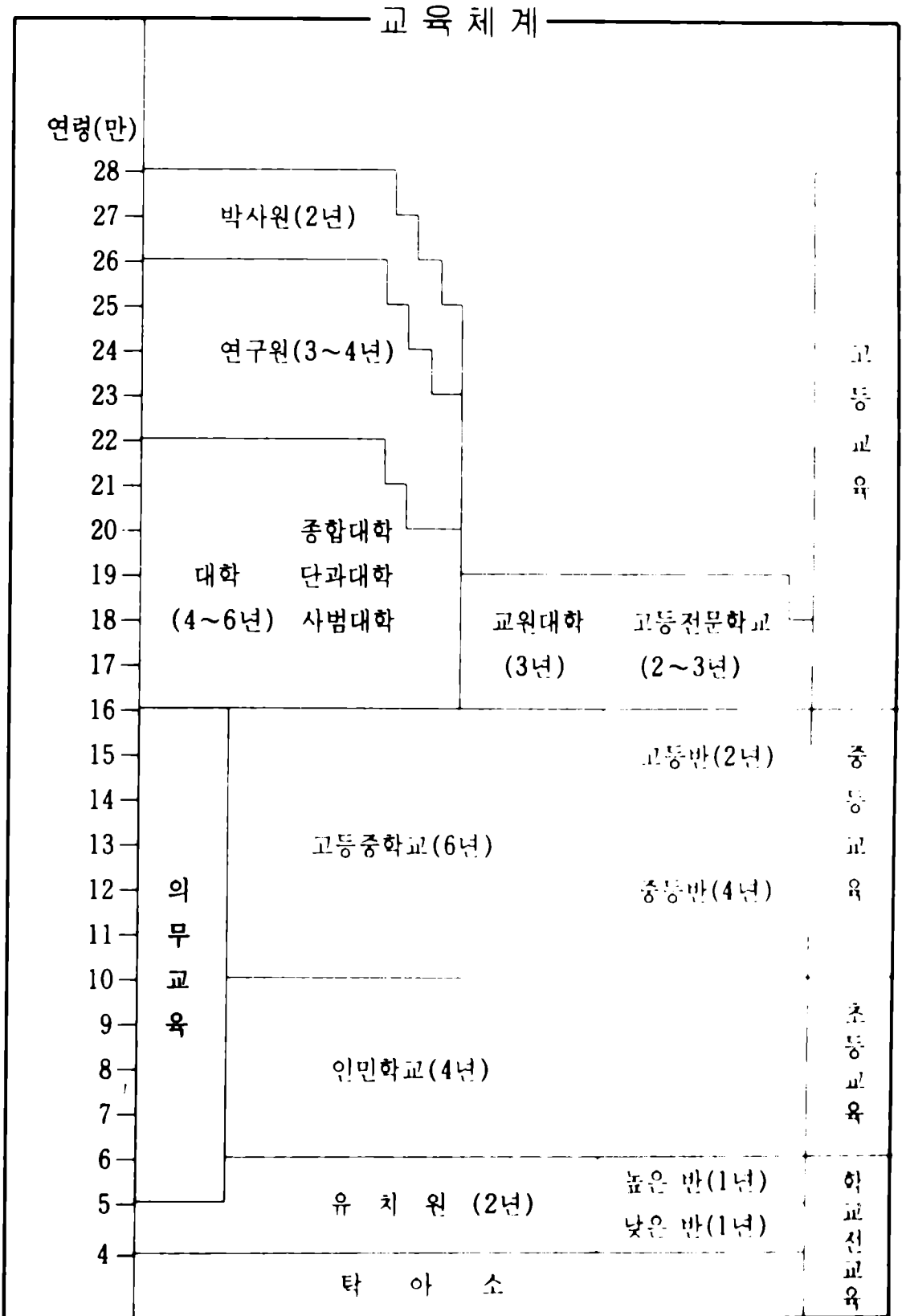
북한의 교육정책수립과 총괄적 지도·통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 및 교육부에서 하고, 정무원 산하의 교육위원회는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을 통괄한다.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시·도(직할시)에는 인민위원회 교육처가 각급 학교를 분장하여 통괄한다.

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 있으며,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과정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1) 의무교육

북한에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全民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의무교육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회의(1949. 9. 8)에서 1950년 9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가 실시되어 오다가 1958년부터는 3년제 중등교육까지 확대하여 의무화하였다.

3)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참조.



* 출처 : 「조선개관」

9년후인 1967년에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4년제의 인민학교와 5년제의 중학교를 의무제로 한 것으로, 중학교의 5년과정 중 3년간은 일반적인 중학교육을, 그 후의 2년간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으로 되어 있다.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는 의무교육연한을 1년간 연장하여 10년제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1972년 노동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전 의무교육』을 동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5년 9월부터는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따라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유치원 높은 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다.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교육목표는 이 기간동안 중등일반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고등교육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이 개교된 것은 1946년 9월 1일이다.

1946년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동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건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1948년 7월 7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157호 결정에 의해 고등교육 확장 시책이 발표되었다.

휴전 후 『3개년복구건설기』(1954~'56)에는 정치·경제분야 대학들이 신설되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계획』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등교원의

대량 양성을 위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노동당 확대전원회의를 개최, 6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7개년인민경제계획(1961~'70)기간에도 공장대학의 증설을 결정하였다.

이어 2차 7개년경제계획(1978~'84)기간에는 부족되는 각급 학교건설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하고 소규모의 공장대학·통신대학·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현재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280여개의 대학이 있는데 각 도에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과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공산대학 등이 있으며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공장대학이, 대규모의 협동농장과 수산사업소에는 농장대학, 수산대학 등이 있다.

이외에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600여개 있다.

다. 교육내용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인민학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을 위시하여 『국어』, 『외국어』, 『수학』 등 총 9개 과목에 대해 4년동안 3,451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민학교 교육과정 편제

번호	구분 과목명	총시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17주)	2학기 (22주)	1학기 (17주)	2학기 (22주)	1학기 (16주)	2학기 (21주)	1학기 (16주)	2학기 (21주)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2	친애하는 지도 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3	국어	1,142	8	8	8	8	7	7	7	7
4	외국어	37							1	1
5	수학	834	5	5	5	5	6	6	6	6
6	자연	222					3	3	3	3
7	체육	304	2	2	2	2	2	2	2	2
8	음악	304	2	2	2	2	2	2	2	2
9	도화·공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5	25
	시험과목수						3	4	3	4

고등중학교는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2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현행 당 정책』, 『국어문학』, 『수학』 등 총 21개 과목에 6,742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번 호	구분 과목명	총 시 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 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16	22	16	22	16	22	16	22	16	22	16	22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 님 혁명활동	150	2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 님 혁명역사	195						2		2		3		
3	친애하는 지 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 동	112	1		1		1							
4	친애하는 지 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역 사	110						1		1		1		
5	현행 당정책	102						(34)		(34)		(34)		
6	국 어 문 학	769	5		4/5		4	4		3		2		
7	한 문	251	2		2/1		1	1		1		1		
8	외 국 어	591	3		3		3	3		3		3		
9	역 사	280			1		2	2		2		2		
10	지 리	344	2		2		2	2		2				
11	수 학	1,283	7		7		6	6		6		7		
12	물 리	549			2		3	4		4		5		
13	화 학	381					2	3		4		4		
14	생 물	410			3		2	2		3		3		
15	체 육	309	2		2		2	1		1		1		
16	음 악	143	1		1		1	1						
17	미 술	76	1		1									
18	여학생실습(여)	210	1		1		1	1		1		1		
19	기계조작실습(남)	197												
20	제 도	60						1		1				
21	실습: 전자기계	120						(36)		(50)		(34)		
	선택과정	100								(26)		(74)		
계		6,742	27		31		31		34		34		34	

이외에 모든 인민학교·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사적지들의 답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씩 과외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생들은 견학명목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어 1주일간 노동을 하여야 한다.

대학은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공통과목으로 『당정책』, 『혁명역사』, 『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에 따라 20~30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교원양성

북한에서의 사범교육 목적과 사명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있는데 각 도와 시(직할시)마다 2개씩 설치되어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며, 제1·2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원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교육과 이외에 통신·야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 재교육 실시 및 단기강습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⁴⁾, 『김정숙

4) 동 대학은 1946년 10월 1일 설립되어 현재 13개 기본학부에 2,500여명의 학생, 250명의 교원이 있으며 각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원들을 재교육시키는 『교원 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 『삼흥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마. 특수교육

북한의 특수교육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각 도에 설립된 『제1고등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제교육의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의 예체능전문학교, 외국어의 중점교육을 위한 『평양외국어학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각 도(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과정으로서 1983년 9월 평양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에 12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주로 과학·수학·물리 분야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7년제로서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후 입학할 수 있는데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군사조직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9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2. 문학·예술

가. 문예정책 및 이론

(1) 문예정책의 기초

북한은 문학예술을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⁵⁾으로 규정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은 지구 위에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역할”⁶⁾을 맡고 있기 때문에 『로동계급의 전위당』인 노동당의 지도에 따라 창작·보급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문학의 기본적 원리와 입장을 밝혀내는 문예이론과 당의 문예정책은 동일한 것이 된다.

북한 문예정책의 기본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원칙과 당적 지도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

5)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의 김일성 연설.

6) 『문학예술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2), p.364.

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방법”⁷⁾으로 설명되는데, 이때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적 형식이란 “자기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⁸⁾ 형식을 뜻한다고 설명되지만,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형식이 민족적인가 하는 반론도 있어, 민족적 형식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당성이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⁹⁾을 말한다. 이 당성은 원래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요구되던 당파성이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으로 특정화되면서 당성으로 변화된 것이다.

노동계급성은 “노동계급의 혁명정신 곧 노동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입장”¹⁰⁾을 말한다.

북한은 모든 문학예술이 철저히 노동계급의 입장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학예술의 무계급성, 초계급성에 대한 부르조아반동작가, 예술인들의 주장은 순전히 제놈들의 문학예술의 반동적 본질과 반인민적 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 구호”이며, “일정한 계급의 이해관계와 사상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예술을

7) 위의 책, p.497.

8) 위의 책, 같은 페이지.

9) 『조선말대사전』 1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727.

10) 위의 책, p.964.

위한 예술, 그 어떤 계급적 성격도 띠지 않는 초계급적이며 전인류적인 문학예술은 있어본 적이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¹¹⁾고 순수 문학예술을 배격하고 있다.

인민성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 또는 품성”¹²⁾인데,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과 감정을 정당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수백만 근로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여야 한다”¹³⁾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인민성 즉 “인민에 대한 문학예술의 복무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도록”¹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과 함께 당적 지도와 통제가 북한 문예정책의 기본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 등 모든 문예활동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또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당의 이익과 당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2) 주체문예이론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는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제하의 연설을 통해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11) 위의 책, p.80.

12) 『조선말대사전』 2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700.

13)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88.

14) 위의 책, p.88.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문예분야에서 수용, 1967년 이후 전개된 문예이론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이다.

이 주체문예이론은 사회주의의 문예이론 원류라 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적 지도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여 주체사상(유일사상)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작가·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의 문예정책 관철에로 적극 동원하여 당의 유일사상이 정확히 구현된 문학예술작품을 만들어 낼 것”¹⁵⁾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이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 당의 유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고…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¹⁶⁾케 하는 근본담보라고 보고 있다. 달리 말해 전통적 사회주의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체사상체계내에서 재해석하여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는 사상체계 수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의 특징은 첫째, 주체사상이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강조함에 따라 주체문예이론에서도 인간의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강조하고, 둘째,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성과를 보장하는 결정적 조건을 사상·의식에 두고 있으며, 셋째, 창작방법론으로 종자론과 속도전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15) 위의 책, p20.

16) 위의 책, 같은 페이지.

종자론은 김정일이 창안했다는 것으로, “문예학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인류문예과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¹⁷⁾을 하였다고 선전된다.

종자란 문예작품에서 “소재, 주제, 사상의 밀접한 련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단일한 개념”¹⁸⁾으로서 작품의 기본 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속도전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¹⁹⁾이라 한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1967년 이후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²⁰⁾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 문예단체

직업예술인의 조직체이자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있다. 이에 망라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은 김일성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의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17) 위의 책, p.172.

18) 위의 책, p.175.

19) 위의 책, p.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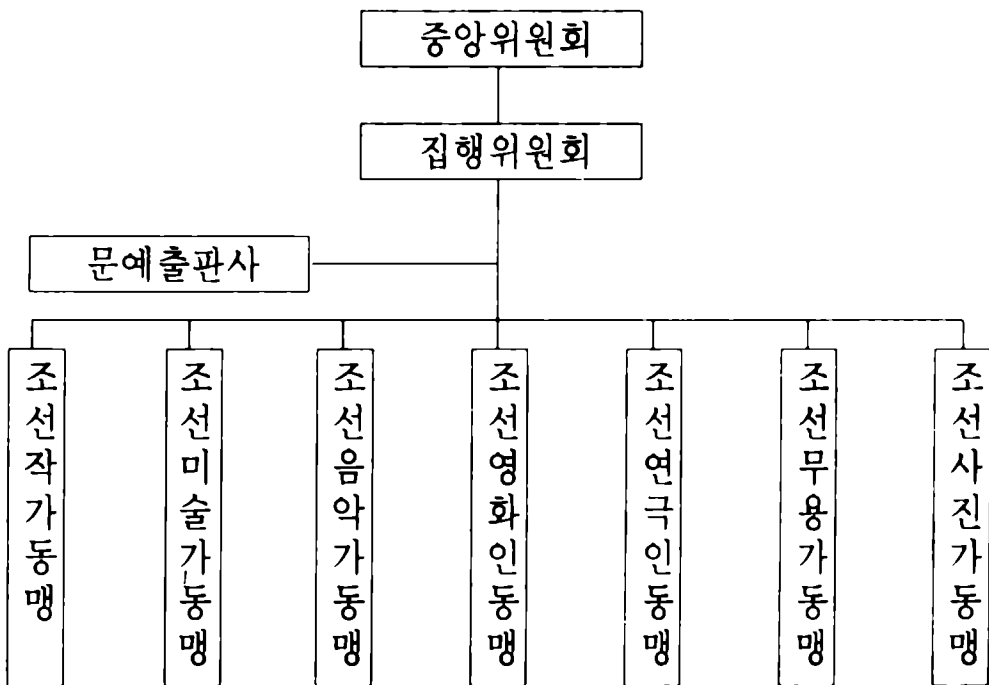
20) 류만·박종원, 『조선문학개관』(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 p.275.

투쟁²¹⁾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예총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으로 발족되었다가 1951년 3월 10일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개편된 조선문학예술동맹의 후신이다. 이 조선문학예술동맹은 1953년 9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임화, 이원조, 김남천, 설정식 등 남로당계 문예인들의 숙청으로 해산되고 개별단체로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2월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몇개의 예술동맹을 다시 망라하여 현재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조직된 것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구



* 출처 : 『문학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698.

* 주 : 각 동맹산하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도에는 총동맹 지부와 부문별 동맹지부가 있다.

21) 『문학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698.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주체의 구상단계로부터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주체문예이론의 대두와 주체사상체계의 확립 이후엔 김일성 부자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을 그려내기 위한 집체창작이 문예총 및 각 동맹의 지도와 할당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문예총과는 다른 성격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단체 등에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다. 이 예술소조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혁명의 한 조직체가 된다. 이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단체로 움직이지만, 예술소조원들의 창작품들도 각 동맹의 기관지를 통해 발표되고, 이들중 더러는 후보맹원으로 발탁,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으로 가입, 작가·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다. 분야별 현황

(1) 문 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북한의 문학은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²²⁾ 하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요구받는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된 1967년 이후 북한 문학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형상창조”문제를 해결한 것이다.²³⁾ “수령형상문학”이라 지칭되는 일련의 작품들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초인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표작이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 전편 전 15권의 완성이다. 이 『불멸의 력사』는 김일성 이상화를 위한 창작집단인 『4.15창작단』에서 북한의 가장 유능한 작가들을 망라하여 집필량을 할당, 1972년부터 창작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 해방 전편 전15권의 완간을 본 것이다. 이 『불멸의 력사』는 1925~1940년까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그리고 있다.

1990년에는 『불멸의 력사』 해방 후편이 창작되었으며 1992년에는 김일성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 2권이 출판되었다.

또한 주체문예이론 대두 이후 1970년대 초반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 불리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장편소설로 개작되었다.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개조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자면 본보기 작품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상예술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후의 고전적 명작”²⁴⁾들을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도록 소설로 옮긴 것이라 한다. 이들 3대 고전적 명작은 김일성이

22) 류만·박종원, 『조선문학개관』(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 p277.

23) 위의 책, 같은 페이지.

24) 위의 책, p278.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던 것이라 하며, 1969~'74년 사이에 세 작품 모두 장편소설, 영화, 혁명가극 등 문예의 모든 형태로 개작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북한 문학은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새로운 인간성격창조”로 “긍정적 주인공”에 의한 감화라는 『긍정전형』을 창조하였다.²⁵⁾ 이는 종래의 친일지주, 반혁명분자, 일제 등 고정적 악역들이 현실성을 상실함에 따라 선악의 이분적 대립구도로부터 긍정전형을 보다 중시하는 구도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시의 경우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수령과 지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의 마음”이 반영된 『송가』의 전면적 발전²⁶⁾을 보여준다고 북한 문학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 대표작으로는 1972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에 집체작으로 발표된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어버이 수령님 만수무강을 축하합니다』,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한덕수) 등이 있다.

또한 1970년대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여 이후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고요』(1984, 리종렬), 『기억』(1985, 석윤기), 『아끼시는 심정』(1982, 리동후)²⁷⁾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부문에서는 『위대한 탄생』(1984, 오영재), 『백두의 새날』(1982, 김철), 『한평생을 바쳐』(1976, 최영화), 『2월의 꽃바다』(1976, 리영백) 등이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²⁸⁾ 특히 1992년에는 김정일 50회 생일을 기념하여 김일성

25) 위의 책, p.279.

26) 위의 책, pp.326~328.

27) 위의 책, p.296.

28) 위의 책, p.334.

이 직접 창작한 『송시』가 있다.

이상과 같이 주체문예이론 대두 후 북한 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의 전개, 긍정전형의 창조, 김정일 이상화의 심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창작의 특징 외에 문화운동의 전개측면에서는 군중문학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당창건일, 김일성 및 김정일 생일, 김일성·김정일의 연설 등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공모되는 군중문학상이 다수 있어 그 입상작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뿐만 아니라 입상자들의 문단데뷔에도 특혜를 주는 군중문학운동은 1982년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더욱 활기를 띠어오고 있다.²⁹⁾ 군중문학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당창건일과 김일성 생일을 기해 제한없이 공모하는 『전국군중문학상』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6·4문학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제1회 『6·4문학상』수상작인 주옥양의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³⁰⁾는 김정일 찬양의 극치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외부의 변화요구를 반영하듯이 남녀의 애정을 묘사한 작품도 등장한다. 사상과 주제는 당과 김부자에 대한 충성임에는 변화가 없으나 줄거리를 남녀의 애정을 중심으로 한 대표작이 남대현의 『청춘송가』(1987)로서, 이는 북한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문단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은 바 있다.³¹⁾

29) 1982~'88년 기간중 발표된 군중문학 작품 수는 총 30만 8,500여편에 이르고 있음. 『조선중앙년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9), p.262.

30) 주옥양,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평양 : 문예출판사, 1984) 참조.

31) 박용학, “청춘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월간 조선문학』(평양 : 문예출판사, 1988. 7호) 참조.

(2) 미 술

북한은 미술을 “조형적 언어를 가지고 현실을 사상미학적으로 파악하며 시각적 구체성, 직관적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사상정서 교양에 이바지”³²⁾하는 예술로 본다.

북한에서는 미술의 분야를 사회적 기능에 따라 기념비미술, 영화미술, 무대미술, 장식미술, 산업미술, 건축미술, 일반미술로 나누고 있다. 그 외에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북한은 미술을 노동과정에서 생겨나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의 미술유산에는 착취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이용된 것이 많으며 일제식민지 통치에 의해 왜곡되어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북한은 참된 미술의 전통을 항일혁명미술에서 찾는데, 김일성이 이끈 항일혁명미술이 최초로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미술이었다고 주장한다.³³⁾

북한은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다”³⁴⁾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당의 지도에 충실한 미술을 요구하고 있다.

32) 『문학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377.

33) 『백과전서』 2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p.866~867.

34) 『김일성저작집』 20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427~473.

때문에 북한의 미술에는 기념비미술이라는 명칭의 목적적 작품이 많고, 선전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추상화·추상조각 등은 ‘추상은 죽음’이라 하여 배척된다. 따라서 “인간성격과 인간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그려낸 사실화만 존재한다.³⁵⁾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유화·벽화·출판화 등이 망라되는데,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은 것이지만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을 혼합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각에는 환각·부각·투각 등의 종류가 있는데, 동상으로 대표되는 환각작품들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많다. 특히 애국열사릉·혁명열사릉의 군상은 사실주의적이면서도 분노와 비탄, 투쟁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만년화라고 하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 모자이크화처럼 그려 일상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 공예이며, 만년화 작품으로 『만경대 고향집』이라는 장식화가 유명하다.³⁶⁾

공예품의 창작·보급은 각 시·도에 1~2개씩 있는 미술창작사에서 담당하는데, 가장 유명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곳은 평양 『만수대창작사』이다.

(3) 음악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는 북한의 음악은

35) 『주체리론에 기초한 문예리론』 (평양 : 문예출판사, 1976), p.146 참조.

36) 『백과전서』 2권, p.639 참조.

“생활과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을 따른다.³⁷⁾

북한이 음악을 통한 사상교양을 강조함에 따라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 가사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한 성악곡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 노래의 가사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혁명성, 노동의욕 등의 고취를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순수서정적인 가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조선음악 600곡집』에는 가극 아리아 190곡, 가곡 302곡, 영화주제가 10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곡 중 80%에 가까운 232편이 직접 김일성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찬양가요까지 제작되었는데, 『김정일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노래』, 『빛나라 정일봉』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이들 노래는 주제가 선명한 가사와 따라 부르기 쉬운 평이한 멜로디, 4·4조 혹은 4·3조의 전형적 박자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전통음악은 그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다. 전통성악 중 판소리는 김일성이 특유의 탁성을 『쌩소리』라 하여 비판한 때문에 거의 소멸되었다. 유장하고 애절한 여운을 지닌 『서도소리』도 발성의 난이성 때문에 인민적인 것이 아니라고 거부되고, 전승되는 민요나 기타 노래도 목에서 쉽게 나오는 비성이 섞인 독특한 가성으로 발성하며 부른다. 따라서 전통음악 특유의 거치르고 유장한 맛은 남아 있지 않다.

전통 기악에서도 악기 개량으로 음색이 달라졌다. 1962년 이후 종래 악기의 제한성(오음계)을 극복하고 아무리 복잡한 곡도 자

37) 『문학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p.1186~1187.

유자재로 연주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음계개조운동을 벌여, 전통 악기를 12음 반음체계로 변조시켰다. 예컨대 가야금은 명주실로 끈 줄 대신 쇠로 만든 줄을 사용하며, 부들을 없애고 현을 18줄 또는 그 이상으로 개량하였다.³⁸⁾ 전통악기를 새로이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슬 혹은 와공후를 개량한 것으로 보여지는 33현의 옥류금이 제작되어 전통음악에서 필수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전통음악은 그들이 인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요나 노동요 외에는 대중적으로 연주되지는 않지만,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된다.

서양음악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연주가 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엔 대외용의 연주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외에는 연주가 거의 되지 않는다.

대중가요는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경제선동가요 등이 경제현장에서 연주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악기는 아코디언이나 멜로디언, 멜로디카, 관악기 등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전역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회과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1991년 9월에는 팝그룹 『보천보 전자악단』이 일본 전역을 순회한 바도 있어 북한 대중가요의 변모가능성도 엿보게 해준다.

한편, 북한의 음악가 양성은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된 제1고등중학교의 특기자 영재교육 및 예술전문학교에서 조기교육을 실시, 우수한 소질을 가진 아동은 집중 교육된다. 그 결과 북한 교향악단의 기교는 수준급이라는 평을 받으며,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 유학하는 음악인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동양인으로서

3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2.

는 최초로 카랑산국제영화제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받은 지휘자 김일진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4) 영 화

북한은 영화를 「직관예술」이라 하여 선전·선동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어떤 예술장르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영화는 북한당국의 각별한 배려에 의해 노동당의 노선 및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유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73년 4월 발표된 『영화예술론』은 김정일의 저술로서 주체사상과 주체적 문예이론을 영화분야에 독특하고도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문헌이라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예술론』은 북한의 영화정책과 영화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로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작된 모든 영화는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

원래 북한 영화는 긍정전형과 부정전형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전형이 시대적 공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김정일의 지시 아래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³⁹⁾ 이후 절대적 악역은 없어지고 제한적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감화로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영화는 1950년대 천리마운동 이후 대형화하여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시리즈 등 방대한 작품제작에 치우쳤으나, 대작의 효

39) 최윤섭, “부정인물형상에서 도식성을 극복하자,” 『청년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88. 4호)

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해외영화제에서 외면받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다소 줄이는 대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인다. 신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의 국제영화제로는 1987년 창설된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 영화축전』이 있는데, 북한은 그해 9월 개최된 제1차 영화제에서 극영화 『도라지꽃』으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1990년 9월 개최된 제2차 영화제에서 극영화 『생의 흔적』으로 여우주연상, 기록영화 『통일의 꽃』으로 축전최고상인 햇불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영화제에서도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2부』가 햇불금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영화제로는 1991년 2월 김정일 49회 생일을 기해 신설한 『조선영화축전』이 유일한데, 여기서는 전년도에 제작된 영화중 예술·기록·과학·아동영화 등 분야별로 최우수작품을 선정, 『2·16 영화상』을 수상하고 있다.

주요 영화촬영소로는 극영화 전문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기록영화제작사인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아동과학교육영화제작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등이 있다. 각 촬영소 내에는 2~3개의 제작진이 『창작단』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5) 연극

북한의 연극은 영화의 등장으로 한때 쇠퇴하였지만 여전히 혁명교양의 강력한 도구이다.

북한 연극은 항일혁명시기에 김일성이 오가자·무송 등지에서 공연했다는 『피바다』(혈해), 『꽃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

명』 등 항일혁명연극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⁰⁾ 3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1969~74년 사이에 대규모 혁명가극으로 각색되어 공연되기 시작한 후 더 이상 연극으로는 공연되지 않는다. 그대신 1978년 6월 14일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을 대규모 무대에다 음악·무용 등을 가미,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새롭게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발전을 보게 된다.⁴¹⁾

“김정일의 지도 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주체예술의 새 전성기”⁴²⁾를 열게 한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5대혁명연극으로 『성황당』, 『3인1당』, 『경축대회』, 『혈분만국회의』, 『딸에게서 온 편지』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성황식 혁명연극으로 꾸며진 연극들은 기존의 연극내용에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원작에 밝혀진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시켰다”⁴³⁾고 선전된다.

5대혁명연극 외에 1980년대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새롭게 창조된 현대극으로는 『초석』, 『조국의 품을 찾아서』, 『이 길을 간다』, 『어머니와 아들』 등을 들 수 있다.

(6) 가 극

영화와 더불어 북한당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연 예술분

40) 『문학예술사전』, p.1078.

41) 『조선중앙방송』, 1988. 6. 14.

42) 위의 방송, 같은 날.

43) “민족자주정신을 지닌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 : 혁명연극 경축대회에 대하여,” 『로동신문』, 1988. 6. 4.

야가 가극이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서양 오페라와는 약간 다르다. 우선 가극은 아리아와 함께 『절가』라는 형식의 노래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데, 절가란 여러개의 절로 나누어진 정형시를 하나의 곡에 맞춰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로서, 반복에 따른 강조의 효과가 크다. 이 절가는 북한 혁명가극의 기본적인 표현수단으로 되어 있다. 혁명가극은 서양 오페라의 대화창과 대화, 레시타티브 등을 모두 절가로 바꾸었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방창이라 하여 배경합창단이 주인공의 입장, 상대자의 입장, 군중 및 관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해석하면서 극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합창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창과 절가가 혁명가극의 표현상의 큰 특징이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무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일반 오페라에서는 극의 효과를 위해서 혹은 줄거리 전개상 어느 정도 무용이 사용될 뿐이지만, 혁명가극에서는 무용도 합창과 마찬가지로 비중으로 사용되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있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항일혁명기의 연극 『혈해』를 김정일의 지시로 개작한 혁명가극 『피바다』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북한은 이 『피바다』의 제작을 기준으로 하여 웅장한 규모의 혁명가극을 속속 공연하였는데, 이로부터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혁명가극의 대표작으로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과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은 이를 5대 혁명가극이라 칭한다.⁴⁴⁾

피바다는 1971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초연되어, “오늘 인민들을

44) 『평양방송』, 1991. 7. 17.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참된 교과서가 되고 있으며 혁명적 가극예술의 불멸의 가치로, 고전적인 본보기로 되고 있다”⁴⁵⁾고 선전된다.

『꽃파는 처녀』 역시 1972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초연하였는데, 서경·7장·종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극단

(중앙)

단 체 명	인 원
국 립 연 극 단	180명
평 양 연 극 단	120명
평 양 청 년 연 극 단	80명
중 앙 방 송 연 극 단	60명
인 민 군 연 극 단	80명
사 회 안 전 부 연 극 단	80명
철 도 부 연 극 단	80명

(지방)

단 체 명	인 원
평 양 시 연 극 단	60명
신 의 주 시 연 극 단	60명
사 리 원 시 연 극 단	60명
해 주 시 연 극 단	60명
개 성 시 연 극 단	60명
원 산 시 연 극 단	60명
합 흥 시 연 극 단	80명
청 진 시 연 극 단	80명
강 계 시 연 극 단	60명
혜 산 시 연 극 단	60명
인 민 군 각 군 단 연 극 단	30~40명

45) 『문학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901.

주요 가극·무용·예술단

(중앙)

단 체 명	내 용
피 바 다 가 극 단	1971년 7월 17일 창립, 380명
만 수 대 예 술 단	1946년 평양가극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 예술단으로 개 칭, 약 300명
평 양 예 술 단	1972년 모란봉 예술단을 개칭, 약 300명
평 양 청 년 가 극 단	약 200명
국 립 가 무 단	약 200명
국 립 가 극 단	약 200명
철 도 부 예 술 단	약 150명
인 민 군 협 주 단	1947년 창립, 약 180명
사 회 안 전 부 예 술 단	약 150명
국 립 교 향 악 단	약 150명
국 립 예 술 영 화 예 술 단	약 160명
방 송 예 술 단	약 160명
평 양 학 생 소 년 예 술 단	약 300명

(지방)

단 체 명	내 용
평 안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평 안 남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남 도 가 무 단	80~90명
강 원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남 도 가 무 단	80~90명
자 강 도 가 무 단	80~90명
양 강 도 가 무 단	80~90명
개 성 시 가 무 단	80~90명
해 군 협 주 단	80명
공 군 협 주 단	80명

3. 언론·출판

가. 언론정책

북한에서 언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⁴⁶⁾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 제67조는 “국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언론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⁴⁷⁾ 하여야 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한하여 대중의 지도자 및 안내자 또는 교사로서만이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에 부과된 으뜸가는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옹호하는데 있다.

46) 『백과전서』 6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292.

47) 위의 책, p293.

나. 언론현황

(1) 신 문

북한에는 우리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문은 없고 다만 노동당·정권기관·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있을 뿐이다. 즉 노동당의 기관지로서 로동신문, 정무원의 기관지인 민주조선, 사로청의 기관지인 로동청년 등 3개 중앙지와 각 도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0개 지방지가 있다.

이상의 13개 일간지외에 공장·기업소 발행의 공장신문과 각 대학발행의 『대학신문』 등의 하급신문과 해외홍보용인 『The Pyongyang Times』(주간)가 있다. 그 밖에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과 같이 정무원의 각부에서 발간하는 기관지들이 있다.

주요 신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로동신문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로동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1946년 1월 1일 북조선공산당 기관지인 『정로』와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합쳐 발간되었다.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라 지칭되고 있는 이 신문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당 건설의 기본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전당에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강화하고 당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⁴⁸⁾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48) 위의 책, p.450.

이처럼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해설·선전하며 주민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지도해가는 주체사상 일색화 사업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고 따라서 당의 철저한 지도·통제를 받는다. 로동신문은 편제상 당의 선전선동부와는 별도로 구성되어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로동신문은 현재 연중무휴로 발행되며 하루 걸지 4면과 간지 2면 등 총 6면을 발행하고 있다.

로동신문사의 기구와 편제는 최고책임자로 책임주필이 있으며 책임주필은 자동적으로 조선기자동맹 위원장직을 겸한다. 책임주필 밑에 3명의 부주필이 있고 그 아래 편집국, 당역사교양부, 당생활부, 혁명교양부 남조선부, 국제부 등 11개부서와 논평원실이 있으며 또 책임주필 밑에 편집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주필, 부주필, 편집국장, 부국장, 부장 등 12~15명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신문제작에 따르는 방향을 논의하고 논평·사설·기사의 결정 및 신문사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임무 및 책임주필이하 사의 간부를 형식상으로나마 선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로동신문사는 신문발행 뿐만 아니라 주요사설논집, 국내국제주요일지, 노동통신원 등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나) 민주조선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최고주권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및 최고주권기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원의 기관지이다.

민주조선은 1945년 8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직속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후 1948년 9월부터 현재의 위치로 고정되었다.

민주조선은 행정부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그 편집내용에 있어 당 관계기사 보다는 행정면의 기사가 비교적 많이 실리고 있다.

민주조선은 “인민정권 일군들과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⁴⁹⁾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민주조선사에는 책임주필, 부주필 2~3명과 편집국, 인민행정부, 문화예술부 등 12개 부서와 논설위원실이 있다.

민주조선에 실리는 기사들은 조선중앙통신사와 로동신문 보도부,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다) 로동청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로동청년은 1946년 11월 1일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발간하기 시작한 『민주청년』이라는 명칭의 신문을 1964년 5월 17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동 연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도 지금의 『로동청년』으로 정했으며 『금성청년출판사』에서 일간지로 발간하고 있다.

로동청년은 “자라나는 새세대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그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세계사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데⁵⁰⁾ 그 임무를 두고

49) 위의 책, pp.902~903.

50) 위의 책, p.453.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청년은 청소년들이 당의 방침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당의 도구이다.

(라) 도일보

각 도당위원회 기관지로 도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지방신문이다.

도일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널리 소개 선전함으로써 도안의 근로자들을 보다 큰 로력적 성과와 위훈으로 고무 추동하는 것”⁵¹⁾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도일보는 일간지로 4면이 발간되고 있으며 발행부수는 대개 4~5만부 정도이다.

도일보의 기사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사무적·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무원 출판총국의 지시를 받는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도일보는 평남일보(1950.12.12), 평북일보(1945.11.27), 함남일보(1945.11.15), 함북일보(1945.11.20), 자강일보(1949. 3.11), 량강일보(1955. 1. 1), 강원일보(1945.12.28), 황남일보(1945. 9. 6), 황북일보(1945. 9. 6), 개성신문(1952. 2.19) 등 10개가 있다.

(2) 방 송

(가) 라디오 방송

1945년 10월 14일 북한은 김일성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한 『조

51) 『백과전서』 2권, pp212~213.

『국개선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방송하기 위해 일제하의 평양 방송국 기능을 정비하여 조선중앙방송국이라 개칭하고 500W의 출력으로 일부 북한지역에 방송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북한에 있어 방송사업의 시발이었다.

1955년 4월 9일에는 방송시설 확장계획의 일환으로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평양중앙방송의 출력을 150KW로 대폭 강화하고 다시 300KW로 증강시켰으며 전후 평양시의 주요 가로들과 직장 구락부, 각도 시군소재지와 노동자가구 등지에 유선방송을 설치했다.

또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평양을 비롯하여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신의주, 개성 등지에 산하 방송위원회를 두고 중앙방송의 중계방송과 해당지역 방송을 진행했다.

1957년에는 각 방송국들의 시설정비와 기술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사리원, 강계, 혜산방송국의 무선방송출력이 증대됨에 따라 방송의 청취지역이 확장되었다.

유선방송시설도 확장되어 234개의 농촌과 리가 새로 유선망에 망라되었고 2만대의 스피커가 증가되었다.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이와 같은 방송체계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를 회수하여 다이얼을 고정시킴으로써 평양에서 방송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송도 들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1967년 12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제1중앙방송(300KW), 제2중앙방송(500KW)으로 분리하여 『제1중앙방송』은 대내방송을, 『제2중앙방송』은 대외와 대남방송을 담당하도록 했다.

1970년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방송, 제2방송, TV방송, 대외

방송을 조직하여 각 도(직할시)와 시·군에 지방방송위원회를 설치했고 다시 1972년 11월 10일 새벽 5시를 기해 제1방송을 조선중앙방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규방송인 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과는 달리 당 비서국 통일전선부에서 관장 운영하고 있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은 1967년 3월 평양 순안에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으로 개설된데 이어 1969년 들어와서는 남한에 『통일혁명당』이 결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의 명칭을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으로 개칭했으며 1985년 7월 현재의 방송 명칭으로 다시 고쳤다.

1989년 1월 1일부터 방송이 시작된 『평양FM방송』은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 방송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현재 북한은 이 4종류의 라디오방송 이외에 10개의 지방방송국⁵²⁾과 10개의 유선방송국, 200개의 군·구역방송국과 4,300여개의 방송실이 있다.

(나) TV방송

북한은 1961년 9월 11일 제4차 당대회이후 7개년계획의 일환으로 TV방송국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1963년 8월 15일 완공목표하에 1962년 착공했으나 소련의 원조부진으로 지연돼 1963년 3월 시험방송만을 실시했다.

1966년 8월이후 소련으로부터 7개년계획에 대한 원조가 재개되어 건설이 활발해짐으로써 1969년 4월에 『조선중앙TV방송국』을 완공·개국하여 5KW출력으로 정규 흑백방송을 시작했으며, 이어 1971년 4월 15일 대남선전용으로 설립한 『개성TV방송국』을 개국

52) 10개의 지방 방송국은 해주, 사리원, 개성, 원산, 강계, 혜산, 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등이다.

했다.⁵³⁾

TV방송국을 개국한 북한은 TV수상기의 보급과 방송요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일본, 프랑스 등지에 기술자를 파견, 기술을 습득하게 한 후 연간 TV수상기 1만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추게 된 이후 1989년말 현재 24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TV방송망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의 텔레비전화를 실현하도록 할 것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⁵⁴⁾ 그후 1971년에 북한은 전국의 텔레비전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식령, 황해, 원산, 자강도 일대에 중계탑 건설을 벌여 당 5차대회 이후 1년내에 TV수신 가능지역을 전국적으로 76%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체신부문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앞으로 3년내에 100%가 TV를 볼 수 있게 중계소 건설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974년 4월 15일 김일성의 63회 생일을 계기로 북한 유일의 대내용 TV방송인 조선중앙TV방송의 컬러방송을 실시했다.

1980년대 들어와 평양지방방송인 『만수대TV방송국』을 개국, 현재 3개의 TV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다.

(다) 방송체계 및 조직

북한의 방송은 당과 정무원의 이원체제로 되어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정무원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당과 정무원의 지도·감독에 따라 북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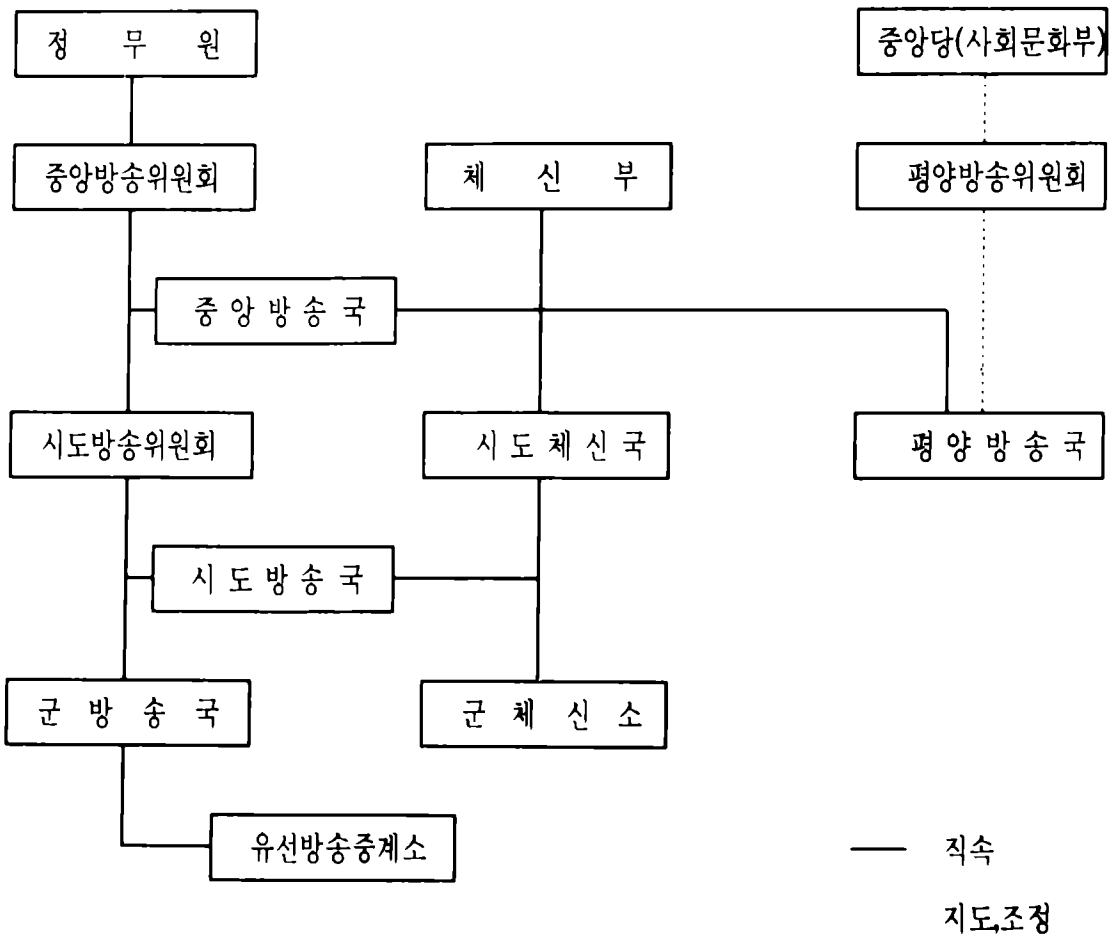
53) 『조선중앙년감』(1972), p.350.

54) 『로동신문』, 1970.11.14.

방송을 관장하고 있는 방송기관으로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에서 임명하고 조직편제상으로는 정무원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의 방송이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정무원에 속해 있고 정무원의 체신부가 주관하여 각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관리 및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는 당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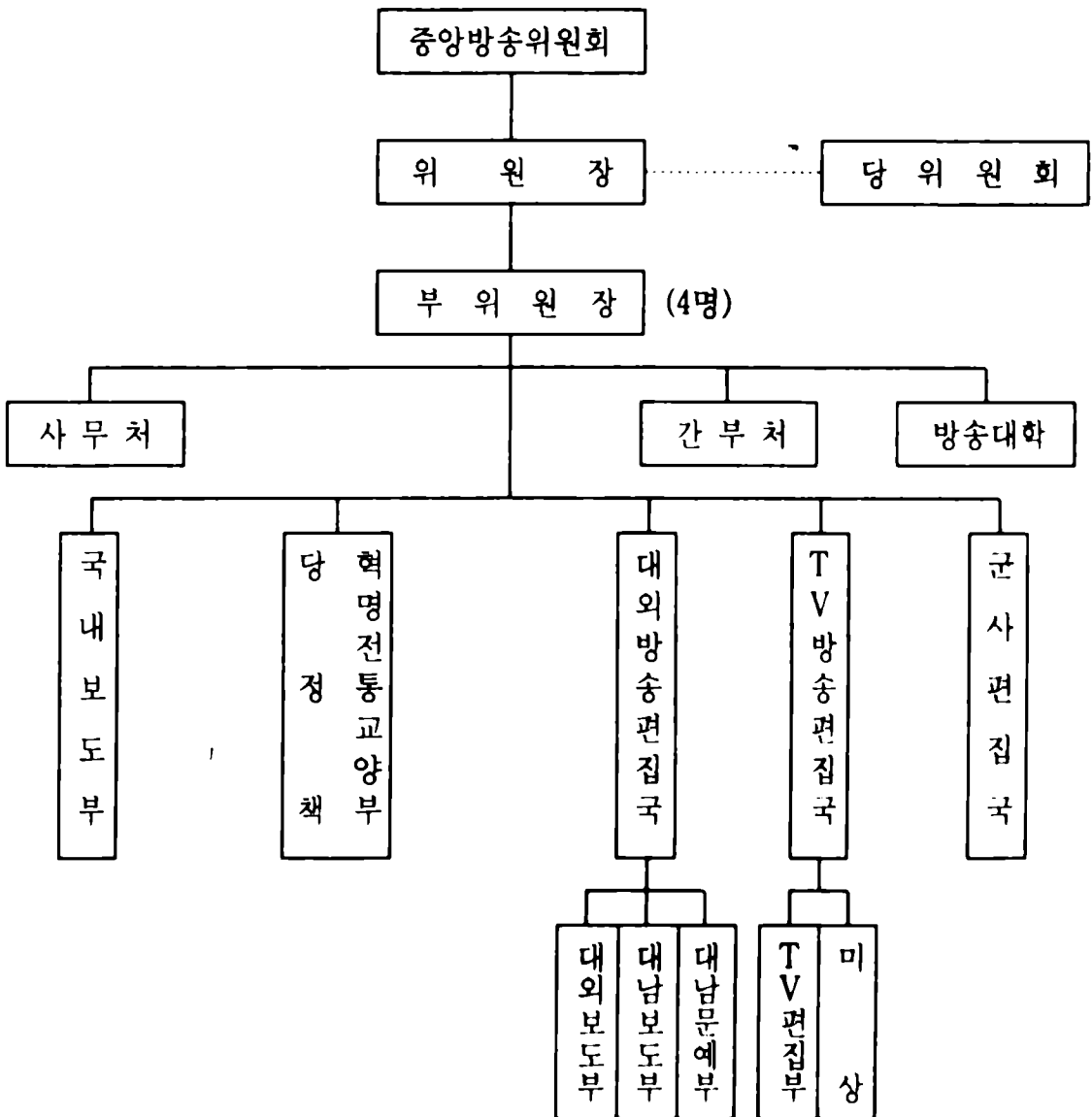
북한방송체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는 각 도(직할시)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방송위원회가 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방송국의 시설이나 기재의 보급관리나 사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체신부의 하급조직으로는 시·도 체신국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군체신소, 체신분소가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직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주로 대내적인 방송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방송되는 모든 내용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검열을 거친 것이며 방송국은 검열된 내용만을 기술적으로 방송할 뿐이다.

『평양방송위원회』는 당의 대남 및 해외공작담당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평양방송국에 대해 방송업무를 지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통신

북한 유일의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는 1946년 12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으로 『북조선통신사』로 발족했다.

그후 1948년 10월 12일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노동당 및 정무원의 공식입장 대변기관으로 존속해 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여타 언론매체와 같이 그 임무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수적인 임무로서는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내외에 광범위하게 소개 선전하는데 있다.”⁵⁵⁾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통신사 자체의 책임자는 사장이나 통신사내에는 당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정치국이 있어서 사실상 통신사내

55) 『백과전서』 4권, p.568.

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통제하고 당의 정책과 지시에 합치되도록 지도·감독한다.

부사장은 해외 및 각 도의 지부관계 업무와 사무적인 분야만을 책임지고 있고 통신내용은 주필이 담당하고 있다.

주필은 2명의 부주필의 도움을 받아 대내외 보도기사의 취재, 편집, 제작을 지도·감독하고 그밖의 통신사가 발행하는 출판물의 내용작성에 책임진다. 통신사의 편제상 특이한 점은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처럼 『남조선 보도편집국』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통신사는 러시아의 타스, 중국의 신화사 등 46개 통신사와 보도분야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중·러·유고 등 12개국에 기사를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로·영·불·서반아어로 된 보도자료를 각국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 선전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른 대내 매스미디어에 뉴스를 공급하는 한편 매일 노동신문개관 또는 노동신문편집 소개라는 것을 내보내고 있다.

다. 출 판

북한의 출판사업은 노동당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의 무기인데 김일성은 출판물의 성격에 대해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⁵⁶⁾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이러한 『교시』에 따라 출판활동에 있어 다음

56) 『김일성저작선집』 10권, p296.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 당의 지도밑에 출판보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며,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다.

북한은 이상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출판물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고 보도성과 정론성, 과학성과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출판사로서는 사상혁명과 관련된 도서출판을 주로 하는 조선노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등과 과학기술도서를 출판하는 사회과학출판사, 과학원출판사, 문예작품의 도서만을 취급하는 문예출판사, 사전을 출판하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이 있다. 또한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교육위원회 산하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와 해외 선전책자의 출판을 하고 있는 외국문출판사가 있다.

잡지로는 노동당의 이론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문학, 조선무역, 대중과학, 조선예술 등 각 분야별로 30여종을 발행하고 있다.

이중 금일의 조선, 조선무역, 천리마 등 8종은 외국어판으로서 해외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문제 시사전문 월간지인 국제생활을 창간, 발행하고 있다.

4. 체 육

가. 체육정책

북한의 체육은 주민의 사상교양의 일환으로, 또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⁵⁷⁾

즉 북한은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⁵⁸⁾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단적 가치 측면에서 체육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 북한의 체육정책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통한 노동과 국방에의 기여⁵⁹⁾ 학교체육의 전문화 및 1인1기의 소유,⁶⁰⁾ 체육에서의 『사상·투지·속도·기술전』 방침 관철⁶¹⁾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육의 기본정책은 체육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혁

57) 북한 헌법 제55조 :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58)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604.

59) 1946년 10월 6일 전국체육인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

60) 『로동신문』, 1972. 7.11.

61) 『근로자』 (평양 : 근로자사, 1986.12호)

명과 건설, 그리고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거 매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고 각 지역 및 각급 단체별로 각종 체육경기를 가질 것을 결정⁶²⁾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높이고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나. 지도·양성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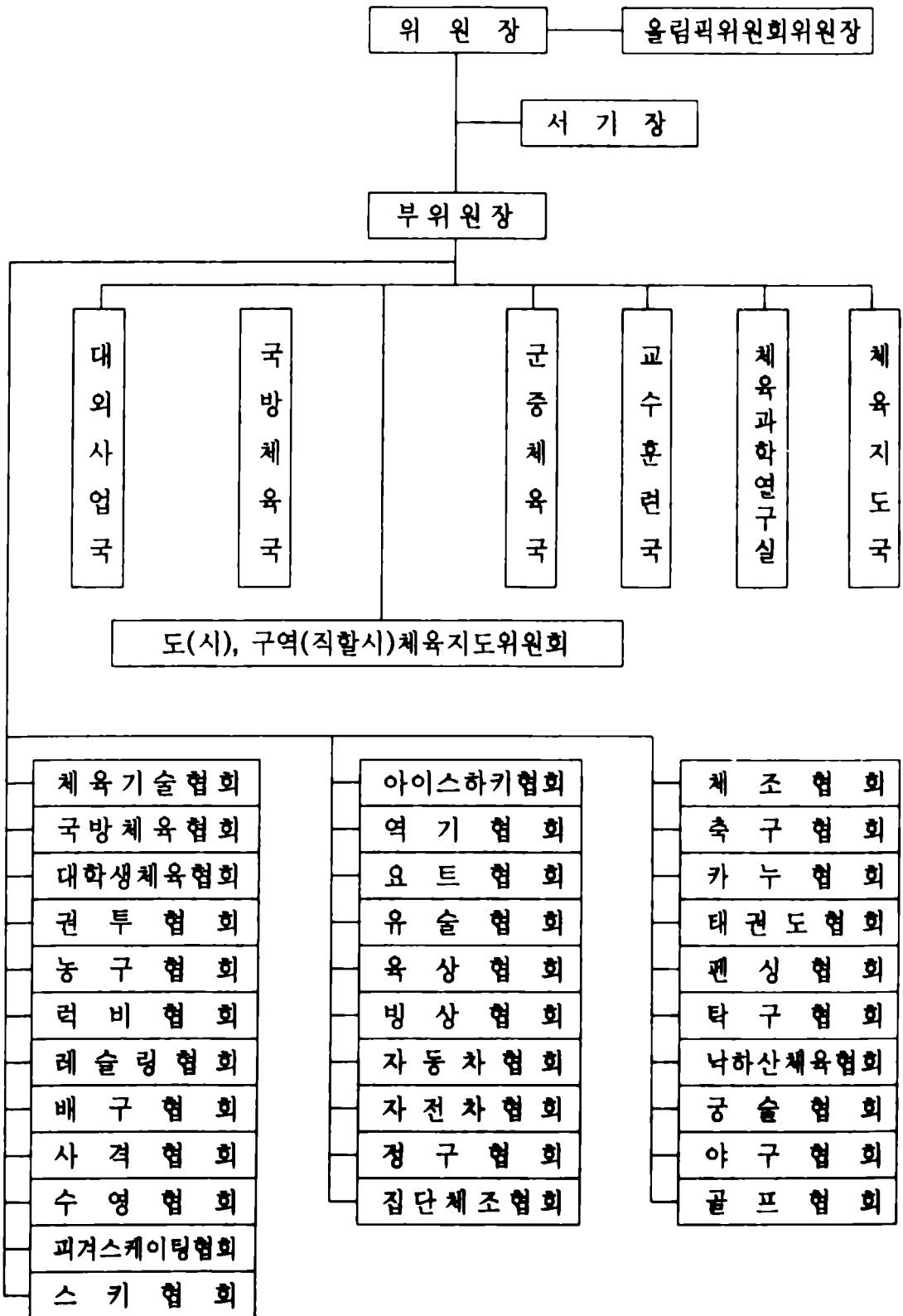
북한의 체육정책은 국가체육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지도·통제·관장하고 있다. 국가체육위원회는 1945년 10월 교육성 산하 『조선체육동맹』으로 발족하여, 1954년 11월 내각 직속 『조선체육지도위원회』로 독립한데 이어 1989년 6월에는 현재의 『국가체육위원회』로 개칭되었다.

국가체육위원회는 당의 지도하에 국내외 체육경기 조직 및 각종 스포츠행사 조정통제, 인민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 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으로는 조선체육대학과 중앙체육학원, 각도의 체육전문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체육학부 등이 있으며, 기타 체육과학 연구기관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앙체육학원은 8년제로서 인민학교 졸업생중 체육특기자를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며, 기타 각급 체육학교도 졸업후에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할 능력과 한가지 이상의 경기심판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62) 『중앙방송』, 1992. 3. 8.

국가체육위원회 기구도



한편 직업적인 체육인들은 국가대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종합팀을 비롯하여 23개 일반 체육단, 해양체육단, 태권도체육단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 주요 체육대회

북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는 김일성·김정일 생일, 노동당 창건일, 정권창건 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체육행사를 통해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당의 방침을 구현시키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주요 체육대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정기체육대회

대회명	목적	창설 및 개최	규모 및 종목
『백두산상』 체육축전	김정일생일 (2.16)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2~3월	• 각도·시 체육선수단 • 축구·복싱 등 30여종목 (동계종목 포함)
『만경대상』 체육축전	김일성생일 (4.15)기념	• 1969년 창설 • 매년 4~5월	• 각도 및 중앙체육 선수단 • 육상·수구 등 30여종목
『보천보혈불 상』체육경기 대회	보천보전투 승리(1937.6. 4)기념	• 1960년 창설 • 매년 6~7월	• 각도·시 체육선수단 및 각지 체육구락부원 • 무선통신·낙하산 등 국 방체육과 육상·씨름 등 30여종목

대회명	목 적	창설 및 개최	규모 및 종목
전국체육구락부생체육경기대회	신인선수 발굴	• 1982년 창설 • 매년 8월	• 전국체육구락부생 • 축구·무선통신 등 200여 종목
공화국창건 기념체육경기 대회	정권창건 (9.9)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9월	• 각도·시 체육선수단 • 사격·수영 등 30여종목
당창건기념 체육경기대회	당창건 (10.10)기념	• 1975년 창설 • 매년 10월	• 각도·시 및 중앙체육선 수단 • 육상·축구 등 40여종목
종목별공화국 선수권대회	우수선수발굴	• 1979년 창설 • 매년 10~ 11월	• 축구·수영 등 40여종목

라. 체육시설

북한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의 건설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평양의 청춘거리에 종합체육단지인 안골체육촌을 건설한데 이어 능라도, 양각도 등에도 국제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체육시설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각종 정치집회·집단체조 등을 위해 대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평양에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지방도시의 체육시설은 지극히 미미하거나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주요 실내체육관 및 옥외경기장 그리고 종합체육 단지인 안골체육촌의 시설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실 내 체 육 관

명 칭	시 설 내 용	비 고
평양체육관 (평양시 모란봉구 역 신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73.4.8 • 좌석 : 20,100석 • 용도 : 배구·농구·축구·탁구·체조 등 11개 종목의 실내경기 및 군중 집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대의 실내체육관 • 1979년4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평양빙상관 (평양시 보통강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2.4.7 (1981.12.6 완공) • 좌석 : 6,000석 • 용도 : 스케이팅·아이스하키·피겨스케이팅, 기타 배구·농구·탁구장으로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원추형 건물
창광원수영장 (평양시 보통강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 : 1980.3.21 • 좌석 : 2,000석 • 용도 : 수영·수구·다이빙 등 국제 경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기록은 1/1,000초까지 측정 가능

* 출처 : 『백과전서』(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참조.

옥 외 경기장

명 칭	시 설 내 용	비 고
김일성경기장 (평양시 모란봉 구역 개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2.4.11 (1981.10.20 완공) • 수용능력 : 10만명 • 용도 : 축구·육상·집단체조 및 각종 군중집회 장소로 활용 • 기타 : 인조잔디시설 및 야간경기 가능, 나이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모란봉 경기장」을 확장 개축후 1982년 4월 10일부로 「김일성경기장」으로 개칭
5월1일 경기장 (평양시 능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9.4.30 • 수용능력 : 15만명 • 용도 : 육상·축구, 기타 각종 체육 행사의 메인스타디움 • 기타 : 인조잔디, 야간경기 가능, 대규모 전광모니터 설치, 프레스시설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비 건설, 평양축전 개·폐회식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시 양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9.4. • 수용능력 : 3만명 • 용도 : 축구·육상경기장으로 활용 • 기타 : 인조잔디, 기자실 등 시설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비 건설
동평양경기장 (평양시 동대원 구역 율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1960. • 수용능력 : 4만명 • 용도 : 축구·육상 등 종합경기장 	

*출처 : 「백과전서」 및 북한방송에서 발췌 정리.

종합체육단지

명 칭	시 설 내 용	비 고
안골체육촌 (평양시 만경대 구역 안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 공 : 1988. 9. 3 • 총관람석 : 5만석 • 총부지면적 : 175만여m² • 연건축면적 : 26만7,000여m² • 주요시설 : 옥외종합운동장 1개, 실내체육관 10개, 피로회복관, 서 산호텔, 체육인식당 등 <p><옥외종합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축구경기장(30,000명 수용) <p><실내체육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볼경기장(2,500명 수용) - 탁구경기장(4,500명 수용) - 경기경기장(4,500명 수용) - 중경기장(2,500명 수용) - 배드민턴경기장(3,500명 수용) - 수영경기장(3,500명 수용) - 역도경기장(2,500명 수용) - 농구경기장(2,500명 수용) - 배구경기장(2,500명 수용) - 태권도전당(2,500명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비하여 건설 된 종합체육단 지

* 출처 : 북한신문·방송내용 종합.

5. 종교

해방전 북한에는 개신교, 천주교 등 서방종교가 남한보다 먼저 전래되었고, 불교, 천도교 등 전통종교도 교세가 성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종교의 영향이 깊숙히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나타낸 공산주의적 종교관의 영향을 받은 김일성의 종교관에 따라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1955년 경에 이르러서는 북한 땅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은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북한 종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김일성의 종교관은 김일성 자신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고 착취·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⁶³⁾라고 발언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북한의 종교관이 얼마나 반종교적인지는 그들이 출판한 백과전서에 수록된 종교에 관한 해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

63) 『김일성저작선집』 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173.

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북한의 종교해설 사례

구 분	해 설
종 교	현대과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밖에 그 어떤 다른 아무런 세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기독교나 불교 등 어떤 형태의 종교이든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현실이 인간의식에 환상적으로 왜곡되어 반영된 것이다.
기 독 교	인민들에게 신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노예적 굴종사상과 반동적 인생관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의 자주정신을 좀먹고 창조적 능력을 억제한다.
불 교	계급사회에서 대중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고통의 원인을 계급적 압박과 착취에서 찾는 대신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에 있다고 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착취적 본성을 가리우고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불교는 현재도 남조선과 동남아세아 나라들을 비롯한 적지않은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근로대중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천 도 교 (동학사상)	사회가 부패하게 된 원인을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귀착시키며 사회를 구원하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동학사상을 믿고 자기수양을 하여 도덕적으로 완성하는데서 찾는 관념론적이며 종교적인 사회역사관이다.

* 출처 : 『백과전서』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84)

그런데 북한에 다시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회담과 상호방문이 실시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즉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였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키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의 종교단체를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북한의 종교정책은 남한 종교인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결성 및 활동에 목적을 두었지 종교활동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서 그 계기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의 영향이었다.

최근 북한은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하는 가운데,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사찰 복원과 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종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에서 종교가 완전히 대중화,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종교단체들도 포교활동보다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라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남한의 종교계를 의식한 선전활동이나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 채택,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등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개정헌법 제68조에서 구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반

북한의 종교 현황

(1992년 현재)

구 분	단 체	신자수	교직자	종교시설	비 고
개신교	조선기독교도 연맹(위원장 : 강영섭)	1만 여명	• 목사 : 20명	• 1988.11 봉수교회 완공 • 칠골교회건 설중 *500여개의 가정 교회	• 1991.3 부활절예배 (봉수교회)
천주교	조선천주교인 협회(위원장 : 장재철)	800 여명	• 신부·수 녀없음 • 신자대표 박경수	• 1988.10 장충성당 완공	• 현재 로마에 2명이 유학 · 사제수업 중
불 교	조선불교도 연맹(위원장 : 박태호)	1만 여명	• 승려 : 300명 • 모두 대처승	• 사찰 60여개	• 1992.1 성도절기념 법회 • 1992.5 석탄절기념 법회
천도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 회				• 1991.4 천도교창도 131돌 천일 절 행사 진행

* 출처 : 북한자료 종합.

종교 선전의 자유”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6. 역 사

북한에서의 역사인식은 북한의 정치상황변화와 맞물려 변화해 왔다. 역사란 그 자체가 현실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주도적 정치세력의 판단과 이해에 직결된다. 특히 북한은 역사인식에 있어 마르크스-레닌적 유물사관의 적용을 둘러싸고 종파성을 분쇄한다는 반종파투쟁을 수차 경험하였으며, 이 종파투쟁은 반김일성세력 숙청과 평행되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시기별로 출판된 역사서의 사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역사인식 변화에 따라 북한 역사사상사를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해방~1950년까지로, 이때까지 북한 역사학계는 김일성의 지배력이 약했고 최창익·백남운 등 좌익 인텔리들의 주도하에 있었으므로 마르크스의 사관인 사적유물론을 역사연구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의 대표작이 1949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이다.

제2기는 1950~'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심각한 사상투쟁과 숙청의 시기로서 최창익·백남운이 반종파투쟁으로 숙청되고 역사인식

기초는 마르크스-레닌의 유물사관에 덧붙여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이 추가된 것으로 확립된다. 이리하여 이 시기의 투쟁을 결산하고 김일성의 혁명전통에 입각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정리한 것이 19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 1962년의 개정 『조선통사』이다.

제3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심화·확립되어감에 맞추어 역사인식의 기초를 주체사상에 두는 것이다. 1970년의 『력사사전』, 1977년 『조선통사』 2차개정판, 1977년 『조선로동당 략사』, 1982년의 『조선전사』, 1987년 『조선통사』 3차개정판 등은 주체사상의 심화를 반영한다.

북한 역사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역사학은 “인류력사를 무엇보다도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의한 사회제도의 합법칙적 교체과정으로 보며, 인민대중을 역사의 창조자로 규정하고 계급사회 이후의 사회력사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을 계급투쟁⁶⁴⁾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역사학이 북한에서 구현된 것은 “김일성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이때로부터 력사학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⁶⁵⁾”고 평가하고 있다.

즉 북한의 역사학은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실천은 력사발전에서 사람,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⁶⁶⁾”고 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혁명역사를 중심에 놓고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64) 『력사사전』 1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622.

65) 위의 책, 같은 페이지.

66) 『백과전서』 2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422.

7. 언 어

북한은 언어를 “사람들이 사상을 나타내며 서로 교체하는데 쓰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언어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힘있게 복무한다”⁶⁷⁾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이 언어를 사상교환의 수단, 혁명·건설의 중요한 무기로 보는 유물론적 언어관, 언어도구관의 관점에서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언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비혁명적·비문화적』 요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문화어』라 부르는 표준어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서울말 중심의 표준말 대신, 평양말과 김일성이 사용하던 방언들을 중심으로 문화어를 제정한 것이다.

북한은 “서울 표준어가 부르조아적 요소와 복고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인민들의 의식속에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고 김일성이 몸소 쓰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⁸⁾

67)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2703.

68) 『문화어학습』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3호)

이리하여 제정된 문화어는 비문화적·비혁명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목 아래 다소 공격적이고,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짓는 적대적 용어와 어법으로서 혁명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문화어는 서울 표준말보다 경성 및 파열음이 많고 용어가 전투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나아가 소련 외래어 등의 차용으로 다소 간 언어의 이질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북한은 1966년 6월 이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에서 어휘선정, 사전편찬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방 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오다가 1949년부터는 한글을 전용하고 있다. 다만 1958년 이후 고등중학교에서는 초보적 필수한자를 교육하고 있으나, 신문·잡지·교과서 등 모든 출판물이 한글로 제작되어 일반주민은 자신의 이름도 한글로만 쓸 수 있다.

맞춤법은 1958년 『조선어 신철자법』으로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이는 1954년 『조선어 철자법』, 1966년 『조선말 규범집』, 1988년 『조선말 규범집』으로 이어져 왔다.

북한 맞춤법의 특징은 두음법칙을 무시하여 단어의 첫음절에 ㄴ·ㄹ이 올 경우 그대로 ㄴ·ㄹ로 표기·발음한다는 것과, 띄어쓰기에 있어 의미단위별로 띄어쓴다는 것이다. 이 띄어쓰기는 1988년 『조선말규범집』에서 띄어쓰기를 조금 강화, 남한의 띄어쓰기 원칙인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에 조금 가까워졌다. 즉 1988년 이전에는 『아침10시』, 『음력3월』 등으로 표기하던 것을 『아침 10시』, 『음력 3월』 정도로, 『국기훈장제1급』은 『국기훈장 제1급』 정도로 띄어쓰기로 한 것이다.

문장부호의 표기는 남북한이 많이 다르다. 마침표, 물음표, 쉼표 등 기본부호 외에는 통상 사용되는 부호가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서명에 사용하는 《》부호는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한에서 사용하는 『』부호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언어 이질화의 몇가지 사례

구 분	개조 또는 신조어	비 고
형용사, 동사 부사의 변질	얼빠한 솜새다 무어주시고 은을 내다 무연하다 이악하게든	얼빠진 조금씩 새다 조직하여 주시고 효과를 내다, 빛을 발하다 무질서하다 악착스럽게
호전적, 선동적 용어	각을 뜨다 까부시다 제공투쟁, 비타협적 투쟁, 모내기전투, 전투적과제 등	사지를 도려내다 쳐부시다 운동→투쟁 일, 과업→전쟁
적개심 고취용어	개, 승냥이, 주구, 원수 등	
노력 착취 용어	평양속도, 천리마운동 총성의 사회주의 경쟁운동, '90년대 속도창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200일 전투	
한자어개조	교편물 밖힘표 이신작척 직관물 만부하 만가동	교육보조자료 명세표 술선수범 전시물(포스터나 현수막 등) 풀가동, 모든 능력을 쏟아 넣음
도입외래어	그룹빠 감빠니아 뜨락또르	단 체 군중운동 트랙터

한글 맞춤법과 조선어규범집의 부호법 비교

맞춤법(남)		규범집(북)		맞춤법(남)		규범집(북)	
은 점	.	점	.	소괄호	()	반달묵음표	()
(고리점)		×		중괄호	{ }	×	
물음표	?	물음표	?	대괄호	[]	꺼쇠묵음표	[]
느낌표	!	느낌표	!	줄표	-	풀이표	-
반점	,	반점	,	붙임표	.	이음표	.
(모점)	`	×		물결표	~	물결표	~
가운데점	.	×		드러냄표	;	밑점	...
쌍점	:	두점	:	숨김표	××, ○○	숨김표	○○
빗금	/	×		빠짐표		×	
큰따옴표	“ ”	인용표	《 》	줄임표	□	줄임표	...
(접낫표)	『 』	×		×	반두점	;
작은따옴표	‘ ’	거듭인용표	〈 〉	×		같음표	”
(낫표)	「 」	×					

*주: ×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

8. 문화시설

북한의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목적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노동당 정책의 선전 및 김일성 1인 독재체제 및 부자세습체제의 합리화와 이상화를 위해, 그리고 『전인민의 노동계급화·혁

영화』를 위해 건립된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시설물들은 “노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최근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의식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고 외형적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김부자 세습체제의 구축을 위한 상징조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그 명칭만 보아도 건립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종류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물관·기념관·전람관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시 만수대 언덕)	1948.8.1	김일성의 항일혁명 활동 및 사회주의혁명 투쟁과정의 사적물 및 자료 전시	1960.8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을 개칭 1972.4.24 만수대로 신축 이전
당창립 사적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70.10	노동당 창립과 관련된 자료 및 사적물 전시	해방직후 김일성이 사용하던 노동당 중앙위 건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53.8.17	항일혁명기의 자료, 6·25 당시 인민군 자료·병기류 전시 및 김일성 업적 전시	1974.4.11 『조국해방기념관』을 개칭, 확장 건립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45.12.1	원시사회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적 유물과 문헌자료 전시	1978.2.12 김일성 현지교시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54.9.28	기원전 3~4세기부터 현 재까지의 미술품 진열	1965.3.11 김일성 현지교시
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	1978.8.26	김일성에게 보내온 146개 국 인사들의 선물 28,000 여점 중 일부 전시	건물내부의 천정, 벽에 『김일성화』 치장
보천보혁명박물관 (양강도 보천군 보천읍)	1955.8.7	1937.6.4 『보천보전투』 관 련자료 및 김일성의 현지 지도 사적자료 전시	1963.6 구건물옆에 현대적 고층건물 신축, 77년 진열체 계 및 자료보충 정비
왕재산혁명박물관 (함북 은성군 왕재산)	1975.10.19	김일성의 1930~'40년대 『항일투쟁』 활동 자료 전 시	당원 및 노동자들 에게 김일성의 혁 명역사를 학습시 키는 정치학교 기 능
조선민속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56.2.10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 으며, 연구사업 및 군중 교양사업도 전개	1960.6.10 김일성 현지교시

* 출처 : 『백과전서』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및 『조선개관』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88)에서 발췌 정리.

회관·궁전·학습당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2·8문화회관	1975.10.7	노동자 및 인민군의 사상 ·문화 교양장소	극장(6,000석· 1,100석) 영화관(600석)
인민문화궁전	1974.1.1	문화·오락시설을 구비한 북한주민들의 휴식, 학습, 문화, 교양 장소	대회의장(3,000석), 원탁회의장(930m ²), 휴게실, 영화관, 당구장 등
평양학생소년 궁전	1963.9.30	평양시 청소년들의 특별 과외활동 장소	장서(5만여권), 극장(1,100석), 체육관(500명수용), 도서관 등
인민대학습당	1982.4	『전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한 종합도서관	장서능력(3,000만 권) 1일수용능력 (12,000명)

* 출처 : <위의 표>와 동일.

극 장

명 칭	설립일	수 용 능 력	비 고
만수대예술극장	1977.1.1	관람석 : 4,000석	북한최대의 극장
평양대극장	1960.8.13	관람석 : 2,200석 최다무대출연인원 : 2,000명 소극장(종합리허실실) 수용인원 : 7,000명	가극공연외 각종 기 념행사 개최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평양교예극장		관람석 : 1,640석	자동전진무대 설치
교예극장	1989.5. 1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동평양대극장	1989.5.18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국제영화회관	1989.5.18	관람석 : 3,150석	평양축전 시설
봉화예술극장	1985.6	관람석 : 2,000석	현대적 무대공연 설비
함흥대극장	1984.4.15	관람실 : 2,500석 소극장 : 700석, 방 : 800개	김정일 지시로 건설

* 출처 : <위의 표>와 동일.

동·식물원 및 기타 위락시설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중앙동물원	1959.4.30	400여종 4,000여마리 사육	편의봉사시설 및 오락시설 구비
중앙식물원	1959.4.30	2,000여종의 식물 재배	『김일성화 온실』설치
창광원	1980.3	목욕탕(1만명수용), 물놀이장, 수영장(관람석 2,000)으로 구성	종합적인 문화 위락 시설
청류관	1982.4.15	1,000여석의 실내좌석과 6,000여석의 야외좌석 및 39개의 봉사실 구비	종합음식점
옥류관	1960.8.15	250석의 좌석과 20여개의 기본실 및 50여개의 부속실, 600여명 수용능력의 대연회장 구비	종합음식점
만경대유회장	1982.4. 8	5만명 수용규모로 29종의 유희시설 구비	종합오락시설

* 출처 : <위의 표>와 동일.

VI. 외 교

1. 외교정책

가. 정책기조

(1) 국제정치관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국제정치를 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는 김일성이 아직도 “제국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¹⁾고 말하는 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치를 세계혁명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나타나 있다. 즉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한다”²⁾는 것이다.

1) 1991년도 김일성 신년사.

2)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

(2) 정책목표 및 방향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모든 정책활동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라는 궁극목표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외교정책도 이 범주내에서 추진되고 있다.³⁾

즉 북한 외교정책의 1차목표는 정통성 추구, 안보 추구, 경제발전 추구라고 할 수 있으나 최종목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⁴⁾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외교부장 허담이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를 “미제를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시키는데 있다”⁵⁾고 언급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자주·친선·평화”라고 표방하면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반제자주의 령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과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
- 3) 1970년 11월 김일성은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남조선 혁명은 전조선 혁명의 구성부분이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0), p.57.
 - 4) 1964년 2월 27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3대혁명역량(북한혁명기지, 남한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통일전략의 기본방침이라고 내세웠다.
 - 5) 북한 노동당 제5차대회 허담토론, 『로동신문』, 1970.11.6.

이에 따라 대외활동의 방향으로 ①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제국과의 단결강화 및 친선협조 관계 발전, ② 비동맹 제3세계제국과의 국가관계의 발전 및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의 강화, ③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제국과의 우호관계의 형성 및 경제·문화교류의 발전, ④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시아제국과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내왕과 접촉의 강화 및 경제·문화 교류와 협조의 발전 등을 주장하였다.⁶⁾

이후 북한 외교정책의 방향은 대내외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 기본목표와 원칙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에 따른 북한외교활동의 지역별, 대상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사회주의 제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들 국가들을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혁명지원역량으로 간주하고 당적 차이, 정책상의 차이, 이데올로기상의 마찰과는 관계없이 관계유지와 유대강화에 주력해 왔다. 중·소간의 이념분쟁과 상호 패권경쟁의 와중에서도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면서 중·소 양국으로부터 경쟁적인 지원을 유도해 왔으며, 동구공산권 국가들과도 그들의 독자노선 선언과 관계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⁷⁾

② 비동맹 제국, 제3세계 제국에 대해서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혁명지원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들과는 반제국주의 공동

6) 『로동신문』, 1980.11.1.

7)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변혁과 한국과의 수교로 이 지역에서 북한의 국제혁명역량이란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다.

전선의 형성과 유대강화를 위해 초청·방문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③ 자본주의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서구, 기타 자본주의제국을 우회적, 예비적 혁명지원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내의 좌익단체와 인사 등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문화적·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인민외교』 방식의 접근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⁸⁾

요컨대 북한의 외교정책은 겉으로는 비록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서는 한국의 고립화와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여 왔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철폐와 미·일·중·소에 의한 남북한교차승인 반대, 남북한 UN동시가입 반대 등의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말부터 동구권의 변화에 따라 동서냉전 구조가 붕괴되고 한국의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는 등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UN가입,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추진 등 현실주의적인 외교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1992년의 개정헌법에서는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을 종전에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의 단결”

8) 김일성은 197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대해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표방하였다.

에 두었던 것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로 수정하고 “자주·평화·친선”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⁹⁾

나. 정책변천과정

(1) 진영외교기 : 1948년 정권수립~1950년대 초

북한의 외교관계는 정권수립시기부터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만 해도 진영내의 외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당시의 외교활동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으며 수교국도 소련, 중국, 동구 제국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6·25전쟁의 도발로 UN에서 침략자로 규탄된 북한은 전적으로 소련에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지원 획득에 치중하였다.

(2) 다변외교기 : 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북한은 전후복구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중·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관계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반동회의』에서 평화5원칙¹⁰⁾이 발표되고, 후루시초프가 평화공존정책을 거론하게 되

9) 북한헌법 제17조.

10) 평화 5원칙이란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 등이다.

자 북한은 중·소·동구 등 공산국가에 국한하였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다변외교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중립국들과의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다변외교로의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¹¹⁾ 이와 동시에 1956년 4월 대외문화연락협회라는 『인민외교』 수행담당 기관을 노동당 외곽단체로 만들어 대중립국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58년에는 알제리, 기니 등과 수교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대중립국외교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아아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고 1960년 제15차 UN총회에서 남북한 동시초청문제가 제기된데서 비롯되었다.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김일성은 ① 사회주의국가와의 단결, ② 제국주의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③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¹²⁾ 등을 강조하였으며, 같은해 6월과 7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하여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¹³⁾

11) 김일성은 총화보고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주요문헌집』(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6), p.12.

12) 『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1968), pp.195~196.

13) 군사편의 군사동맹 부분 참조.

그러나 1962년 중·소 국경분쟁과 쿠바사태 이후 중·소분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였다가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소련 편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중·소 양다리 외교에서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활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내정불간섭과 호상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이를 대중립국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

(3) 실리외교 추구기 :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 북한의 외교정책은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실리외교를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1971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¹⁴⁾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북한이 1970년대에 제3세계 중립제국에 대한 다변외교를 확대하고 서방제국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실리외교로 방향전환을 하게된 데에는 대외적으로는 1971년 9월 중국의 UN가입과 1972년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 미국·중국의 관계개선, 일본·중국의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그리고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6개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서방제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 때문이었다.

1973년 6월 한국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자 북한은

14) 『조선중앙년감』(1972), pp.269~270.

남북한의 공존을 “두개의 조선을 고정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한다”¹⁵⁾는 구실로 반대하면서도 서방 여러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¹⁶⁾

1970년대 중반에 들어 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인민외교』를 시도하는 한편 1974년 3월에는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하였고, 중립국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1975년 8월에는 비동맹회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 해 제30차 UN총회에서도 처음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그리고 외채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¹⁷⁾

(4) 대서방외교 강화기 :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는 입장에서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는 대외정책

15) 『로동신문』 사설, 1974.1.26.

16) 북구제국 등 많은 중립국들과의 수교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7) 북한외교관의 밀수사건의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76년 10월 15일에는 마약·술·담배 밀수사건으로 덴마크주재 북한대사와 외교관 4명이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목받아 추방되었고, 1976년 10월 18일에는 노르웨이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외교관 4명이 주재국 정부로부터 밀수관련 혐의자로 추방되었으며, 또한 1976년 10월 26일에는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 등 4명이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되었다. 이밖에 도 스위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이란,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에서도 마약 및 보석 등 면세품 밀수행위 혐의가 있어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내사를 받은 바 있다.

의 기본이념을 “자주·친선·평화”라고 표방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공산국가와의 단결강화를 강조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외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은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폭파사건으로 서방제국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라는 의제를 토의하고 남북한·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미접근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¹⁸⁾

한편 1984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합영법을 채택하고 서방 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⁹⁾

이와 같은 변화과정을 거쳐온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일관계 정상화와 적극적인 대미접근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18) 『로동신문』, 1984.1.13.

19) 『북한자료』(서울 : 국토통일원, 1984.10월호), pp46~50. 참조.

2. 외교활동

가.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은 헌법상으로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²⁰⁾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결정되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심의·결정할 뿐이다.²¹⁾ 노동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심의·결정하나 대외문제를 관장하는 비서국의 국제부가 중심이 되며 여기서 결정된 문제는 최고인민회의에 통고·추인하는 것이 상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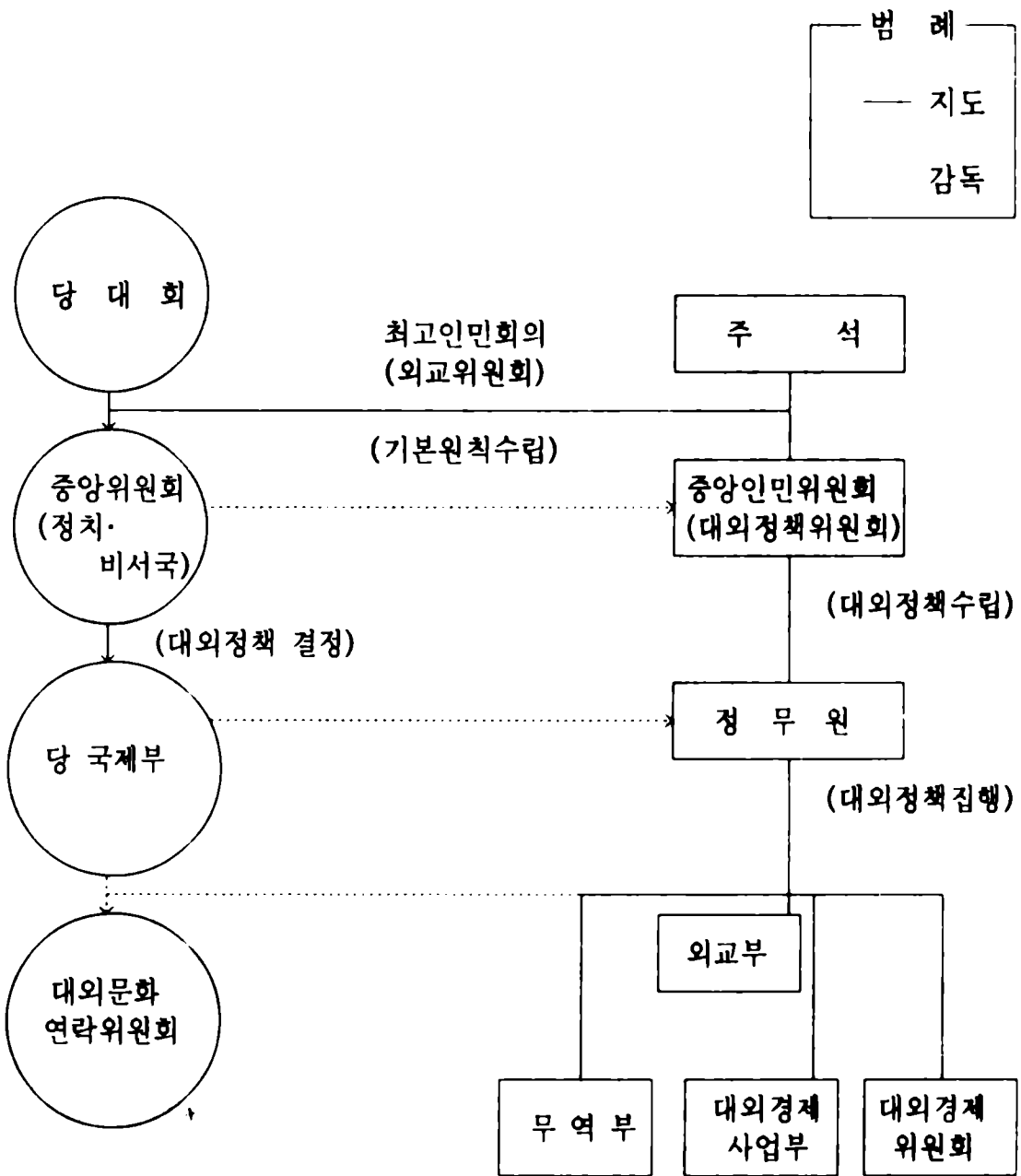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그 집행은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감독 아래 정무원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그 최고의 책임은 국가주석의 관장하에 있다.²²⁾ 그러나 국가주석은 노동당 총비서인 김일성이 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외교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은 김일성 1인에 의해 지휘·감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북한헌법 제9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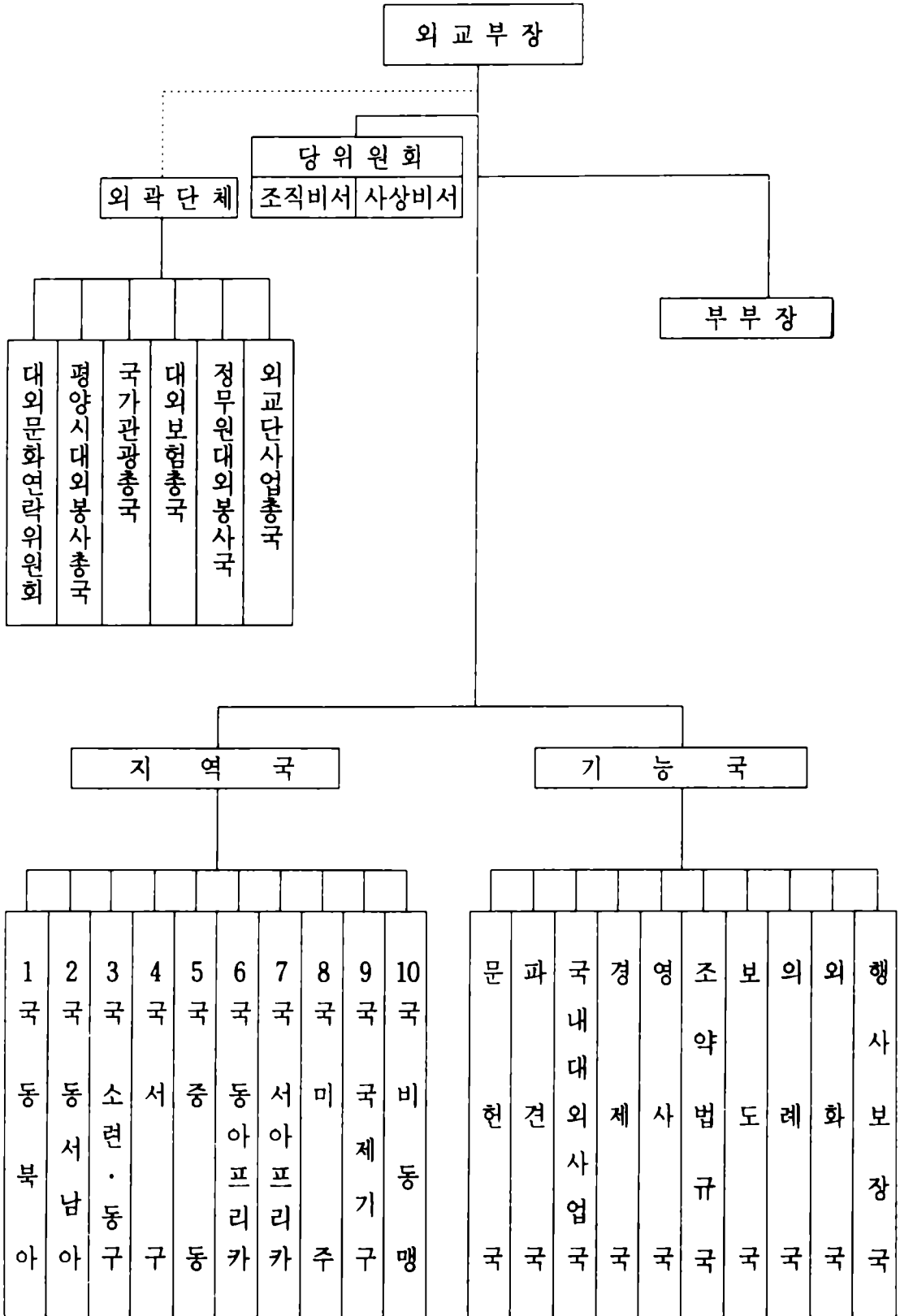
21) 북한은 1989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 『외교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원의 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2) 북한헌법 제105, 107조.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기구표



외교부 기구표



외교부는 외교집행의 실무부서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대외업무는 매우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외경제사업부도 대외활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외교는 노동당 소속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맡고 있다.²³⁾

나. 주요 외교활동

북한의 주요 외교활동은 주로 김일성의 방문외교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약 1개월간에 걸쳐 6·25남침을 협의키 위해 소련을 방문한 이래 1992년 9월 현재 27차례에 걸쳐 외국을 방문하였다. 김일성의 방문국은 주로 중·소였으며, 그 밖에 동구권 국가와 아프리카 순방이 있었다. 김일성이 그동안 소련을 10회, 중국을 13회 방문한 것으로 보아도 북한의 대외활동이 주로 중·소의 후원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외국방문 현황

구분	시 기	국 가	비 고
1차	1949.3.4~ 4.7	소 련	6·25전쟁 협의, 10개년경제·문화 협조협정 결정
2차	1953.9.1~29	"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23) 대외관계 주요 외곽단체로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직위원회』, 각국과의 『친선협회』 등이 있고, 기타 『사로청』, 『여맹』, 『직맹』, 『농근맹』, 『체육지도위』, 『문예총』 등도 각각 대외사업에 참여한다.

구분	시 기	국 가	비 고
3차	1953.11.10~27	중 국	1954.4 제네바회의 대비 공동전략 협의
4차	1956.6.7~6.12	동 독	제1차5개년 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원조획득차
	6.13~17	루 마 니 아	"
	6.17~20	헝 가 리	"
	6.21~25	체 코	"
	6.25~29	불 가 리 아	"
	6.29~7.1	알 바 니 아	"
	7.2~6	폴 란 드	"
	7.6~15	소 련	"
	7.16~19	몽 골	"
5차	1957.11.7	소 련	소련 10월혁명 40주년기념식 참가
6차	1957.11.28~12.2	월 맹	반미공동전선 결성
7차	1959.1.21~	소 련	소련공산당 제21차대회 참가
8차	1959.10.1~	중 국	중국창건 10주년기념행사 참가
9차	1961.6.29~7.10	소 련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7.10~7.15	중 국	조약 체결(방위조약)
10차	1961.10.14	소 련	소련공산당 22차 대회 참가
11차	1965.4.10~20	인 도 네 시 아	친선방문, 공동성명 발표(반미 공동전선 구축)
12차	1966.5.7~23	소 련 (블라디보스톡)	『브레즈네프』와 비밀회의 ※비공식 방문
13차	1975.4.18~26	중 국	한반도에서 제2의 월남전 계획을 위한 지원 획득차

구분	시 기	국 가	비 고
14차	1975.5.22~26	루 마 니 아	쌍방관계 강화, 공동성명 발표
	5.26~30	알 제 리	"
	5.30~6.1	모 리 타 니 아	"
	6.2~5	불 가 리 아	"
	6.5~9	유 고	"
15차	1980.5.7~9	유 고	『티토』장례식 참석
	5.9~12	루 마 니 아	친선방문
16차	1981.3	중 국	비밀방문설
17차	1982.9.15~26	"	쌍방관계 강화
18차	1983.8.12~19	"	등소평과 회담(비밀방문)
19차	1984.5.23~26	소 련	경제·군사협력문제 협의
	5.27~29	폴 란 드	친선협조 강화
	5.29~6.4	독	우호 및 협력조약 체결
	6.4~7	체 코	경제·과학·기술협조 강화
	6.7~9	형 가 리	"
	6.9~11	유 고	"
	6.12~17	불 가 리 아	우호 및 협력조약 체결
	6.18~21	루 마 니 아	경제·과학·기술협력 및 합작협정 체결
20차	1984.11.26~28	중 국	경제개발정책시행관련, 의견교환 ※등소평·호요방과 3차례 회담
21차	1985.12	중 국	비밀방문설
22차	1986.10.22~27	소 련	유대강화 및 경제지원 요청
23차	1987.5.21~26	중 국	유대강화 및 88서울올림픽 불참 요구
24차	1988.6.24~27	몽 골	친선방문
25차	1989.1.15~8	중 국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에 공동대처
26차	1990.9.11~13	중 국	한·소수교 이후 한·중수교 및 한국의 UN가입에 반대 요청
27차	1991.10.4~13	중 국	한·중수교 반대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공동보조

다. 외교현황

(1) 공산권외교

북한의 과거 공산권외교는 대중·소 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어왔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는 소련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다가 중국의 6·25참전을 계기로 대중관계에도 같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소 관계가 항상 안정되고 균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북방삼각관계의 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것은 중·소간의 잦은 분쟁이었으며 북한이 외교에서 자주를 선언하고 나선 것도 결국은 중·소 분쟁으로부터의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후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소련 관계가 벌어졌으나 1961년 7월에 북한이 소련·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대중·소 관계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1962년 10월의 쿠바사건과 중·소 국경분쟁은 중·소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고 여기서 북한은 중국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1964년 후루시초프의 실각과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혁명은 북한을 다시 소련쪽으로 기울게 하였다.

북한은 1962년 이후 7개년계획이 차질을 빚어 3년씩이나 계획이 연장되고 1965년 이후 월남전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1965년 2월 소련의 코시긴수상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은 한동안 친소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친소기간 동안 중국을 비난²⁴⁾ 해오던 북한은 1966년 8월 12일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²⁵⁾ 그러다가 1969년 7월 1일 북한

24) 예컨대 1964년 12월 3일자 『로동신문』은 중국의 교조주의 노선 추종압력을 비난하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25) 『로동신문』사설, 1966.8.12.

은 노동신문을 통하여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하여 중국인민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대중국 관계개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문화혁명의 종식과 제3세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취해진 정책의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소 관계는 과거와 같이 불안정해지지 않고 자주노선도 점차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사회주의 제국과의 단결 강화 및 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표방하면서 중·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이념적 결속을, 소련으로부터는 경제, 군사적 실리지원을 추구하는 등 대중·소 줄타기외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소련이 1985년부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마침내 1990년 9월 한·소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게 되자 북한은 소련에 대해 “배신행위”,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팔아 먹은 행위” 등의 극렬한 표현으로 비난하고²⁶⁾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이 급속히 중국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주장하는 유일한 후견국인 중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김일성과 연형묵총리 등 당·정 고위인물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고²⁷⁾, 1990년 11월 압록강다리를 『조·중친선의 다리』로 개칭하는가 하면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불멸의 조·중친선관계』를 대대적으로 강조하였다.

26) 『로동신문』논평, 1990.10.5.

27) 김일성은 한·소 수교가 발표되기 직전인 1989년 11월과 1990년 9월 두 차례, 그리고 연형묵총리는 1990년 11월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이 출범하자 곧이어 모든 공화국들과 수교함으로써 구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하였으며 1992년 8월의 한·중 수교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대중·소 고위급 외교활동

일 자	북 한	중 국	북 한	소 련
1949. 2.22				김일성(수 상)
1953. 7.		최용건(민보상)		
1953. 9. 1				김일성(수 상)
1953.11.10		김일성(수 상)		
1954. 9.28		김일성(수 상)		
1955. 8.15	주 덕(부주석)			
1956. 2.14				최용건(부수상)
1956. 6. 1				김일성(수 상)
1956. 9.12		최용건(부수상)		
1956.10.17				김일성(수 상)
1957.11. 3				김일성(수 상)
1958. 2.14	주은래(수 상)			
1958. 5. 3				정일용(부수상)
1958.11.21		김일성(수 상)		
1959. 1.27				김일성(수 상)
1959. 4. 3				최용건(인민회 의상임위원장)
1959. 9.25		김일성(수 상)		
1961. 5.30			코시긴(부수상)	

일 자	북 한	중 국	북 한	소 련
1961. 6.29				김일성(수 상)
1961. 7.10		김일성(수 상)		
1961.10.17				김일성(수 상)
1963. 6. 5		최용건(인민회 의상임위원장)		
1963. 9.14	유소기 (국가주석)			
1965. 2.11			코시긴(수 상)	
1966. 3.29				최용건(인민회 의상임위원장)
1966. 5				김일성(수 상)
1967. 2.13				김 일(부수상)
1967. 3			노비코프(부수상)	
1967.10.17				최용건(인민회 의상임위원장)
1969. 5.14			포드고르니 (간부회의의장)	
1969.10. 1		최용건(인민회 의상임위원장)		
1969.12. 8				박성철(부수상)
1970. 4. 5	주은래(수 상)			
1970. 4.29				최용건(인민회 의상임위원장) 박성철(부수상)
1971. 1. 1			노비코프(부수상)	
1971. 3.28				김 일(부수상)
1971. 7	이선념(부수상)			
1971. 8		정준택(부수상)		
1971.11				정준택(부수상)
1972. 6			노비코프(부수상)	
1972. 8				정준택(부수상)

일 자	북 한	중 국	북 한	소 련
1972.10.17				최용건(부수상)
1973. 2				강양욱(부주석)
1973. 3		강양욱(부주석)		
1973. 4				최재우(부총리)
1973. 9.11			노비꼬프(부수상)	
1973. 9	이덕생(부주석)			
1974. 3		정준기(부총리)		
1974. 5		허 담(부총리)		허 담(부총리)
1974. 7				최재우(부총리)
1975. 1			노비꼬프(부수상)	
1975. 2		강양욱(부주석)		
1975. 3		박성철(총 리)		
1975. 4.17		김일성(주 석)		
1975. 7		강양욱(부총리) 허 담(부총리)		
1975. 9.21	장춘교(부수상)			
1976. 2.24				박성철(총 리)
1976. 3				박성철(총 리)
1977. 1.24				박성철(총 리)
1977. 3		계웅태(부총리)		
1977. 8			아르히뽀브 (부수상)	
1978. 5. 5	화국봉(당주석)			
1978. 9. 9	등소평(부수상)			
1979. 1				박성철(부주석)
1979. 5.26	제령초(전인대 상임위부위원장)			
1979. 8				공진태(부총리)
1979. 9. 8	등소평(당부주석)			
1980. 1.18				공진태(부총리)
1980. 2.13				공진태(부총리)

일 자	북 한	중 국	북 한	소 련
1980. 3.22				임춘추(중앙인민위서기장)
1980.10. 9	이선남(당부주석)			
1980.10			카투세프(부수상)	
1980.11				강희원(부총리)
1980.12				박성철(부주석)
1981. 1.10		이종옥(총 리)		
1981. 2.21				이종옥(총 리)
1981. 3		김일성(주 석)		
1981. 9. 6				이종옥(총 리)
1981.12.17				공진태(부총리)
1981.12.20	조자양(수 상) 진모화(부수상)			
1982. 3.16				허 담(부총리)
1982. 4.15	등소평 (당군사위주석) 호요방(당총서기)			
1982. 5.25				허 담(부총리)
1982. 6. 1				김복신(부총리)
1982. 6.25				이종옥(총 리)
1982. 9.16		김일성(주 석)		
1982.11.14				박성철(부주석)
1983. 5.16			탈리진(부수상)	
1983. 6. 2		김정일(당비서)		
1983. 9. 6	팽진(전인대 상무위원장)			
1983. 7. 5		양형섭(최고인민회의의장)		
1984. 2. 7		김영남(부총리)		
1984. 2.13				박성철(부주석)
1984. 2.13				공진태(부총리)

일 자	북 한	중 국	북 한	소 련
1984. 5. 4	호요방(당총서기)			
1984. 5.23				김일성(주 석)
1984. 8. 5		강성산(총 리)		
1984. 9.12				공진태(부총리)
1984.10.16				김영남(부총리)
1984.11.26		김일성(주 석)		
1985. 1.13		공진태(부총리)		
1985. 3.12				강성산(총 리)
1985. 4.16				김영남(부총리)
1985. 5. 4	호요방(당총서기)			
1985. 5. 7				박성철(부주석)
1985. 8.13			알리에프 (제1부수상)	
1985.10.24	이 붕(부총리)			
1985.12.24				강성산(총 리)
1985.12		김일성(주 석)		
1986. 2.23				강성산(총 리)
1986.10. 3	이선남(국가주석)			
1987. 5.21				김일성(주 석)
1987. 8				김영남(부총리)
1987.11				이근모(총 리)
1988. 9. 6			체브리코프 (KGB의장)	
1988. 9. 7	양상곤(국가주석)			
1988.12.22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리가초프(부수상)	
1989. 4.24	조자양(당총서기)			
1989.11. 5		김일성(주 석)		
1990. 3.14	강택민(당총서기)			

일자	북한	중국	북한	소련
1990. 9. 2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1990. 9.11		김일성(주석)		
1990.11.23		연형묵(총리)		
1991.10. 4		김일성(주석)		
1992. 4.13	양상곤(국가주석)			

한편 북한의 동구정책은 중·소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소관계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중·소분쟁 이전 북한의 대동구관계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의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 하여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²⁸⁾

중·소분쟁에서 동구국가들과 북한이 서로 다른 공산대국을 추종함으로써 북한과 동구와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였으나 북한의 대중·소관계가 균형적 관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에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가 급진전되었고 중·소분쟁시기부터 대소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은 외교부장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정권대표단을 소련, 루마니아, 유고, 체코,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에 순방시켜 동구제국과의 상호 정책지지를 다짐하였다.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직후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한 다음 계

28) 동구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소련·중국에 비하면 규모면에서는 월등히 적은 것이었으나, 대부분이 1954~'56년 사이의 전후복구 3개년계획기간과 1957~'60년 사이의 5개년경제계획 기간중에 제공되었다.

속해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를 찾아갔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은 루마니아와 장기무역협정(1976~'80)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와는 10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의정서(1976~'85)를 조인하였으며, 유고와는 상호경제협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특히 1984년 5월 김일성은 소련 방문을 마친 뒤 곧이어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 7개국을 순방하고 동독 및 불가리아와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와의 경제·과학·기술협조 강화에 합의하였다.

김일성의 동 순방을 계기로 정치면에서는 3자회담 지지확보 등으로 동구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였으며 경제면에서는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앞으로 있게 될 3차7개년 경제계획의 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소련보다도 경제사정이 나은 동독, 체코, 유고, 루마니아 등 동구제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도입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말 동구제국이 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1990년 이후에는 모든 동구국가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외교무대는 사라지게 되었다.²⁹⁾ 1989년 12월에 발생한 루마니아사태로 차우체스쿠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은 북한

29) 북한은 한국·헝가리 수교 다음날인 1989년 2월 2일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의 배신행위에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다”고 극렬히 비난한 다음, 헝가리와의 대사급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후 연이은 다른 동구국가들의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서는 커다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³⁰⁾

(2) 제3세계외교

북한의 제3세계외교는 『반제반미공동선언』의 형성과 이에 따른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다.³¹⁾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제3세계국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 ① 평화공존노선 표방
- ② 반제·반식민주의 및 민족해방투쟁지원 선전
- ③ 국제공산주의 선전기구 가입
- ④ 인민외교
- ⑤ 문화 및 경제교류

1955년 반동회의가 있는 후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설정에 눈뜨기 시작하여 대외문화연락협회 등 노동당 외곽단체를 통한 친선 및 문화교류형태의 접근을 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의 접근은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대회 이후였다. 제2차 반동회의를 앞두고 중국 지도자들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순방할 때 북한에서도 고위대표단을 파견, 이 지역 여러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30) 북한은 동구국가들의 변혁에 대해 “최근 일부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고 주장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형제적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함께 싸워 나아갈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1991년, 1992년 김일성 신년사).

31) 1974년 8월 11일 『로동신문』에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 제1지지세력은 제3세계국가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북한은 소련쪽으로 기울면서 1966년부터는 아시아·아프리카·중동지역의 친소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친선사절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64년 11월 나세르 통일아랍공화국 대통령을 초청한 이후 각국의 수뇌급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한 것은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비동맹회의의 구성국가들이기 때문이었다. 즉 한반도 문제의 UN문제화와 관련하여 비동맹회의 국가들과의 국제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UN대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외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된 이래 비동맹회의에 지속적으로 한반도문제를 상징, 북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1978년부터는 비동맹회의가 열리기 전에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비동맹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방침까지 취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동맹회의 회원국간에 노선분규가 생기자 북한은 비동맹국가들의 “통일단결과 경제협력 및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투쟁의 방향을 반제자주화로 돌리려 하였다.³²⁾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비동맹국가들이 대결보다는 협조를, 그리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대폭 향상됨에 따라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9년 9월 유고에서 개최된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32) 1979년 7월 18일 노동당중앙위·중앙인민위 연석회의결정, “1979년 9월 6일 제6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이종옥의 연설” 『로동신문』(1979.7.19), 노동당중앙위정치국과 중앙인민위간 당정연합회의 토의 의제 (1986.6.20).

『한반도문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수정안 조차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1992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도 비동맹운동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북한의 비동맹회의 관련 동향

회의명	일자 및 장소	활동내용
제4차 정상회의	1973.9.5~9 알제리 알제이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통일후 또는 연방정부 수립후 남북한 유엔가입 -주한외군 철수, 외세간섭 중지
비동맹 외상회의	1975.8.25~30 페루 리마	○비동맹회원국 가입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주한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 -7.4공동성명에 규정한 평화통일 3대원칙 준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한국 가입 거부
제5차 정상회의	1976.8.16~19 스리랑카 콜롬보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7.4공동성명에 의한 남북한 주민의 통일투쟁 지원 -주한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 -핵무기 및 모든 전쟁수단 제거 -UNC해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박성철총리 참석

회의명	일자 및 장소	활동내용
비동맹외상회의	1978.7.25~30 유고 베오그라드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주한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 -UNC 해체 -7.4공동성명에 규정한 평화통일 3대원칙 준수 및 한국민의 통일염 원 환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허담외교부장 참석
제6차 정상회의	1979. 9. 3~9 쿠바 아바나	○비동맹조정위원국에 피선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주한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 -UNC 해체 -7.4공동성명에 규정한 평화통일 3 대원칙 준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이종욱총리 참석
비동맹외상회의	1981. 2.9~13 인도 뉴델리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기도 좌절 ※식량 및 농업분야 심포지움 평양개최 유치(1981.8.26~31)
비동맹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 회의	1981.6.10~12 평양	○비동맹국의 식량증산을 위한 회원국 의 협조문제 토의
개도국 및 비동 맹국의 식량문제 심포지움	1981.8.26~31 평양	○식량증산을 위한 기술·경제교류 ○농업연구센터, 교육기구 등 설치문제 ○식량 및 농업증산을 위한 '평양선언' 채택

회의명	일자 및 장소	활동내용
제7차 비동맹 통신사연합조정 위원회 회의	1982.5.12~14 평양	○비동맹 통신사 연합을 강화 ○비동맹국간 보도교환 확대를 위한 대책 토의
비동맹조정위 외상회의	1982.5.31~6.6 쿠바	○허담, 기조연설 -경제협조문제 논의를 위한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남북 수뇌자 회의' 개최 제의 -비핵평화지대 설치 필요성 역설
비동맹조정위 외상회의	1983.1.12~15 니카라과	○허담, 3가지의 비동맹운동과업 제시 -반미투쟁을 위한 비동맹국들의 행 동통일 호소
제7차 정상회의	1983.3.7~12 인도 뉴델리	○비동맹조정위원회국 재선 ○한국문제 조항 -7.4공동성명의 원칙에 의한 통일달 성 지지 확인 -한반도에서의 외군철수 촉진 희망 ※박성철부주석 참석
제1차비동맹 및 발전도상국교육 및문화부장회의	1983.9.24~28 평양	○공동교육기관 및 기술협조기관 창설 을 통한 협조체제 구체화 ○평양에 「민족악기 박물관」을 창설하 여 「민족문화」의 국제적 협조다짐
비동맹관계 전문가 회의	1984.10.1~3 뉴욕	○김영남 연설 -3자회담의 정당성 역설 -비동맹정상회의 평양 유치 지지 도모

회의명	일자 및 장소	활동내용
비동맹외상회의	1985. 9. 4~7 앙골라 루안다	○김영남 참석, 연설 -86년 비동맹 정상회담 평양유치계획 좌절 -북한의 일방적인 한반도조항 채택 시도 실패 -88올림픽 남북공동주최안 제안받기 ※제2차 체육장관회의 평양개최안 채택
제8차 정상회의	1986. 9.1~7 짐바브웨 하라레	○박성철 부주석 참석 ○주한외군 철수 및 88올림픽 공동주최 지지 내용 채택
군축에 관한 특별각료회의	1988.5.25~27 쿠바 아바나	○김영남 외교부장 참석 ○최종선언문에 “동북아 비핵지대화 지지 및 아·태지역의 군축요망” 내용 채택
전체 외상회의	1988. 9.7~9 키프러스 니코시아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 참석 ○최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UN이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정위 외상회의	1989. 5.7~19 짐바브웨 하라레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 참석 ○한반도 조항 채택
제9차 정상회의	1989. 9.4~8 유고 베오그라드	○연형묵 총리 참석 ○부의장국에 피선 ○한반도 분열상태에 우려 표시

회의명	일자 및 장소	활동내용
특별각료회의	1990.4.24~25 뉴욕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참석 ○한반도 문제에 관한 토의내용을 요약, 각국에 배포
전체외상회의	1991. 9.2~8 가나 아크라	○김영남 외교부장 참석 ○주한 외군 및 핵무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성명서 배포 ○한반도 조항 채택
제10차 정상회의	1992.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형묵총리 참석 ○부의장국에 피선 ○한반도 조항 채택

(3) 서방외교

북한이 대서방 접근을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서 닉슨 미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미·중관계, 미·소의 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자극받아 19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에서의 대서방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제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³³⁾

북한의 대서방 외교방식은 민간수준의 『인민외교』 방식과 정권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대상국가의 저명인사나 사회단체를 개별적으로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민간무역대표부와 공보관 등을 설치하여 준정부차원으로 끌어올렸다가 공

33) 김일성은 이러한 전술적 전환이 제국주의와의 타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평양: 인민출판사, 1968), p228.

식적인 외교수립으로 발전시켜가는 방식을 도모하여 왔다.³⁴⁾

북한의 최근 대서방외교는 미·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미·일 양국과 한국의 유대를 가져 국제관계에서의 한국에 대한 열세를 보전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함께 이들 두나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경제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방선진제국에 접근하는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시키자는 문제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대미접근을 시도하여왔다.³⁵⁾

특히 최근에 와서 미국외교관과의 공식접촉, 6·25참전 실종 미군유해의 반환, 미국내 학술회의에 대표단 파견 및 미국학자 평양 초청 학술회의 개최, 쌍방고위급인사 접촉 등 다각적인 대미 접근

34) 대표적인 경우가 스칸디나비아제국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중립국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35) 이러한 직접접촉 시도로서 북한은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을 통해 카터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1976.9), 유고의 티토 대통령(1977.8),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1978.5)의 북한방문이 대미 접근책 강구의 일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1984.1 조자양 중국 수상의 방미시 『3자회담』을 제의, 대미 접근을 위한 중국의 주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은 동년 4월 레이건 미국대통령 방중시 『3자회담』을 통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을 권유한 바 있다. 특히 1985. 4 제40차 유엔총회 참가차 방미한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미국 병사의 생사 확인·유품·유물 반환문제와 관련, “만약 미정부가 정식으로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미군의 조사를 의뢰해올 경우, 이를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최초로 긍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대미 접촉 의지를 표출하였다.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³⁶⁾

일본과는 그동안 일본 사회당과 1971년 11월에 구성된 일·조 우호촉진의원연맹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교류를 추진하면서도 공식관계수립은 교차승인 및 두개조선 반대원칙을 내세워 회피하여 왔다.

북한의 서방 미수교국내 대표부 설치현황

(1992. 12 현재)

기구명칭	소재지	설치일
쿠웨이트통상대표부	쿠웨이트	1970.11
UN 대표부	미국(뉴욕)	1973. 9
UNESCO 대표부	프랑스(파리)	1976.11
FAO 대표부	프랑스(파리)	1977.11
주불일반대표부	프랑스(파리)	1984.12
주독이익대표부	독일(베를린)	1990.10
WTO 대표부	스페인(마드리드)	1990.12
IMO 대표부	영국(런던)	1991. 4

36) 미국과 북한은 1988년 12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에 북경에서 28차례의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가졌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 5월 28일 미군 유해 5구를 관문점을 통해 반환한데 이어 1991년 6월에 11구, 1992년 5월에 30구를 각각 송환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 조지워싱턴대(1990.5. 11~19) 및 스탠포드대(1990.7.5~7)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스탠포드대 국제안전 및 군비통제연구소장 존 루이스 교수 일행을 평양에 초청(1990.6.8~16)하기도 하였다. 1992년 1월 22일에는 당 국제부장 김용순이 뉴욕을 방문, 미국무차관 아놀드켄터와 쌍방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소수교, 한국의 UN단독가입 분위기 성숙 등으로 국제적 고립에 대한 강박관념이 커지고 내부의 경제난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일본측에 국교정상화를 제의하고 이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국제적 고립탈피와 일본의 자본과 기술, 특히 일본으로부터 과거 식민통치시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과국직전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³⁷⁾

(4) UN외교

북한은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되고 1950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UN의 권위와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 왔다.

1953년 한국전 휴전회담에서 북한은 UN군사령관과 휴전협정을 체결한 뒤 UN을 미국과 동일시하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유관국회의를 제의하는 등 한국문제를 UN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이 이른바 자주외교를 강조하면서부터 UN에 대한 자세는 경색되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UN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 동서해빙 분위기의 형성과 함께 중국이 UN에 가입하고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제기되는 한편, 1973년 한국이 남북한 동시가입 불반대를 선언한 6.23평화통일의

37) 김일성은 1990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북한 일본 자민당·사회당의 합동대표단 단장 가네마루 전부총리와 3차례의 회담을 갖고 쌍방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으며, 북한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사회당 등 3당 대표단은 일·북한수교 추진에 합의하는 내용의 『8개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북한도 같은날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로 맞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내세우면서 UN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3년 9월 5일 UN본부에 상주대표부를 개설하였고 제네바에 있는 UN사무국에도 상임 옵저버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부터 각종 UN산하 및 전문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등에도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제30차 UN총회에서는 중·소와 친북 제3세계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반도문제에 대한 공산측 결의안과 서방측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기현상을 보였다.³⁸⁾ 이후 남북한은 UN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게 되었다. 1970년대에 나타난 북한의 UN정책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1973년을 기점으로 UN동시가입을 거부한 것이라 하겠다.³⁹⁾

1980년대에 한국의 급속한 경제력 신장을 바탕으로 외교역량이 강화되고 동서 데탕트 무드와 소련 및 동구개혁·개방물결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은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UN전략도 크게 위축된 경향을 보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일시 단일의석하의 공동가입⁴⁰⁾

38) 북한은 제30차 UN총회에서 공산측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공산측안의 일방적 승리라고 주장하고, 서방측안과 종래 UN내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제결의의 무효화와 UNC의 즉시해체, 미군철수 및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통일문제가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북한은 1949년 2월 9일과 1952년 1월 2일 두차례에 걸쳐 UN 단독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1957년과 1958년에도 소련을 통해 『남북한 동시가입안』을 제출한 바 있다.

40) 김일성은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조국통일 5개방침』 제3항 “통일이 될 때까지 우선 단일의석아래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을 주장하는 등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은 날로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북한 동시가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총회에서 남북한이 나란히 UN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⁴¹⁾

한편 북한은 1992년 10월 현재 12개의 UN기구와 10개의 정부간 국제기구 등 모두 22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남북한 국제기구가입 대비표

(1992. 12 현재)

구분	UN산하기구	UN전문기구	정부간기구	합계
한국	2	16	36	54
북한	1	11	10	22

남북한 UN산하기구 가입현황

(1992. 12 현재)

일련번호	기 구 명	한 국	북 한
1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7	-
2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41)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최초로 UN가입 방침을 밝히면서 “남한만이 단독으로 가입한다면 UN무대에서 전체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 부득이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UN동시가입이 결정된 9월 18일에도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고 “하나의 조선으로 조국과 민족을 통일할 데 대한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하나의 의식을 차지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남북한 UN전문기구 가입현황

(1992. 12 현재)

일련번호	기 구 명	한 국	북 한
1	세계 보건기구(WHO)	1949	1973
2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3	만국 우편연합(UPU)	1949	1974
4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5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6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7	국제 통화기금(IMF)	1955	-
8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	1955	-
9	세계 기상기구(WMO)	1956	1975
10	국제 해사기구(IMO)	1961	1986
11	국제 개발협회(IDA)	1961	-
12	국제 금융공사(IFC)	1964	-
13	유엔 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14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	1979	1974
15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1978	1986
16	국제 노동기구(ILO)	1991	-

남북한 정부간기구 가입현황

(1992.12 현재)

일련번호	기 구 명	한 국	북 한
1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AALCC)	1974	1974
2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AARRO)	1963	-
3	아시아 개발은행(ADB)	1965	-
4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	1980	-
5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터(APDC)	1961	-
6	아시아 생산성기구(APO)	1962	-
7	아시아 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 (APPPC)	1981	-

일련번호	기 구 명	한 국	북 한
8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APPU)	1962	—
9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 협의체(APT)	1979	—
10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ASPAC)	1966	—
11	아시아 채소 개발연구센타(AVRDC)	1971	—
12	관세협력 이사회(CCC)	1968	—
13	FAO/WHO 공동식품 규격화 위원회 (CODEX)	1970	1981
14	남부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경제개발 협력을 위한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1962	—
15	동부지역 공공 행정기구(EROPA)	1962	—
1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67	—
17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18	국제면화 자문위원회(ICAC)	1970	—
19	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ICCAT)	1954	—
20	국제 문화재 보존 복구 연구센타 (ICCROM)	1968	1986
21	동남대서양 수산위원회(ICSEAF)	1981	—
22	국제수로기구(IHO)	1972	1987
23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1985	—
24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72	—
25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1961	1979
26	국제수역국(IOE)	1953	—
27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1978	1974
28	국제포플러 위원회(IPC)	1973	—
29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	1950	—
30	국제사탕기구(ISO)	1972	—
31	국제소맥이사회(IWC)	1953	—
32	국제 포경위원회(IWC)	1979	—
33	세계관광기구(WTO)	1974	1987
34	국제이민기구(IOM)	1988	—
35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36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시기별 대UN관계 변화과정

시 기	연 도	주 요 입 장	비 고
한반도 문제 에 관한 유엔 간섭 거부기	1948~53	○유엔간섭거부 - 유엔에 의한 남한 지역 단독선거 반 대	○1949, 1952 유엔가입 신청 ○1950.6.25 안보리, 북 한과 중공을 침략자 로 규정 ○1953.7.27 유엔군사령 관과 휴전협정·체결
한반도문제 의 유엔상정 거부기	1954~70	○유엔을 미국과 동일 시 ○통일을 위한 남북한 포함 유관국회의 제 의 ○유엔권능 부인	○1960.8.14 김일성, 남 북 연방제 제의 ○1966.8.12 자주노선 선언 ○1969.10.29 서독 할슈 타인 원칙 폐기
한반도문제 의 선별적 유엔상정기	1971~ '91.9	○유엔과 미국 분리시도 - 미군에게서 유엔모 자 벗기기 ○한반도 문제의 유엔 문제화 시도 ○『고려연방국』국호로 유엔가입 제의 ○『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반대 - 유엔의 목적과 원 칙 존중 ○단일의석 공동가입 제안	○1971.4.12 허담 8개항 제시 ○1972.7.4 남북 공동성 명 ○1973.9.5 유엔대표부 개설 ○1974. 제29차 총회 UNCURK 해체안 결 의 ○1975. 30차 유엔총회, 남북한 지지 두개 결 의안 동시 통과 ○1976.9. 공산측 결의안 철회
유엔동시 가입기	1991.9 ~현재	○단일의석 입장 견지	○1991.9.18 제46차 총 회

(5) 수교현황

북한은 1992년 12월 현재 127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국의 169개국에 비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수교관계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기의 남북한은 각기 정치체제의 정비와 전쟁 수행 등으로 인해 외교활동이 극히 저조한 채 진영내 국가들과의 수교에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1953년까지의 남북한의 수교현황은 한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아시아의 자유진영국가 6개국과 그리고 북한은 소련·중국 및 동구 등의 10개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에 한국은 반공노선의 고수와 할슈타인 원칙의 준수 등으로 중립국과의 수교는 제한하고 친미 자유진영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주력하여 1960년에는 16개국과 수교하였다. 북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외교에만 노력하여 1960년에는 한국과 같이 16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대립의 심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은 중립국들과의 외교 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외관계를 급격히 신장시켜 나아갔다.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에 한국은 아프리카 21개국 및 미주권을 비롯하여 총 67개국과 새로 수교함으로써 1971년에는 총 수교국이 83개국에 달해 1960년의 16개국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북한은 이른바 반제·반식민해방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제국에 대한 침투외교를 강화하고 1966년 8월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선언하며 다변외교에 치중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북한도 대외활동에 많은 성과를 보여 1971년에

는 총수교국이 37개국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 UN의 성격 변화 등으로 한국의 수교국 확대에는 커다란 증가는 없었으나 데탕트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힘입어 1973년 6월에는 비적성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을 밝히는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천명하는 등 이념을 초월한 실리외교에 박차를 가하여 1980년 말에는 112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북한도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세계각국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강화하여 1980년 말에는 총수교국이 100개국에 달하였다.

1980년대의 한국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7·7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꾸준히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때마침 민주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 연달아 국교를 열고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총 14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수교국 확대에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83년의 버마 아웅산폭파사건 등 잦은 국제테러행위와 북한외교관들의 밀수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단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시도하여 1988년 콜롬비아, 1989년 페루, 1990년 안티과 바브다 등과 새로이 수교를 하였다.

1991년 이후 한국이 모든 동구권국가 및 그동안 친북일변도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수교함으로써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외교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2년의 한·중수교는 북한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국제정세의 엄청난 변화를 실감케 하였다.

남북한의 지역별 수교현황

(1992.12현재)

지역 구분	지역					
	아주·태평양	미 주	구 주	중 동	아프리카	계
한 국	31	34	44	19	41	169개국
북 한	19	20	32	14	42	127개국
동 시	17	19	31	11	39	117개국

남북한의 국별 수교현황

(1992.12현재)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아주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	1961.10.31	1974. 7.30
	방글라데시	1973.12.18	1973.12.16
	부 탄	1987. 9.25	
	브루나이	1984. 1. 1	
	중화인민공화국	1992. 8.24	1949.10. 6
	피 지	1970.10.11	
	인 도	1973.12.10	1973.12.10
	인도네시아	1973. 9.18	1964. 4.18
	일 본	1965.12.18	
	캄푸치아		1964. 2.28
	키리바티	1980. 5. 2	
	라 오 스		1974. 6.24
	말레이시아	1960. 2.23	1973. 7. 2
말 디 브	1967.11.30	1970. 6.14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몽 골	1990. 3.26	1948.10.15
	미 얀 마	1975. 5.16	
	나 우 루	1979. 8.20	1982. 3. 5
	네 팔	1974. 5.15	1974. 5.15
	뉴질랜드	1962. 3.26	
	파키스탄	1983.11. 7	1972.11. 9
	파푸아뉴기니	1976. 5.19	1976. 6. 1
	필 리 핀	1949. 3. 3	
	싱가포르	1975. 8. 8	1975.11. 8
	솔로몬제도	1978. 9.15	
	스리랑카	1977.11.14	1970. 6.25
	태 국	1958.10. 1	1975. 5. 8
	통 가	1970. 9.11	
	투 발 루	1970.11.15	
	바누아투	1980.11. 5	1981.10. 1
	베 트 남	1992. 12.12	1950. 1.30
	서사모아	1972. 9.15	
	마셜군도	1991. 4. 5	
	미크로네시아	1991. 4. 5	
	국가수 : 34개국	31 개국	19개국
미주지역	안티과 바브다	1981.11. 1	1990.11.27
	아르헨티나	1962. 2.15	
	바 하 마	1985. 7. 8	1991. 5.16
	바르바도스	1977.11.15	1977.12. 5
	벨 리 제	1987. 4.14	1991. 6.20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볼리비아	1965. 4.25	
	브 라 질	1959.10.31	
	카 나 다	1963. 1.14	
	칠 레	1962. 6.12	1992. 9.25
	콜롬비아	1962. 3.10	1988.10.24
	코스타리카	1962. 8.15	
	쿠 바		1960. 8.29
	도미니카(연)	1978.11. 3	1990.11.28
	도미니카공화국	1962. 6. 6	
	에콰도르	1962.10. 5	
	엘살바도르	1962. 8.30	
	그레나다	1974. 8. 1	1991. 9.20
	과테말라	1962.10.24	
	가이아나	1968. 6.13	1974. 5.18
	아 이 티	1962. 9.22	
	온두라스	1962. 4. 1	
	자마이카	1962.10.13	1974.10. 9
	멕 시 코	1962. 1.26	1980. 9. 9
	니카라과	1962. 1.26	1979. 8.21
	파나마	1962. 9.30	
	파라과이	1962. 6.15	
	페 루	1963. 4. 1	1989.11.21
	세인트키츠네비스	1983. 9.19	1991.12.13
	세인트루시아	1979. 2.23	1979. 9.13
	수 리 남	1975.11.28	1982.10.11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세인트 빈센트	1979.10.28	1981. 4. 3
	트리니다드토바고	1985. 7.23	1986. 1.22
	우루과이	1964.10.17	
	미 국	1948. 8.13	
	베네즈엘라	1965. 4.29	1974.10.28
	국가수 : 35개국	34개국	20개국
구주지역	알바니아	1991. 8.22	1948.11.29
	오스트리아	1963. 9.18	1974.12.17
	벨 지 움	1961. 5. 2	
	불가리아	1990. 3.23	1948.11.19
	싸이프러스		1991.12.23
	체코슬로바키아	1990. 3.22	1948.10.21
	덴 마 크	1959. 3.31	1973. 7.20
	핀 랜 드	1973. 8.24	1973. 6. 1
	프 랑 스	1949. 2.15	
	독 일	1955.12. 1	
	그 리 스	1961. 4. 5	
	헝 가 리	1989. 2. 1	1948.11.11
	아이슬랜드	1962.10.10	1973. 7.23
	아일랜드	1983.10. 4	
	이탈리아	1956.11.24	
	룩셈부르크	1962. 3.16	
	말 타	1965. 4. 2	1971.12.23
	네덜란드	1961. 4. 4	
노르웨이	1959. 3. 2	1973. 6.22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폴 란 드	1989.11. 1	1948.10.16
	포르투갈	1961. 4.15	1975. 2.22
	루마니아	1990. 3.30	1948.11. 3
	스 페 인	1950. 3.17	
	스 웨 덴	1959. 3.11	1973. 4. 6
	스 위 스	1960.12.19	1974.12.20
	터 키	1957. 3. 8	
	영 국	1949. 1.18	
	바 티 칸	1963.12.11	
	유고슬라비아	1989.12.27	1971. 9. 2
	슬로베니아	1992.11.18	1992. 9. 8
	크로아티아	1992.11.18	1992.11.30
	러 시 아	1991.12.27	1991.12.27
	우크라이나	1992. 2.10	1992. 1. 9
	벨라루스	1992. 2.10	1992. 2. 3
	몰 도 바	1992. 1.31	1992. 1.30
	아르메니아	1992. 2.21	1992. 2.13
	아제르바이잔	1992. 3.23	1992. 1.30
	카자흐스탄	1992. 1.28	1992. 1.28
	투르크메니스탄	1992. 2.10	1992. 1.10
	우즈베키스탄	1992. 1.29	1992. 2. 7
	타지키스탄	1992. 4.27	1992. 2. 5
	키르기스스탄	1992. 1.31	1992. 1.21
	리투아니아	1991. 9.14	1991. 9.25
	라트비아	1991.10.22	1991. 9.26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에스토니아	1991.10.22	
	국가수 : 45개국	44개국	32개국
중동지역	아프가니스탄		1973.12.26
	알제리아	1990. 1.15	1963. 4.18
	바 레 인	1976. 4.17	
	이 집 트		1963. 8.25
	이 란	1962.10.23	1973. 4.19
	이 라 크	1989. 7. 9	
	이스라엘	1962. 4. 9	
	요 르 단	1962. 7.26	1974. 6.30
	쿠웨이트	1979. 6.11	
	레 바논	1981. 2.12	1981. 2.12
	리 비 아	1980.12.29	1974. 1.30
	모리타니아	1978.11.19	1980. 3.19
	모 로 코	1962. 7. 6	1989. 2.13
	오 만	1974. 3.28	1992. 5.25
	카타르	1974. 4.18	
	사우디아라비아	1962.10.16	
	수 단	1977. 4.13	1969. 6.21
	시 리 아		1966. 7.19
	튀니지아	1969. 3.31	1975. 7.16
	아랍에미리트	1980. 6. 8	
	예멘	1990. 5.22	1990. 5.22
	지 부 티	1977.12. 8	
	국가수 : 22개국	19개국	14개국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아프리카지역	앙 골 라	1992. 1. 6	1976. 4.15
	베 닌	1990.10. 3	1973. 2. 5
	보츠와나	1968. 4.18	1974.12. 5
	부르키나파소	1962. 4.20	1972.10.11
	부 룬 디	1991.10. 3	1967. 3.11
	카 메 룬	1961. 8.10	1972. 3. 3
	베르데잡	1988.10. 3	1975. 8.18
	중앙아프리카	1963. 9. 5	1969. 9. 4
	차 드	1961. 8. 6	1969. 5. 8
	코 모 로	1979. 2.19	1989.11.20
	콩 고	1990. 6.16	1964.12.24
	코트디브와르	1961. 7.23	1985. 1. 9
	적도기니	1979. 9.14	1969. 9.20
	에치오피아	1963.12.23	1975. 6. 5
	가 봉	1962.10. 1	1974. 2. 1
	잠 비 아	1965. 4.21	1973. 3. 2
	가 나	1977.11.14	1964.12.28
	기 니	1978. 1. 6	1960. 6.14
	기니비소	1983.12.22	1974. 3.10
	케 냐	1964. 2. 7	1975. 5.12
	레 소 토	1962.12. 7	1980. 7.22
	라이베리아	1964. 3.18	1975. 7. 3
	마다가스카르	1962. 6.25	1972.11.16
말 라 위	1965. 3. 9	1982. 6.25	
말 리	1990. 9.27	1960.10.31	

지역구분	국 가 명	수 교	
		한 국	북 한
	모리셔스	1971. 7. 3	1973. 3.20
	모잠비크		1975. 6.25
	나미비아	1990. 3.21	1990. 3.21
	니 제 르	1961. 7.27	1974. 9. 6
	나이지리아	1980. 2.22	1976. 5.25
	루 안 다	1963. 3.21	1972. 4.22
	상토메프린시페	1988. 8.20	1975. 8. 9
	세네갈	1962.10.19	1972. 9.12
	세이셸		1976. 8.24
	시에라레온	1962. 6.25	1971.10.18
	소말리아	1987. 9.26	1967. 4.13
	남아프리카공화국	1992.12. 1	
	스와질랜드	1968.11.19	
	탄자니아	1992. 4.30	1965. 1. 4
	토 고	1991.1.23북교	1973. 1.13
	우 간 다	1963. 3.26	1963. 3. 2
	자 이 레	1963. 4. 1	1972.12. 5
	잠 비 아	1990. 9. 4	1969. 4.12
	짐바브웨		1990. 4.18
	국가수 : 44개국	41개국	42개국
총 국가수	180개국	169개국	127개국

(6) 대외선전

북한의 대외선전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아래 북한은 ① 주한미군철수 등 한반도에서의 공산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② 북한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한국의 고립화, ③ 사회주의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④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및 부자세습체제의 당위성 선전, ⑤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주장 등을 대외선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별 외교목표에 맞춰 전개되고 있다. 공산권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의 견지』와 『사회주의운동의 통일단결강화』를 주장하고, 비동맹권에 대해서는 『반제·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연대성을 표방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선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평등과 주권존중』을 내세워 인민들의 단결을 주장하면서 평화이미지 부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²⁾

(7) 대외선전활동 조직

대외선전 활동도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대외선전 활동의 총체적인 계획은 당선전선동부가 담당하며 집행은 당국제부가 지휘·감독하고

42) “현국제정세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북한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 허담보고(1971.11.15) 참조, 김일성의 1991년도 및 1992년도 신년사에서도 이같은 기본입장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있다. 그리고 현지의 선전활동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친북단체들을 주로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친북단체 조직은 ① 친선협회, ② 김일성연구소조, ③ 연대성위원회로 크게 나뉘지는데 친선협회는 상대국의 좌경 또는 친북인사들로 구성된 인민외교의 전위단체로서 집회, 성명, 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친북정책 유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김일성연구소조는 『김일성노작』에 대한 학습과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선전과 주체사상의 해외전파에 이용하고 있다. 연대성위원회는 친북반한 활동을 위한 정치단체로서 집회·성명 등을 통해 북한 통일방안 선전과 지지획득에 활용하고 있다.

친선협회는 1951년 6월 일·조협회의 결성을 시발로 하여 조직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인 1950년대에는 아시아와 공산권지역 5개국가에 13개가 조직되는데 불과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 전지역에 걸쳐 45개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 1991년 12월 현재 114개국 414개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연구소조는 1969년 4월 말리에서 처음 조직되어 김일성노작연구소,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 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의 형태로 조직되고 있는데, 북한이 1970년대초의 국제적 평화공존 무드에 편승하여 외교활동을 강화하던 시기인 1970년에 66개, 1971년에 106개로 증가하였고, 폭력혁명수출, 외교관밀수, 관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극히 비판적이었던 1970년대 중반까지는 새로운 조직 결성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1977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활발하여져 1991년말 현재 98개국 893개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연구소조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주로 비동맹권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는 국가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1978년 발족)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이다. 그러나 중·소와 동구 등 공산권지역에는 제3세계국가의 유학생들로 구성된 것 이외에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지적 때문에 김일성연구소조를 주체사상연구소조로 개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대성위원회는 1971년 모리셔스에서 처음 조직되었는데 그 목적은 통일문제에 대한 대외선전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1991년말 현재 77개국 426개조직에 달한다. 김일성연구소조가 비동맹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비해 연대성위원회는 아시아·서구·미주 등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방지역에 중점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각국에 산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선통일지지연대성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통제하고 국제적 규모의 북한 지지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1977년 6월 프랑스 파리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연락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197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위한 세계대회』에서 설립결의문이 채택되었고 이 결의에 따라 1977년 6월 25일~26일 알제리의 알제이에서 개최된 동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규약이 채택되어 상설 사무국의 설치가 결정됨으로써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북한의 배후조종하에 주한미군철수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및 3자회담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는가 하면 『조선은 하나다』라는 기관지를 통해 친북 반한선전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요 대외활동조직의 하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

회(조총련)⁴³⁾를 들 수 있다. 1955년 5월 25일에 조직된 조총련은 재일교포들을 북한 지지로 전향시키고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북한의 대외선전활동 조직

(단체수/국가수 : 1991년말 현재)

지역	단체명			계
	친선협회	연대성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아 세 아	204/14	257/9	250/12	711/23
중 동	23/14	17/8	96/11	136/15
아프리카	39/24	35/21	281/31	355/39
서 구	65/22	66/18	183/18	314/23
미 주	53/25	44/18	66/19	163/29
공 산	30/15	7/3	17/7	54/17
계	414/114	426/77	893/98	1,733/146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김일성저작선집』과 『혁명전통교양』 자료들을 각국어로 번역출판하고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들을 발간하여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⁴⁴⁾ 뿐만 아니라 조총련에 대해서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대를 이어 충성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조총련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43) 『조총련』은 1992년 4월 현재로 48개의 지방본부와 299개의 지부, 1,551개의 분회, 18개의 산하단체, 23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44) 조총련의 간행물로는 한글판 『조선신보』, 『조국』, 일어판 『조선시보』, 『조선화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민조선』 등의 정기간행물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세계각국에 배포되고 있다.

고 선전하면서 1957년부터 1992년 4월까지 교육비로 121차에 걸쳐 총 413억 4,844만엔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조총련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과 물품을 헌납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조총련계 실업인들과의 합영을 통해서도 적지 않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1959년 12월 14일부터 재일동포 북송을 시작하여 1984년까지 총 187차에 걸쳐 93,342명을 북한지역으로 보냈다.⁴⁵⁾ 그런가하면 1962년 제3기 최고인민회의부터는 조총련대표를 대의원으로 참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정치·사상·경제적으로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은 북한의 대외선전기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45) 북한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25년간 187차에 걸쳐 10만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기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1985), p210.

VII. 군 사

1. 정책기조

가. 군사정책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 국방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다. 북한헌법 제60조도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全民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주권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하면서 자위노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¹⁾ 라고 북한의 군사자위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때는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5차 전원

1) 『김일성저작집』 28권, p534 및 32권, p513.

회의에서 『구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²⁾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그 실질적 의미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군사노선³⁾이다. 북한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로 제시되는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4대군사노선

전민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국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전군간부화	인민군 대열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모두가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
전군현대화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

2) 『조선중앙년감』 (1963), pp.157~163.

3) 방문권·허종호,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pp.260~284.

군사정책의 주요 실천방향

구 분	내 용	비 고
1960년대	<p>〈4대군사노선의 관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¹⁾ • 전쟁을 위한 전략물자의 비축²⁾ • 전당과 전인민의 동원된 전쟁태세 확립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와 집단안보체제 구축 • 1969년 특수8군단 창설
1970년대	<p>〈4대군사노선의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⁴⁾ • 자립적 군사공업기지를 완성하여 획기적인 자위력의 육성⁵⁾ •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의 견지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혁명전쟁 수행 능력 향상 • 전전선에 남침용 지하 갱도 굴설
1980년대 이후	<p>〈4대군사노선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태세 완비⁷⁾ •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⁸⁾ • 현대전 능력 보강⁹⁾ • 군민일치 강화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설치 • 1988. 4. 민방위부 설치 • SCUD미사일 등 고도 정밀무기 개발

* 출처 : 1) 1966, 1967년 『로동신문』신년호 사설.

2) 1965. 11. 노동당중앙위원회 4기 12차 전원회의 결의.

3) 1967년 김일성 신년사.

4) 1970. 11. 2 노동당 5차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5) 1971년 김일성 신년사.

6) 1974, 1976, 1977년 김일성 신년사.

7) 1980. 10. 5 노동당 6차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8) 1988. 4. 24 인민군 창건 56돌 기념보고.

9) 1989. 4. 24 인민군 창건 57돌 기념보고.

10) 인민군 창건 58돌, 59돌 기념보고.

그리하여 1970년 11월 노동당 5차대회의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4대군사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쓸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용성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⁴⁾고 말하였다.

이러한 4대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대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주요실천 방향은 앞의 표와 같다.

그리고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하고 1980년대 인민군의 당면과업으로서, ① 군대내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② 전투·정치훈련의 강화, ③ 군사기술수준의 향상, ④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⁵⁾

그러나 최근에 들어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군건설로선”을 제시하고 북한의 군대를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내세우며 통일혁명무력과 김부자 체제 보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전쟁관에서 출발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론을 전개하였으며 6·25기

4) 『로동신문』, 1970. 11. 3.

『김일성저작선집』 5권(1972), pp.437~475.

5) 『로동신문』, 1980. 10. 11.

습남침도 “조국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

처음에는 속공기동전략과 포위섬멸전략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련군의 『야외교령』에서 출발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6·25경험을 응용하여 현대전과 혁명전의 배합이라는 기본전략전술을 설정하였다.

1950년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3차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6·25 남침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북한 군사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다.⁷⁾

1958년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까지는 중국군과 인민군의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인민군의 독자적인 전략을 확립하였다.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 당위원회 4기 4차전원회의 연설에

- 6) 6·25전쟁의 기원을 놓고 북한만이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유고학술원 발간 대백과사전(1978),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중국어판 1986. 10), 후루시초프회고록(2집, 3집) 등에 남침모의와 선제기습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련 역사학자 미하일 스미로노브의 증언 『모스크바방송』(90. 4. 20) 과 중국국제전략연구소 ‘자이지하이’의 논문(제2차 한국전쟁 국제학술회의, 1990. 6. 14, 서울)에서도 남침을 인정하였다, 또 러시아는 1993년도 새교과서에 ‘소련과 북한의 협의하에 남침했다’고 수정하였다(한·러 교과서 세미나, 1992.8.6 서울)
- 7) UN군의 반격으로 후퇴중이던 김일성이 자강도 만포시 별오리에서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3차회의(일명 별오리회의)에서 패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전략전술을 재검토하였다. ①민병대와 같은 예비부대의 부족, ②적공군의 우세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 ③현대전 수행에 있어 군사령관의 능력있는 지도력 결핍, ④군장비의 낙후 ⑤부대의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한 점, ⑥산지전과 야간전투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고 준비를 못한 점, ⑦후방 공급활동과 방위를 위한 불충분한 조직, ⑧부대에 대한 불만족스런 정치교육. 『조선중앙년감』(1953), pp23~37.

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현대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방어전과 정규부대·유격부대의 배합작전, 소부대와 대부대의 필요성, 경보병부대 조직과 무기의 경량화, 곡사포와 저공비행기의 증강, 산악전의 증시 등을 강조하였다.⁸⁾

또한 김일성은 1970년 노동당 5차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행하며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한다면 설령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적일지라도 얼마든지 섬멸할 수 있다. 조국해방전쟁 경험과 오늘의 월남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⁹⁾고 주장함으로써 군사전략전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의 군사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1971년 인민군창건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의 한익수의 보고이다. 즉 한익수는 동 보고에서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배후교란의 배합, 대소부대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시적 반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 배후의 제2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탱크사냥 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전술법은 현대전

8) 이후에도 북한은 배합작전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226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군사행동지대가 대부분 산악지대이고 적들이 산악전과 야간전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을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격파하는 기본전법의 하나로 내세우시였습니다.”

9) “조선로동당 5차대회 보고”, 『로동신문』, 1970. 11. 3.

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¹⁰⁾고 강조했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동일하게 전격전과 유생역량말살, 사상 의식 고취를 강조하고 있다.¹¹⁾

요컨대 북한의 군사전략전술은 결정적 시기 도래시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운용으로 대량선제기습과 속전속결방식으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여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쟁초기의 돌과구형성과 주도권장악을 위해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최전방의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운영하고 있다.¹²⁾

10) 『로동신문』 1971. 2. 8.

11) 『주체의 혁명이론의 발전풍부화』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4), p337, 김정일의 주장.

“적들이 미처 손 쓸 사이 없이 불같은 공격을 들이 대야 적의 유생역량을 철저히 소멸하고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지울 수 있습니다.”

“공격전투에서는 그저 적을 뺏다 밀고 나가려만 하지 말고 한놈의 적이라도 더 많이 소멸하여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 어떤 무기나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12) “The Search for a Poison Antidote¹,” *Time*(January 16, 1989), p22.

북한은 8개의 화생무기 생산시설을 갖추어 세계3위의 화생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0년 11월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에서 김일성은 “현대에는 과학시대로서 전투시 효과적인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많이 생산하여 사용할 것”을 교시하였다.

2. 군의 형성과 특징

가. 군의 형성과정

인민군의 창설작업은 평양주둔 소련군 25군사령부의 비호아래 해방직후부터 『건당·건군·건국』이라는 3대과제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당시 소련군사령부는 1945년 10월 12일에 “북한지역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탄약·군용물자들을 군경무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도위원회들은 소련군사령부와의 협의하에 기정된 인원수의 이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¹³⁾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 따라 해방직후 북한지역의 치안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민족진영의 자위대, 국내파 공산계열의 치안대 등 이미 조직된 무장대는 해산시키고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한인들로 구성된 적위대를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 보안대를 조직하였던 것이 바로 인민군의 모체이다.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각 지역에 조직된 보안대를 통합,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고 1개월 후에는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1947년부터는 소련의 군사원조로 신형무기로 무장하면서 급속

13) “소련군 25군 사령관의 성명”(1945. 10. 12), 『조선중앙년감』(1949), p58.

한 발전이 이루어져 1948년 2월 4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에 『민족보위국』을 신설하였으며 정권수립 7개월 전인 2월 8일에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하고 정규군으로 창설을 선포하였다.

한편, 해군과 공군의 창설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군은 1946년 7월에 수상보안대사령부를 원산에 창설(동해수상보안대 : 원산, 서해수상보안대 : 남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어 1946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고 1947년 6월 원산에 해안경비대간부학교를 두었는데 이것이 후에 해군군관학교가 되었다. 1948년 9월 북한공산정권의 수립으로 해안경비대는 해군총사령부로 개칭되면서 해군으로 발전하였다.¹⁴⁾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신의주항공대가 그 효시로서 1947년 8월 20일 소련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 출신 약 300여명을 중심으로 비행대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인민군창설과 함께 항공연대로 증편함으로써 정규공군으로 발전하였다.¹⁵⁾

민병조직으로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1959년 1월 14일 노동적위대를 창설하였고 1970년 9월 12일에는 **붉은청년근위대**를 조직하여 북한의 전사회를 병영화하였다. 1988년 4월에는 민방위부를 설치하여 직장과 연령에 따라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민병조직을 통합지휘토록 하였다.

14) 북한의 해안경비대는 처음에는 내무성 관할에 속하였으나 1948. 8. 28자로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되었는데, 1972. 6. 3 정령에 의해 이 날을 해군절로 정하였다.

15) 비행대를 창설한 날을 1972. 5. 25 정령에 의해 공군절로 정하였다.

나. 군의 성격과 특징

북한의 인민군은 노동당규약에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¹⁶⁾

이러한 군대의 당적, 혁명적 성격은 김부자의 독재체제와 연결되어 『김부자의 군대』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¹⁷⁾

지난 1977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오던 것을 1978년부터 김일성이 1932년에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4월 25일로 변경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는 것은 인민군의 성격을 항일 빨치산투쟁전통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며 군대의 김일성 사병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김일성은 노동당의 총비서 겸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의 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의 조직, 군사력의 지도를 담

16) 『조선중앙년감』(1984), p.194. 인민군창건 51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시 총참모장 오극렬 보고, “조선인민군은 당의 령도밑에 전군을 주체사상화하는 장기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으며 김일성동지의 군대, 로동당의 군대로서 혁명적 품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고 그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다.”

17)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데 이어 1992년 4월 13일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중앙인민위가 김일성에게 『대원수칭호』 수여를 결정하였으며 이어 4월 20일에는 동 4개위원회의 결정으로 김정일에게 『원수칭호』를 수여하였다.

인민군의 ‘충성의 선서’ 첫째항 : “우리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하고 있다.¹⁸⁾

최근에는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구축과 관련 인민군의 강화, 발전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¹⁹⁾ “전군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열 가지 공산주의 전투도덕적 품성으로 ① 용감성, ② 강인성, ③ 책임성, ④ 규율성, ⑤ 조직성, ⑥ 인내성, ⑦ 낙천성, ⑧ 단결성, ⑨ 혁명성, ⑩ 충실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당의 군대, 김부자의 군대로서의 인민군의 성격은 군사제도나 군사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1986년 이후 군병력의 민간 경제건설현장 투입이 보편화된 이래 『군민일치』의 기풍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군창건 60돌을 맞이하여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 김정일과 오진우에 원수칭호를, 최광 등 빨치산 원로 8명에게 차수칭호를 수여하였으며 대장·16명을 포함하여 664명의 장령을 승진시켰다.

18) 북한 노동당규약 제3장 27조.

19) 『로동신문』사설, 1986. 4. 25, “김정일동지가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로동신문』사설, 1990. 4. 25,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군대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총을 쥔 병사들의 신념이 흔들리게 되면 사회주의위업의 무력적 기초가 흔들리게 되며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3. 군사제도

가. 군사기구

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군사간부의 당내의 정치적 지위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등 주요 군사간부는 노동당 정치국위원 또는 노동당 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원회 위원중에는 군사간부의 비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정책의 수립에 있어 군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무력의 사실상의 최고지휘를 보장받고 있다.²⁰⁾

20) 북한헌법 제111, 113조.

노동당내 군사간부 변화추이

구 분	기 별	1차대회	2차대회	3차대회	4차대회	5차대회	6차대회
정치국	위 원	0(5)	0(8)	1(11)	1(11)	3(10)	7(19)
	후보위원	0(0)	0(0)	0(4)	0(4)	0(5)	3(15)
	계	0(5)	0(8)	1(15)	1(15)	3(15)	10(34)
중앙 위원회	위 원	7(43)	9(64)	7(71)	19(85)	24(117)	26(145)
	후보위원	0(0)	1(20)	9(45)	8(50)	4(55)	16(103)
	계	7(43)	10(84)	16(116)	27(135)	28(172)	42(248)

*주: 1) ()는 정원임.

- 2) 1, 2, 3, 4, 5차대회에서는 정치위원회, 3차회의에서는 상무위원회임.
- 3) 6차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위원 중 군사인물은 위원에 오진우, 최현, 서철, 오백룡, 전문섭, 오극렬, 백학림 등이고, 후보위원에 최광, 김철만, 김강환 등임.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민병조직의 책임자 등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 군사칭호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

북한은 196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5차 전원회의 이후 4대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도(직할시)·시(구역)·군단위의 각급 지방 당위원회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의 관철, 대책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조직, 전무력의 통솔 등 실질적인 북한의 군사최고지도기구이다.

각급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노동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전시 동원체제의 검토, 민병조직의 운영관리, 민병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1984년 2월부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군사정책결정 및 지도에서 군지휘가 가능토록 하여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인민무력부는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군사업무를 집행하는 정무원 산하의 부서였으나 현재는 주석과 정무원 소속에서 벗어난 국방위원회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인민군 총정치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군대내 각 단위의 정치부 등 정치기관을 통하여 군대내 당 정치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기관이다.

또 인민군내에는 노동당조직과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직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당이 군을 통제하고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군대내 노동당조직은 6·25 사변기간에 조직되기 시작하여²¹⁾ 1958년에 이르러 인민군 당위원회로 정식 조직이 완료되었다. 1961년 노동당 4차대회에서는 당규약에 군대내의 당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었다. 구성을 보면 중앙에 인민군대내의 전체 당조직을 유일적으로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는 당위원회가, 중대·소대 단위에는 당세포와 당분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데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되어 있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노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군대내 각급 노동당 조직은 유일사상체계

21) 1950년 10월 노동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대내의 당조직이 착수되었다.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265.

확립, 당대열의 확대강화, 군사사업의 당지도 강화, 당의 군사노선 관철, 사로청조직의 강화·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²²⁾

또 군대내에는 당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인민군 총정치국이 있고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 정치기관은 당의 정책,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노동당의 부서로서 참모부와는 관계가 없다.²³⁾

1969년부터는 인민군내에 정치위원제를 도입하였는데 사단과 연대 단위에는 정치위원, 대대와 중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중앙당에서 직접 파견 배치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정치사업을 조정 감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민군내 노동당 조직은 여러 조직으로 중첩되어 있는데 예컨대 사단의 경우, 사단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치위원, 정치부장 등이 있다. 군대내의 모든 교육계획, 명령서는 군사간부에 이어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²⁴⁾ 또 군사간부 동향에 대한 근무평정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군대내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정치·군사 이원화체제는 정치간부와 군사간부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김정일은 당군사부, 총정치부, 당조직지도부를 각각 활용하는 『3일3선 보고』조직을 통해 보고 감시체제를 빈틈없이 구사

22) 북한 노동당규약 제7장 47조, 48조, 50조 참조.

23) 1969. 1. 6~14 조선인민군 당 4기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발언.

24) 상기회의에서 김일성 지시.

함으로서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인민군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사로청도 조직되어 있는데 사로청조직은 각급 노동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하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대내의 비노동당원을 노동당의 지도아래 결속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²⁶⁾

또 군사적 조직외 비밀정보원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을 통제하고 있는 바, 군사지휘관이 부대를 통솔하기 위해 분대당 1명 정도를, 정치부계통에서 사상에 관한 동태를 수집하기 위해 분대당 1명 정도를, 보위부에서는 정식정보원은 소대당 1명을 두고 있으나 통상 분대당 2명 정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군사편제

북한의 인민군은 총참모장이 지상군, 해군, 공군을 총괄 지휘하는 단일통합군 체제이다.

평시에는 국방위원회의 인민무력부가 군정권을, 인민군 총참모부가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정무원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국방위원회와 당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전시에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직접 인민군총참모장을 통해 인민군은 물론이고 노동적위대 등의 예비병력을 포함한 전무장력을 지휘하도록 되어

25) 1983년 1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3일 이내 3개 계통에서 군관련 활동 일체를 보고토록 하였다. 최근들어 군대 내의 3대혁명소조는 철수하였다는 설도 있다.

26) 사로청 규약 제7장 48조.

있다.

인민군의 편제는 1992년 10월 현재 총참모장 예하에 전·후방의 16개 군단, 정보교도지도국, 포병교도지도국, 전차교도지도국,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평양방위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단은 기본전술사령부로서 전술 및 지원 병과부대가 협동된 최대규모의 부대로서 전술 및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²⁷⁾ 예하에는 보병사단/여단, 기계화여단, 정보병여단, 저격여단, 교도대 등이 있다. 정보교도지도국은 정규군과의 배합작전, 비정규전인 유격전, 특공대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하에는 정보병여단, 항공육전여단, 해상저격여단 등 14개 여단이 있다.

전차군단은 전차여단, 독립전차연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차부대는 여러 병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협동작전은 물론이고 기동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포병군단 예하에는 야포사단, 고사포사단, 해안포대대, FROG대대 등이 있으며 유개 및 갠도진지에서 견고하게 엄폐된 가운데 화력지원이 가능하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아래 동해함대사령부 소속 9개 전대와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5개 전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형고속정의 전진 배치로 대함 기습공격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3개 항공전단사령부, 민항항공국을 관장하고 있고 각 항공전단사령부 예하에 전투기연대, 폭격기연대, AN-2기 여단, HEL기 여단, 유도탄연대, 탐지기연대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부대편성으로 전단별 독립작전이 가능하다.

27) 6·25전쟁시 북한은 사단작전은 가능했으나 군단급 이상의 작전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패전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인민군편제상의 특징은 전시에 전쟁지도기구로서 군사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시에도 총력전개념에 따라 부대가 배치되고 병력이 운용되고 있어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부대 운용면에서는 행정 및 지원인원을 극소로 줄이고 전투인력을 최대한으로 늘려 활용하고 있다.²⁸⁾

다. 군사교육

북한의 군사교육은 『당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사상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개별능력보다는 집단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은 주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을 중심으로 “적개심 배양과 통일사명감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²⁹⁾

신병은 통상 1개월(보병)훈련기간을 거치나 성적이 미달한 경우 다시 1개월을 연장하며 신병교육이 종료되면 5~6명씩 조를

28) 1986년 9월 6일 인민군최고사령부는 15만명의 병력을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보도, 북한의 군대는 정권존립의 기반이 되면서 건설노동력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년감』(1987), p318 참조.

29) 『김일성 선집』 25권, pp1~22.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70. 2. 17)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적 세계관 형성은 정치교양(의식화)의 기본 방법이다.

첫째, 인식단계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을 철저히 폭로, 인식해야 하고

둘째, 중요단계로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극렬하게 중요하며

셋째, 결심단계에서는 최후까지 기꺼이 목숨을 던져 투쟁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 심리학』(동경 : 학우서방, 1974), pp53~61.

편성하여 김일성초상화, 석고상 앞에서 군인선서를 한 뒤 군인신분증(통일전사증)을 발급받는다.³⁰⁾

하사관은 당성이 강한 현역사병이나 실무교육(고등중학교)을 이수한 자들 중에서 하사관 차출지시에 의해 선발된다. 이론보다 실습위주로 6개월(공병하사관은 10개월)동안 교육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하사관 결원시에 보직과 동시에 진급한다.

군관후보생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병 중(혁명유자녀학원 출신은 1년 이상)에서 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자를 선발하고 정치·기술·예능 보유자는 민간에서도 선발한다. 우수한 하사관은 직발군관이라 하며 현지에서 선발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개 3년간의 군관양성기간을 거치나 해·공군은 4년교육과정을 거친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강건군관학교에서는 이러한 정규 군관양성과정의 1년 정도의 단기양성과정도 있고 6~12개월간의 보수교육과정을 두어 지휘관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군대복무

북한에서는 군의 입대여부가 국가보위부에서 결정된다.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하고 고등중학을 졸업하는 만 16세가 되면 모든 남자는 군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30) 인민군 군인선서: ①정부와 인민에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할 것, ②사회주의제도와 전취물을 헌신적으로 보위하고 혁명투쟁에서 모든 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것, ③고상한 전우애와 일치단결의 정신을 백방으로 발양, ④자기 무기와 군대 재산을 수호하고 비밀엄수 및 명령을 절대적으로 집행, ⑤선서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당과 혁명동지들 앞에 굳게 맹세함.

있으며 17세에 사단 또는 군단에 현지입대를 하게 된다. 정세가 긴장될 때에는 16세로 인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반동가족, 월남자가족, 형복무자 등) 이외 특수분야종사자(사회안전부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예술, 교육, 행정요원, 군사학시험합격 대학생)들은

신병 정치학습 내용

항 목	내 용
혁명전통학습	1. 김일성 혁명과정(27권)암기 2. 항일투쟁 3. 군의 사명 암기
공산주의 사상학습	1. 마르크스-레닌주의 2. 변증법적 유물론 3. 경제학
계급교양학습	1. 사회주의의 우월성 2.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
당정책학습	1. 국방력 강화책 2.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3. 군당회의 문헌
김일성교시학습	1. 청산리지도, 대안의 사업체계 2. 당대표자회의 김일성 연설문
국내외정세학습	1. 국내외 정세를 계급투쟁의 필연성으로 유리하게 해설 2. 적개심을 높이고 희생 및 단결 호소
적군학습	1. 사단 이하 편성·장비 2. 부대 전면의 배치 현황 3. 국군의 취약점

제1종합군관학교 교육내용

과 정 별	군관양성과정	군관양성과정	단기양성과정	군관보수과정
교육성격	보병, 정치, 통신, 공병, 화학 후보생 교육	후방(식량, 피복반) 인원교육	필요시 단기 양성	군관보수교육 (포병, 전차, 의무 제외)
기 간	3년	2년	1년	6개월
교육내용	군사학	전술학, 병기학, 사격, 공병학, 통신학, 지형학, 갱도학, 자동차학, 전사, 위생학		
	정치학	당정치학, 조선로동당투쟁사, 공산주의발전사		
	일반학	조선역사학, 세계정치지리, 수학, 문학, 러시아어		
	현지학습	실무부대 사단에 파견, 소대장 직무 견습		
	전문	각과정별 전문과목		

정책적 배려로 징집에서 제외하고 있다.³¹⁾

근무년한은 내각결정 148호에 의거, 지상군은 3년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5~10년씩 근무하고 있다. 사병은 27세, 위관급은 35~40세에 이르러 제대할 수 있고 그 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요원은 10~13년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복무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기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5기10차 전원회의에서, ① 강의한 혁명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규율 등 『전투력강화 5대방침』을 제시

31) 북한은 징집이란 말 대신 『초모』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이조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다.

하였다.³²⁾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인민군최고 사령관의 이름으로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 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당 및 정치조직들에게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기밀·당조직비밀의 엄숙한 유지,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군사정치훈련에의 어김없는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⑩ 군대안의 일치단결 등 『군무생활10대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³³⁾

『전투력강화5대방침』과 『군무생활10대준수사항』은 가장 중시되는 인민군의 복무규율이 되고 있다.³⁴⁾ 군기 및 부대관리를 위해 동지심판, 경고, 권한정지, 출당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민군대내의 주체적 혁명사상의 확립을 강조하고 경제건설현장에 군이 대거 동원되면서부터 “군민일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³⁵⁾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에 배치를 받게 되며 배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를 해야 대학진학이 허용된다.

32) 『로동신문』, 1975. 2. 8.

33) 『김일성저작선집』 7권(1978), pp418~423.

34) 노동당 6차대회에서의 총참모장 오극렬의 토론. “70년대는 우리 혁명부력건설 역사에서 군의 전투력 강화 5대방침과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의 관철로 새로운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인민군대는 이제 무적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었고 우리의 국방력은 사실상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35)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대회에서 김일성지시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데 대한 전군주체사상화 방침 제시,” 『로동신문』 논설, 1983. 2. 15 참조

또 복무중에는 전 복무기간을 통해 1~2회(1회 15일)의 정기휴가가 허용되고 있고 결혼이나 부모사망자는 10일간의 특별휴가가 있다.

그러나 휴가인원이 부대인원의 1/100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외출, 외박, 휴가 등이 제한되는 대신 연 1회 휴양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민군의 급여는 전시에는 평시의 2배지급을 제도화하고 있고 전방근무시에는 1인당 군관 30%, 하전사 100%의 봉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대급식에서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부대자체에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병사들의 부식조달에 애로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4. 군사현황

가. 병력

북한은 1962년부터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여 군비를 증강시켜 현재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제5위의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총병력은 1992년 10월 현재로는 전체인구의 4%가 넘는 101만명(지상군 88.2만, 해군 4.6만, 공군 8.2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비역 병력을 포함시켰을 경우, 총인구 2,300여만에서 600여만명이 군인으로 인구 1인당 병력면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상태이다.³⁶⁾

북한 지상군은 전차 약 3,700대, 장갑차 약 2,500대, 야포 및 방사포 약 9,800문, K-16 수륙양용차량 약 500대, S형 부교 약 2,30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대함공격 및 수중작전 능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력증강을 계속하여 현재 잠수함 25척, 유도탄정 39여척, 어뢰정 약 200여척, 고속상륙정 약 130척 등 총 74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공군은 전투기 약 760대와 폭격기 80여대, AN-2기를 포함한 수송기 480대 등 항공기 보유수는 총 1,620여대에 이르고 있다. 1985년도부터는 최신예전투기인 SU-25, MIG-29 등 90대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했고 미국 휴즈사 MD-500계열 HEL기 87대를 밀반입한 바 있다.³⁷⁾

그리고 FROG3/5/7 및 SCUD-B, SA-2/3/5 등 미사일 370여기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자전 지원(ESM), 전자전 방해(ECM), 전자전 방해방어(ECCM) 등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 1990년대에는 이들 장비의 자체생산을 시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는 저렴한 생산비에 비해 가공할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공격시 돌파구형성에 매우 위협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전방에 배치시키

36) Robert Liscasy 주한미군사령관의 1992년 3월 4일자 미상원 군사위 증언. 병력 및 장비 수치의 출처는 『국방백서』(1992~1993); IISS, *Military Balance* (1992~1993); 일본 『방위백서』(1992); 미국 국방부 『연례보고서』(1992); 정부기관연구자료 등.

37) U.S.A Dept. of Defence, *Soviet Military Power* (1986), p.140;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1991), p.132.

고 있고 북한전역에 8개의 화학무기 생산공장과 6개의 저장소, 3개의 생물학연구소를 갖고 있으며 총 비축량은 약 1천톤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함께 1989년에 평북 영변에 완공한 핵연료가공공장과 곧 완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처리공장도 핵무기개발에 대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지상군 병력배치 실태를 보면 1980년까지 45% 수준이던 평양-원산 선 이남의 전방배치 병력규모가 '90년대에 들어 65%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전략부대를 재편성하여 9-12개 사단으로 구성된 3개 기계화군단과 전차군단, 2개 포병군단을 휴전선 80km이내에 배치하고 있다.

평양-원산 선 이남의 30개 항공기지의 휴전선 가까이 2개의 비행장을 설립하였으며 우리 수도권 기습공격시간을 8분대로 단축해 놓고 있다. 또 20개의 작전키지에는 지하격납고를 완성하였으며 전투기의 40%를 전방배치시키고 있다.

해군함정의 60%가 전방배치되어 있고 200여척의 함정을 대피시킬 수 있는 12개소의 함정대피호(길이 200~900m, 높이 14~22m)까지 구축되어 있다. 그중 잠수함(25척)과 미사일탑재 고속정(39척)이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예비병력

북한은 인민을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군사관에 기초하여 주

북한의 최근 군사력 증강추세³⁸⁾

구 분	1986	1988	1990	1992
군 사 비	42.77억불	46.25억불	52.3억불	
총 병 력	840,000명	842,000명	1,111,000명	1,132,000명
탱 크	3,275	3,000	3,300	3,500
야포(방사포포함)	4,750	6,400	8,100	9,200
장 갑 차	1,690	1,690	4,340	4,340
잠 수 함	25	21	24	26
고 속 공 격 정	335	365	364	379
MIG - 21 / 23 / 29	210	206	196	196
헬 리 콥 터	170	170	270	277
지 대 지 미 사 일	54	69	69	69
지 대 공 미 사 일	830	500	176	176

* 출처 : ISS, *Military Balance*, 1986~'87, 1988~'89, 1990~'91, 1992~'93.

* ISS는 1991년도 북한군사비를 54.5억불로 추정.

민을 동원하고 있다.³⁹⁾

주민의 군사동원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에 노농적위대가 창설되고 1962년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4기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이 제기되고 부터이다. 곧 이어 교도대가 조직되었고 1970년 9월 김일성의 지

38) 북한의 군사력 증가추세에 있어 탱크, 야포, 장갑차, 헬기의 급증이 주목되고 있다. MIG기와 SAM미사일의 감소는 신예장비로 교체되면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Washington Post*, 1989. 1. 26자 참조.

39) 1950년 12월 31일 별오리회의에서 김일성은 “예비대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으며...후방공급사업들이 잘 조직되지 못하였다”고 예비대의 부족과 남침 실패를 자인하였다.

시로 학생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가 창설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채택과 함께 국방위원회의 설치 등 군사동원기구의 강화를 통해 전인민의 무장화 추진을 목표로 군사인력 동원의 극대화에 따르는 제도적 보완을 이루었다. 또 1988년 4월에는 예비병력을 능률적으로 통합지휘하기 위해 민방위부를 설치하였다.

(1) 교도대

북한의 민간군사조직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행정단위)과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당해지역 위수담당 정규군 군단장 관할하에 있으며 대학생을 정규군의 병종·병과의 초급장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정규보병사단과 여단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을 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모두 노동당의 통제하에 인민무력부의 직접지휘를 받는다. 교도대의 총병력은 12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전쟁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어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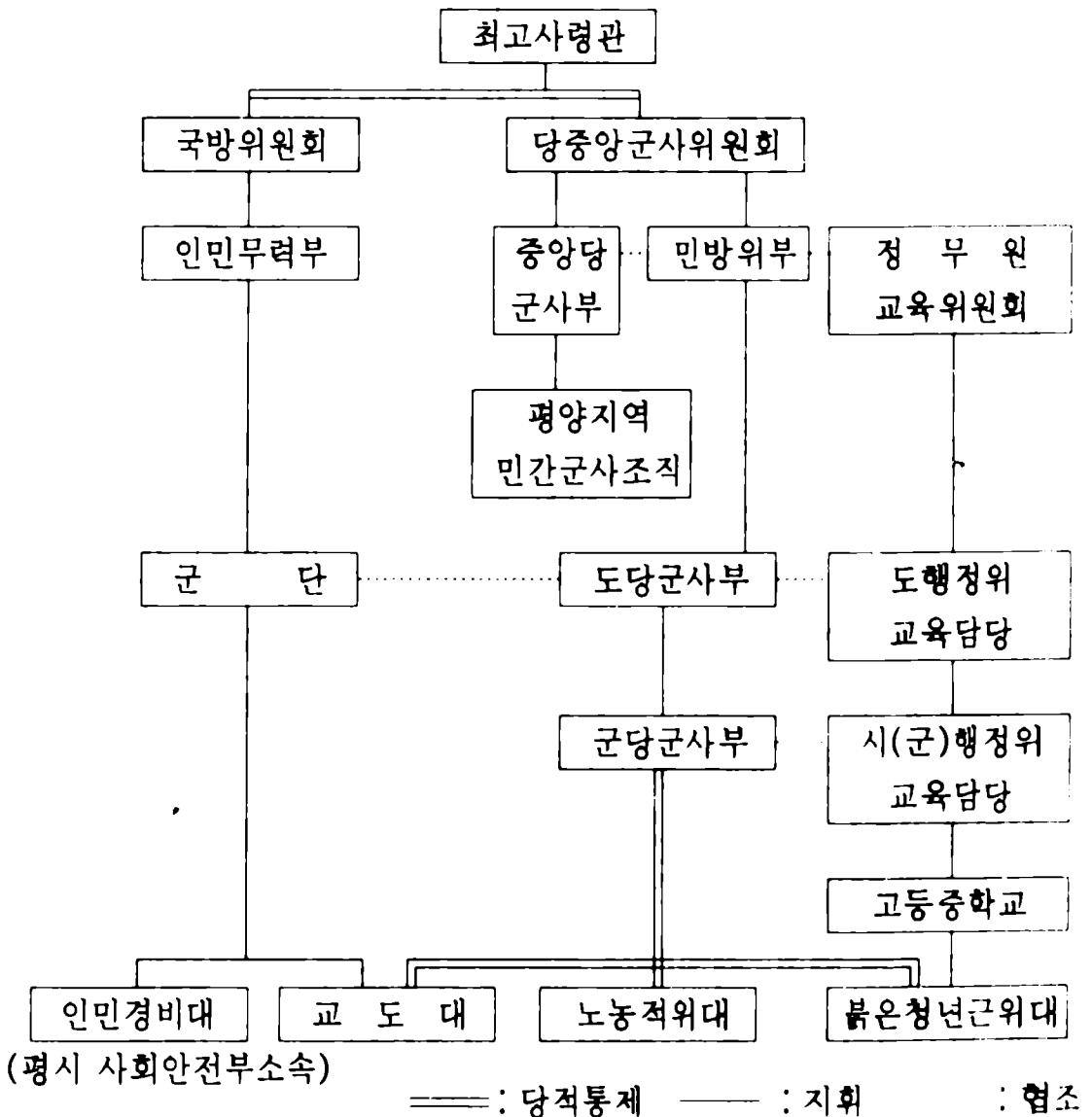
(2) 노농적위대

41세 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대별 지휘관은 당해직장 또는 지역의 노동당 책임비서가, 부지휘관은 사회안전부장이, 참모장은 노동당군사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노농적위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노농적위대의 기본적 임무는 민방위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의 경계는 물론 지역방어,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한다. 노농적 위대는 주말이나 월말에는 야외훈련, 연말에는 정규군과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북한 민간군사조직 지휘체계⁴⁰⁾



40) 민방위부는 1988년 4월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교도대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간군사조직 중 평양지역의 민간부대는 평양위수 개념에 의해 중앙당 군사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3) 붉은청년근위대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들(14~17세)로 조직되며 학교단 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노동당 비서국 군사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방학시간을 이용하여 7일간의 붉은청년근위대 야영소에의 입영훈련과 반항공훈련 등을 받는다.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 지배층을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대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결사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인민경비대

군에서 제대한 청장년 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15일간씩 교대조로 동원·조직하고 있고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인민경비대의 하전사는 정규군 초모대상자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군관은 경비대 하사관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의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민경비대는 사회안전부 5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철도경비처, 12개도(직할시) 경비처가 있으며, 철도경비처 예하에는 철도경비대가 있고, 각도(시) 경비처에는 국경경비대대, 시설경비대대, 해안경비기지 등이 있다.

(5) 민간 반항공기구

6·25전쟁에서 후방의 제공권을 빼앗김으로써 당한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 1961년 내각결정으로 조직하였다.

반항공대책위원회는 중앙·도(직할시) 시(구역)·군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각 기업소별로 반항공부를 조직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보통 25~40세의 건강한 근로자들로 구성되며 방공호와 갱도를 이용하여 주로 야간에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할 때에는 한세대가 10일간 취식할 수 있는 식량, 의복, 김일성초상화, 학습장 등을 상비하고 공군, 지상군의 지원을 받는 전반적 훈련과 화생방훈련, 등화관제, 분산, 소개, 구조 및 응급조치 훈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병력 현황

구 분	교 도 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경비대
병 력 수	120만명	380만명	90만명	10만명
연 령	17~40세 (여자 17~30세)	41~60세 (남자위주 편성)	14~17세 (고등중학 5~6학년)	17세~24세
소 화 기	100%	100%	100%	100%
병 용 화 기	70~80%	일부	일부	100%
훈 련 시 간	연 500시간	연 160시간	연 300시간	정규군과 동일

* 출처 : 한국연구기관 자료.

다. 군사비

북한은 이미 1962년부터 4대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군사비중에 인건비, 시설비, 장비유지 등 군의 일

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군사비의 평균 48%까지를 전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북한이 1966년도부터 공식발표하고 있는 세출구성의 추이를 보면 1967년과 1972년에 대폭적인 군사비의 변동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군사노선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를 다른 항목에다 은폐시키거나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확정된 199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세출총액은 북한 『원화』로서 395억 92만원(185억 4,503만불 상당)이며 그중 11.6%인 45억 8,211만원(21억 5,122만불상당)이 군사비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수준(55.6억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¹⁾

라. 병기생산

북한은 휴전후부터 병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병기생산공장들을 건설해 오다가 1960년대 중·소관계가 악화되자 더욱 병기산업에 주력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4대군사노선을 실천하면서 군수공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한편 주요 금속공장, 공작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 자동차공장, 트랙터공장, 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했다.

41) 최고인민회의 각 기별 (1987~'92년) 예산결과보고를 종합하면 실제 총예산의 약 30% 정도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원화의 대미 환율은 1\$: 2.15원 적용) 북한의 세출예산성질별 구성비는 Ⅲ. 경제 및 과학·기술편의 6. 분야별 현황 참조.

1970년대부터 그 동안의 모방생산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병기산업의 확충에 치중하여 전차를 비롯한 장갑차, 화포, 공용화기 및 각종 탄약을 양산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고 함정은 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전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주요 정밀전자 기기와 부품을 제외하고는 무기의 대부분을 자급체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북한은 무기의 자체개발단계에 돌입하여 양적 확장만이 아닌 질적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최신형 전차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강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병기공장은 현재 130여개소로 거의 지하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110여개소의 일반공장을 전시전환 공장으로 지정하여 전시에는 즉각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병기제품의 수준은 서방권의 제품에 비해 가공정밀도가 낮아 부품의 호환성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1978년부터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T-62전차를 생산하여 아랍 등의 분쟁지역에 수출한 바가 있고 최신예 MIG기의 기술제휴에 의한 조립생산, 일부 신소재, 부품을 도입하여 잠수함까지 양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 디젤엔진은 아직 시제품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의 군수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은 전자·통신으로 아직도 진공관식 통신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중·소제의 유무선 통신장비의 모방생산을 시도하여 연대급 이하 소부대용의 교환대 및 전화기, 저출력 무전기는 양산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²⁾

42)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1945~'89), pp.247~249.

북한의 주요병기생산 연표

연 도	주요 병기생산 내용	비 고
1950년전	평양 구 일본육군조병창, 홍남화학공장 등 30여 개의 병기병창 복구, 소련의 자재·기술원조로 소화기·탄약 초보적 생산 기관단총(PPSH), 수류탄, 소총탄, 박격포, 구잠정(130톤)	기본적인 개인 화기 생산 시작
1950년대	자강도 전천에 65호 공장을 건설 가동하여 AK 소총(58식 7.62mm)양산체제 돌입 대전차로켓포(RPG-2)	지상군 중대 단위 기본무기 조달
1960년대 전 반	RPD 경기관총(62식, 64식 7.62mm), SG 중기관총 B-10 무반동포(82mm), KPV 중기관총(14.5mm), 시모노프소총, SGM중기관총, 고사기관총(145mm), 82mm, 120mm박격포, RPG-2 대전차로켓포(40mm)	지상군 연대급 화력 유지
1960년대 후 반	방사포(107mm, 132mm, 140mm 발사관 12개), AK소총(68식), 평사포(130mm) 곡사포(122mm), 소형어뢰정(p-4, 67.6톤급) 고속경비정, 포함(PGM)	지상군사단 작전능력 보유, 해군연안 작전 가능
1970년대 전 반	T-59전차, RPG-7대전차로켓포 자주포(130mm, 180mm), 152mm곡사포 M-1973 장갑차, 유도탄 경비정 호위구축함(1,500톤급), R급잠수함(1,400톤급)	본격적인 군수산업 토대구축
1970년대 후 반	130mm, 180mm자주포, K-61 수륙양용장갑차 T-62 전차(T-55 개량형), MIG기 Licence 생산추진, 고속상륙정, FROG 5/7 모방생산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전술 단위 작전 가능

연 도	주요 병기생산 내용	비 고
1980년대	쌍동함, 수중익정, 공기부양정 SA-7 지대공미사일, SCUD 지대지미사일 모방 생산, MI-2 헬기, MIG-15, 21 YAK-18 조립공장	북한형 무기 개발 항공기 조립생산 기 반구축
1990년대	M-1989 대구경(240mm) 자주포 모방생산 노동1호 미사일(사정 1,000km) 자체개발 *핵재처리공장 완공 예상	해외무기시장 개척, 제품정 밀화 주력

마. 군사동맹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 6일에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7월 11일에는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체약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소 조약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조약체결 일방이 시한만료 1년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연방의 소멸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연방 공화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동조약 제1조(피침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동맹

조약의 성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중 조약은 계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동 조약은 수정 내지 사문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외에 북한은 1978년 5월 『조선·모잠비크 친선협조조약』을 체결하여 방위력 강화에 상호협조를 다짐하였으며, 1982년 11월 리비아 원수 카다피가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는 『조선·리비아 우호협력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쌍방은 군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군사자료·군사전문가의 상호교환, 무기 제공 등을 합의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다.

1986년 3월 쿠바수상 카스트로의 방북시에는 20년 시한의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역시 쌍방간의 정치·경제·문화·기술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⁴³⁾

43)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쌍방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어느 일방에 대해 그 어떤 위협이나 침략을 감행하는 경우 이것을 다른 일방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으로 인정하고 가능한 모든 지지와 원조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I. 통 일

1. 통일정책의 기초

가.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노선

북한은 기본적으로 혁명주의적 기초를 고수함으로써 통일문제와 남북한관계를 민족공동체의 회복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조선혁명』을 위한 투쟁과업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북한의 각종 주장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아직도 혁명과 통일과업의 불가분성과 『선남조선혁명 후조국통일』노선을 계속 표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표방해 온 혁명주의적 시각의 논리에서 보면, 남한은 해방되어야 할 땅이며, 남한정부는 혁명을 위한 타도대상일 뿐이다. 북한은 전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민주기지』)¹⁾가 되고, 남한은 반동·반혁명세력의 소굴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²⁾로서 『남조선혁명』투쟁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혁명세력 대 반혁명세력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와 객

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 4. 1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36.

2) 위와 같은 책, p.46.

체를 정해 놓음으로써,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남조선혁명의 타도대상이며 『연공정권』으로 교체되어 사라져야 할 정권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남한정부를 타도하는 방법으로서 북한은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라는 두가지 대남전술을 표방하고 있는데, 평화적 방도란 혁명을 통해 남한내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 다음 이 정권과 합작하여 적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비평화적 방도란 무력남침 등 전쟁수단을 통해 남한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말한다.

평화적 방도이든 비평화적 방도이든 일단 남한정권이 연공정권으로 교체되어 남조선혁명이 완수되면, 북한주도하의 연공합작통일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 이른바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 노선의 핵심적 구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혁명투쟁노선에 따라 남북한관계를 볼 때, 북한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의 명제와 평화통일협상은 한낱 명분적 구호요,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투쟁의 연장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표방하는 조국통일은 양단된 국토와 민족의 재결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지향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과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³⁾

조국통일의 과업은 남조선혁명과업이 완수되고 전조선혁명과업이 실현되기 이전의 중간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노동당 주도하에 남한의 연공정권과 합작통일의 절차를 밟는 외형상의 평화통일협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은 『주체사상』을 “조국통일과 민족적 번영을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으로 미화시켜 선전하고 있다.(『근로자』, 1976년 제10호, p52 참고)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하의 통일”⁴⁾인 것이다.

북한이 종래 공공연하게 표방해 온 남조선혁명의 기본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⁵⁾

첫째,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체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것이다.

둘째, 남조선혁명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 노동계급이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민주역량을 동원하여 착취계급의 낡은 통치기구를 혁명적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투쟁”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교조주의적·혁명주의적·계급주의적인 시각에서 정립하고 있는 남조선혁명의 기본성격 규정은 원천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혁명주의적 시각에 집착하여 북한체제의 최고규범인 노

4) 조선로동당,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 (평양: 조국통일사, 1969), p.36.

5)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강의(1965. 4. 14),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로동신문, 1970. 11. 1) 및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을 참고.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1973. 12), p. 494.

동당규약의 전문에 명문화한 『당면목적』(“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완수”)과 『최종목적』(“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계속 표방하는 한, 평화적 통일협상은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도 계속 전술적 차원의 변화에만 집착한다면 생산적인 남북평화통일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 혁명주의적 통일노선의 변화문제

그러나 이상과 같이 겉으로 표방해 온 북한정권의 전투적 대남 혁명전략의 불변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적화통일노선은 불변이며 다만 전술적 후퇴나 위장변신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경계 일변도적인 시각만을 고수한다면 엄청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변화요인 및 전개양상을 오관하거나 간과해 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전략노선의 변화 촉진문제에 관한 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확히 통찰하는 안목과 접근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당국자들의 입이나 선전매체의 소리만 놓고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이는 손과 발의 방향도 확인해야 하며 남조선해방보다는 북한체제의 존속이라는 일종의 생존전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해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 누구나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개혁의 시대임을 실감하지 않

을 수 없다.

한·소, 한·중 수교와 소련 공산체제의 몰락, 남북한 유엔동시가 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북한이 언제까지 교조적인 혁명투쟁노선을 행동으로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감안할 때 북한 최고당국자의 주목되는 발언(1991년 신년사중 연방제 관련 부분과 제도통일반대 언급부분, 1992년 신년사중 책임있는 정부당국의 중요성 인정 등)이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합의에 응해 온 북한측의 입장과 자세를 단순히 전술적 차원의 변화나 후퇴로만 봐야 할 것인지는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992년의 개정헌법에 나타난 통일 및 대남관련 조항들을 볼 때 북한의 대남전략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구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대남전략을 수정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 국가”⁶⁾임을 표방한 가운데 “당의 국가 영도” 조항⁷⁾을 신설함으로써 기존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명백한 것은 북한이 종래의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통일론으로부터 수세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통일론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6) 북한 헌법 제1조.

7) 북한 헌법 제11조. 노동당규약 전문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가. 1960년대 『남북연방제 방안』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최초로 제의한 것은 『4·19혁명』직후였다. 통일논의의 백화제방시대였던 4·19당시 북한은 전례없이 적극적인 대남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김일성은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남북연방제』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개칭되어 제시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명칭은 1991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통일완성형 연방제론으로부터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변화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대남통일공세가 수세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최초로 주장한 『남북연방제통일방안』은 제의내용만 놓고 보면, 일반국제법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논리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분단현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다.

1960년 8월 14일의 김일성 연설내용 가운데 관련 부분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다.··· 만일 그래도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가 될까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의 실시는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리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인정한다. 특히 이러한 연방제 실시는···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연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민족에 리로운 경제 문화적 문제들을 협의하여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교류와 호상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⁸⁾

북한의 주장 가운데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자유총선거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남북연방제는 분명 과도적 대책이며, 당분간 두 정치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8)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 『로동신문』, 1960.8.15.

이는 사실상 통일과정에 있어서 평화공존을 받아들이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그후 20년이 지난 1980년 10월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는 과도적 대책이라든가 당분간이라는 어휘를 더 이상 연방제통일방안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의 평화공존정책을 『분열주의』, 『두개 조선조작 책동』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셋째, 남북한 정부당국의 대표들로서 일종의 협의조정기구인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함으로써 조약체결 제의는 없었지만, 사실상 일종의 국가연합적 성격의 남북협력을 시사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1980년 10월의 제6차 당대회의 경우를 보면, 북한은 정당, 사회단체, 해외동포 대표 및 민주안사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제의하였다. 이는 1960년대에 정부당국 대표들만으로 구성하자고 한 최고민족위원회 주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북한이 대남공작 차원에서 조직한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같은 조직도 정부당국을 도외시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넷째, 남북한정부의 일종의 협의조정기구이며 동시에 특수한 형태의 과도적 중앙정부격인 최고민족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내정권·외교권·군사권(군통수권)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제와 문화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적 조절』을 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접촉과 협상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보장조치, 상호이해와 협조, 불신의 해소와 경제·문화교류 등과 직결된 현실적인 조절기능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군사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1970년대의 『고려연방공화국 방안』과 비교할 때, 1960년대의 과도대책으로서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은 전혀 성격을 달리한 것이었다.

북한은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남북연방제 실시의 제의를 통해 대남·대외적으로 선전효과를 얻는 한편, 『연방제』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남북자유총선거 통일방안을 점차로 대체시켜 나아갈 전략적 입지를 확보한 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나.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1961년 『5·16혁명』으로부터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의 제의가 있기까지 남북한간에는 통일심리전의 냉각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초에 들어와 미·중 화해의 급속한 진전 및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북한의 연방제통일론은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1973년 6월 23일 북한은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였다. 당시 같은 날 오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등을 내용으로 한 『평화통일외교정책특별선언』¹⁰⁾을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이날 오후에 북한측이 발표한 이 조국통일 5대강령은 한국측의 『6·23선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고

9) 유완식,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에서 본 북한의 연방제 평가,” 국토통일원, 『북한의 남북연방제 비판 심포지움 결과 보고』, 1980, p.52.

10)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전문)”, 1973. 6. 23,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대화백서』 (서울: 대한공론사, 1978), pp.261~264 참고.

려연방제』와 『5대강령』의 제시로 남측선언의 설득력을 상쇄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김일성 연설¹¹⁾(1973. 6. 25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반민족적인 주장을 제 때에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온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오후에 새로운 구국대책으로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조국통일 5대강령』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비서 후사크의 북한방문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에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①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②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의 실현, ③ 대민족회의 소집, ④ 단일국호의 남북연방제 실시, ⑤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다.

이 가운데 ④항과 ⑤항이 『고려연방공화국』단일국호하의 남북연방제 관련 제의내용이다.

④항과 ⑤항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²⁾

• ④항 :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11) 김일성,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3. 6. 25, 『김일성 저작집』 28권, p398.

12)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체코슬로벤스키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1973. 6. 23), 『김일성 저작집』 27권, pp390~392.

단결을 이룩한 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방국가의 국호는 우리나라의 판도 위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⑤항 :

우리는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같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연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위의 ④항과 ⑤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1960년 8월 14일의 연설 내용(과도대책으로서의 남북연방제론)과 비교할 때, 같은 연방제를 표방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달라진 내용의 특이점은 대체로 다섯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남북자유총선거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 대신에 남북연방제야말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미화되고 있다. 총선거란 어휘도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연방제의 의미가 사라졌다. 그 대신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현존하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둔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당분간이라는 어휘는 평화공존과 같은 과도적인 단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과도적 대책이라는 어휘를 유보 내지

최소화하기 위한 눈가림이었다.

과도적 대책이란 어휘와 당분간이란 어휘는 그 자체를 놓고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다소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전자는 사실상 연방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적인고 중차대한 대전제처럼 부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명사로서 이해되었었다. 그러나 후자는 과도적 대책의 어휘소멸을 눈가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필경 당분간이란 어휘는 과도적 대책의 대체용어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한 당국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어졌다. 그 대신 군중집회 형태의 이른바 대민족회의가 전면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과 권위·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를 무시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한편,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공동보조와 정치·군사분야의 합작을 언급한 것은 1960년대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군사·외교분야의 문제를 제외한 남북연방제 실시구도였던 사실을 상기할 때, 전혀 상반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당분간이라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외교분야의 중앙통제조절권을 공공연하게 설정하고 있었다.

요컨대, 연방제방안의 명칭은 진일보시켰으나, 사실상 내용은 거의 다 본래의 알맹이를 빼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은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상징성이나 선전적 효과가 큰 명칭 또는 어휘들을 제시하여 왔다. 남북연방제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한 것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단일국호하의 유엔가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유엔동시가입 주장을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매도함으로써 북은 통일지향적인 반면, 남은 분열지향적인 것처럼 선전함과 동시에 원천적으로 연방제방안에 대하여 남한측의 수락이나 수정제의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이중적인 저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북한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과 관련, 제6차 노동당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북한정권 수립이래 전례없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통일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통칭되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의들을 수정·종합·체계화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980년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중 남북연방제 제의내용¹³⁾은 크게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의 제시, 둘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제시(• 연방형성의 원칙 • 연방기구의 구성, 임무 및 기능 • 연방국가의 국호 및 대외정책 노선 • 고려민

1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제하의 내용(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 pp.338~356.

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로 나눌 수 있다.

(1)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제시

(가) 남한정권의 청산 및 사회의 민주화 실현

“남조선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낫쇼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군사낫쇼<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한번 제의한다…

미국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

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조국통일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그것을 실현하여야 한다.”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가) 연방형성의 원칙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나) 연방기구의 구성과 임무·기능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협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연방국가의 국호 및 대외정책 노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

- ① 자주적 정책의 실시
- ② 전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의 대단결 도모
- ③ 경제적 합작과 교류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 ④ 과학·문화·교육분야의 교류협조 실현 및 과학기술과 민족문화 예술, 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 ⑤ 교통·체신의 연결 및 전국적 범위의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의 계통적 증진
- ⑦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및 외래침략으로부터의 민족보위 :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한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옹호
- ⑨ 통일 이전의 대외관계의 처리 및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 ⑩ 평화애호적 대외정책의 실시

(3)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방안」의 문제점

1980년대의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다음 몇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연방제 통일방안의 명칭, 방안 구성의 형식과 내용체제에 서부터 그 차이와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명칭을 보면,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에 「민주」라는 어휘를 삽입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방안구성의 형식면에서도 종래 단편적이고 구호적인 내용들을 그때 그때 계기별로 제의·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설계도의 대강을 갖추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선결조건론, 연방형성의 원칙과 연방기구의 임무 및 기능, 통일연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연방제 성립요건과는 거리가 먼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시나리오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야말로 유일무이의 최상의 통일방안¹⁴⁾이라고 강변함으로써 사실상 남북자유총선거 통일방안이 최선의 평화통일방도라고 공언했던 1960년 8월 14일 연설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고 있다. 북한의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제론은 필경 총선거방식의 제도통일은 거부 또는 회피하고 있으며, 연방헌법의 성안·채택문제도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14) 『로동신문』, 1983. 9. 10.

않음으로써 선결조건과 연공합작의 혁명통일방식에 집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과도적 대책이라든지 당분간이라든지 이른바 통일의 중간과정의 단계적 조치를 상징해 온 어휘들이 완전 배제되고 있다. 그 대신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완성형 통일국가이며,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종래에는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통일완성형 연방제를 설정함으로써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하는 원칙위에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고 전제하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통일국가의 시정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치·외교·군사권을 연방상설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행사하도록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대 시정방침』 가운데 제7항인 민족연합군 편성의 경우, 지역정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 채 『국군』과 『인민군』을 통폐합하여 군통수권을 행사할 경우, 어느 쪽이 먼저 할 것이며, 또 과연 국군과 인민군이 제도통합없이 단일지휘체계에 편성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남는다.¹⁵⁾

따라서 통일정부인 『연방상설위원회』가 정치·외교·군사권을 비

1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35돌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1983. 9. 10.

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일컬어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창건되었으며, 전체조선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못하여 전반적인 국사를 관할한다는 것은 사실상 두개의 지역정부의 독립적 제도와 주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불가양립적인 역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종래에는 없었던 『10대시정방침』은 남한내부와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의 연방제론이 구체적이고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국내 통일논의과정에 논쟁거리를 제공하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기존 방안을 둘러싸고 알맹이 없는 『사이비 연방제』라는 비판을 가차없이 해온 남한내의 관변통일론을 무산시키고, 정부의 통일방안과 연계시켜 통일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논쟁거리, 예컨대 중립주의 문제와 외군기지 철폐 및 사용불허 문제 등을 단점으로써 민중통일논의를 가열화시키는 자극제로 삼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경우 종래의 주장과는 달리 방안의 전반부에 노골적으로 선결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간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려면, 최소한 남한의 반공자유민주주의정권의 퇴진이라는 이른바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연방제통일협상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진전될 수 없다는 논리일 뿐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선결조건론은 남조선혁명의 결정적 여건 조성과 직결된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러한 강탈적 요구는 필경, 연방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내부로부터 반미·반정부투쟁의 불길이 번져야 하며, 남한내에 연공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주도하에 합작통일의

길을 열기 위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공공연한 선동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사이비 연방통일국가 창립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논리적 모순과 방안자체의 혁명전략적 위협요인 및 사실상의 협상대상존재의 부정 등으로 그 허구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협상태도의 허구성이 노출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선결조건의 집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연방제의 성립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주장에 숨겨져 있는 전략적 관점은 『선선결조건의 관철, 후합작공산화의 실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환언하면, 연방제는 표피적인 형식이고 전한반도의 공산화가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뜻이다. 북한측이 다방면적인 합작·교류를 위한 『10대 시정방침』을 연방제 수립이후의 단계로 미룬 것은 선결조건을 먼저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1980년 10월에 유일무이의 방안으로 제시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다만 전술적 보완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1980년대말까지 주목할만한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1988년 9월 8일 북한정권 창건40돌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에서 전례없이 『공존의 원칙』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¹⁶⁾할 것을 주장하였다. 종래의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간접적 표현을 탈피하여 공존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은 분명 변화임에 틀림없다. 공존이란 어휘를 의식적으로 회피해 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적 화해조류에 편승하려는 정책노선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술하게 될 1991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 새롭게 제시된 연방제론의 수정내용에 있어서도 공존의 원칙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라. 199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1년 1월 1일 북한은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주장을 잠정적 또는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선회시킴으로써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예상과는 달리 정상회담이나 한국측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였다. 그 대신에 그는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통일방도를 확정짓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방제론의 수정보완방향을 공언하고 있다.

1991년도 신년사 내용 가운데 연방제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부분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¹⁷⁾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16)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창건 40돌 중앙경축보고대회에서 한 연설), 『근로자』, 1988년 제10호(588호), p.19.

17) 김일성의 1991년도 신년사 참조.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의 분렬을 끊임없이 지속시키자는 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어느 측에도 접수될 수 없는 것이며 접수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필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도 련방제 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조건에서라면 그 전이라도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의 언급내용 가운데 종래의 고려민주연방제론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대목들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제도통일론과 연방제통일론의 구별이다.

북한측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인 공존의 원칙에 따라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잠정적·단계적 『미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남한이 북한식 전략노선에 따라 흡수 적화될 수 없는 한 종래의 연공합작 완성형 연방제론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정세의 뚜렷한 현상이 자유화의 풍미로서 도미노 현상까지 몰고 옴으로써 남한의 반공자유민주주의정권을 연공정권으로 교체하여 베트남식 연공합작통일을 실현한다는 혁명전략의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반평화적 적화통일방인임이 명백해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총선거를 통한 제도통일의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칫 완성형 연방제통일방안과 제도통일을 동일시할 경우, 독일형 연방제제도 통일(자유통일)방식이 현실화될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상과 제도가 다른 남한정부와 상당기간 공존기간을 거침으로써 북한체제를 보존하면서 『남조선혁명정세』의 조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북한측은 적색혁명을 통해 남한을 흡수할 수 없는 한, 완성형 연방제론에 무리하게 집착하기 보다는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선회함으로써 체제생존전략을 충족시키는 한편, 과도적 지연전술의 전개로 새로운 정세를 관망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방제통일방식과 제도통일방식의 구별은 곧 『선연방제 후제도통일』이라는 단계적 통일방안의 공식화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체제통일』(북한은 『제도통일』로 통칭)이란 민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즉 자유총선거 방법에 따라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의 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측은 바로 이러한 완전통일을 제도통일로 인식, 단계적 연방제통일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통일의 과제는 후대들에게 맡겨도 될 미래의 문제로 미룸으로써 정치적 완전 통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래 북은 통일세력이요, 남은 반통일세력이라는 선전구호를 북한 스스로 뒤집어 놓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이 사실상 현정치세대간에 사상과 제도가 하나로 되는 완전한 정치적 통일(그것이 총선거를 통하든 협상을 통하든)로서의 통일민주공화국 수립을 이룩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정권은 북한사회주의 체제·정권의 보존이라는 수세적 생존전략에 부심해야 할 심각한 국면에 봉착해 있다. 환언하면, 종래의 레닌적 연방제적화전술의 사실상의 포기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북한이 들어서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상징적인 중앙정부와 정치·외교·군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2개의 지역정부가 병존한다는 것은 정치적 완전통일을 향한 과도적 통일체제요 평화공존체제일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완성형 민족통일국가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김일성이 표방하고 있는 “1995년 통일원년”은 제도통일을 상당기간 미룬 명분에 주안을 둔 잠정적 연방제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통일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함으로써 결코 접수될 수 없는 것으로 완강히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남한이 현혹된 것처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를 강요하려 할 때 민족적 재난 즉,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결의표명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 동서독이 서독주도하의 자유통일을 실현한 데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독일통일을 본 북한당국자들이 북한이 제2의 동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스스로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

필경, 김일성이 언급한 제도통일은 총선거에 의한 자유통일이요, 흡수통일이며, 이른바 송공통일로서 남한주도하의 자유민주주의통일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잠정적으로 두개의 지역정부에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점차로 연방정부에 권한을 넘긴다는 이른 바 지역정부권한 강화론을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잠정적 지역정부권한 강화론은 종래의 연방제론에 수정을 가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측이 일관되게

18) 최호중, “유엔동시가입 이후의 남북한 관계”, 국제학술원 주최 『대한민국 유엔가입 경축강연회』에서의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연설문 (통일원, 1991. 9. 18), p.10.

설득해 온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권한을 통일정부로서의 중앙정부인 연방상설위원회에 집중시켰던 종래의 중앙정부권한 절대론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큰 변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립방안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¹⁹⁾는 부분은 윤기복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는 1991년 4월 28일 제85차 평양 IPU총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을 만수대의사당에 초청한 자리에서 “북과 남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통일국가를 세우자. 그러나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 즉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 등을 줄 수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측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유일무이의 또는 절대절명의 통일강령으로 고집해 온 입장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1991년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하여 전례없이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도통일후대론과 잠정적 지역정부 권한 강화론을 제기한 것은 북한의 기존 고려민주연방제론의 불가피한 수정과 북한통일정책의 수세론적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19) 김일성의 1991년도 신년사, 앞의 자료 참고.

3. 「연방제」 통일론의 향방

북한이 1960년 8월에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래 1992년초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일방안의 명칭과 내용이 많은 변화를 보여 왔음을 살펴보았다.

애초에 연방제는 인구가 적은 북한이 남북한 자유총선거방식의 정치적 완전통일은 회피하고 공산정권을 유지한 채 남쪽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술차원의 정치협상회의 방식에 의해 남조선혁명을 실현하고 통일문제를 민족내부의 내정문제로 만들어 외세배격을 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일단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북쪽에 불리하게 되자, 그들 스스로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받아들임으로써 연방제실현후 단일국호하의 유엔가입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제 북한은 사실상 알맹이 없는 연방제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가연합형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모른다.

남북한이 평화적 대화협상에 의한 통일을 표방하는 한, 통일의 기본방향과 방안에 관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합의는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통일기본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를 보면 정상회담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연계시켜 협상하겠다는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1992년 3월 6일자 『로동신문』논평은 이를 뒷받침하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그 논평내용중 정상회담과 연방제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²⁰⁾

“남조선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면, 최소한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열된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통일방도인 연방제를 받아들여,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립장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장차 남북한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측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놓고 민족통일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물론 남과 북이 각기 더욱 보완·발전시킨 통일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측의 『남북연합』안과 북측의 수정된 『단계적·잠정적 연방제』안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여하에 따라서 『1민족 1국가 1체제(제도) 1정부』의 완전한 단일 민주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전단계인 『남북연합단계』 즉 과도통일체제의 형성문제를 비롯하여 과연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인지의 여부에 전민족적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다.

여하간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측의 수정된 『단계적·잠정적 연방제 통일론』이 비록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민족화해, 협력에 타율적으로 적응해 나오는 평화지향적 통일지향적 방안이냐 아니면 혁명·적화통일전략노선을 고수한 채 단지 전술적·후퇴기전술을 구사하는데 불과한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 『로동신문』, 1992. 3. 6.

자료

2018년 12월 26일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1992. 4. 9 개정)

제 1 장 정 치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 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 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 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 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 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 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 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2 장 경 제

제 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

만이 소유한다.

제 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 운수와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 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 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2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7 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 28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 29 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 30 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 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기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 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 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기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 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 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 3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4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 4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42 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43 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 44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 45 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6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 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 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 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 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 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 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 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 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 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4 장 국 방

제 5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 5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 60 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全民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 61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 6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 6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
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 64 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 6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66 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67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8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 69 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 70 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 71 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2 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

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 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 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 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 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 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 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 83조 로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84조 국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 85조 국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 86조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 6장 국가기구

제 1절 최고인민회의

제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이다.

제 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 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91조 최고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재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재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재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재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 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 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 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 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 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 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

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04 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2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 10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0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10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 10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1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 3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 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 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중앙인민위원회

제 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 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 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

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나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나오거나 고친다.

제 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5절 정 무 원

제 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 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 126 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27 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으로 구성한다.

제 128 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 129 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30 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131 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를 한다.

제 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 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 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 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 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 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 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

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 148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9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와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50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51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 8 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 152 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53 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54 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

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55 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썬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 156 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 157 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8 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 159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60 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161 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162 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 163 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64 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65 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66 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167 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 16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 16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대 2이다.

제 17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 17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1980.10.13 제6차당대회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

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을 진다.

-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 준비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4. 당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율 위반에 대하여는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당원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 5) 당원은 노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과 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률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

야 한다.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의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한 어떠한 지식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후보당원의 임무는 당원의 임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7)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문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 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위원회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율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 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책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무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그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시(구역)·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수와 초급당위원회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위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당위원회 보조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실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당위원회 및 당세포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약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과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 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

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29.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대표자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대표회의 소집일과 의정을 2개월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전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 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동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 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

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는 인사행정 및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마다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36. 시(구역)·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군당대표회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군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개월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군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구역)·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2) 시(구역)·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 선거

3) 도(직할시)당대표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 주지시키고 그 대열을 확대시키며 당원 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층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에 관해

상급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40. 시(구역)·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 처리한다.

제6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린접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3)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생활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 조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5) 이상의 모든 당조직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조직의 총회(대표회)이다.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 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솔하 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임기의 해당조직을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총조직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2) 하급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4) 당원 책임자를 발견 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여 심사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 훈련시킨다.

-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 9)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상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거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

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9장 당과 로동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로동대중의 간부대열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

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선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